



## 문경 석달 사건

### 【결정사안】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 무렵,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 소속 군인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군(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앞 논(제1현장)과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당시 석달마을 주변에 출몰하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음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고서, 가옥 24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86명을 집단총살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김원지(金遠池)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
2.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하였다. 점촌을 출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대는 동로면 수평리 → 산북면 소야리 → 산북면 거산리 → 산북면 우곡리(도치골, 황새골, 읍실)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10:00시경 합류하였다. 상선암에서 합류한 제2소대 및 제3소대 약 70여 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인근 지역 주민 장성환과 노성근의 길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고 군인들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제1현장)에서 총살하였다. 한편 마을을 포위·경계하고 있던 군인들은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돌아오던 마을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을 총살하였다.
3. 조사결과 사건 희생자는 김영춘(金永春, 다-451호, 다-893호), 채남진(蔡南鎮, 다-451호, 다-893호), 장수금(張水金, 다-581호), 김분이(金分利, 다-581호), 이미분(李美粉, 다-581호), 이점술(李點述, 다-581호), 김용환(金容煥, 다-684호, 다-893호), 김원



지(金遠池, 다-705호, 다-893호), 김악이(金岳伊, 다-705호, 다-893호), 채명진(蔡銘鎮, 다-705호, 다-893호), 정정희(鄭貞姬, 다-705호, 다-893호), 홍남양(洪南陽, 다-729호, 다-893호), 채주액(蔡周璣, 다-730호), 이계용(李桂用, 다-730호), 채아기(다-730호), 채주민(蔡周民, 다-731호), 장영희(張永姬, 다-731호), 채갑진(蔡甲鎮, 다-731호), 채훈진(蔡熏鎮, 다-731호), 채점식(蔡點植, 다-731호), 채홍복(蔡鴻福, 다-731호), 김임섭(金任燮, 다-893호), 채성순(蔡成順, 다-893호), 채두용(蔡斗龍, 다-893호), 채영해(蔡永海, 다-893호), 김병철(金丙喆, 다-893호), 권화일(權花一, 다-893호), 이□□(李□□: 권화일의 처, 다-893호), 권기매(權基梅, 다-893호), 채주택(蔡周泰, 다-893호), 채창진(蔡昌鎮, 다-893호), 정치수(鄭致秀, 다-893호, 다-2758호), 박원연(朴元連, 다-893호, 다-2758호), 장차양(張且陽, 다-893호, 다-2758호), 정아기(다-893호, 다-2758호), 황기수(黃基秀, 다-893호), 엄계홍(嚴桂紅, 다-893호), 황출주(黃出周, 다-893호), 황의인(黃義仁, 다-893호), 황갑순(黃甲順, 다-893호), 황점용(黃點龍, 다-893호), 황아기(다-893호), 황기해(黃基海, 다-893호), 황석주(黃石周, 다-893호), 황봉구(黃鳳九, 다-893호), 채순례(蔡順禮, 다-893호), 남수영(南秀永, 다-893호), 이경대(李京大, 다-893호), 남수창(南秀昌, 다-893호), 남희목(南喜木, 다-893호), 남아기(다-893호), 박재춘(朴在春, 다-893호), 김봉자(金鳳子, 다-893호), 박아기(다-893호), 채주락(蔡周洛, 다-893호), 전본동(全本東, 다-893호), 채주순(蔡周順, 다-893호), 정순연(鄭順連, 다-893호), 채철진(蔡徹鎮, 다-893호), 채만출(蔡萬出, 다-893호), 김수용(金壽用, 다-893호), 우일분(禹一粉, 다-893호), 김병영(金柄英, 다-893호), 김상연(金尙連, 다-893호), 김병준(金炳俊, 다-893호), 채명분(蔡明分, 다-893호), 채주철(蔡周轍,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권가국(權佳局,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세진(蔡洗鎮, 다-983호), 민접연(閔接連, 다-983호), 채홍목(蔡鴻牧, 다-983호), 채순희(蔡順喜, 다-983호), 정유생(鄭有生, 다-989호), 채미준(蔡美俊, 다-989호), 채홍수(蔡鴻洙, 다-989호), 김명월(金明月, 다-990호), 전병하(全炳河, 다-990호), 전춘달(全春達, 다-990호), 전병기(全炳琦, 다-990호), 전가자(全嘉子, 다-990호), 채홍명(蔡鴻明, 다-1003호), 황양동(黃陽洞,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형진(蔡瑩鎮,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등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다.

4. 사건 희생자는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 대부분(69.8%인 60명)이 20세 이하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었으며, 특



히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5.6%(22명)나 되었다.

5. 사건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석달마을에 출몰하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음식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고서, 이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협력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가해 부대는 석달마을 인근의 석봉산과 단산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는 갈평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공비토벌작전중의 지역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건은 이러한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가옥에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눈에서 곧바로 집단총살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의 총격 역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7. 사건의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俞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규(俞鎮奎) 소위였다.

8.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와 제3소대장 유진규는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달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하였던 초급 지휘관이었다. 제7중대장 유응철은 현장에서 주민 총살을 명령하였던 지휘관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 한편 제25연대장 유해준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제2사단장 송호성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방장관 신성모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사건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성가(李成佳)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



9.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급한 전투 상황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것도 상당수가 노약자나 부녀자인 동네 주민 전원을 아무런 확인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10.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문경 석달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전 문】

【사 건】 다-893호 외 15건 문경 석달 사건

【신청인】 채의진 외 27명

【결정일】 2007. 6. 26.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 개요

#### 1. 사건 접수 및 처리

##### 가. 진실규명 신청 현황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 동안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민간인들이 집단희생되었다는 사유로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6건이고, 신청인 수는 개별 신청인 16명 및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12명 등 총 28명이었다.



〈표 1〉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893(채홍연)과 동일 신청
'06. 1. 6.	451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sup>1)</sup> 증증조모	
			채남진(蔡南鎮)	남	67	희생자 조부	1
'06. 1. 12.	581	이만우(李萬雨)	이삼현(李三鉉)	남	52	피해자 부	1
			장수금(張秀今)	여	41	희생자 모	1
			이만우(李萬雨)	남	3	피해자 본인	1
			이중현(李重鉉)	남	58	피해자 백부	1
			김분이(金粉伊)	여	53	희생자 백모	1
			이미분(李米粉)	여	12	희생자 종자(從姊)	1
			이점술(李點述)	여	9	희생자 종자(從姊)	1
'06. 1. 12.	684	김경희(金慶熙)	김목성(金木成)	남	48	— 부	—
			황야지(黃牙只)	여	43	피해자 모	1
			김용환(金容煥)	남	16	희생자 형(오빠)	2
			김경희(金慶熙)	여	12	피해자 본인	1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목격자 제	2

1) 사건번호 다-451호(신청인 채윤식)의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에는 “사건과의 관계”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해자 및 경험·목격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희생자’,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 현장에서 생존한 경우 ‘현장 생존자’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17.	705	채홍락(蔡鴻樂)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증조모	1	893(채의진)과 유사 신청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조모	1	
			채명진(蔡銘鎮)	남	27	희생자 부	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모	1	
			채홍락(蔡鴻樂)	남	8	경험 · 목격자 본인	2	
'06. 1. 18.	729	이시환(李時煥)	홍남양(洪南陽)	여	81	희생자 조모	1	893(이정애)과 유사 신청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채주악(蔡周畧)	남	63	희생자 조부	1	893(이정애)과 유사 신청
			이계용(李桂用)	여	38	희생자 모	1	
			채홍문(蔡鴻文)	남	8	경험 · 목격자 본인	2	
			채아기	여	1	희생자 제	1	
'06. 1. 18.	731	채욱진(蔡旭鎮)	채주민(蔡周民)	남	54	희생자 부	1	893(이정애)과 유사 신청
			황남순(黃南純)	여	48	피해자 모	1	
			장영희(張永姪)	여	34	희생자 형수	1	
			채갑진(蔡甲鎮)	남	16	희생자 형	1	
			채욱진(蔡旭鎮)	남	15	경험 · 목격자 본인	2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18.	731	채우진(蔡旭鎮)	채훈진(蔡熏鎮)	남	13	희생자 제	1	
			채갑순(蔡甲順)	여	12	희생자 제	1	
			채외순(蔡外順)	여	9	희생자 질	1	
			채점식(蔡点植)	여	8	희생자 질	1	
			채홍복(蔡鴻福)	남	7	희생자 질	1	
'06. 1. 24.	893	채의진(蔡義鎮)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조모	1	
			김약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모	1	
			채명진(蔡銘鎮)	남	27	희생자 형	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형수	1	
			김임섭(金任燮)	여	35	희생자 숙모	1	
			채성순(蔡成順)	여	15	희생자 종자(從姊)	1	
			채두용(蔡斗龍)	여	12	희생자 종매(從妹)	1	
			채영해(蔡永海)	남	9	희생자 종제	2	
			김병철(金丙喆)	남	68	희생자 숙모 댁 일꾼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24.	893	권화일(權花一)	권화일(權花一)	남	44	희생자 본인	1	연고자 없음
			이□□(李□□)	여	40	희생자 처	1	
			권기매(權基梅)	여	12	희생자 자	1	
"	"	채가진(蔡佳鎮)	채주태(蔡周泰)	남	50	희생자 부(종숙부)	1	대표자 신정 신청 당시 연고자 없었음  2758(정복순)과 동일 신청
			홍연아(洪軟兒)	여	45	피해자 모(종숙모)	1	
			채창진(蔡昌鎮)	남	15	피해자 형(재종형)	1	
			채미준(蔡美俊)	여	11	경험 · 목격자 형(재증자)	1	
			채가진(蔡佳鎮)	남	9	피해자 본인(재종제)	2	
"	"	정치수(鄭致秀)	정치수(鄭致秀)	남	56	희생자 본인	1	대표자 신정 신청 당시 연고자 없었음  2758(정복순)과 동일 신청
			박원연(朴元連)	여	54	희생자 처	1	
			장차양(張且陽)	여	26	희생자 자부	1	
			정아기	여	1	희생자 손녀	1	
"	"	엄정순(嚴貞順)	황기수(黃基壽)	남	68	희생자 양시조부	1	
			장봉국(莊鳳局)	여	57	경험 · 목격자 양시조모	1	
			엄계홍(嚴桂紅)	여	37	희생자 양시모	1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24.	893	엄정순(嚴貞順)	황출주(黃出周)	남	16	희생자 양시삼촌	2	
			황의인(黃義仁)	남	16	희생자 양시숙	1	
			황갑순(黃甲順)	여	10	희생자 양시누이	1	
			황점용(黃點龍)	남	3	희생자 양시동생	1	
			황아기	남	1	희생자 양시동생	1	
"	"	황의종(黃義鍾)	황기해(黃基海)	남	58	희생자 조부	1	
			황석주(黃石周)	남	33	희생자 부	2	
			강희수(姜熙秀)	여	27	피해자 모	1	
			황봉구(黃鳳九)	여	8	희생자 형(누나)	1	
			황봉수(黃鳳洙)	여	7	경험·목격자 형(누나)	1	
			황의종(黃義鍾)	남	5	경험·목격자 본인	1	
"	"	이운자(李雲子)	황아지(黃牙只)	여	33	피해자 시모	1	684(김경희)와 동일 신청
			김용환(金容煥)	남	16	희생자 시숙	2	
			김경희(金慶熙)	여	11	피해자 시누이	1	
"	"	남한수(南漢秀)	남맹문(南孟文)	남	49	피해자 부(내재종숙)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24.	893	남한수(南漢秀)	채순례(蔡順禮)	여	41	희생자 모(내재종숙모)	1	
			남수영(南秀永)	남	18	희생자 형(내삼종형)	2	
			이경대(李京大)	여	20	희생자 형수(내삼종형수)	1	
			남수창(南秀昌)	남	16	희생자 형(내삼종형)	1	
			남한수(南漢秀)	남	7	경험 · 목격자 본인(내삼종제)	2	
			남희목(南喜木)	남	2	희생자 제(내삼종제)	1	
			남아기	남	1	희생자 제(내삼종제)	1	
"	"	황의남(黃義男)	황필주(黃筆周)	남	53	경험 · 목격자 부	1	
			박재춘(朴在春)	남	30	희생자 이부(異父)형	1	
			김봉자(金鳳子)	여	20	희생자 이부(異父)형수	1	
			박아기	남	1	희생자 이부(異父)질	1	
			황의남	남	23	경험 · 목격자 본인	1	
"	"	채홍근(蔡鴻根)	채주락(蔡周洛)	남	68	희생자 조부	1	
			채선진(蔡先鎮)	남	18	- 부	-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24.	893	채홍연(蔡鴻連)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재종백숙모)	1	451(채윤식)과 동일 신청
			채남진(蔡南鎮)	남	67	희생자 부(삼종형)	1	
			채홍기(蔡鴻氣)	남	24	- 형(삼종질)	-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본인(삼종질)	1	
"	"	오명옥(吳明玉)	전본동(全本東)	여	69	희생자 양시조모(3종조모)	1	451(채윤식)과 동일 신청
			채주순(蔡周順)	남	31	희생자 양시부(7촌 숙부)	2	
			정순영(鄭順英)	여	24	희생자 양시모(7촌 숙모)	1	
			채철진(蔡徹鎮)	남	3	희생자 양시제(8촌 동생)	1	
			채만출(蔡萬出)	남	29	희생자 양시부의 제(7촌 숙)	1	
"	"	김상병(金尙柄)	김수용(金壽用)	남	38	희생자 부(외숙)	1	451(채윤식)과 동일 신청
			우일분(禹一粉)	여	31	희생자 모(외숙모)	1	
			김병영(金炳英)	남	10	희생자 자(외종제)	2	
			김상병(金尙柄)	여	8	경험 · 목격자 본인(외종매)	1	
			김상연(金尙連)	여	7	희생자 매(외종매)	2	
			김병준(金炳俊)	남	3	희생자 제(외종제)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1. 24.	893	이정애(李禎鶴) 이정환(李霆寰)	홍남양(洪南陽)	여	81	희생자 증조모	1	729(이시환)와 유사 신청
			이시형(李時衡)	남	26	피해자 부	1	
			채명분(蔡明分)	여	20	희생자 모	1	
			이정애(李禎鶴)	여	2	피해자 본인	1	
			이정환(李霆寰)	남	1	경험 · 목격자 본인	1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1	2438(채홍득)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유사 신청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1	
			채세진(蔡洗鎮)	남	40	피해자(사망) 부	1	
			민접연(閔接連)	여	43	피해자(사망) 모	1	
			채홍목(蔡鴻牧)	남	19	피해자(사망) 형	2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본인	2	
			채순희(蔡順喜)	여	7	피해자(사망) 제	1	
'06. 2. 3.	989	채홍윤(蔡鴻潤)	채중경(蔡仲慶)	남	44	경험자 또는 목격자 부	1	
			정유생(鄭有生)	여	42	피해자(사망) 모	1	
			채미준(蔡美俊)	여	12	피해자(사망) 매	1	
			채홍수(蔡鴻洙)	남	3	피해자(사망) 제	1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신청인과의 관계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권송동(權松同)	여	77	피해자(사망) 조모		1
			김명월(金明月)	여	35	피해자(사망) 양모		1
			전병섭(全炳燮)	남	30	피해자(사망) 형		1
			전병하(全炳河)	남	14	피해자(사망) 형		1
			전춘달(全春達)	남	41	피해자(사망) 숙부		1
			채순금(蔡順今)	여	38	경험자 또는 목격자 숙모		1
			전병기(全炳琦)	남	14	피해자(사망) 종형제		1
			전희자(全嘉子)	여	7	피해자(사망) 종형제		1
'06. 2. 6.	1003	채성식(蔡成植)	채홍명(蔡鴻明)	남	14	피해자(사망) 숙부		
'06. 3. 17.	2438	채홍득(蔡鴻得)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1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1
			황양동(黃陽洞)	여	69	피해자(사망) 양조모		1
			채형진(蔡瑩鎮)	남	31	피해자(사망) 부		1
			장강희(張江姪)	여	29	피해자(부상) 모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현장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정치수(鄭致秀)	남	56	피해자(사망) 부	1	893(채의진)과 동일 신청
			박원연(朴元連)	여	54	피해자(사망) 모	1	
			장치양(張且陽)	여	26	피해자(사망) 올케	1	
			정아기	여	1	피해자(사망) 질	1	
'06. 5. 11.	3469	채홍달(蔡鴻達)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1	983(채홍빈)과 유사 신청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동일 신청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1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양조모	1	
			채형진(蔡瑩鎮)	남	31	피해자(사망) 부	1	
			장강희(張江姪)	여	29	피해자(부상) 모	1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주철(蔡周轍)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1	983(채홍빈)과 유사 신청 3469(채홍달) 7462(채정희)와 동일 신청
			권가국(權佳局)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1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양조모	1	
			채형진(蔡瑩鎮)	남	31	피해자(사망) 부	1	
			장강희(張江姪)	여	29	피해자(부상) 모	1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비고
			성명	성 별	나 이	사건과의 관계	현 장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본인	2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제	1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사촌오빠	2	

\* 도표 내 각종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들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사건 관련 희생자(87명)

\*\* “현장”란의 숫자는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은 사건의 제1현장인 ‘석달마을 앞 논’, ‘2’는 사건의 제2현장인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를 의미한다.

\*\*\* “관계” 및 “현장”란의 “-” 표시는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현장 부재자’를 의미한다.

## 나. 처리 경과

### 1) 조사개시 결정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심의 · 의결 결과 사건번호 다-893호(신청인 채의진) 외 10건을 「문경 석달 사건」으로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2) 조사개시(병합) 결정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9월 29일 제17차 회의에서 사건번호 다-1003호(신청인 채성식) 외 3건, 2007년 2월 13일 제28차 회의에서 사건번호 다-7462호(신청인 채정희)를 이미 조사개시 결정된 「문경 석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 2) 사건번호 다-983호(신청인 채홍빈)의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은 이전의 신청서 양식과 달라졌는데, “사건 관련자”를 피해자, 가해자, 경험자 또는 목격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사건과의 관계는 “피해자”로 통일하되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구분하기 위해 괄호 속에 구체적인 내용, 즉 사망 및 부상 등의 내용을 첨기하기로 한다.



## 2. 신청인의 주장

### 가. 사건 개요

#### 1) 사건 경위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은 서북쪽의 배너미산(813m)<sup>3)</sup>과 단산(檀山, 956m) 및 조항령(鳥項嶺, 673m)으로 둘러싸인 산간오지 자연부락으로, 사건 발생 당시 24가구 127명이 거주하였다.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무장 군인 70여 명이 마을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당시 마을에 있던 주민 모두를 마을 앞 논(사건의 제1현장)에 모아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였으며, 생존자에 대해서는 확인사살을 한 후 마을 뒤 산모퉁이(사건의 제2현장)로 이동하던 중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과 학생들에게도 총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 127명 중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부상자들 가운데 4명은 방치되어서, 그리고 1명은 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86명이 희생되었다.

#### 2) 피해 현황

마을 주민 중 86명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유아 5명을 포함해서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26명이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10명, 여자가 절반인 42명이었다. 또한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국민학생이 6명이나 되었고, 타 동민도 1명 있었다. 전가족이 몰살된 집이 5세대, 여자 1명만 생존하였거나 남자 1명이 생존하였어도 고령이어서 대가 끊긴 경우도 6세대나 되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인명 피해 못지않았는데, 당시 석달마을에 있던 가옥 24채 모두가 불에 탔고, 가을걷이한 곡식을 저장하던 광이 전소되는 등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 나. 신청 사항

신청인 채의진 외 27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접수하면서 ①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발생한 ‘양민집단학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② 진실 규명 결과에 따른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③ 사건의 희생자 및

3) 도엽상에는 ‘배나무산’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배너미산’, ‘주월산(舟越山)’, ‘선암산’ 등이 혼용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너미산’으로 서술하였다.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령 및 해원사업 ④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⑤ 왜곡 기재되어 있는 희생자들의 제적부 정정 등을 요구하였다.

##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 1. 조사 배경

#### 가. 사회·역사적 필요성

##### 1) 과거 국가기구의 처리 경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9년 12월 25일 문경경찰서[서장 이의승(李宜承)<sup>4)</sup>] 및 산북지 서[지서주임 이기용(李基用 또는 李耆用)<sup>5)</sup>] 소속 경찰관 4명(또는 수 명)이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황○○(당시 점촌 소재 국민사진관 운영)을 동행하게 하여 전소된 마을전경과 현장을 사진 촬영하였다.

1950년 1월 17일 국방장관 신성모(申性模)가 사건 현장에서 4km 떨어진 김룡국민학교 (현재 폐교)<sup>6)</sup>를 방문하여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李正熙)에게 ‘생존자 위로금’ 명목으로

4) 『경북경찰발전사』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은 “이선승(李宣承)”이었는데, “제8대” 문경경찰서장 “이선승”은 1949년 10월 15일부터 1950년 2월 5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직 당시 계급은 경감이었다. “제8대”(또는 “제7대”) 문경경찰서장 “이선승” 경감 후임에는 김이화(金利和) 경감이 취임하였는데, 1950년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재직하였다. 그러나 『경북경찰발전사』에서는 “이선승”과 “이의승(李宜承)”이 혼용되어 있는데,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에는 “제7대” 문경 서장 이의승(李宜承)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역대순의 차이는 제1대 문경경찰서장을 김팔봉(金八奉) 경위로 볼 것인가 조준영(趙浚永) 경감으로 볼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는데, 김팔봉은 1945년 8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준영은 1945년 11월 30일부터 1946년 2월 1일까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역대 문경경찰서장 명단과 관련하여 『경북경찰발전사』와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가 보이는 큰 차이점은 제6대(또는 제5대)와 제7대(또는 제6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한 김형수(金亨洙)와 이무옥(李武鵞)의 재직기간이다. 『경북경찰발전사』에서는 이무옥이 1948년 7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제6대), 김형수가 1949년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제7대) 문경경찰서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에서는 김형수가 1948년 7월 15일부터 1949년 2월 26일까지(제5대), 이무옥이 1949년 3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제6대) 문경 경찰서장을 맡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1, 184쪽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454쪽.)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이의승의 이력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은 이의승(李宜承)이었는데, 이의승은 1949년 6월 17일 경감으로 승진되면서 경상북도 경찰국 근무를 명반았다. 6월 18일 문경경찰서 경무계장으로 별령이 났고, 9월 18일 문경경찰서장 서리(署理)에 임명되었으며, 10월 22일 경상북도 문경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2월 6일 문경 경찰서장이라는 보직에서 면(免)하였다.

5) 한편 이기용(李耆用 혹은 李基用)은 제4대 국회 조사단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사찰주임으로 언급되었으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1쪽.], 사건과 관련한 1960년대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한 결과(『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사찰주임은 윤영길(尹英吉)이었고, 이기용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산북지서주임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6) 1943년 5월 27일 개교하여 졸업생 2,827명을 배출하고, 1999년 9월 1일 폐교되었다고 한다.(김룡국민학교 교적비)

100만 원(圓)<sup>7)</sup>을 전달하였고, 생존자들에게 가구당 미군용 담요 1장씩과 약간의 식량을 전달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의 생존자 위로금은 1950년 봄(또는 5월경) 산북면사무소에서 ‘주택건축 보조금’ 명목으로 생존자 1세대 당 1만 6,000원(圓)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로 13세대 31명(또는 15세대 43명)이 8평 남짓의 가옥을 새로 마련하여 입주하였다.

또한 당시 산북면장 황중교(黃仲敎)는 사건 발생 후 상경하여 사회부<sup>8)</sup> 차관 최창순(崔昌順)<sup>9)</sup>과 면담한 결과 생존자 1인당 옥양목 10마, 현 담요 50매를 받았다.

1960년 4·19 이후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전후 발생하였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제보들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옴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1960년 5월 18일 박상길(朴相吉)<sup>10)</sup> 의원 외 11인은 「거창함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긴급결의안(居昌咸陽山淸等地의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에關한緊急決議案)」을,<sup>11)</sup> 5월 22일 서정귀(徐庭貴)<sup>12)</sup> 외 11인은 「

- 7)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당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100만 환(圓)”으로 되어 있는데, 환(圓)은 1953년 2월 15일 긴급통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변경된 화폐단위로, 100원(圓)을 1환(圓)으로 변경함으로써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현지 를 답사 또는 방문한 국방장관 신성모가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주었다는 ‘위자료’의 화폐단위는 “원(圓)”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 당시, 즉 1960년대 화폐단위인 환(圓)으로 환산해놓은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8) 사건과 관련한 1960년 언론보도 당시에는 “보건사회부”로 개재되어 있었나, 사건 발생 당시 및 직후에는 사회부(社會部)와 보건부(保健部)가 분리되어 있었다. 즉, 사회부는 1948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25호 「사회부직제」에 의거하여, 보건부는 1949년 7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50호 「보건부직제」에 의거하여 각각 신설되었다. 이들 사회부와 보건부는 1955년 2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004호 「보건사회부직제」에 의거하여 폐지되었고,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가 신설되었으며, 동 부처는 1994년 12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4446호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 9) 사건 발생을 전후한 시기의 역대 사회부 및 보건부 차관 명단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부 제1대 차관은 오종식(1948년 8월 3일 ~1949년 1월 27일), 제2대 차관은 최창순(1949년 1월 27일~1952년 1월 11일)이며, 보건부는 제1대 차관은 이갑수(1949년 6월 11일~1950년 12월 27일), 제2대 차관은 임문식(1950년 12월 27일~1951년 5월 7일)이었다. 이들 명단과 비슷한 인명을 볼 때 해당 부서는 사회부였고 제2대 차관인 최창순임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49년 1월 21일자에는 지난 1월 19일 사회부 차관에 당시 서울시 위생국장(또는 보건위생국장) 최창순(崔昌淳)을 내정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고, 1949년 4월 8일 『관보』 제70호에 의하면 동일부로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을 정부위원에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안건첩』 내 「경상북도 관내 소요지구 피해실정조사보고서」의 작성자가 1950년 2월 13일 현재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1960년 언론보도에서는 “보건사회부(또는 보사부) 차관 최창선(崔昌燮)”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창선은 부산상고를 거쳐 일본대학 사회과를 졸업하였고, 동아일보[동아일보 경남 합천군 삼가면(三嘉面)자국] 및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제헌국회 의원(제헌국회 경남 합천군 보궐선거)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제3대 및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사진으로 본 국회 20년』, 한국정경사, 1967, 451, 508, 534쪽; 『동아일보』 1949년 4월 21일자;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역대 국회의원총람』, 1977, 78, 131, 164쪽.)
- 10)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남 제37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박상길과 관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 : 33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27-5, 학력 : 봉천학원 정경학부 3년 수료, 경력 : 사단법인 세계사정연구소 설립 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 11)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박상길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23일 「거창·함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에관한건」(의안번호 040520)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2)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제30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서정귀와 관



통영·남원·문경지구 양민학살 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統營.南原.聞慶地區良民虐殺事件調查에 관한決議案)』을,<sup>13)</sup> 5월 23일 김의택(金義澤)<sup>14)</sup> 의원 외 11인은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 결의안(良民虐殺事件真相調查에 관한緊急決議案)」<sup>15)</sup>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1960년 5월 23일 제4대 제35회 제19차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자들의 제안설명이 있는 후 민의원 의장[곽상훈(郭尙勳) 의원]의 제의로 세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결한 뒤 피해지구를 크게 세 지역(경남, 경북, 전남)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출신 의원 겸 세 정파(자유당, 민주당, 무소속)를 대표하는 의원 3명씩 총 9명으로 국회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sup>16)</sup> 이에 따라 5월 27일 국회 내 양민학살 사건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조사단')가 설치되었으며, 위원들은 최천(崔天), 조일재(趙一載), 주병환(朱秉煥), 김의택(金義澤, 이상 민주당), 서한두(徐漢斗), 박상길(朴相吉), 하태환(河泰煥), 윤용구(尹鎔球, 이상 자유당), 박병배(朴炳培, 무소속) 등이었다.<sup>17)</sup> 5월 28일 국회 조사단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출장조사 일정과 지역 및 명단을 결정하였다.<sup>18)</sup>

1960년 5월 30일 제4대 제35회 제24차 국회 본회의에 국회 조사단의 최천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출장 승인 요청'[「의원출장승인요청에관한건(議員出場承認要請에關한件)」]<sup>19)</sup>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조사단의 제1차 회의 의결로 위원 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출장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건에는 국회 조사단의 출장위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 3개 반에 배치되었고, 출장 목적지는 반별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출장기간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이었다. 그런데 이 때 출장위원 명단은 1차로 인선된 의원들 명단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자유당 의원 가운데 서한두, 하태환 의원이 이사형(李社炯), 임차주(林次周) 의원으로 대체되어 있다.<sup>20)</sup>

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 : 39세, 주소 : 경남 충무시 문화동 123, 학력 : 경성법전 졸업, 경력 : 도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 13)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서정귀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23일 「통영·남원·문경지구 양민학살 사건 조사에 관한건(의안번호 040521)」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안일문에서는 5월 22일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14)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제28선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김의택과 관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 : 49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23의 1, 학력 : 광주농업학교 3년 수료, 경력 : 경찰국장 2년 및 민의원 3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 15) 국회 홈페이지 내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는 김의택 의원 외 11인이 1960년 5월 18일 「양민학살 사건 진상 조사에 관한건(의안번호 040519)」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안일문에서는 5월 23일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16) 이날 본회의에서 조사단의 인선과 관련해 민의원 의장 곽상훈(郭尙勳)은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대표들이 인선하여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으나, 1960년 5월 24일 제4대 제35회 제20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보고사항」에는 이와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 17) 『동아일보』 1960년 5월 27일자,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7일자.
- 18) 『동아일보』 1960년 5월 29일자.



한편 국회 조사단은 1960년 6월 7일 제4대 제35회 제30차 국회 본회의에 “다른 지방도 많이 신청이 오고” “일자가 대단히 부족”함을 들어 애초의 출장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의원출장기간연기요청의건(議員出場期間延期要請의건)』]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서 “10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공표”함에 따라 조사단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건과 관련한 국회 조사단 경북반에는 주병환(朱秉煥, 민주당), 윤용구(尹鎔球, 자유당), 임차주(林次周, 자유당) 의원들이 배치되었으나, 임차주 의원은 애초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상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sup>20)</sup> 두 의원만으로 대구 가창과 문경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 대한 이들의 조사 과정과 내용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경북반은 1960년 6월 3일 현지를 방문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 2) 유족들의 요구와 노력

### 가) 국회청원 등

1993년 7월 15일 채의진 외 30인은 이승무(李昇茂) 의원 외 13인의 소개를 얻어 국회 청원을 제출하였고,<sup>21)</sup> 동 청원은 7월 21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1994년 12월 7일 “실현불가 또는 내용보완”的 이유로 철회되었다.

1993년 9월 13일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회장 채의진, 이하 ‘유족회’)는 국회 국방 위원회를 방문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부 답변서를 접수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최장 10년”이므로 기간초과로 “배상은 불 가능”하고,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사자료가 거의 없어 국방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보상대책 수립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5년 2월 20일 채의진 외 44인은 김원웅 · 이승무(李昇茂) 의원 외 75인의 소개를 얻

19) 제4대 제35회 제24차 국회 본회의에 승인요청된 조사단의 출장위원 명단은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9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아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는 국회 조사단의 전남반 민주당 측 대표인 이필호(李弼鶴) 의원이 6월 4일부로 유우우(劉祐祐) 의원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며, 국회 조사단이 6월 21일 제4대 제35회 제42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실린 국회 조사단 명단에서 유우우 의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필호 의원은 국회 조사단의 인선과 관련한 기사와 자료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2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3일자 사설.

21) 청원번호 140135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



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고,<sup>22)</sup> 동 청원은 2월 23일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1998년 5월 11일 채의진 외 32인은 국회진정을 제출하였고,<sup>23)</sup> 동 진정은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9월 1일 “미달성”으로 처리되었다.

1999년 2월 1일 문경발전추진협의회장은 국회진정을 제출하였고,<sup>24)</sup> 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4월 30일 “미달성”으로 처리되었다.

1999년 2월 22일 채희영 외 53인은 신영국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고,<sup>25)</sup> 동 청원은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0년 9월 5일 채희영 · 채의진 · 황의종 외 52인은 신영국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고,<sup>26)</sup> 동 청원은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4년 8월 24일 채희영 · 채의진 · 채홍빈 외 52인은 신국환 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청원을 제출하였고,<sup>27)</sup> 동 청원은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4월 2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다.

#### 나) 행정부 등

사건 제2현장(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생존한 채의진은 1960년 5월 27일 「석달동 양민집단학살」의 진상규명과 신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하였다.<sup>28)</sup> 그러나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 「반국가적활동시엄중처벌포고(反國家的活動時嚴重處罰布告)」<sup>29)</sup>를 발표 후, 군사 정권은 관계 당국에 전달된 호소문 내용의 일부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여 생존 유족 중 채홍락(당시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2년 재학)과

22) 청원번호 140389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과보상」.

23) 진정번호 152287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요구등」.

24) 진정번호 153658 「문경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후속조치」.

25) 청원번호 150444 「문경양민학살사건피해자명예회복」.

26) 청원번호 160058 「문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명예회복」.

27) 청원번호 170034 「문경석달동양민집단학살사건피해자배상에관한특별법제정」.

28) 이 때 채의진이 호소문을 전달하였던 관계 당국은 허정 내각수반,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이었다고 한다.(채의진 편저, 『아, 통한 45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3판)』, 문경양민학살피해자유족회, 1994. 12. 1, 41쪽.)

29) 1961년 5월 19일자 『관보』 제2859호.



이목열(李穆烈, 당시 석달마을 반장)을 포고 제18호 위반 혐의로 체포 · 구속하고, 상기 호소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채의진[당시 서울문리사범대학(현 명지대학교) 영어과 2년 재학]을 수배하였다.

1993년 5월 3일 유족회 결성 후 5월 20일 관계 요로에 유족회 명의의 탄원서를 전달하였는데, 이 중 내무부, 정부합동민원실, 민주자유당 등에 전달한 민원은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 소관이라 판단하여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6월 19일 육군본부는 민원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문경 양민학살 사건 사실에 대한 전사자료 미보유로 확인 불가” 입장을 유족회에 전달하였다.

#### 다) 지방 의회 및 헌법소원

1993년 5월 25일 유족회는 문경군의회에 「문경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7월 22일 제1대 제18회(임시회) 제2차 문경군의회 본회의에서 동 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의결하였으며, 7월 23일 문경군의회 전의원이 참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현장 생존자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였다. 8월 4일 문경군의회는 「민원사안 현지답사 결과내용」을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였다.

채홍기 외 17인은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문경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18. 입법부작위 위 현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00헌마192, “문경학살사건”) 이에 헌법재판소는 8월 3일 이종철 외 40인이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508, “합평학살사건”)과 병합하여 2003년 5월 15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sup>30)</sup>

30) 그러나 당시 주심재판관이었던 권성은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된 심판청구 각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권성은 입법부작위 위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 사건들은 “군인들이 비전투과정에서 교전상대가 아닌 자국의 비무장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상한 사건이므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의무가 더욱 더 강하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세 가지 반대의견을 밝혔다. 첫째, “전쟁이나 내란 또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조성된 위난(危難)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법부재(法不在)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의회가 특별한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 이들 사건은 “이른바 국가조직이 자행한 개인의 기본권침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여 피해자들은 구제의 책임과 권능을 가진 국가기관 앞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기회마저 두절되었던 정황이 인정”되며, 특히 “이는 집단살해에 유사한 행위(genocide-like act)이므로” “통상적인 법체계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구제를 위한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입법부작위 위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한적인 인정 판례에 대해 반대한다.



## 나. 법적 근거

진실화해위원회는 문경 석달 사건을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조사개시 결정 이유

집단희생규명위원회의 제1차 조사개시 결정 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 · 접수된 사건 중 「문경 석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은 사건번호 다-893호(신청인 채의진) 외 10건(개별 신청인 11명,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12명 등 13명)이었다.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부의된 「문경 석달 사건」 조사개시 결정안에 대해 사건의 인지도 · 피해규모 · 대표성 · 종합성, 조사의 시급성 및 완결 가능성, 입증자료의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 III. 조사방법 및 경과

### 1. 신청인 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 · 접수한 신청인은 개별 신청인 16명,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12명 등 총 28명이었다. 이중 국내 거주 신청인 27명에 대한 조사는 2006년 5월 9일부터 2007년 1월 24일까지 조사관 6명이 8차례의 출장조사를 통하여 완료하였고, 국외 거주 신청인(대표자 선정 신청인) 1명은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참고인 조사는 기관 출신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군인 출신 참고인은 가해 부대로 추정되던 제25연대 출신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생사여부 및 소재 파악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허○○(許○○)<sup>31)</sup>, 채○○(蔡○○)<sup>32)</sup>, 김점동(金貞童)<sup>33)</sup>, 유

31) 허○○는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작전주임’으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교 중 거의 유일한 생존 참고인이다. 허○○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디스크 수술과 노환 및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참고인 가족의 비협조로 인하여 매우 단편적인 사실 확인만 가능하였다. 한편 허○○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그는 사건 발생 전후시기[1949년 12월 22일~종기(終期) 불명]에는 제25연대 ‘제1대대 부대대



○○(柳○○)<sup>34)</sup>, 이○○(李○○)<sup>35)</sup>, 노○○(盧○○)<sup>36)</sup> ].

경찰 관련 참고인은 사건 발생 전후로 문경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생사 여부와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직접 출동하였거나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김○○(金○○)<sup>37)</sup>, 김○○(金○○)<sup>38)</sup>, 김○○(金○○)<sup>39)</sup> ]

기타 참고인으로는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사건으로 사망한 86명의 호적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사건 현장 생존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

장', 사건 발생 전(1949년 11월 18일~12월 22일)에는 '제2대대장', 사건 발생 후(1950년 2월 20일~3월 20일)에는 제25연대 '제1대대 제3과 주임장교'를 역임하였다.

- 32) 채○○은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당시 공비토벌작전 일반과 사건 관련 부대인 제25연대의 편제 및 주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33) 김점동은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 소대원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단장이었던 로버츠 준장 (William L. Roberts)의 개인 서한철 문서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또한 김점동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생사 및 소재 파악 결과 허○○와 함께 현재 생존해 있는 중요 참고인이나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김점동 조사보고(조사3팀-865, '06.08.25.), 1, 2쪽.],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상태였다.(조사3팀-1192, '06.10.23.)
- 34) 유○○은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1949년 6월경(일자불상) 호국군에 입대, 1개월간 훈련을 마친 후 7월경(일자불상) 군번을 부여 받고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제2분대에 배속되었다. 당시 직책은 부분대장이었고, 군사특기는 BAR(브라우닝 자동소총) 사수였다(조사3팀-11, '06.12.07.). 군번을 부여 받은 1949년 7월경(일자불상)에 이등병, 공비토벌차 경북 안동으로 출동할 1949. 10. 31일에 일등병, 1950. 8. 15일에 하사, 1951. 6. 25일에 이등중사, 1952. 9. 1일에 일등중사로 진급하였다. 이후 이등상사 진급 신청을 하였는데, 1954. 4. 8일 만기제대 제1호로 전역하였다. 입대 후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는 제25연대에 있었고, 1950. 7월경(일자불상) 제1사단 제11연대가 대구에서 기존의 제5연대, 제11연대, 제25연대 등 3개 연대를 기간으로 재편성될 때, 제1사단 제11연대 제2대대 제8중대 제2소대 제2분대로 전속되었다. 전속될 당시 직책은 분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동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 35) 이○○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3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먼저 군 입대부터 제대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술인은 1949년 7월 20일 대전에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에 입대하였고, 진술인의 군 입대는 소집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진술인이 입대한 제25연대는 제19연대를 기간(基轉)으로 창설한 부대였다고 하였다. 입대 후 제2대대 제7중대 화기소대(제3소대)에 배속되었는데, 배속 당시 특별한 임무를 받지는 않았다. 대전에서 훈련을 받고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안동으로 갔던 제25연대는 1950년 3월경 온양으로 돌아왔고, 제25연대가 온양에 주둔하고 있을 무렵 진술인은 무반동총 교육을 받았다.(조사3팀-29, '06.12.18.)
- 36) 노○○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소속 부대원이었으며, 1949년(일자불상) 각 면에 있던 호국군에 차출되었고, 1949년 7월(일자불상) 제25연대에 입대하였다. 입대 후 배속된 예하 부대는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로 진술인 노○○은 M-1을 다루는 소총병이었다.(조사3팀-29, '06.12.18.)
- 37) 김○○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내 외근(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49년 2월 24일 순경에 임용되었고, 문경 경찰서 외근근무를 발령 받았다.(김○○ 진술조서, 2, 3쪽 ; 김○○ 진술조서(2차), 2쪽.)
- 38) 김○○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유격대(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으며, 1949년 7월 15일 경찰관에 채용되었고, 외근근무·경무·사찰계·보안계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김○○ 진술조서, 2쪽.) 동 참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농암 방면으로 출동해서 본서에는 없었으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건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사건의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동하였다고 한다.(김○○ 진술조서, 4, 5쪽.)
- 39) 김○○은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으로서, 1947년 3월 순경에 임용되었고 1949년 겨울 특공대에 배치되었다.(김○○ 진술조서, 2쪽.)



하였던 직원들 중 현재 생존한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황○○(黃○○)<sup>40)</sup>, 천○○(千○○)<sup>41)</sup>] 다음 사건 발생 직전 석달마을의 인근 마을인 상선암에서 군인들에게 석달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던 사람들 중 현재 생존한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노성근(盧成根)<sup>42)</sup>]

### 3. 자료 조사

- 『연합신문』<sup>43)</sup> 1950년 1월 1일자~6월 27일자
- 미군 자료<sup>44)</sup> 및 미군 지도<sup>45)</sup>

- 40) 황○○은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였으며, 1947년 산북면사무소에 보임되어 1958년까지 10여 년 간을 산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최초 보임 당시에는 재무사무를 담당하였다가 3년 후부터는 호적사무를 맡아 보았다. 사건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소문으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86명에 대한 호적부를 혼자서 처리하였던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이었다.(황○○ 진술조서, 2, 4쪽.)
- 41) 천○○은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대부분은 구호사업)를 담당하였으며, 1948년 11월부터 성인교육주사로 산북면사무소 근무를 시작하였고, 1949년 11월 1일 자방서기로 임명되면서부터 사회사무를 담당하였다.(천○○ 진술조서, 2, 3쪽.)
- 42) 노성근은 사건 발생 직전 상선암에서 석달마을까지 군인들에게 길을 안내하였던 사람 2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 43) 국방군사연구소(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 자료총서』에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전쟁 자료총서』 39권은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동 시리즈는 “미국정부의 공문서로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무부가 작성하였거나 국무부에 접수된 다른 행정부서 및 재외공관, 개인, 전문가, 비평가들의 문서들을 집약한 것이다.”[『한국전쟁 자료총서 39 :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I (1950. 1. 7. ~ 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현재 『연합신문』은 마이크로폼 형태로 국회도서관에 보관중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로폼 형태의 『연합신문』은 창간호부터 1949년 6월 29일자까지, 그리고 1950년 1월 1일자부터 6월 27일자까지 크게 두 개의 릴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회도서관 마이크로 폼자료실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자료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릴에 담겨 있는 1950년도 『연합신문』 전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이크로폼 형태로 존재하는 『연합신문』은 1949년 1월 22일자가 창간호로 되어 있으나, 『대한신문연감, 1956』에는 김성근(金成坤)이 대표자로 1949년 1월 8일 창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대한신문연감편찬위원회 편, 『대한신문연감, 1956』, 대한신문연감사, 1955, 227쪽.)
- 44) 유족회는 사건과 관련된 미군 자료 7건을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첨부하였으며, 이 미군 자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유족회에 입수된 것이었다.  
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1건과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3건 등 총 4건은 유족회 회장 채의진이 입수한 것으로, 자세한 입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블 TV Q채널은 1995년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에 있었으며, 당시 채의진은 제작진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미군 자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1995년 5월 10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 1건을 입수하였다. 이 때 채의진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재미사학자 방선주로부터 해방전후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1995년 7월 2일 직접 방미하여 방선주에게 사건 관련 미군 자료의 입수를 부탁하였다. 이후 2년 6개월만인 1998년 1월 5일 방선주로부터 맥아더기념관에서 사건 관련 1차 자료 3건을 입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2월경 맥아더기념관에서 사건 관련 1차 자료 1건을 추가로 입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중 처음에 수집한 미군 자료 3건은 8월 7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이 자료들이 바로 미극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의 정보요약 3건이었다.  
다음으로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위성던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1건과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첩」 2건 등 총 3건은 전 『대한매일』 기자 정운현으로부터 유족회가 입수한 것으로 이들 미군 자료를 입수한 『대한매일』은 1999년 5월 20일자를 통해 이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 Hq. KMAG, G-2 Periodic Report, No. 238, 30 Dec. 1949(1949년 12월 30일자 주한 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 Message from USMILAT SEOUL KOREA to DA (INT DIV) WASH DC & CINCFE (G-2) TOKYO JAPAN, 11 Jan. 50, ARMA 10[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정보국)와 주일 미국동군사령관(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ARMA 10-42169]
-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Intelligence Summary, No. 2686, 16 Jan. 50(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 호) : No. 2694, 24 Jan 50(1950년 1월 24일자 제2694호) : No. 2716, 15 Feb. 50(1950년 2월 15일자 제2716호)
- RG 338, Entry 11007, Box 69, Brig General William L. Roberts(KMAG) Personal Correspondence, file 370.64(Guerrilla Warfare)(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첩)<sup>46)</sup>
- 희생자 관련 제적등본
- 1960년 언론 보도<sup>47)</sup>
- 중앙지 :『한국일보』,『동아일보』
- 지방지 :『대구매일신문』,『대구일보』,『영남일보』
-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sup>48)</sup>『역사자료 : 문경양민학살사건』<sup>49)</sup>

- 45)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보한 미군 지도는 AMS Series L751 도엽이었으며, 이는 미육군지도창(Army Map Service : AMS)에 의해 1945~63년 사이에 발행되었던 한반도에 관한 1:50,000 축척의 지도였다.(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6, 114쪽.) 이렇게 확보된 도엽 가운데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도엽은 세 종류였는데, MUNGYÖNG (SHEET 6824 III, AMS Series L751), YECHÖN(SHEET 6823 I, AMS Series L751), HAMCH'ANG(SHEET 6824 IV, AMS Series L751) 등이었다.
- 46)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첩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별개의 문서로 보이는 두 건의 보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나는 1949년 12월 25일자 한국군 '제3사단' 제25연대의 보고 내용과 그에 대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자체 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이고, 두 번째 문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경찰국 보안과 백한종 경감과 이구락 경위가 당시 군을 사건 현장까지 안내하였던 민간인 2명과 부상자 2명, 그리고 문경경찰서 정보과 소속 황영훈 형사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 47) 1960년대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언론보도는 1960년 5월 18일자(조간) 『한국일보』 보도였다. 이를 필두로 하여 중앙지 중에서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지방지 중에서는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던 『대구매일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등에서 자주 보도하였다.
- 4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은 2006년 4월 군사연구소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 49) 『역사자료 : 문경양민학살사건』은 1960년 5월 “23일” 제출된 서정귀 의원 외 11인의 「통영남원문경지구양민학살사건조사에관한결의안(統營南原聞慶地區良民虐殺事件調查에관한決議案)」, 박상길 의원 외 11인의 「거창합양산청등지의양민학살사건진상조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지역 전사 연구(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 2006. 11. 8.<sup>50)</sup>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 석달동 사건」<sup>51)</sup>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 산북면사무소, 『범죄인명부급파산자명부(犯罪人名簿及破產者名簿)』(自一九六一至三一六二)』
- 1951년도 수형인명부, 집행원부,<sup>52)</sup> 기록보존부, 피의자색인부(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 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경상북도관내소란지구피해실정조사보고서(慶尙北道管內騷亂地區被害實情調查報告書)」, 1950. 2. 13(국무회의 안건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민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제1집)』, 2006. 2.

#### 4. 현장 조사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2006년 5월 9일 14:00~18:00시경까지 유족회장 채의진 및 현장 생존자 채옥진·채홍빈 등과 함께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일대 및 김룡국민학교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는 2006년 12월 24일 11:00~12:30분경까지 사건 현장들에서 미군 자료에

사에관한건(居昌咸陽山淸等地의良民虐殺事件眞相調查에關한件)』,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일부, 6월 21일 제출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양민학살사건에관한건의안(良民虐殺事件에關한建議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되어 새로운 것이거나 군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

50) 「문경지역 전사 연구」는 2006년 11월 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로, “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에 대한 민원 내용(유족회 주장), 공간사에 수록된 2사단 25연대의 작전활동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총정리”한 것이었다. 한편 상기 문건의 첨부문서로 되어 있던 「문경 석달동 사건」은 확인 조사 결과 군편이 2002년 12월에 발간한 『지역전사 연구(Ⅲ)』 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 『지역전사 연구』 발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노근리사건’의 일부 현상이 세간에 알려지자 “민군 관련사건의 조사연구 업무”가 국방부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 9월 1일 국방부 정책기획국이 「과거사 관련 업무 이관지시」에 따라 과거사 관련 업무를 군편으로 이관하면서 신설된 조사연구부가 민군관련 사건을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조사연구부는 민원이 제기된 민군 관련사건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각 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사건현장의 방문, 필요시 증언청취, 공간사/부대사의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집 등을 발간하였는데, 『지역전사연구』는 민군관련 사건 중 ‘6·25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연구편찬물들 가운데 하나였다.(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편찬위원회,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8, 351~352쪽)

51) 「문경 석달동 사건」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문경지역 전사 연구(경북 문경 석달동 사건)」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나,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회에 대한 증언 청취, 현지(현장)답사, 참전자(군·경) 및 목격자·참고인 등에 대한 증언 청취, 수집된 사건 관련 공간사·부대사 및 국내외 자료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약술되어 있다.

5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의 집행원부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마이크로폼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후 입수하였다.(조사3팀-1306, '06.11.06.)



나타난 국군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현장 일부에 대해 실시하였다.

## IV. 조사 결과

### 1. 희생자의 신원 및 규모

#### 가. 조사 방향

여기서는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과연 무고한 민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어떠하였는지, 다시 말해 이들의 신분과 희생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가족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이 소수 있으나, 당시 나이가 어렸고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의 정황을 현재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언만으로 희생자 신원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군 자료가 사망자 규모와 신원을 적시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사망자를 일괄적으로 호적에 정리했기 때문에 진술 혹은 유족회 측 자료와 이 공식 자료를 대조하면서 규모와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 나. 조사 내용

##### 1) 자료 조사 분석

희생자의 신원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과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이 있다. 먼저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국군 ‘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1949년 12월 24일 14:00시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마을을 애워싸고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약 100여 명)을 불러 모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란 혐의를 씌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비무장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시작하였는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재사격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자 43명, 여자 43명 등이 사망했고, 남자 5명, 여



자 7명 등이 구사일생으로 부상만 입고 생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미군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희생자는 ‘국군의 의심을 받던’ 동네 주민들이며, 그 수는 86명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토대로 희생자들의 신원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사건 관련자 명단 비교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6.	451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종증조모	사망(1)	
			채남진(蔡南鎮)	남	67	희생자 조부	사망(1)	
			채홍기(蔡鴻氣)	남	24	— 부	—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고모	부상(1)	
'06. 1. 12.	581	신청인과의 관계	이삼현(李三鉉)	남	52	피해자 부	부상(1)	
			장수금(張水金) <sup>53)</sup>	여	41	희생자 모	사망(1)	
			이만우(李萬雨)	남	3	피해자 본인	부상(1)	
			이중현(李重鉉)	남	58	피해자 백부	부상(1)	
			김분이(金分利) <sup>54)</sup>	여	53	희생자 백모	사망(1)	
			이미분(李美粉) <sup>55)</sup>	여	12	희생자 종자(從姊)	사망(1)	
			이점술(李點述)	여	9	희생자 종자(從姊)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12.	684	김경희(金慶熙)	김목성(金木成)	남	48	— 부	—
			황아지(黃牙只)	여	43	피해자 모	부상(1)
			김용환(金容煥) <sup>56)</sup>	남	16	희생자 형(오빠)	사망(2)
			김경희(金慶熙)	여	12	피해자 본인	부상(1)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 · 목격자 제	생존(2)
'06. 1. 17.	705	채홍락(蔡鴻樂)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증조모	사망(1)
			채주호(蔡周浩)	남	53	경험 · 목격자 조부	생존(1)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조모	사망(1)
			채명진(蔡銘鎮)	남	27	희생자 부	사망(2)
			정정희(鄭貞姪)	여	30	희생자 모	사망(1)
			채의진(蔡義鎮)	남	11	경험 · 목격자 숙부	생존(2)
'06. 1. 18.	729	이시환(李時奐)	채홍락(蔡鴻樂)	남	7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2)
			홍남양(洪南陽) <sup>57)</sup>	여	81	희생자 조모	사망(1)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채주액(蔡周磯) <sup>58)</sup>	남	63	희생자 조부	사망(1)
			채동진(蔡東鎮)	남	38	경험 · 목격자 부	생존(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06. 1. 18.	730	채홍문(蔡鴻文)	이계용(李桂用) <sup>59)</sup>	여	38	희생자 모	사망(1)
			채홍문(蔡鴻文)	남	8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2)
			채홍열(蔡鴻烈)	여	5	경험 · 목격자 제	생존(1)
			채아기	여	1	희생자 제	사망(1)
'06. 1. 18.	731	채우진(蔡旭鎮)	채주민(蔡周民)	남	54	희생자 부	사망(1)
			황남순(黃南純)	여	48	피해자 모	부상(1)
			장영희(張永姬)	여	34	희생자 형수	사망(1)
			채갑진(蔡甲鎮) <sup>60)</sup>	남	16	희생자 형	사망(1)
			채우진(蔡旭鎮)	남	15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2)
			채훈진(蔡熏鎮) <sup>61)</sup>	남	13	희생자 제	사망(1)
			채갑순(蔡甲順) <sup>62)</sup>	여	12	희생자 제	사망(1)
			채대진(蔡大鎮) <sup>63)</sup>	남	10	희생자 제	사망(2)
			채상진(蔡尙鎮)	남	8	피해자 제	부상(2)
			채외순(蔡外順) <sup>64)</sup>	여	9	희생자 질	사망(1)
			채점식(蔡點植) <sup>65)</sup>	여	8	희생자 질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18.	731	채우진(蔡旭鎮)	채홍복(蔡鴻福) <sup>66)</sup>	남	7	희생자 질	사망(1)
			채홍업	남	4	경험 · 목격자 질	생존(1)
'06. 1. 24.	893	채의진(蔡義鎮)	김원지(金遠池)	여	82	희생자 조모	사망(1)
			채주호(蔡周浩)	남	53	경험 · 목격자 부	생존(1)
			김악이(金岳伊)	여	45	희생자 모	사망(1)
			채명진(蔡銘鎮)	남	27	희생자 형	사망(2)
			정정희(鄭貞姬)	여	30	희생자 형수	사망(1)
			채의진(蔡義鎮)	남	11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2)
			채홍락(蔡鴻樂)	남	7	경험 · 목격자 질	생존(2)
			김임섭(金任燮)	여	35	희생자 숙모	사망(1)
			채성순(蔡成順) <sup>67)</sup>	여	15	희생자 종자(從姊)	사망(1)
			채두용(蔡斗龍)	여	12	희생자 종매(從妹)	사망(1)
			채영해(蔡永海) <sup>68)</sup>	남	9	희생자 종제	사망(2)
			김병철(金丙喆)	남	68	희생자 숙모 데 일꾼	사망(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채의진(蔡義鎮)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채주목(蔡周牧) <sup>69)</sup>	남	48	속부	사망
		채명분(蔡明分)		여	20	형(누나)	사망
		권화일(權花一) <sup>70)</sup>	권화일(權花一)	남	44	희생자 본인	사망(1)
			이ㅁㅁ(李ㅁㅁ)	여	40	희생자 처	사망(1)
			권기매(權基梅)	여	12	희생자 자	사망(1)
		채가진(蔡佳鎮)	채주태(蔡周泰)	남	49	희생자 부(종숙부)	사망(1)
			홍연아(洪軟兒)	여	45	피해자 모(종숙모)	부상(1)
			채창진(蔡昌鎮)	남	15	희생자 형(재종형)	사망(1)
			채미준(蔡美俊)	여	11	경험·목격자 형(누나)(재증자)	생존(1)
			채가진(蔡佳鎮)	남	9	피해자 본인(재증자)	부상(2)
		정치수(鄭致秀) <sup>71)</sup>	정치수(鄭致秀)	남	56	희생자 본인	사망(1)
			박원연(朴元連) <sup>72)</sup>	여	54	희생자 처	사망(1)
			장차양(張且陽) <sup>73)</sup>	여	26	희생자 자부	사망(1)
			정아기	여	1	희생자 손녀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엄정순(嚴貞順) <sup>74)</sup>	황기수(黃基壽) <sup>75)</sup>	남	68	희생자 양시조부	사망(1)		
			장봉국(莊鳳局)	여	57	경험 · 목격자 양시조모	생존(1)		
			엄계흥(嚴桂興) <sup>76)</sup>	여	37	희생자 양시모	사망(1)		
			황출주(黃出周)	남	16	희생자 양시삼촌	사망(2)		
			황의인(黃義仁) <sup>77)</sup>	남	16	희생자 양시숙	사망(1)		
			황갑순(黃甲順) <sup>78)</sup>	여	10	희생자 양시누이	사망(1)		
			황점용(黃點龍)	남	3	희생자 양시동생	사망(1)		
		황의종(黃義鍾)	황아기	남	1	희생자 양시동생	사망(1)		
			황기해(黃基海)	남	58	희생자 조부	사망(1)		
			황석주(黃石周)	남	33	희생자 부	사망(2)		
			강희수(姜熙秀)	여	27	피해자 모	부상(1)		
			황봉구(黃鳳九)	여	8	희생자 형(누나)	사망(1)		
			황봉수(黃鳳洙)	여	7	경험 · 목격자 형(누나)	생존(1)		
			황의종(黃義鍾)	남	5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1)		
			홍호평(洪好平) <sup>79)</sup>	여	55	조모	사망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이운자(李雲子) <sup>80)</sup>	김목성(金木成)	남	48	— 시부	—
			황아지(黃牙只)	여	33	피해자 시모	부상(1)
			김용환(金容煥) <sup>81)</sup>	남	16	희생자 시숙	사망(2)
			김경희(金慶熙)	여	11	피해자 시누이	부상(1)
			김용석(金容錫)	남	9	경험 · 목격자 남편	생존(2)
		남한수(南漢秀)	신평산(申平山) <sup>82)</sup>	여	62	경험 · 목격자 조모	생존(1)
			남맹문(南孟文)	남	49	피해자 부(내재종숙)	부상(1)
			채순례(蔡順禮)	여	41	희생자 모(내재종숙모)	사망(1)
			남수영(南秀永)	남	18	희생자 형(내삼종형)	사망(2)
			이경대(李京大)	여	20	희생자 형수(내삼종형수)	사망(1)
			남수창(南秀昌)	남	16	희생자 형(내삼종형)	사망(1)
			남한수(南漢秀)	남	7	경험 · 목격자 본인(내삼종제)	생존(2)
			남희복(南喜木)	남	2	희생자 제(내삼종제)	사망(1)
			남아기	남	1	희생자 제(내삼종제)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 24.	893	황의남(黃義男)	황필주(黃筆周)	남	53	경험 · 목격자 부	생존(1)
			박재춘(朴在春)	남	30	희생자 이부(異父)형	사망(1)
			김봉자(金鳳子)	여	20	희생자 이부(異父)형수	사망(1)
			박아기	남	1	희생자 이부(異父)질	사망(1)
			황의남(黃義男)	남	12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1)
		채홍근(蔡鴻根)	채주락(蔡周洛) <sup>83)</sup>	남	68	희생자 조부	사망(1)
			채선진(蔡先鎮)	남	18	— 부	—
			안가동(安佳東) <sup>84)</sup>	여	51	조모	사망
		채홍연(蔡鴻連) <sup>85)</sup>	김영춘(金永春)	여	77	희생자 (재증백숙모)	사망(1)
			채남진(蔡南鎮)	남	67	희생자 부(삼종형)	사망(1)
			채홍기(蔡鴻氣)	남	24	— 형(삼종질)	—
			채홍연(蔡鴻連)	여	8	피해자 본인(삼종질)	부상(1)
		오명옥(吳明玉) <sup>86)</sup>	전본동(全本東) <sup>87)</sup>	여	68	희생자 양시조모(삼종조모)	사망(1)
			채주순(蔡周順)	남	38	희생자 양시부(7촌 숙부)	사망(2)
			정순연(鄭順連) <sup>88)</sup>	여	24	희생자 양시모(7촌 숙모)	사망(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06. 1. 24.	893	오명옥(吳明玉)	채철진(蔡錡鎮) <sup>89)</sup>	남	3	희생자 양시제(8촌 제)	사망(1)
			채만출(蔡萬出) <sup>90)</sup>	남	29	희생자 양사부의 제(7촌숙)	사망(1)
		김상병(金尙柄)	김수용(金壽用) <sup>91)</sup>	남	38	희생자 부(외숙)	사망(1)
			우일분(禹一粉) <sup>92)</sup>	여	30	희생자 모(외숙모)	사망(1)
			김병영(金炳英) <sup>93)</sup>	여	10	희생자 자(외종제)	사망(2)
			김상병(金尙柄)	여	8	경험 · 목격자 본인(외종매)	생존(1)
			김상연(金尙連) <sup>94)</sup>	여	7	희생자 매(외종매)	사망(2)
			김병준(金炳俊) <sup>95)</sup>	남	3	희생자 제(외종제)	사망(1)
		이정애(李禎靄) 이정환(李霆寰)	홍남양(洪南陽) <sup>96)</sup>	여	81	희생자 증조모	사망(1)
			이시형(李時衡) <sup>97)</sup>	남	26	피해자 부	부상(1)
			채명분(蔡明分) <sup>98)</sup>	여	20	희생자 모	사망(1)
			이정애(李禎靄)	여	2	피해자 본인	부상(1)
			이정환(李霆寰)	남	1	경험 · 목격자 본인	생존(1)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주철(蔡周轍) <sup>99)</sup>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사망(1)
			권가국(權佳局) <sup>100)</sup>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2. 1.	983	채홍빈(蔡鴻彬)	채세진(蔡洗鎮)	남	40	피해자(사망) 부	사망(1)
			민접연(閔接連) <sup>101)</sup>	여	43	피해자(사망) 모	사망(1)
			채홍목(蔡鴻牧) <sup>102)</sup>	남	19	피해자(사망) 형	사망(2)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본인	생존(2)
			채순희(蔡順喜) <sup>103)</sup>	여	7	피해자(사망) 제	사망(1)
'06. 2. 3.	989	채홍윤(蔡鴻潤) <sup>104)</sup>	채중경(蔡仲慶)	남	44	경험자 또는 목격자 부	생존(1)
			정유생(鄭有生)	여	42	피해자(사망) 모	사망(1)
			채미준(蔡美俊)	여	12	피해자(사망) 매	사망(1)
			채홍수(蔡鴻洙) <sup>105)</sup>	남	3	피해자(사망) 제	사망(1)
			엄계순(嚴桂順) <sup>106)</sup>	여	71	백숙모	사망
			채홍익(蔡鴻益) <sup>107)</sup>	남	9	종형제	사망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권송동(權松同) <sup>108)</sup>	여	77	피해자(사망) 조모	사망(1)
			김명월(金明月)	여	35	피해자(사망) 양모	사망(1)
			전병섭(全炳燮) <sup>109)</sup>	남	30	피해자(사망) 형	사망(1)
			전병하(全炳河) <sup>110)</sup>	남	14	피해자(사망) 형	사망(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06. 2. 3.	990	전병일(全炳逸)	전춘달(全春達)	남	41	피해자(사망) 숙부	사망(1)
			채순금(蔡順今)	여	38	피해자(부상) 숙모	부상(1)
			전병기(全炳琦) <sup>111)</sup>	남	14	피해자(사망) 종형제	사망(1)
			전가자(全嘉子) <sup>112)</sup>	여	7	피해자(사망) 종형제	사망(1)
'06. 2. 6.	1003	채성식(蔡成植)	채홍명(蔡鴻明) <sup>113)</sup>	남	14	피해자(사망) 숙부	사망(1)
'06. 3. 17.	2438	채홍득(蔡鴻得)	채주철(蔡周轍) <sup>114)</sup>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사망(1)
			권가국(權佳局) <sup>115)</sup>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사망(1)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양조모	사망(1)
			채형진(蔡瑩鎮) <sup>116)</sup>	남	31	피해자(사망) 부	사망(1)
			장강희(張江姪)	여	29	피해자(부상) 모	부상(1)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형	생존(2)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본인	생존(1)
			정치수(鄭致秀)	남	56	피해자(사망) 부	사망(1)
			박원연(朴元連) <sup>117)</sup>	여	54	피해자(사망) 모	사망(1)
			장차양(張且陽) <sup>118)</sup>	여	26	피해자(사망) 옹케	사망(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06. 3. 31.	2758	정복순(鄭福順)	정아기	여	1	피해자(사망) 질	사망(1)
			정순연(鄭順連) <sup>119)</sup>	여	21	매	사망
'06. 5. 11.	3469	채홍달(蔡鴻達)	채주철(蔡周轍) <sup>120)</sup>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사망(1)
			권가국(權佳局) <sup>121)</sup>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사망(1)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양조모	사망(1)
			채형진(蔡瑩鎮) <sup>122)</sup>	남	31	피해자(사망) 부	사망(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모	부상(1)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형(누나)	생존(2)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형	생존(1)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주철(蔡周轍) <sup>123)</sup>	남	68	피해자(사망) 조부	사망(1)
			권가국(權佳局) <sup>124)</sup>	여	60	피해자(사망) 조모	사망(1)
			황양동(黃陽洞)	여	70	피해자(사망) 양조모	사망(1)
			채형진(蔡瑩鎮) <sup>125)</sup>	남	31	피해자(사망) 부	사망(1)
			장강희(張江姬)	여	29	피해자(부상) 모	부상(1)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사건 관련자				
			성명	성별	나이	사건과의 관계	비고
			신청인과의 관계				
'06. 11. 23.	7462	채정희(蔡正喜)	채정희(蔡正喜)	여	7	경험자 또는 목격자 본인	생존(2)
			채홍득(蔡鴻得)	남	3	경험자 또는 목격자 제	생존(1)
			채홍빈(蔡鴻彬)	남	14	경험자 또는 목격자 사촌오빠	생존(2)

\* 도표 내 각종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들이 작성 · 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사망사유를 확인한 사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신청인들이 작성 · 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사망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             |
|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들이 작성 · 제출한 사건 관련자 명단 중 제적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들이 작성 · 제시한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없으나, 제출된 제적등본상에 사망사유가 기재된 사람. |

\*\* “관계” 및 “현장”란의 “-” 표시는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 있지 않았던 ‘현장부재자’를 의미한다.

- 53)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장수금(張秀今)으로 되어 있고, 석 달동양민집단학살피학살자유족회 자료집(이하 ‘유족회 자료집’)상에는 장수금(張秀今)과 장옥순(張玉順)이 혼용되어 있다. 이하 인용된 유족회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석달동(문경) 양민집단학살 피학살자 86위 제56주기(제13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석달동 양민집단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2005. 12. 24, 12, 13~15쪽 ; 채의진 편저, 『아, 통한 45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 3판)』,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1994. 12. 1, 24, 25~28, 101, 110, 131~132, 148~149쪽 ; 정희상, 『벌굴특종 : 국방군 문경양민 대학살』, 『월간 밀』 통권 제45호, 1990. 3, 114쪽 재인용 ; 정희상,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소 : 6.25 전후 민 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돌베개, 1990, 29쪽 재인용.
- 54)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김분이(金粉伊)로 되어 있고, 유족 회 자료집에는 김분이(金粉伊)와 김명이(金命伊)가 혼용되어 있다.
- 55) 신청인 이만우(李萬雨)가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이미분(李米粉)으로 되어 있다.
- 56)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용환(金容煥)과 김용환(金容煥)이 혼용되어 있다.
- 57) 위 자료집에는 홍남양(洪南陽)과 홍남순(鴻南順), 홍남영이 혼용되어 있다.
- 58) 신청인 채홍문(蔡鴻文)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채주액(蔡周暎)으로 되어 있고, 유 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액(蔡周暎), 채주길, 채주석(蔡周碩) 등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磚”的 한글 표기에서 오는 착오로 판단된다.
- 59) 유족회 자료집에는 이계용, 이구연(李圭連), 이가연(李佳連), 이규연(李桂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 60) 위 자료집에는 채갑진(蔡甲鎮), 채이용(蔡貳龍), 채이용(蔡二龍) 등이 혼용되어 있다.
- 61) 위 자료집에는 채훈진(蔡勸鎮)과 채사용(蔡四龍)이 혼용되어 있다.
- 62) 위 자료집에는 채갑순(蔡甲順)과 채용준(蔡龍俊)이 혼용되어 있다.
- 63) 신청인 채우진(蔡旭鎮)이 신청 · 접수한 진실규명신청서상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대진 (蔡大鎮)과 채오용(蔡五龍)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 채우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채대진(蔡大鎮)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채우진 진술조서, 3쪽)
- 64)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외순(蔡外順)과 채의순(蔡義順)이 혼용되어 있다.



- 65) 위 자료집에는 채점식(蔡點植)으로 되어 있다.
- 66) 위 자료집에는 채홍복(蔡鴻福)과 채홍주(蔡鴻周)가 혼용되어 있다.
- 67) 위 자료집에는 채성순(蔡聖順)으로 되어 있다.
- 68) 위 자료집에는 채영해(蔡永海), 채영매(蔡永梅), 채덕진(蔡德鎮) 등이 혼용되어 있다.
- 69) 채주목(蔡周牧)은 호주 김원지(金遠池)의 자(子)이자 신청인 채의진의 백부로, 신청인 채의진이 제출한 김원지(金遠池) 제적등 분상에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나, 동 신청인에 의하면 채주목(蔡周牧)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 발생과 어떠한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70) 사건과 관련하여 전기족이 몰살당한 집안으로 대표자 채의진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되었으며, 사건과 관련된 자료, 즉 제적등본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71)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할 당시에는 연고자를 찾지 못해 대표자 선정 신청인들과 함께 신청했으나, 이후 정복순(鄭福順) 이 개별 신청을 하였다.(사건번호 다-2758호)
- 72) 유족회 자료집에는 박원연(朴元連)과 박원달(朴元達)이 혼용되어 있다.
- 73) 위 자료집에는 장차양(張芉陽)과 장중연(張重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 74) 엄정순(嚴貞順)은 황의종(黃義鍾 : 사건번호 다-893호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형(兄) 황의린(黃義麟)의 처(妻)이며, 황기수 집 안이 그의 처 장봉국만 제외하고 모두 물살당해 대를 잇기 위해 황의린이 황기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엄정순의 시댁 식구에 대한 진실규명을 대표자 선정을 통해 신청 · 접수하였다.
- 75) 유족회 자료집에는 황기수(黃基壽)와 황기수(黃基秀)가 혼용되어 있다.
- 76)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엄계홍(嚴桂紅)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엄계홍, 엄계홍(嚴桂紅), 엄계순(嚴桂順), 엄계순(掩桂順) 등이 혼용되어 있다.
- 77) 유족회 자료집에는 황의인(黃義仁)과 황기희(黃基熙)가 혼용되어 있다.
- 78) 위 자료집에는 황갑순(黃甲順)과 황의순(黃義順)이 혼용되어 있다.
- 79) 홍호평(洪好平)은 호주 황기해(黃基海)의 처(妻)이자 신청인 황의종(黃義鍾)의 조모로,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황기해(黃基海)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黃義鍾)과의 전화 통화 결과 홍호평은 사건 발생 전인 1949년 4월 1일 사망하였다고 한다.
- 80) 이운자(李雲子)는 신청인 김경희(金慶熙)의 제(弟) 김용석(金容錫)의 처(妻)로, 사건번호 다-684호와 동일한 신청이다.
- 81)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용환(金容煥)과 김용환(金容喨)이 혼용되어 있다.
- 82) 위 자료집 및 대표자 1인 선정 신청인 남한수의 진술조사상에는 신쌍전으로 되어 있다.
- 83) 위 자료집에는 채주락(蔡周烙)과 채주락(蔡周落)이 혼용되어 있다.
- 84) 안가동(安佳東)은 호주 채주락(蔡周烙)의 처(妻)이자 대표자 선정 신청인 채홍근(蔡鴻根)의 조모로서,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채주락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채홍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채홍근 진술조사, 3쪽)
- 85)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채남진(蔡南鎮) 제적등본상에는 채연분(蔡蓮粉)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에는 채홍연(蔡鴻連)으로 되어 있다.
- 86) 오명옥(吳明玉)은 채우진(蔡旭鎮 : 사건번호 다-731호 신청인)의 제(弟) 채상진(蔡尚鎮)의 처(妻)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채주순(蔡周順)의 전식구가 물살당하자 대를 잇기 위해 채상진이 채주순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오명옥의 시댁 식구에 대한 진실규명을 대표자 선정을 통해 신청 · 접수하였다.
- 87) 유족회 자료집에는 김본동(金本東)으로 되어 있다.
- 88) 대표자 채의진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정순영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정순영(鄭順英)과 정순연(鄭順連)이 혼용되어 있다.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함께 제출된 채규우(蔡奎禹 : 전본동(全本東)의 시숙(姪叔) 겸 호주) 제적등본상에는 없었으나,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명옥은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양시모(養妣母)로 정순연(鄭順連)을 언급하였다.(오명옥 진술조사, 3쪽)
- 89)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철진(蔡徹鎮)과 채철진(蔡喆鎮)이 혼용되어 있다.
- 90) 위 자료집에는 채만출(蔡萬出)과 채만출(蔡滿出)이 혼용되어 있다.
- 91) 위 자료집에는 김수용(金壽用), 김희용(金喜用), 김주용(金周用) 등이 혼용되어 있다.
- 92) 위 자료집에는 우일분(禹一粉)과 우거산(禹巨山)이 혼용되어 있다.



- 93) 위 자료집에는 김병영(金炳英)으로 되어 있다.
- 94) 위 자료집에는 김상연(金尚連)과 김상영(金尚英)이 혼용되어 있다.
- 95) 위 자료집에는 김병준(金炳俊)과 김아기가 혼용되어 있다.
- 96) 유족회 자료집에는 홍남양(洪南陽)과 홍남순(鴻南順)이 혼용되어 있다.
- 97) 위 자료집에는 이목열(李穆烈)로 되어 있다.
- 98) 위 자료집에는 채명분(蔡明分)과 채명순(蔡明順)이 혼용되어 있다. 채명분은 대표자 채의진이 제출한 이관교[李寬敎 : 이시형(李時衡)의 조부 겸 호주] 제적등본에는 없었으나, 신청인 채의진이 제출한 김원지[金遠也 : 채명분(蔡明分)의 조모 겸 호주] 제적등본에는 있었는데, 동 제적등본상에 바로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99)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鐵)로 되어 있다.
- 100)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 101) 위 자료집에는 민접연(閔妾蓮)과 민접연(閔妾蓮)이 혼용되어 있다.
- 102) 위 자료집에는 채홍목(蔡鴻鵠)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자료집에는 채홍목(蔡鴻鵠)과 채홍래(蔡鴻來)가 다른 인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신청인 채홍빈(蔡鴻彬)에 의하면 채홍래(蔡鴻來)는 채홍목(蔡鴻鵠)의 가명(家名)이었다.
- 103) 위 자료집에는 그간 채홍래(蔡鴻來)로 알려져 왔으나, 신청인 채홍빈(蔡鴻彬) 및 신청인이 함께 제출한 제적등본상에는 채순희(蔡順喜)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채순희(蔡順喜)임을 확인하였다.
- 104) 신청인 채홍윤(蔡鴻潤)이 제출한 채주구(蔡周矩) 제적등본상에는 채홍윤(蔡鴻潤)으로 되어 있다.
- 105)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홍수(蔡鴻洙), 채홍식(蔡鴻植), 채홍석(蔡鴻錫) 등이 혼용되어 있다.
- 106) 엄계순(嚴桂順)은 호주 채주구(蔡周矩)의 자부(子婦)이자 신청인 채홍윤(蔡鴻潤)의 백모로, 신청인 채홍윤이 제출한 채주구 제적등본상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채의진은 엄계순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사건 발생 후에 사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107) 채홍이(蔡鴻益)은 호주 채주구(蔡周矩)의 손(孫)이자 신청인 채홍윤의 종제로, 신청인 채홍윤이 제출한 채주구 제적등본상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 발생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대표자 채의진과의 전화통화)
- 108) 유족회 자료집에는 명단이 없으나,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09) 위 자료집에는 명단이 없으나,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10) 위 자료집에는 전병하(全炳河)와 전병화가 혼용되어 있다.
- 111) 위 자료집에는 전병기와 전복삼(全福三) 혼용되어 있다.
- 112) 신청인 전병일(全炳逸)이 진실구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전희자(全嘉子)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전희자(全希子)와 전아기가 혼용되어 있다.
- 113)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홍방(蔡鴻邦)으로 되어 있다.
- 114) 위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鐵)로 되어 있다.
- 115)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 116)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營鎮)과 채영진(蔡營鎮)이 혼용되어 있다.
- 117) 위 자료집에는 박원연(朴元連)과 박원달(朴元達)이 혼용되어 있다.
- 118) 위 자료집에는 장차양(張次陽)과 장중연(張重連) 등이 혼용되어 있다.
- 119) 정순연(鄭順連)은 호주 정치수(鄭致秀)의 자(子)이자 신청인 정복순(鄭福順)의 매(妹)로 신청인 정복순이 신청 · 접수한 진실구명신청서상의 사건 관련자 명단에는 빠져 있으나, 동 신청인이 제출한 정치수 제적등본상에는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족회 자료집에서 정순연과 정순영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명옥(吳明玉)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구명 신청 · 접수 당시 제출한 신청서에는 정순영으로 기재했던 반면, 조사 당시에는 정순연으로 진술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순연과 정순영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20) 유족회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鐵)로 되어 있다.
- 121)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 122)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營鎮)과 채영진(蔡營鎮)이 혼용되어 있다.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개별 신청인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28명이 작성 · 제출한 사건 관련 사망자 수는 총 '87명'이었으며, 이는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되었다고 현재까지 알려진 86명과는 다른 수치였다. 이러한 오차는 첫째 신청인 채우진(蔡旭鎮, 사건번호 다-731호)의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의 명단 작성시 동생 채대진(蔡大鎮)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동 신청인에 대한 조사시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진실규명 신청 당시 작성 · 제출한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과 동일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동생 채대진을 언급한 바 있다.<sup>126)</sup> 또한 채대진은 유족회의 각종 자료집 등에서도 채오용(蔡五龍)과 혼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신청인 전병일(全炳逸, 사건번호 다-990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상의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에는 지금까지 유족회의 각종 자료집 등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두 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조모 권송동(權松同)과 형 전병섭(全炳燮)이었다. 우선 동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옥영(全旭永, 신청인 전병일의 종조부) 집안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를 잊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당함에 따라 대를 잊기 위해 양자로 들어갔으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버지 전상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이나마 진실규명 신청 · 접수는 동 신청인의 재종형인 전병태의 도움으로 하였다.<sup>127)</sup>

사건에 대해 신청인 전병일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신청인의 재종형 전병태와의 전화통화 결과, 참고인 전병태 역시 사건에 대해 신청인 전병일보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은 신청인 전병일이 제출한 전일문(全一文) 제적등본상에서 사망자들의 사망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재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유족회장 채의진과 신청인 전병일 및 전병태를 대질 확인한 결과, 권송동과 전병섭은 사건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건 발생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별 신청인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28명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작성 ·

123) 위 자료집에는 채주철(蔡周鐵)로 되어 있다.

124) 위 자료집에는 권가국(權佳局)과 권가곡(權加谷)이 혼용되어 있다.

125) 위 자료집에는 채영진(蔡營鎮)과 채영진(蔡營鎮)이 혼용되어 있다.

126) 채우진 진술조서, 3쪽.

127) 전병일 진술조서, 2, 3, 4쪽.



제출한 사건 관련자 ‘87명’ 중 신청인 채옥진의 동생 채대진이 추가되고, 신청인 전병일의 조모 권송동과 형 전병섭이 제외되면 사건 관련 사망자는 86명이 되는데, 이는 1949년 12 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이후 알려져 왔던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과 일치한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사망자 ‘87명’ 중 성명이 제적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68명이었고, 나머지 19명은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제적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사망사유는 “공비출몰총살로인하야 사망(共匪出沒銃殺로因하야死亡)” 또는 “공비에게총살로인하야사망(공비에게총살로因하야死亡)”, “공비에게 총살” 등이다. 그리고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중 사망사유가 기재된 사람은 60명이었고, 8명은 사망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sup>128)</sup>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유<sup>129)</sup>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87명’의 명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사건 관련 사망자들의 제적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사유를 기준으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재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사망자 ‘87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6명을 발견하였다. 이들 6명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신청인 채옥진의 동생 채대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사건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sup>130)</sup>

## 2) 관련자 조사 내용

제적등본과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희생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에 명시된 86명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건 관련 희

128) 이 가운데 4명은 본적지가 경북 예천군 지보면이었는데, 당시 호적에 관한 사무는 부·읍·면별로 처리되었다(「조선호적령」 제3조). 호적에 관한 사무가 부·읍·면별로 처리되었으므로 산북면에 본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호적 작성에 있어서 누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표자 채의진(사건번호 다-893호)과 신청인 정복순(鄭福順, 사건번호 다-2758호)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접수된 정치수(饗政秀) 집안의 경우 본적지가 경북 문경군 호계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망사유가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선호적령」은 1922년 12월 18일 FE 154호로 제정되어 5번 일부개정된 후 1960년 1월 1일 법률 535호로 일부개정된 「조선민사령」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호적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다.(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129)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黃義鍾, 사건번호 다-893호)의 큰 누나 황봉구(黃鳳九)는 동 신청인에 의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했으나,(황의종 진술조사, 3쪽) 동 진술인이 제출한 황기해(黃基海) 제적등본상에는 사건과 관련 없이 사건 발생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130) 신청인 채의진의 속부 채주목(蔡周牧), 대표자 선정 신청인 황의종의 조모 홍호평(洪好平), 대표자 선정 신청인 채홍근(蔡鴻根, 사건번호 다-893호)의 조모 안가동(安佳東)은 사건 발생 전, 신청인 채홍윤(蔡鴻潤, 사건번호 다-989호)의 백숙모 엄계순(嚴桂順)은 사건 발생 후, 그리고 신청인 채홍윤의 종형제인 채홍의(蔡鴻益)은 사건 발생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모르나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각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및 채홍근 진술조사, 3쪽)

생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인들은 석달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들은 동네 주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131)</sup> 동시에 신청인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 따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신원은 조금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제1현장인 마을 앞 논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석달마을 거주 농민들과 그의 가족들이었고,<sup>132)</sup> 제2현장인 마을 뒤 산모통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석봉 큰 마을 및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던 이 마을의 청장년 및 학생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133)</sup>

사건 관련 사망자 신원에 대한 확인 조사는 크게 진실규명 신청서 내 기재된 관련자 명단, 유족회 자료집,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 비교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권가국(權佳局)	여	60	권가국 권가곡(權加谷)	여	60, 62, 42, 61	권가국(權佳局)	여	60
권기매(權基梅)	여	12	권기매(權基梅)	여	11	-	-	-
권승동(權松同)	여	77	-			권승동(權松同)	여	77
권화일(權花一)	남	44	권화일(權花一)	남	44	-	-	-
김명월(金明月)	여	35	김명월(金明月)	여	35, 36	김명월(金明月)	여	35
김병영(金炳英)	남	10	김병영(金炳英)	남	10	김병영(金炳英)	여	10
김병준(金炳俊)	남	3	김병준(金炳俊) 김아기	남	3, 1	김병준(金炳俊)	남	3
김병철(金丙喆)	남	68	김병철(金丙喆)	남	68, 67	-	-	-
김봉자(金鳳子)	여	20	김봉자(金鳳子)	여	20	-	-	-

131) 채윤식 진술조서, 6쪽; 이만우 진술조서, 8쪽; 이시환 진술조서, 6쪽; 채의진 진술조서, 7쪽; 엄정순 진술조서, 7쪽; 오명옥 진술조서, 5쪽; 이정애 진술조서, 6쪽; 이정환 진술조서, 6쪽; 채홍윤 진술조서, 7쪽; 채홍득 진술조서, 6쪽; 채홍달 진술조서, 5쪽; 채정희 진술조서, 6쪽.

132) 채윤식 진술조서, 4, 6쪽; 이만우 진술조서, 5, 8쪽; 채육진 진술조서, 3쪽; 채의진 진술조서, 4~5, 7쪽; 황의종 진술조서, 3쪽; 김상병 녹취록, 5쪽; 이정환 진술조서, 4, 6쪽; 채홍득 진술조서, 4, 6쪽; 채홍달 진술조서, 3, 5쪽.

133) 채홍문 진술조서, 5쪽; 채육진 진술조서, 3쪽; 채의진 진술조서, 4~5, 7쪽; 황의종 진술조서, 3쪽; 김상병 녹취록, 5쪽.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김분이(金粉伊)	여	53	김분이(金粉伊) 김명이(金命伊)	여	53, 49	김분이(金分利)*	-	-
김상연(金尙連)	여	7	김상연(金尙連) 김상영(金尙英)	여	7, 8	김상연(金尙連)	여	7
김수용(金壽用)	남	38	김수용(金壽用) 김희용(金喜用) 김주용(金周用)	남	38, 43, 32	김수용(金壽用)	남	38
김악이(金岳伊)	여	45	김악이(金岳伊)	여	45, 46	김악이(金岳伊)	여	45
김영춘(金永春)	여	77	김영춘(金永春)	여	77	-	-	-
김용환(金容煥)	남	16	김용환(金容煥) 김용환(金容喚)	남	16, 19	김용환(金容煥)	남	16
김원지(金遠池)	여	82	김원지(金遠池)	여	82, 85	김원지(金遠池)	여	82
김임섭(金任燮)	여	35	김임섭(金任燮)	여	35, 36	김임섭(金任燮)	여	35
남수영(南秀永)	남	18	남수영(南秀永)	남	18, 23	남수영(南秀永)	남	18
남수창(南秀昌)	남	16	남수창(南秀昌)	남	16, 20	남수창(南秀昌)	남	16
남아기	남	1	남아기	남	1	-	-	-
남희목(南喜木)	남	2	남희목(南喜木)	남	2	-	-	-
민접연(閔接連)	여	43	민접연(閔接連) 민접연(閔接蓮)	여	43, 45	민접연(閔接連)	여	43
박아기	남	1	박아기	남	1	-	-	-
박원연(朴元連)	여	54	박원달(朴元達) 박원연(朴元連)	여	61, 65	박원연(朴元連)	여	54
박재춘(朴在春)	남	30	박재춘(朴在春)	남	30	-	-	-
엄계홍(嚴桂紅)	여	37	엄계홍(嚴桂紅) 엄계순(嚴桂順) 엄계순(掩桂順)	여	37, 30	엄계홍(嚴桂興)	여	37
우일분(禹一粉)	여	31	우일분(禹一粉) 우거산(禹巨山)	여	30	우일분(禹一粉)	여	30
이□□(李□□)	여	40	이 씨	여	40	-	-	-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이경대(李京大)	여	20	이경대(李京大)	여	20, 23	-	-	-
이계용(李桂用)	여	38	이계용 이규연(李桂連) 이규연(李珪連) 이기연(李佳連)	여	38, 39	이계용(李桂用)	여	38
이미분(李米粉)	여	12	이미분(李米粉)	여	12, 15	이미분(李美粉)*	-	-
이점술(李點述)	여	9	이점술(李點述)	여	9, 11	-	-	-
장수금(張秀今)	여	41	장수금(張秀今) 장옥순(張玉順)	여	41, 48	장수금(張水金)*	-	-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영희(張永姬)	여	34
장차양(張且陽)	여	26	장차양(張次陽) 장중연(張重連)	여	26, 21	장차양(張且陽)	여	26
전병기(全炳琦)	남	14	전병기 전복삼(全福三)	남	14, 16	전병기(全炳琦)	남	14
전병섭(全炳燮)	남	30	-	-	-	전병섭(全炳燮)	남	30
전병하(全炳河)	남	14	전병화 전병하(全炳河)	남	14, 16	전병하(全炳河)	남	14
전본동(全本東)	여	69	김본동(金本東)	여	69	전본동(全本東)*	-	-
전춘달(全春達)	남	41	전춘달(全春達)	남	41, 45	전춘달(全春達)	남	41
전희자(全嘉子)	여	7	전희자(全希子) 전아기	여 남	7, 1	전가자(全嘉子)	여	7
정순영(鄭順英)	여	24	정순연(鄭順連) 정순영	여	21	정순연(鄭順連)	여	21
정아기	여	1	정아기	여	1	-	-	-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유생(鄭有生)	여	42
정정희(鄭貞姫)	여	30	정정희(鄭貞姫)	여	30	정정희(鄭貞姫)	여	30
정치수(鄭致秀)	남	56	정치수(鄭致秀)	남	56, 70	정치수(鄭致秀)	남	56
채갑순(蔡甲順)	여	12	채갑순(蔡甲順) 채용준(蔡龍俊)	여	12, 16	채갑순(蔡甲順)	여	12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채갑진(蔡甲鎮)	남	16	채갑진(蔡甲鎮) 채이용(蔡二龍) 채이용(蔡貳龍)	남	16, 23	채갑진(蔡甲鎮)	남	16
채남진(蔡南鎮)	남	67	채남진(蔡南鎮)	남	67, 69	채남진(蔡南鎮)	남	67
-	-	-	채대진(蔡大鎮) 채오용(蔡五龍)	남	10, 13	채대진(蔡大鎮)	남	10
채두용(蔡斗龍)	여	12	채두용(蔡斗龍)	여	12, 14, 24	채두용(蔡斗龍)	여	12
채만출(蔡萬出)	남	29	채만출(蔡滿出) 채만출(蔡萬出)	남	29	-	-	-
채명분(蔡明分)	여	20	채명분(蔡明分) 채정분(蔡貞粉)	여	20, 23	채명분(蔡明分)	여	20
채명진(蔡銘鎮)	남	27	채명진(蔡銘鎮)	남	27, 29	채명진(蔡銘鎮)	남	27
채미준(蔡美俊)	여	12	채미준(蔡美俊)	여	12, 14	-	-	-
채성순(蔡成順)	여	15	채성순(蔡聖順)	여	15, 17	채성순(蔡成順)	여	15
채세진(蔡洗鎮)	남	40	채세진(蔡洗鎮)	남	40, 45	채세진(蔡洗鎮)	남	40
채순례(蔡順禮)	여	41	채순례(蔡順禮)	여	41, 43	채순례(蔡順禮)	여	41
채순희(蔡順喜)	여	7	채홍래(蔡鴻來)	여	5	채순희(蔡順喜)	여	7
채아기	여	1	채아기	여	1	-	-	-
채영해(蔡永海)	남	9	채영해(蔡永海) 채영매(蔡永梅) 채덕진(蔡德鎮)	남	9, 8	채영해(蔡永海)	남	9
채외순(蔡外順)	여	9	채외순(蔡外順) 채의순(蔡義順)	여	9, 14	채외순(蔡外順)	여	9
채점식(蔡點植)	여	8	채점식(蔡點植)	여	8, 11	채점식(蔡點植)	여	8
채주락(蔡周洛)	남	68	채주락(蔡周落)	남	68, 69	채주락(蔡周洛)	남	68
채주민(蔡周民)	남	54	채주민(蔡周民)	남	54, 56	채주민(蔡周民)	남	54
채주순(蔡周順)	남	31	채주순(蔡周順)	남	37	-	-	-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채주악(蔡周碭)	남	63	채주걸 채주액(蔡周碭) 채주석(蔡周碩)	남	63, 66	채주액(蔡周碭)	남	63
채주철(蔡周轍)	남	68	채주철(蔡周徹)	남	68, 70	채주철(蔡周轍)	남	68
채주태(蔡周泰)	남	50	채주태(蔡周泰)	남	49, 50	채주태(蔡周泰)	남	49
채창진(蔡昌鎮)	남	15	채창진(蔡昌鎮)	남	14, 17	채창진(蔡昌鎮)	남	15
채철진(蔡徹鎮)	남	3	채철진(蔡喆鎮) 채철진(蔡徹鎮)	남	3	-	-	-
채형진(蔡營鎮)	남	31	채영진(蔡營鎮) 채영진(蔡營鎮)	남	31, 36	채형진(蔡營鎮)	남	31
채홍명(蔡鴻明)	남	14	채홍방(蔡鴻坊)	남	16	채홍명(蔡鴻明)	남	14
채홍목(蔡鴻牧)	남	19	채홍목(蔡鴻睦)	남	19, 18	채홍목(蔡鴻牧)	남	19
채홍복(蔡鴻福)	남	7	채홍복(蔡鴻福) 채홍주(蔡鴻周)	남	7	채홍복(蔡鴻福)	남	7
채홍수(蔡鴻洙)	남	3	채홍수 채홍석(蔡鴻錫) 채홍식(蔡鴻植)	남	3, 2	채홍수(蔡鴻洙)	남	3
채훈진(蔡薰鎮)	남	13	채훈진(蔡勸鎮) 채사용(蔡四龍)	남	13, 19	채훈진(蔡薰鎮)	남	13
홍남양(洪南陽)	여	81	홍남순(鴻南順) 홍남양(洪南陽) 홍남영	여	81, 84	홍남양(洪南陽)	여	81
황갑순(黃甲順)	여	10	황갑순(黃甲順) 황의순(黃義順)	여	10, 11	황갑순(黃甲順)	여	10
황기수(黃基壽)	남	68	황기수(黃基秀)	남	68	황기수(黃基壽)	남	68
황기해(黃基海)	남	58	황기해(黃基海)	남	58, 59	-	-	-
황봉구(黃鳳九)	여	8	황봉구(黃鳳九)	여	8, 10	-	-	-
황석주(黃石周)	남	33	황석주(黃石周)	남	23, 28, 35	황석주(黃石周)	남	33
황아기	남	1	황아기 황아지	남	1	-	-	-



진실규명 신청서			유족회 자료집			희생자들 제적등본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성명	성별	나이
황양동(黃陽洞)	여	69	황양동(黃陽洞)	여	70	-	-	-
황의인(黃義仁)	남	16	황의인(黃義仁) 황기희(黃基熙)	남	16, 17	황의인(黃義仁)	남	16
황점용(黃點龍)	남	3	황점용(黃點龍)	남	3	-	-	-
황출주(黃出周)	남	16	황출주(黃出周)	남	16, 17	황출주(黃出周)	남	16
						안가동(安佳東)	여	51
						엄계순(嚴桂順)	여	71
						채주목(蔡周牧)	남	48
						채홍익(蔡鴻益)	남	9
						홍호평(洪好平)	여	55
87명			86명			66명		

※ “\*” 표시는 제적등본상의 성명이 신청인들이 작성·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명단과 유족회 자료집의 성명이 다른 경우임.

사건 관련 희생자와 관련하여 유족회 자료집과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인원수의 차이는 제적등본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두 빠져있고, 또 일부 희생자들의 사망신고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4〉 특정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사망자 명단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권가국(權佳局)	여	60	1		정치수(鄭致秀)	남	56	1	
권기매(權基梅)	여	12	1		채갑순(蔡甲順)	여	12	1	
권화일(權花一)	남	44	1		채갑진(蔡甲鎮)	남	16	1	
김명월(金明月)	여	35	1		채남진(蔡南鎮)	남	67	1	
김병영(金炳英)	여	10	2	국민학교 3학년	채대진(蔡大鎮)	남	10	2	국민학교 3학년
김병준(金炳俊)	남	3	1		채두용(蔡斗龍)	여	12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김병철(金丙喆)	남	68	1		채만출(蔡萬出)	남	29	1	
김봉자(金鳳子)	여	20	1		채명분(蔡明分)	여	20	1	
김분이(金分利)	여	53	1		채명진(蔡銘鎮)	남	27	2	
김상연(金尙連)	여	7	2	국민학교 1학년	채미준(蔡美俊)	여	12	1	
김수용(金壽用)	남	38	1		채성순(蔡成順)	여	15	1	
김악이(金岳伊)	여	45	1		채세진(蔡洗鎮)	남	40	1	
김영춘(金永春)	여	77	1		채순례(蔡順禮)	여	41	1	
김용환(金容煥)	남	16	2		채순희(蔡順喜)	여	7	1	
김원지(金遠池)	여	82	1		채아기	여	1	1	
김임섭(金任燮)	여	35	1		채영해(蔡永海)	남	9	2	국민학교 2학년
남수영(南秀永)	남	18	2		채외순(蔡外順)	여	9	2	국민학교 2학년
남수창(南秀昌)	남	16	1		채점식(蔡點植)	여	8	2	국민학교 1학년
남아기	남	1	1		채주락(蔡周洛)	남	68	1	
남희목(南喜木)	남	2	1		채주민(蔡周民)	남	54	1	
민접연(閔接連)	여	43	1		채주순(蔡周順)	남	38	2	
박아기	남	1	1		채주액(蔡周硯)	남	63	1	
박원연(朴元連)	여	54	1		채주철(蔡周轍)	남	68	1	
박재춘(朴在春)	남	30	1		채주태(蔡周泰)	남	49	1	
엄계홍(嚴桂興)	여	37	1		채창진(蔡昌鎮)	남	15	1	
우일분(禹一粉)	여	30	1		채칠진(蔡徹鎮)	남	3	1	
이□□(李□□)	여	40	1		채형진(蔡瑩鎮)	남	31	1	
이경대(李京大)	여	20	1		채홍명(蔡鴻明)	남	14	1	타동민
이계용(李桂用)	여	38	1		채홍목(蔡鴻牧)	남	19	1	
이미분(李美粉)	여	12	1		채홍복(蔡鴻福)	남	7	1	
이점술(李點述)	여	9	1		채홍수(蔡鴻洙)	남	3	1	
장수금(張水金)	여	41	1		채훈진(蔡熏鎮)	남	13	1	
장영희(張永姬)	여	34	1		홍남양(洪南陽)	여	81	1	
장차양(張且陽)	여	26	1		황갑순(黃甲順)	여	10	1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장소	비고
전가자(全嘉子)	여	7	1		황기수(黃基秀)	남	68	1	
전병기(全炳琦)	남	14	1		황기해(黃基海)	남	58	1	
전병하(全炳河)	남	14	1		황봉구(黃鳳九)	여	8	1	
전본동(全本東)	여	68	1		황석주(黃石周)	남	33	2	
전춘달(全春達)	남	41	1		황야기	남	1	1	
정순연(鄭順連)	여	24	1		황양동(黃陽洞)	여	70	1	
정아기	여	1	1		황의인(黃義仁)	남	16	1	
정유생(鄭有生)	여	42	1		황점용(黃點龍)	남	3	1	
정정희(鄭貞姬)	여	30	1		황출주(黃出周)	남	16	2	

86명의 사망자를 성별 및 연령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특정된 사건 관련 사망자 성별·연령별 현황

성별 \ 나이(세)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합계(명)
남자(명)	12	12	3	5	3	3	6	44
여자(명)	10	9	4	6	5	3	5	42
합계(명)	22	21	7	11	8	6	11	86
(%)	(25.6)	(24.4)	(8.1)	(12.8)	(9.3)	(7.0)	(12.8)	(100.0)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면 우선 남자가 44명, 여자가 42명이었다.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는 이 사건이 무차별적인 주민학살임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10세 이하가 22명(25.6%), 11세에서 20세 이하가 21명(24.4%)으로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51세 이상의 노인들 17명(19.8%)을 포함하면, 이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의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노약자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원이었던 노○○은 소대원들이 주민들을 향해 마을 앞 논에서 사격을 하였고, 논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노



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이었으며,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였는데,<sup>134)</sup> 그의 증언과 사망자의 신원은 일치한다.

### 다. 소결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는 127명(24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산골벽지의 주민들이었다. 이 중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마을 주민은 86명(67.7%)으로,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 국민학교 학생 및 어린 아이였다. 석달마을 거주자 127명 중 사망자 86명을 제외한 41명 가운데 경상을 포함한 중상자가 12명에 달하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 주민은 29명(22.8%)에 불과했다.

사건 관련 사망자 86명 중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 등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간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 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됨에 따라 사실로 확정할 수 있다. 즉, 석달마을 앞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 등이 없었다는 참고인 노○○의 진술을 참작해 보면, 사건의 가해 주체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된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2. 희생 이유

### 가. 조사 방향

국방부는 이 사건이 석달마을 주민과 인근 지역의 공비 또는 빨치산의 활동과 관련 있다고 보는데, 특히 ‘석봉리 주민 3인’의 재판 및 형무소 복역 ‘사실’을 마을 주민의 집단 희생과 관련시키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공비 또는 빨치산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경찰이 피해를 당한 사건(‘노루목사건’<sup>135)</sup>) 등을 이 사건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추론하고 있다.

134) 그러나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마을 앞 논에서 죽게 된 경위에 대해, 참고인 노○○은 최초에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을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마을 앞 논으로 모이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가, 나중에 재차 확인할 때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앞 논으로 모였다고 말하였다.

135) ‘노루목사건’은 1949년 9월 18일 동로지서가 ‘공비’의 습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무옥(李武燭) 등 28명이 출동하여 동로지서로 이동중 문경경찰서에서 18km 떨어진 산북면 내화리에 소재한 ‘노루목 고개’에 이르렀을 때 잠복중 이던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교전하다가 서장 이무옥 등 15명이 전사한 사건이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별전사』, 2001. 9. 1259~1260, 129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발간 논문에서 문경 석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전시 긴급 상황 하의 군 임무 수행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 중 “주민 소개 및 적 게릴라 소탕 작전에서의 민간인 피해”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동 논문에 의하면, 2000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석달마을을 사건 발생 전 통비분자와 부역자들의 활동이 심했고, 공비(공산게릴라)의 출몰이 잦았던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논문은 “3개월 전에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가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尙州)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아 사건 당시에는 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136)</sup>

이처럼 ‘국방부의 입장’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의 희생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인근 지역에서 공비 또는 빨치산에 의해 경찰이 피해를 입은 사건 및 ‘석봉리 주민 3인’의 재판에 대한 사실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경 석달사건 발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문경 석달사건이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나. 조사 내용

##### 1) 자료 조사 분석

사건 관련 최초의 공식기록인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정보참모부(G-2) 일일정보보고 제238호는 1949년 12월 29일 오전 8시 1분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사고문단 사령부에 보고된 정보들이었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4일 14시 약 70여 명의 게릴라들이 산북면 석봉리 석달리에 침입하여 철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끼쳤다. 우리 측 피해(주민들) 사망 남 43명, 여 43명 : 부상 남 14명 : 전소 24호”로 되어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최초의 미군 자료에는 사건이 “70여 명의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 보름 정도 이후인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4일 석달리에서 지역정찰중이던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2개 소대가 마을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를 부인하자, 각종 무

136) 허만호·김민서, 「전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한계」, 『민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 제1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2. 8, 109~110쪽.



기(카abin, 소총, 수류탄, 바주카포 등)로 사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소총으로 살해했고, 마을에 있던 27호 가옥 중 23채가 불에 탔으며, 마을 주민 98명 사망(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 43명, 여 43명) 및 12명 부상(남 5명, 여 7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동 전문에서 “군이 석달마을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했던 것은 사건 발생 이전에 마을 주민들이 인근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건 발생 즈음에는 경찰에 더 협조적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자로 유진규 소위와 하사관 2명을 거론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두 번째 문서에 의하면,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13시에서 14시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석달마을은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고, 게릴라들이 마을에 출몰하곤 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 및 남한 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면 주간 동안 자수를 하지 않았기에 마을 내 있던 집을 전소시켰고, 86명을 사살했으며, 1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문경경찰서 정보과 황영훈(黃永訓)<sup>137)</sup> 형사는 제7중대장과 함께 있었는데, 소대 지휘관이 중대장에게 수상한 마을을 공격하였다고 보고하자 이에 매우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중대장 자신은 마을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다만 단산과 석봉산 및 ‘달비산’을 수색한 후 갈평으로 귀대할 것을 명령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또 다른 문서(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국군은 이 마을 사람들이 게릴라들에게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석달마을 주민들은 군과 경찰의 작전에 두 번이나 협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1960년 신문 기사는 주민 희생의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빨치산과의 관련성을 들고 있으나,<sup>138)</sup>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제3대 민의원 윤만석(尹萬石)<sup>139)</sup>은 이는 사건 발생 후 국방장관 신성모가 현지를 다녀간 뒤 호도된 것이라고 주

137)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황영훈의 이력서에서는 지급된 호봉 내역 이외 사건 발생 전후 시기 황영훈의 인사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138) 대체로 빨치산과의 관련성은 “지리적으로 공산 ‘빨치산’들이 심히 출몰하였다”라든가 마을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빨치산에게 협조(식량 제공 등)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증언에서 나타났다. (『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39)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당시 자유당 소속으로 경북 제20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윤만석과



장하였다.<sup>140)</sup>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온 뒤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고,<sup>141)</sup> 집을 불태우더니 소총 및 기관총 등으로 사람들을 향해 썼다는 것인데, 이 최초의 사격에서 생존한 사람들에게 ‘살려 줄 테니 일어서라’라고 하여 확인 후 다시 사격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142)</sup>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에는 사건 현장의 인근 지역인 호계면 서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사건의 군인들을 석달마을까지 안내하였다<sup>143)</sup>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에는 보도 당시 현 문경경찰서 정보주임 김영길(金榮吉)이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노루목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sup>144)</sup>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도 ‘노루목사건’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루목사건’에 대한 “당국의 오해” 결과 본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이나 당시 경찰 측이 이 마을 주민이 희생된 이유가 빨치산 협력 혐의라고 본 것처럼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시 사건이 석달마을 주민과 빨치산의 관련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 발생 전 석봉리 주민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 3인이 부역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사건 발생 때에는 진주형무소에 복역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석봉리 주민 3인이 어떤 명목으로 재판을 받았는지, 이들과 사건 관련 희생자(또는 신청인)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들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sup>145)</sup>

‘석봉리 주민 3인’에 대한 『범죄인 명부 및 파산자 명부』(이하 ‘명부’)를 검토한 결과, 1949년 6월 29일 당시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에 거주하던 정만기(鄭萬基), 채기

관련된 각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 : 41세, 주소 : 문경군 문경면 효성리 342번지, 학력 : 미기재, 경력 : 검사장, 직업 : 변호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역대선거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140)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141)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보도 등에서는 “강연회에 나오라”고 마을 사람들을 유인하였다고 하고 있다.(『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142)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살아난 자는 살려준다”),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 조간(“살아난 자는 일어서라. 너 희는 천명이나 죽이지 않는다”),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살고 있는 자는 왼쪽으로 모여라!”)

143)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44) 그러나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 ‘노루목사건’은 “사건 발생 1달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인 1949년 9월 16일에 발생했고, 동 사건 관련 사망자 역시 “경찰서장 이하 17명의 경찰관”이 아니라 문경경찰서장 이무옥 경감 등 13명의 경찰관과 2명의 민간인 등 15명이었다. 한편 당시 ‘노루목사건’의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전직 경찰관들은 1949년 9월 16일(시간 불명) ‘공비’ 33명이 동로지서를 습격할 목적으로 접근했고, 그 때 동로지서에서 비무장으로 근무하던 대한청년단원 2명이 이들에 의해 사살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교전’ 사실을 전해들은 문경경찰서에서는 동일 새벽 6시경 서장 이무옥 등 27명 정도가 GMC 2대에 분승하여 동로지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서 지원을 예상한 20여 명의 ‘공비’들이 동로지서로 오는 길목인 ‘노루목 고개’에 잠복하여 있다가 습격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김○○ 진술조서, 2쪽; 김○○ 진술조서, 2~3쪽)

145) 문경 석달 사건 관련 석봉리 주민 3인 조사보고(조사3팀-1091, ’06.10.12.), 2쪽.



진(蔡基鎮), 황동주(黃東周) 등 3인은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 이들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게 된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령 제19호 위반”<sup>146)</sup>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은 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나, 법령 제19호 위반은 채기진과 황동주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석봉리 주민 3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주장처럼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3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1년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는지는 이들에 대한 재판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들 3인과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비교·검토한 결과 ‘석봉리 주민 3인’은 사건 관련 희생자들 중 일부의 가족 구성원이었다.

먼저 정만기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24세로 본적은 경상북도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로서 출생지는 본적지와 같고, 주소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97번지였는데, 이를 통해 정만기는 1925년 또는 1926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치수(鄭致秀)의 제적등본은 대표자 채의진(사건번호 다-893호, ’06.01.24.)<sup>147)</sup>과 개별 신청인 정복순(사건번호 다-2758호, ’06.03.31.)에 의해 두 번 제출되었는데, 정치수 제적등본에 의하면 정만기는 정치수의 차남이자 개별 신청인 정복순의 동생이었다. 제적등본에는 정만기가 “대정(大正) 15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대정 15년”이란 연호는 없기 때문에 시기상 소화(昭和) 1년으로 추정하여 서기로 환산해 보니 1926년이었다. 또한 제적부상에는 이 대정연호를 이후 단기 연호로 정정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단기 연호로는 단기 4273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서기로 고치면 1940년으로, 대정 연호를 단기 연호로 정정하면서 잘못 기

146) 이 때 “법령 제19호”는 1945년 10월 20일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미군정’) 법령」 제19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정 법령 제19호는 7개 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제1조), 노무의 보호(제2조), 폭력에 대한 보호(제3조), 민중행보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제4조),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제5조), 벌칙(제6조), 본령의 실시기일(제7조) 등이었다. 한편 이 법령은 1950년 4월 21일 법률 제131호로 일부개정되었는데[「노동의 보호, 언론출판등의등기(勞動의保護, 言論出版等의登記)」], 이때 미군정 법령 제19호의 제1조(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와 제4조(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가 삭제되었다.

147) 대표자 채의진의 신청 당시 연고자를 찾지 못한 상태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과 제적등본만이 제출되었다.



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출생지와 관련해서도 명부에서는 “경북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본적지와 동일)로 되어 있으나, 제적부상에는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로 되어 있었다. 제적부에 따르면 정만기의 부(父) 정치수가 “소화 15년(서기 1940년) 12월 5일 수부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만기는 1926년 경북 청송군 현서면 도동 114번지에서 출생한 후 1940년 경북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347번지로 입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신청인 정복순의 자(子) 박○○(朴○○)은 정만기가 자신의 외삼촌이자 모친의 남동생으로, 사건 발생 전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모친으로부터 들었으며, 그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sup>148)</sup> 또한 신청인 정복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정만기가 사건 발생 전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시댁 친척 사람들로부터 “동생이 빨갱이로 가담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기는 들었는데, 신청인의 부모는 빨갱이도 아닌데 잡아갔다고 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그 이외 정만기가 재판을 받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고, 이후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있었다.<sup>149)</sup>

대표자 및 개별 신청인의 주장과 정치수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정치수(부), 박원연(모), 장차양(형수), 정아기(조카), 정순연(동생) 등은 정만기의 가족들이었다. 다만 정순연은 대표자 및 개별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사건 관련 희생자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별 신청인 정복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순연은 진술인이 시집을 가고 난 얼마 후 이웃집에 사는 채 씨 집에 시집을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sup>150)</sup> 이 때의 채 씨가 대표자 채의진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오명옥이 신청한 채주순(蔡周順)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미 오명옥의 진술조사서에서 밝혀졌다.<sup>151)</sup>

다음 채기진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34세로 출생지와 본적 및 주소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233번지로 동일하였는데, 이로써 채기진은 1916년 또는 1917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 채육진(사건번호 다-731호, '06.01.16.)에 의해 제출된 채주민(蔡周民)의 제

148) 문경 석달 사건 관련 석봉리 주민 3인 조사보고(조사3팀-1091, '06.10.12.), 7쪽.

149) 정복순 진술조사, 4쪽.

150) 정복순 진술조사, 6쪽.

151) 오명옥 진술조사, 3쪽.



적등본에 의하면, 채기진은 채주민의 장남이자 채옥진의 형이었다. 제적등본에는 채기진이 “대정 8년 11월 11일 경상북도 문경군 석봉리 233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대정 8년은 서기 1919년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1949년에는 호적상 나이가 40세였다. 이는 명부에 있는 “당 34세”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지와 본적에 있어서 명부와 제적등본이 일치하고 있고, 신청인 채옥진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채기진이 사건 발생 전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과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형무소 수감중에 몇 통의 서신을 받았으나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개별 신청인의 주장과 채주민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채주민(부), 장영희(처), 채갑진(제), 채훈진(제), 채갑순(제), 채대진(제), 채외순(자), 채점식(자), 채홍복(자) 등은 채기진의 가족들이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채기진의 처와 2녀 1남 모두가 절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황동주의 경우, 명부에 의하면 1949년 당시 37세로, 출생지와 본적 및 주소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244번지로 동일하였으며, 이를 통해 황동주는 1912년 또는 1913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표자 채의진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엄정순(사건번호 다-893호, '06.01.24.)에 의해 제출된 황기수(黃基壽)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황동주는 호주 황기수의 차남이었다. 제적등본에는 황동주가 “대정 2년 9월 17일”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생지 및 출생신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대정 2년”은 서기 1913년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1949년의 호적상 나이는 37세였고, 이는 명부상 나이 “당 37세”와 일치하였다.

대표자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주장과 황기수의 제적등본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황기수(부), 엄계홍(처), 황출주(제), 황의인(자), 황갑순(자), 황점용(?), 황아기(?) 등은 황동주의 가족들이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황동주의 처와 1남 1녀 모두가 절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범죄인 명부 및 파산자명부』에 대한 검토 결과, ‘석봉리 주민 3인’, 즉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는 사건 발생 전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1949년 6월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정만기, 채기진, 황동주가 부역자로 지목되어 상주(尙州)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군 관련 기관의 주장과는 판결 및 확정일, 그리고 죄명 및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석봉리 주민 3인’이 미군정 법령 제19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1년6월의 징역형을 판결 및 확정 받았다고 특정할 수 있으나, 이들이 군 관련 기관들의 주장처럼 부역자로 지목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들과 집단희생사건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명부와 대표자 및 대표자 선정 신청인, 그리고 개별 신청인들이 진실규명 신청 · 접수 당시 함께 제출한 제적등본을 비교 · 분석한 결과, ‘석봉리 주민 3인’은 사건 관련 희생자들 가족의 구성원이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 중 직계존속을 비롯해 형제와 조카들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처와 자식들은 모두 희생되었다.

## 2) 관련자 조사 내용

쟁점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사망자의 희생 이유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건 발생 전후로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 및 빨치산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sup>152)</sup>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였다.<sup>153)</sup> 반면 몇몇 신청인들은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의 공비 및 빨치산 활동에 대해 아주 간략한 언급을 한 바 있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석달마을 내에서가 아니라 인근 지역이며,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석달마을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었다.<sup>154)</sup>

한편 ‘석봉리 주민 3인’에 대한 재판 및 복역 사실 여부도 일부 신청인들의 진술에서 드러났으나, 신청인들은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 ‘석봉리 주민 3인’이 재판을 받았고 당시에 이들은 형무소에 복역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등 개략적인 상황만 알고 있었다.<sup>155)</sup>

152) 채운식 진술조서, 6쪽 ; 이만우 진술조서 8쪽 ; 채홍락 진술조서, 4쪽 ; 이시환 진술조서, 7~8쪽 ; 채홍문 진술조서, 8쪽 ; 엄정순 진술조서, 7쪽 ; 황의중 진술조서, 6쪽 ; 이운자 진술조서, 8쪽 ; 황의남 진술조서, 5쪽 ; 채홍근 진술조서, 6쪽 ; 채홍연 진술조서, 5쪽 ; 오명옥 진술조서, 6쪽 ; 이정애 진술조서, 6쪽 ; 이정환 진술조서, 6쪽 ; 채홍윤 진술조서, 7쪽 ; 전병일 진술조서, 5쪽 ; 채홍득 진술조서, 6, 7쪽 ; 채홍달 진술조서, 11쪽 ; 채정희 진술조서, 6쪽 .

153) 김경희 진술조서, 5쪽 ; 채우진 진술조서, 4쪽 ; 채의진 진술조서, 14쪽 ; 채가진 진술조서, 5쪽 ; 채홍빈 진술조서, 5쪽 ; 채홍달 진술조서, 11쪽 .

154) 이시환 진술조서, 7쪽 ; 채의진 진술조서, 11, 14쪽 ; 채홍빈 진술조서, 5쪽 ; 정복순 진술조서, 7쪽 .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9일 제1차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즉, 당시 현장 생존자 채의진은 석달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배너미산 밑에 ‘아지트’가 하나 있기는 있었고, 석달마을의 인근 마을인 허릉골에 거주하던 김○○ · 김○○ 형제는 당시 누구나가 다 아는 ‘활동가’였으며, 이 형제에게 당시 ‘석봉리 주민 3인’이 ‘포섭’되었다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체포되어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하였다.

155) 채의진 진술조서, 13~14쪽 ; 채홍빈 진술조서, 5쪽 ; 정복순 진술조서, 4쪽 .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가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들어간 때는 1949년 12월 24일 점심을 지난 오후 경이었는데,<sup>156)</sup> 제2소대 병력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2개 분대씩 나뉘어 일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나머지는 마을 외곽을 포위하고 경계를 섰다. 석달마을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참고인은 그 당시에는 “석달마을이 빨갱이 마을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느냐”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제2소대가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서 빠져나온 때는 시간상으로 대략 해가 넘어가기 직전인 오후 4시경이었다고 한다.<sup>157)</sup>

사건 발생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참고인 노○○은 석달마을에 들어갈 때 멈추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앞장 선 지휘관을 따라 곧바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마을에 들어섰을 당시는 조용하였다고 한다. 제2소대 지휘관은 석달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대원들에게 마을에 불을 지르라는 지시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불을 지르라고 하였는지 전혀 몰랐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있던 공비들에게 식량 등을 보급해줘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 소문만 들었다”고 하였다.<sup>158)</sup>

사건의 발생 배경에 관하여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자였던 참고인 김○○는 1949년 9월 16일 경북 문경군 내하리 노루목 고개에서 공비 33명과 교전을 하였다거나,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서 공비 활동이 활발하였다고는 했으나, 당시 문경경찰서 측에서는 석달마을 주민과 공비 간에는 어떤 관련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sup>159)</sup>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나 빨치산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참고인 김○○은 일반적으로 공비가 나타나면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석달마을에서 공비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그가 석달마을로 출동한 것은 문경경찰서 특공대 근무 후 사건 발생 다음 날이 처음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에는 빨치산이나 공비들과 연관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sup>160)</sup>

156) 석달마을에 군인들이 들어온 시각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9일 제1차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진술이 있었다. 현장 생존자들은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어왔던 시간이 정오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하였는데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57) 유○○ 진술조서, 11, 13~14, 17쪽; 유○○ 진술조서(2차), 5쪽.

158) 노○○ 진술조서, 10, 12, 15쪽; 노○○ 진술조서(2차), 4~5쪽.

159) 김○○ 진술조서, 2~3쪽.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동 진술인은 군인들이 점심을 해 달라고 했으나 이를 마을 주민이 거부해서 죽인 것 같다고 하였다.[김○○ 진술조서(2차), 4쪽.]

160) 김○○ 진술조서, 3~4쪽.



그러나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천○○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아니지만 석달마을 및 인근 지역에서 공비나 빨치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파다한 소문이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공비들이 자주 출몰했고, 석달마을이나 산골짜기에서도 공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하였다.<sup>161)</sup>

1960년 당시 국회 조사단 경북반은 6월 3일 18시부터 사건 현장에서 윤용구, 주병환 조사위원과 조한익(趙漢益)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이때 배석한 증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참고인으로 산북면장 황중교(黃仲敎), 현장 생존자 채홍빈 및 이목열, 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문경경찰서 정보주임 김영길(金榮吉), 안동지구 특무대장 이항구(李恒九), 제36사단 현병부장 윤사혁(尹士赫), 산북면장 신창목 등이었다. 희생 이유와 관련하여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서 “공비”가 더러 있었으나 사건 현장 근처에는 심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공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노루목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데, 동 사건이 1948년 9월에 발생해 문경경찰서장 이하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석달마을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없었고, “공비”가 내려와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식사 및 식량, 의류 등을 제공한 적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당시 증언자 이목열(李木烈)<sup>162)</sup>의 추정이긴 하나, 군인들이 동네에 대해 착오를 하여 주민들이 누명을 뒤집어썼으며,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63)</sup>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결과 사건의 제1현장인 석달마을 앞 논의 생존자 이목열은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은 7~80명 정도였고, 빨치산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지를 추궁 당하였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은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불러냈고, 주민들에게 혐의를 추궁했으며, 가옥에 불을 지른 후 마을을 포위한 채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군인들의 ‘1차 사격’ 때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생존했으나, 생존자들을 옆으로 이동시켜 재사격을 하여 “전멸”한 것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제2현장인 마을 뒤 산 모퉁이에서 살아난 증언자 채홍빈(蔡鴻彬)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김룡국민학교 방학식이 있어서 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오전 11시쯤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

161) 천○○ 진술조서, 6~7쪽.

162) 대표자 선정 신청인 이정애·이정환(사건번호 다-893호)의 부(父)이며, 제적등본에는 이시형(李時衡)으로 되어 있고, 유족회 자료집에는 이목열(李穆烈)로 되어 있다. 이목열은 사건 발생 당시 제1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현장 생존자였다.

163)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4~35, 37, 41쪽.



에 도착한 학생은 19명 정도였고, 이들을 향해 한 명은 산에 엎드려서 다른 두 명은 서서 총을 썼다고 증언하였다.<sup>164)</sup>

#### 다. 소결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석봉리 주민 3인’이 석달마을 주민임은 확인되었으나, 그들의 구체적인 죄목을 알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이 그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루목사건’ 역시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일어났으며, 석달마을 출신의 공비나 마을 주민이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의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석달마을 주민들이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협력했다는 의혹 역시 신청인과 경찰에 근무했던 참고인들이 그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 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에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군과 경찰에 두 번이나 협조한 적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석달마을 주민들이 빨치산이나 공비들의 활동에 협력한 일과 관련되어 희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미 군사고문단 보고나 참고인 유○○, 노○○, 이목열, 천○○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군인들은 이 동네가 지리적으로 매우 외진 곳에 있어서 빨치산들이 보급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였던 관계로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갖고서 주민 전원을 집단총살하려 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마을주민들의 공비 협조 여부 및 ‘노루목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가해 과정 및 가해 주체

#### 가. 조사 방향

여기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석달마을 전(全)가옥을 전소시켰고 주민들을 죽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자료 등에서 거론되었던 사건의 가해 주체는 ‘공비’(또는 계릴라)와 국군(군인)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과 이 사건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미군 자료에는 사건의 가해 주체가 ‘공비’(또는 계릴라)로 되어 있다. 반면 신청인과 참고인 및 다른 미군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군인)

16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부)」,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8~40쪽.



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는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와도 관련 되어 있으며, 사건의 가해 주체가 ‘공비’(또는 게릴라)와 국군(군인) 중 누구로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은폐·조작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 나. 조사 내용

##### 1) 자료 조사 분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문경지역 전사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연구 결과로 “당시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 없고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가해자(25연대 2대대 7중대 1, 2소대 요원)들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군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사건 관련 최초의 공식기록인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 정보보고 제238호에 따르면, “남한 내 제2사단 지역(Interior of South Korea, Second Division)”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석달리 사건(Sok Pal Ri Incident)”은 “약 70여 명의 게릴라(approximately 70 guerrillas)”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보고 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내용의 등급이 대부분 “C-3”로 정보 제공원(Source)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fairly reliable)”, 정보(information) 자체 역시 “사실 가능성 있는(possibly true)” 정도였던 반면, ‘석달리 사건’에 대한 정보내용의 등급은 “C-4”로 정보 제공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나, 정보 자체는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Doubtfully true)” 정도였다.<sup>165)</sup>

사건 발생 당시 주한미대사관 에버레트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1950년 1월 18일자 전문의 첨부문서<sup>166)</sup>에는,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 사고문단의 일일정보보고를 근거로 “약 70여 명의 게릴라들이 경상북도 북서쪽에 있는 ‘속발리(Sokpal-ni)’에 침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녀 각 43명씩 사망했고, 14명이 부상했으며, 24채의 가옥이 전소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실체적 사실관계나 사상자 수는 『연합신문』 1월 5일자에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sup>167)</sup> 이처럼 미군측은 애초에는 가해 주체를

165) 미군 자료에 나타난 정보내용의 등급에 대한 해석은 『제주4·3사건 자료집 7~11[미국자료편 ①~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의 범례를 따랐다.

166) 1949년 12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날짜 순서대로 목록화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 미 국무부 한국국내 상황관련 문서 I(1950. 1. 7~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30쪽.]

167)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I(1950. 1. 7~6. 27)』, 국방군사연구소, 1999. 12, 40쪽.



공비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애초 보고는 국군 제2사단의 보고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국군 제2사단이 최초부터 이 사건을 공비에 의한 사건으로 공식 규정한 다음 미군을 비롯한 상부에 보고했다는 말이 된다.

한편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보도된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12월 24일 오후 1시경 70여 명의 공비가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골」에 들어와 마을을 둘러싸고 24호에 불을 질렀다. 집에 있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남녀 부락민들과 함께 총을 휘두르며 마을 앞 논 중앙으로 모이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모인 100여 명의 주민들을 향해 건너 편 산언덕에서, 뒷산 바위에서, 옆에 있던 도랑가에서, 즉 세 방면에서 무차별적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살아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논둑에 옮긴 후 다시 쏘아 죽였다. 한편 일하러 산을 넘어간 마을청년들이 동리에서 솟는 불길을 보고 고개를 넘어오자 공비들은 이들을 끓어았하고 총을 쏘아 죽였고, 마침 토요일이라 일찍 집으로 돌아오던 학생 14명 역시 공비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86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1950년 1월 초에 한국군 측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 주체를 공비로 지목했다는 말이 된다.

반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최근 공개 · 입수된 미군 자료들에서는 사건의 주체가 “한국군(Korean Army)”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대 명칭, 즉 “제2사단(혹은 제3사단) 제25연대 제2대대(혹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168)</sup>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은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1949년 12월) 24일 석달리에서 지역정찰중이던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2개 소대가 마을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를 추궁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를 부인하자 각종 무기(카빈, 소총, 수류탄, 바주카포 등)로 사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소총으로 살해하였고, 마을에 있던 27호

168)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소속 2개 소대[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정보국)와 주일 미국동군 사령관(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 제25연대 소속 부대(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 2686호) ; 제2사단 혹은 제3사단 제25연대(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 ; 제25연대(1950년 2월 15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716호) ; 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중 고문단 자체 조사 결과) ; 제3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중 경찰 조사 결과)



가옥 중 23채가 불에 탔으며, 마을 주민 98명 사망(유아 3명, 남학생 9명, 남 43명, 여 43명) 및 12명 부상(남 5명, 여 7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즉, 가해자를 공비로 보고한 앞의 문서와 달리 가해자를 군인으로 정정했으며, 정확한 부대 소속까지 특정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점촌과 예천에 각각 주둔하고 있던 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현 주둔지를 출발하여 24일 10시 상선암동에서 부대 합류를 한 뒤 석봉산과 ‘달비산’, 단산에 대한 정찰을 하고 24일 18시 갈평리에 도착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석달리는 바로 그 정찰 경로 선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부대는 지정된 시간에 합류하여 14시에 석달마을로 이동하였는데, 마을을 에워싸고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약 100여 명)을 불러 모았다. 그 후 마을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란 혐의를 씌웠고, 이를 부인하는 비무장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시작하였는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재총격을 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군으로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3소대 유진규(俞鎮奎) 소위 및 김점동(金奐童) 하사, 제2소대 안택효 중사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직접적인 상급 지휘관인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문경경찰서장 이의승 경감은 이 사건 종료시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제7중대장은 문경경찰서장에게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도록 종용했고, 자신도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 동 문서에서는 기존의 보고에는 없었던 지휘관 이름까지 특정하였으며, 결국 한국 측이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대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군 자료는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혼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제25연대의 사단 배속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제7중대의 연대 배속 문제였다.

먼저 제25연대의 사단 배속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남한 내 제2사단 (Interior of South Korea, Second Division)’ 관할 지역으로 구분했다. 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에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부대로 “제2사단”을 들고 있고,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문서들에서는 “제3사단”으로 되어 있었다.



국내 자료에서도 제25연대가 예속된 사단이 자료에 따라 제2사단과 제3사단으로 혼용되어 나타나 있는데, 『육군발전사』에서는 “제2사단”으로, 『국방사』에서는 “제3사단”으로 서술되어 있고,<sup>169)</sup> 『육군발전사(상)』에서는 “제2사단”과 “제3사단”이 혼용되어 있다.<sup>170)</sup>

그리고 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는 제2사단장 송호성 준장과 제3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동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 문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언급할 때 제시한 근거자료에서는 사건의 책임 부대를 “제2사단”이라고 한 바 있다.<sup>171)</sup>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사건과 관련한 군부대 지휘관들의 장교자격표를 요청한 바 있는데,(조사3팀-254, '06.05.22.) 회신공문(보존활용과-3743, '06.06.23.)과 함께 온 장교자격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는 제2사단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제7중대의 대대 배속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문서들에서는 제7중대가 “제3대대”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서들에서는 제25연대가 “제3사단”에 배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채○○(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에 따르면, 제25연대의 예하 편제는 3개 대대, 12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연대본부는 안동, 제1대대(제1~제4중대)는 영덕군, 제2대대(제5~제8중대)는 봉화군, 제3대대(제9~제12중대)는 청송군에 주둔했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sup>172)</sup>

1960년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사건의 가해 주체는 최초의 보도부터 일관되게 국군이라고 지목되고 있고, 병력규모에 있어서는 소대 또는 중대, 대대병력 등 다양하게 언급되었으며,<sup>173)</sup> 인원은 최소 7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지적되었다.<sup>174)</sup> 이들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백골단 또는 특경대 및 특별대대라는 보도가 있었고,<sup>175)</sup> 구체적으로는 당시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7사단이라고 보도되기도 하였으며.<sup>176)</sup> 사건 관련 부대의 지휘관이 박(朴)

169) 육군본부 군사감, 『육군발전사』 제1집,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5, 제4편 일지편, 2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1945. 8~1950.6.』, 1984, 348쪽.

17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140, 723쪽.

171) 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

172)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조사보고(조사3팀-862, '06.07.12), 2쪽.

173) 『한국일보』 1960년 5월 18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

174) 약 70명,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 약 80여 명,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 약 100명,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및 6월 5일자; 120명,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175)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



대위<sup>177)</sup>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1955년경 점촌에서 제880부대가 주둔할 당시 ‘부(副)부대장’ 또는 ‘부대대장’이었다고 하였다.<sup>178)</sup> 그리고 이들은 방한복, 방한모, M-1, BAR, 경기관총, 배낭, 철모 등으로 무장했고,<sup>179)</sup> 점촌 또는 서남동 방면에서 왔으며,<sup>180)</sup> 충청도 말씨를 썼다<sup>181)</sup>고 한다.

##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군인 또는 국군으로 특정했고, 그렇게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가해 주체가 군복·철모·군화 등을 착용했거나, 소총(경우에 따라서는 M-1 총으로 특정하기도 함) 및 배낭을 휴대했으며, 신청인에 따라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82)</sup>

특히 대표자 선정 신청인 엄정순의 경우 사건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관계인 [시모(姫母)]으로부터 가해 주체에 대해 전해들은 바 분명 “아군”이라고 진술했으며,<sup>183)</sup> 신청인들이 주저 없이 가해 주체를 국군 또는 군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격자들로부터 가해 주체가 분명 국군 또는 군인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1949년 7월부터 대

176)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이는 제3대 국회 민의원 윤만석(尹萬石)이 당시 국방장관, 법무장관 및 민의원 의장에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텐원서 내용을 통해 보도한 것이다.

177) 이는 이후 『시사저널』의 보도를 통해 ‘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권○○에 따르면, 박○○은 사건 발생 당시 경북 문경군 동로면 수평리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갈평 쪽으로 빨갱이 토벌을 하러 갔다가 석달마을 사람들이 밤해줬다는 정보를 듣고 쏴 죽여 버렸다고 하였다. 이에 직접 박○○과 전화 인터뷰한 결과 박○○은 석 달마을에 공비 120명이 있다고 해서 포위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정희상,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 ‘46년 전 그 날’ 가해자 행적 최초 확인…생존자들 “국군 소행” 증언, 『시사저널』 282호, 1995. 2. 23, 38쪽). 한편 박○○의 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병직관리과에 군번 및 경력 확인 요청을 했으나,(조사3팀-61, ’07.02.12.)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병직관리과-1701, ’07.03.02. ; 조사3팀-103, ’07.03.02.]

178)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에는 ‘부(副)부대장’으로,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에는 ‘부대대장’으로 되어 있다.

179) 『대구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중무장한 군인들),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자 조간(M1 소총 및 기관총 휴대),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M1 소총 및 BAR, 경기관총으로 완전무장)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석간(M1 휴대)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M1 소총 등으로 무장),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5일자(방한모 착용),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방한복, M1, BAR, 경기관총, 배낭, 철모 등으로 완전무장)

180)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점촌 방면), 『동아일보』 1960년 6월 4일자.(인근 서남동 경우)

181) 『대구일보』 1960년 5월 21일 조간,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182) 채윤식 진술조서, 4쪽; 이만우 진술조서, 6~7쪽; 김경희 진술조서, 2, 4쪽; 채홍락 진술조서, 3~4쪽; 이시환 진술조서, 4~5쪽; 채홍문 진술조서, 2쪽; 채의진 진술조서, 2, 8~9쪽; 채가진 진술조서, 3쪽; 황의종 진술조서, 5쪽; 이운자 진술조서, 5, 7쪽; 남한수 진술조서, 4, 10쪽; 황의남 진술조서, 2쪽; 채홍연 진술조서, 2쪽; 오명우 진술조서, 4쪽; 김상병 녹취록, 5쪽; 이정애 진술조서, 5쪽; 이정환 진술조서, 5쪽; 채홍빈 진술조서, 2, 4쪽; 채홍윤 진술조서, 5~6쪽; 채성식 진술조서, 2, 4~5쪽; 채홍득 진술조서, 5쪽; 정복순 진술조서, 7쪽; 채홍달 진술조서, 5~6쪽; 채정희 진술조서, 5쪽.

183) 엄정순 진술조서, 5쪽.



전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1949년 10월 31일 공비토벌차 철도편으로 경북 안동으로, 다시 트럭으로 예안으로 이동해 주둔하였다고 한다. 참고인의 기억으로는 석달마을에 들어가기 전 주둔지는 예안이었다. 당시 제7중대는 지휘관이 공비토벌작전차 출동한다고 하여 주둔지인 예안을 출발하여 중간에 소대별로 흩어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소대별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참고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소대가 석달마을에 들어갔다.

당시 제2소대 병력은 소대본부에 소대장·선임하사·전령(소대장 당번병 겸무)·‘행정병’ 등 4명, 그리고 분대당 7명씩 4개 분대 28명 등 총병력 32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3.5인치 로켓포 등이 있었다. 진술인의 당시 휴대 화기에 대하여 유○○이 언급한 “빼아루”가 BAR(Browning Automatic Rifle, 브라우닝 자동소총)임을 확인하였다.<sup>184)</sup>

석달마을 방화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참고인 노○○은 당시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소대원들이 처음에는 마을에 불을 지르는 일과 마을 앞 논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주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지휘관이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지시와 명령을 내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소대 병력은 소대장·선임하사·향도 등 3명, 그리고 분대당 9명씩 4개 분대 36명 등 총 39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로켓포 등이 있었다.<sup>185)</sup>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서 사건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천○○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알려 주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sup>186)</sup>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한 참고인 노성근이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한 상황은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에 불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별 신원 확인 없이 사격을 하였다는 것이다.<sup>187)</sup>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사건의 가해 주체로 사건 발생

184) 문경 석달 사건 출장조사 보고.(조사3팀-44, '07.01.30.) 2~4쪽.

185) M-1과 로켓포는 참고인의 진술에서, BAR는 조사관이 진술인에게 제시·열람케 한 무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186) 천○○ 진술조서, 7~8쪽.

187) 노성근 진술조서, 9쪽.



전날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국군 1개 소대(또는 중대) 군인들로 특정하였으며, 군인들의 이동경로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에 의하면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군인들은 호계면을 거쳐 산북면 방향으로 이동했거나, 점촌에서 호계, 호서남 고개를 넘어 달고개를 지나 이곡리를 경유하여 석달마을로 이동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전날 국군 1개 소대(또는 중대)가 점촌 시내에 주둔(숙영)했을 때 대민난동 혐의로 군인 8명이 문경경찰서에 입감되었고, 사건 발생일 아침 소대장(또는 중대장)이 이를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였다.<sup>188)</sup>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소속되었던 참고인 김○○도 가해 주체를 군인들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석달마을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나가는 뒷모습을 멀리서 목격했고, 그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군들과 조우하지는 않았고 현장 출동 후 국군인줄 알고 그냥 보내주었다고 한다.<sup>189)</sup>

한편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에 배속되어 있던 참고인 김○○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군인들이 후생사업을 한다고 점촌 읍내에 있었다는 것<sup>190)</sup>과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sup>191)</sup>

사건 발생 당시 산북면사무소에서 사회사무를 담당했던 천○○은 사건의 가해 주체에 대해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sup>192)</sup>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선암리 구장 권○○으로부터 군인들에게 석봉(리)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라고 해서 석달마을까지 길을 안내한 노성근에 의하면, 당시 선암리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철모를 착용하고 소총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군인들이라고 확신했고, 70여 명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였다.<sup>193)</sup>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증언 청취과정에서 먼저 사건의 가해 주체와 관련하여 소속은 정확하게 모르나, 충청도 말씨를 사용했으며, 방한모 또는 철모와 배낭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M-1과 BAR을 휴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군인들은 동로면에서 출동하여 소야리, 거산리, 우곡리를 거쳐 호계면 선암리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가 오전 10시경이었

188) 김○○ 진술조서, 4~6쪽; 김○○ 진술조사(2차), 2~4쪽.

189) 김○○ 진술조서, 2~3쪽.

190) 김○○ 진술조사, 7쪽.

191) 김○○ 진술조사, 8쪽.

192) 천○○ 진술조사, 7~8쪽.

193) 노성근 진술조사, 3쪽.



고 점촌 방면에서 이동한 부대와 합류해 밥을 해 먹고 오전 11시경 선암리를 출발해 석달마을로 이동하였다고 한다.<sup>194)</sup>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관련하여 당시 제2소대원이었던 노○○은 석달마을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sup>195)</sup> 석달마을까지 군인들을 안내했던 참고인 노성근 역시 선암리에서 점심 식사 후 오전 11시(또는 12시)경 마을을 출발하여 산길로 약 1시간 여 후에 석달마을에 도착했다고 언급하였다.<sup>196)</sup> 또한 신청인들도 군인들이 석달마을에 들어왔던 시각을 정오경으로 기억했는데, 이는 당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했는데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sup>197)</sup> 반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군 자료에서는 사건이 13시에서 14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사건은 정오경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제1현장인 마을 앞 논에서의 사격 절차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들은 석달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불을 질렀으며,<sup>198)</sup>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 모아 놓고 총을 쏘았다고 하였다.<sup>199)</sup> 이 과정에서 가해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군인들의 이야기 등을 기억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하면서<sup>200)</sup> 또는 ‘빨갱이’들에게 밥을 해준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한다고 하면서<sup>201)</sup> 총을 쏘았다고 한다. 또한 사건의 제1현장에서는 군인들의 제1차 발포 이후 생존자에 대한 확인 이후 추가 발포가 있었다고 한다.<sup>202)</sup>

사건의 제2현장인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의 사격과 관련한 진술 가운데에는 마을 외곽

19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2, 34, 37, 39쪽.

195) 노○○ 진술조서, 10쪽.

196) 노성근 진술조서, 3~4쪽.

197) 각주 158) 참조.

198) 신청인들의 진술 가운데에는 군인들의 호출과 방화에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만우 진술조서, 4쪽; 김경희 진술조서, 2쪽; 이시환 진술조서, 5쪽; 전병일 진술조서, 5쪽).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의 호출 이후 마을 앞 논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 채윤식 진술조서, 4~5쪽; 채홍락 진술조서, 3쪽; 엄정순 진술조서, 4~5쪽; 이운자 진술조서, 5쪽; 황의남 진술조서, 2~3쪽; 채홍연 진술조서, 2~3쪽; 이정애 진술조서, 5쪽; 채성식 진술조서, 4~6쪽; 채홍달 진술조서, 5쪽.

200) 채윤식 진술조서, 5쪽; 전병일 진술조서, 4쪽.

201) 채홍달 진술조서, 7쪽.

202) 김경희 진술조서, 5쪽; 채홍락 진술조서, 3쪽; 채의진 진술조서, 6쪽; 엄정순 진술조서, 4~5쪽; 황의종 진술조서, 5쪽; 이운자 진술조서, 6쪽; 황의남 진술조서, 3쪽; 채홍연 진술조서, 3쪽; 김상병 녹취록, 7쪽.



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석달마을 사람인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 엉겁결에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산 경우<sup>203)</sup>와 이 마을 사람이라고 하니 가서 죽으라고 말한 경우<sup>204)</sup>가 있었다. 이는 가해 부대 군인들이 석달마을 주민 전체를 총살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참고인 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 중대 제2소대가 점촌에 주둔해 있다가 석달마을에 들어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사격하여 죽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노○○은 제2소대의 주둔지였던 점촌에서 출동할 때 지휘관으로부터 단지 공비를 토벌하러 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디로 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다고 했고, 단지 본인은 사병으로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저 지휘관을 쫓아갔을 뿐이라고 하였다.<sup>205)</sup>

또한 참고인 노○○은 마을 앞 논에 모인 주민들에 대한 사격은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이 때 마을 앞 논에 모여 있던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에 대한 선별작업과 같은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sup>206)</sup>

#### 다. 소결

대부분의 목격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2소대 소속 군인 노○○에 의하면, 군인들이 당시 지휘관의 지시·명령에 따라 석달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포위·경계하고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총으로 쏘아 죽였으며, 1차 사격 후 주민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한 후 재사격을 하였다. 이 때 사건의 제1현장에 모여 있던 노약자나 부녀자,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는 없었으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였다.

사건의 가해 주체와 관련하여 1950년 1월 11일 이후 미군 자료들에서는 가해자가 ‘국군’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명과 관련 지휘관들의 성명, 그리고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달마을 주민들은 ‘국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반면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가해 주체가 국군인지 공비(계릴라)인지에 대한 문서상의 혼

203) 김경희 진술조서, 4쪽; 이운자 진술조서, 6쪽.

204) 채홍빈 진술조서, 2쪽.

205) 노○○ 진술조서, 6쪽; 노○○ 진술조서(2차), 3쪽.

206) 노○○ 진술조서, 13~14쪽; 노○○ 진술조서(2차), 7쪽.



동이 있었으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호적, 그리고 사건을 최초로 보고한 미군 자료 1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가해 주체가 모두 ‘국군’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가해 주체를 ‘국군’으로 특정하고 있는 이후의 미군 자료들은 사건을 보고한 최초의 미군 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사건의 가해 부대인 국군 제25연대와 제7중대의 정확한 예·배속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으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관련 군부대 지휘관들의 장교자력 표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채○○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희생의 가해 부대는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각급 지휘관으로는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俞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옹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였다.

#### 4.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계통

##### 가. 조사 방향

사건의 가해 부대가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특정되었으므로, 이들 군인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석달마을 주민을 집단희생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이 가해 부대의 어떠한 지휘·명령 계통을 통해 일어났고, 또한 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건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석달마을을 포함한 광복지역 내에서 전개되고 있던 ‘공비토벌작전’의 지휘·명령 계통을 살펴보고, 사건이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국군 측의 ‘지휘·명령에 따른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가해 부대의 ‘작전’ 내용 및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가해 부대의 ‘작전’ 수행과 집단희생사건 발생원인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가해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 나. 조사 내용

###### 1) 자료 조사 분석

제25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일대에서 실시된 동



부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주력으로 참가한 부대 가운데 하나였다.<sup>207)</sup>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인민유격대와 지방 공비를 소탕하였는데, 이 때 주력 부대 역시 제2사단 예하의 제16연대였다.<sup>208)</sup>

이처럼 제2사단은 사건 발생 전후에 경북 및 태백산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력으로 수행하였으며, 제2사단 사령부는 1949년 11월 5일 공비소탕작전을 위하여 안동으로 이동하였고, 1950년 4월 14일까지 작전을 수행하다 대전으로 이동하였다.<sup>209)</sup> 이와 비슷하게 제25연대도 지휘소를 안동에 두고 중대 및 소대 단위 수색정찰 임무를 맡았으며, 1950년 3월 15일부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경북 중북부 지역의 공비소탕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sup>210)</sup>

당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3대 작전 개념은 첫째 남침공비의 활동 구역 내에 있는 지방세포를 먼저 파괴시킴으로써 공비를 분리 고립시켜 남침공비와 남로당과의 접선을 거부하고, 둘째 대대단위로 작전구역을 할당하고 공비의 “루트”에 매복초소와 분초를 설치한 후에 대대병력으로 대규모 수색작전을 실시하여 포위 섬멸하며, 셋째 산간부락을 파괴 소각하고 일정지역에 집단부락을 50호 단위로 형성하여 남침공비와 지방공비와의 접촉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sup>211)</sup>

다음, 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는 대체로 앞의 보고 ARMA 10(USMILAT, Seoul, 42169, 11 Jan 50)<sup>212)</sup>을 주 정보로 삼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ARMA 10에서는 단순한 지역정찰중(on reconnaissance through area)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보고에는 석달 지역을 통과하는 수색정찰(on a reconnaissance patrol through the Soktal area)이라고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추궁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혐의는 군인들이 뒤집어씌운 누명이었으며, 확인사살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미군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가해 군부대는 당시 지역정찰 또는 석달마을을 경유하는 정찰중에 있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sup>213)</sup>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

207) 보병 제2사단 민심처 편, 『노도부대사』 제1집(1945~1995), 보병 제2사단, 1995. 3, 112쪽.

2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2, 141~142쪽.

2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군사』, 2002, 173쪽.

2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경 석달동 사건」, 10쪽; 보병 제2사단 민심처 편, 『노도부대사』 제1집(1945~1995), 1995. 3, 83쪽.

211) 육본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10, 241쪽.

212) 실제로 본 보고 내 각주에서는 “USMILAT, Seoul, 42169, 11, Jan 50”으로 되어 있다.

213)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위성던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에서는 당시 군부대의 ‘작전상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즉,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현 주둔지(각각 점촌 및 예천)를 출발하여 다음 날 10:00시 상선암에서 합류한 뒤 “석봉산(Sokpong San 또는 SUK BONG SAN), 달비산(Talbi San 또는 DUK BI SAN), 단산(Tansan)” 일대를 정찰·수색한 후 17:00~18:00시 사이(또는 18:00시)에 갈평리(Kalpyong Ni 또는 KAL PYONG)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의 지시·명령 사항이었고, 석달마을은 바로 이 정찰·수색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조사 당시에도 드러났는데, 현장 생존자 이목열은 군인들이 동로면에서 출동하여, 소야리, 거산리, 우곡리를 거쳐 호계면 선암리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14)</sup>

미군 자료와 국회 조사단 경북반의 현지 조사 과정에 나타난 한국군의 작전상 이동 경로를 현재의 행정지도상에 표시하면 <지도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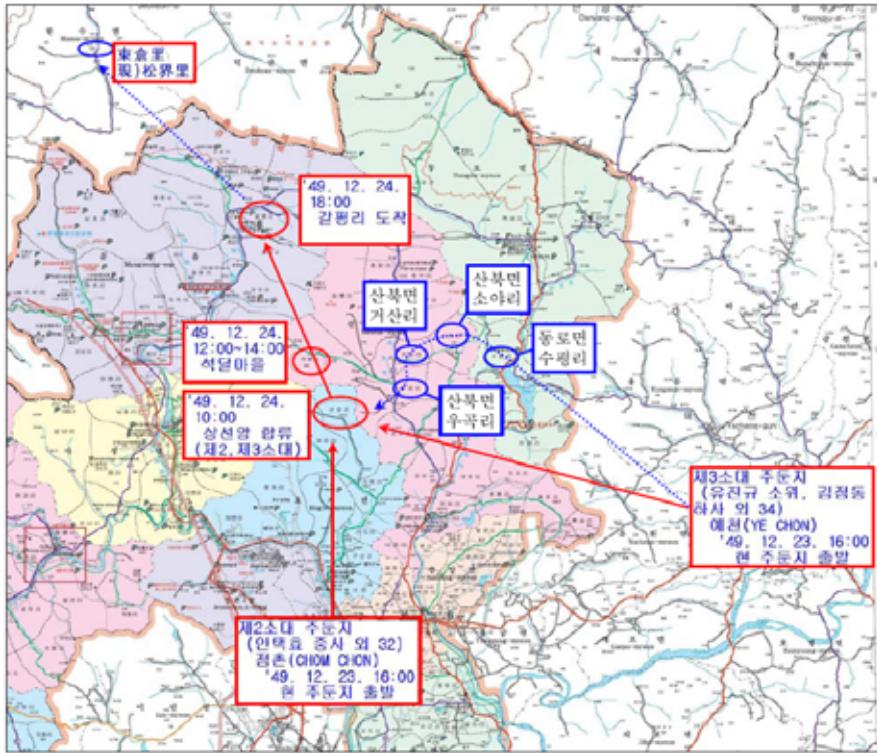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의 두 번째 문서에 의하면, 먼저 제7중대 예하 소대와 주둔지 및 병력을 살펴보면, 제7중대에는 3개 소대가 있었는데, 제1소대는 문경, 제2소대는 점촌, 제3소대는 예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소대는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장교와 병을 합쳐 총 69명이었다. 한편 이 인원은 최초의 미군 보고에 나타난 “70여 명의 게릴라”와 거의 일치한다.

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

214)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32쪽.



〈지도 1〉 미군 자료에 나타난 당시 한국군 이동 경로



##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작전주임’이었던 허○○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각 지역 주둔 부대에게 공비토벌과 관련된 작전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였다.<sup>215)</sup> 그러나 이는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 지휘에 대한 ‘재량권’이 일선 군부대에게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지 공비토벌작전이 연대 또는 그 이상의 작전 명령 없이 일선 군부대가 ‘자의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제25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이었던 참고인 채○○은 사건 당시 군인들의 지휘체계로는 엄격하게 중·소대장의 지휘하에 중대와 소대가 이동하였고, 공비토벌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중대장 판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총기사용은 중·소대장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sup>216)</sup>

215)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허○○ 조사보고(조사3팀-861, '06.06.27.) 1쪽.

216) 문경 석달 사건 주요 참고인 조사보고(조사3팀-862, '06.07.12.) 3쪽.



참고인 유○○이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대전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1949년 10월 31일 공비토벌차 철도편으로 경북 안동으로, 다시 트럭으로 예안으로 이동해 주둔하였다고 한다. 즉, 석달마을에 들어가기 전 주둔지는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예안이었다. 당시 제7중대는 지휘관이 공비토벌작전차 출동한다고 하여 주둔지인 예안을 출발하여 중간에 소대별로 흩어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소대별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진술인이 배속되어 있던 제2소대가 석달마을에 들어갔다.<sup>217)</sup>

참고인 이○○가 배속되어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은 후 공비토벌차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둔지에서 출동을 하면 공비토벌작전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sup>218)</sup> 또한 당시 공비토벌작전은 중대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작전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 이하의 몇 개 소대가 협력하여 수행할 때도 있었다. 당시 공비토벌은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목표 지점을 정해 놓고 출동을 하면 예하 사병들은 목표 지점이 어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휘관을 따라갔다. 다만 타지에서 공비토벌을 하러 왔기 때문에 현지 지명에 익숙지 않아 간혹 마을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가해 주체로 사건 발생 전날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1개 소대(또는 중대) 군인들로 특정하였는데, 군인들의 이동경로나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에 의하면 점촌 시내에서 주둔(숙영)했던 군인들은 호계면을 거쳐 산북면 방향으로 이동했거나, 점촌에서 호계, 호서남 고개를 넘어 달고개를 넘어 이곡리를 경유하여 석달마을로 이동한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다.<sup>219)</sup> 그러면 점촌 주둔 군인은 제7중대 제2소대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했던 장성환과 노성근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렸으며 완전무장한 군인 70명이 선암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점심을 먹고 석봉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길을 안내 하였는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도를 보더니 석달마을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sup>220)</sup>

참고인 노성근은 사격 종료 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손을 벌벌 떨어 불을 못 붙이자 주위 군인이 대신 불을 붙여줬다고 하였다. 사격 종료 후 군인들이

217) 유○○ 진술조서, 4, 9, 11쪽; 유○○ 진술조서(2차) 2~3쪽.

218) 당시 진술인 이○○가 배속되어 있던 제3소대 병력은 분대당 11명씩 3개 분대 33명을 포함한 총병력이 3~40명 정도였다. 또한 당시 소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로는 M-1, BAR(브라우닝 자동 소총), 무반동총, 곡사포 등이 있었다.

219) 김○○ 진술조서, 4~6쪽; 김○○ 진술조서(2차), 2~4쪽.

220) 〈다큐멘터리 오늘—문경, 1949〉, 1995. 6. 6.



집합한 뒤 석봉 큰 마을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시간상으로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갔던 때라고 하였다.<sup>221)</sup>

#### 다. 소결

기존의 공간사에 따르면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제2사단 및 제25연대가 경북 중북부 및 태백산 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부대들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 개념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미군 문서에서도 사건의 가해 주체인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소속 중대장의 명령·지시에 따라 지역정찰을 하는 등 작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달마을은 군부대의 작전 경로선상에 위치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군인들의 이동경로는 당시 길을 안내했던 장성환과 노성근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가해 군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신청인의 일부 진술에서 군인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했던 말과 지휘관이 군인들을 석달마을에서 멈추게 했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주민희생은 이동하던 군인들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계획된 작전중에 발생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건의 가해 주체인 군부대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 개념 하에서 작전 수행중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지시에 따라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한 석달마을 주민 희생이 상급 부대가 내린 특정한 작전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2소대와 제3소대가 제7중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른 지역 정찰·수색 정찰을 수행하는 중이었음을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건은 석달마을을 통과하는 작전 수행중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

#### 가. 조사 방향

사건 발생 이후 국가기관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

221) 노성근 진술조서, 11~12쪽.



였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의 ‘가해 주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사건 관련 희생자의 제적등본 내 사망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이 은폐 또는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미군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인 가해 주체의 상부 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당시 언론 중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던 『연합신문』의 전후 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가해 부대의 지휘관들 및 문경경찰서장의 교체,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김룡국민학교 방문, 산북면사무소의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 사건에 대한 미 군사고문단의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 나. 조사 내용

##### 1) 자료<sup>222)</sup> 조사 분석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가 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문경경찰서장과 공모하여 계릴라 70명이 학살을 저질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개인 서한철에는 제7중대장과 문경경찰서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 사건에 대해 알았고, 먼저 제7중대장이 문경경찰서장을 설득하여 허위보고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후에 제7중대장은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김룡국민학교 학사보고서철에 의하면 1950년 1월 17일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하여 (유족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이었던 이의승은 1950년 2월 6일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문경경찰서장 직에서 면직되었고, 동일 서울철도경찰대 경무주임 김이화(金利和) 경위가 경감에 임명되면서 후임 문경경찰서장에 보임되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따르면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사망 사유는 “공비출몰총살로인하야사망(共匪出沒銃殺로인하야死亡)” 또는 “공비에게총살로인하야사망(共匪에게銃殺로인하야死亡)”인데, 이는 1950년 3월 6일 및 7일에 당시 문경경찰서장 김이화가 보고

222) 사건의 은폐 · 조작 내용을 암시한 미군 자료들은 해당 군부대의 자체 보고 및 국립경찰국 보안과 경찰의 조사 보고,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 고문관에 의한 조사 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보고서로서 문서가 가지는 신뢰성이 높다.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의하면,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난 ‘채의진’(당시 13세)과 ‘홍남’(또는 ‘홍낙’, 당시 8세)에 의하면,<sup>223)</sup> 공비들은 총을 쏘면서 “너이 이놈들 빨갱이 밤 해주고 도야지 잡어 주엇찌. 우리는 국군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의진’은 “국군이면 왜 집신을 신었는지가 이상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합신문』에 게재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군경 합작 토벌전과 선무공작에 대한 공비들의 최후의 발악을 넘어선 “정신이상적인 행동”이었고, 이는 구사일생으로 현장에서 생존한 학생의 진술과 판단에 의해 더욱 확고해진 듯하였다.<sup>224)</sup> 그러나 신청인 채의진은 자신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마을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을 만난 것은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 일행이 김룡국민학교에 방문했을 때라고 강조하며 진술하였다.

1950년 1월 10일 국방부는 훈령 제5호로 「군보도취급규정(軍報道取扱規定)」을 공포하는데, 군의 용병(用兵)작전, 동원, 교육, 전황(戰況) 및 전과(戰果)에 관한 보도 등 작전보도는 당해 주무부서의 보고에 의하여 국방부 정훈국에서 보도사항과 보도방법 등을 기안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훈국 보도과(報道課)에서 이를 보도하게 되었다.<sup>225)</sup> 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 따르면, 군은 우호 관계를 위하여 대학살의 전말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숨기고자 해서 언론은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존 메릴(John R. Merrill)은 사건의 규모가 정부를 당혹케 할 만큼 위협적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보도를 금하고 사건 관

223)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에 등장하는 ‘채의진’과 ‘홍남’(또는 ‘홍낙’)은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회복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접수한 실제 인물들로 채의진은 사건번호 다-893호, 채홍락은 사건번호 다-705호의 신청인이다.

224) 그런데 『연합신문』 1950년 1월 5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북 ‘석달골’사건”에 대해서 동 보도 전에 이미 “앞서 보고한바” 있었고, 동 보도는 당시 “내무부 파견 강사 조영환(趙永煥)”이 “12월 29일 현지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 1월 5일자 이전의 보도 또는 계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신문을 조사했으나, 현재 미아크로폼 형태로 남아 있는 『연합신문』으로는 1949년 6월 30일자부터 12월 31일자까지가 누락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대한민국사』에서 조영환의 이름을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6년 4월 23일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대책전국총연맹의 〈미소회담 제5호 성명에 대한 검토강연회〉 연사(동아일보 1946년 4월 23일자) ; 1948년 10월 26일 대동청년단 대표로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 의견 건의(서울신문 1948년 10월 27일자) ; 세계일보 1948년 10월 28일자) ; 1948년 11월 4일 체신부장대리 및 ‘여순사건 현지 조사복구건설대 총지휘’ (호남신문 1948년 11월 6일자) ; 1949년 9월 23일(또는 22일)부터 30일 동안 내무부 특파강사(特派鑑察師)로 삼척군 내 시국강연(동아일보 1949년 10월 7일자) ; 1950년 2월 2일 내무부 특파인으로 영양군에서 시국강연(영남일보 1950년 2월 7일자) ; 1951년 8월 3일 국회 원내 공화민정회 사무국장(전 신정동지회 사무국장)으로 서울지검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지명수배증 체포(동아일보 1951년 8월 6일자)

225) 1950년 1월 20일자 『관보』 제264호.



련 군 지휘관들을 처벌했으며 관련 부대의 지휘체계도 재편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226)</sup>

다음 1950년 1월 16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86호는 대체로 앞의 보고 ARMA 10(USMILAT, Seoul, 42169, 11 Jan 50)<sup>227)</sup>을 주 정보로 삼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 보고에서는 단순한 지역정찰중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석달 지역을 통과하는 수색정찰이라고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추궁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내통 협의는 군인들이 뒤집어씌운 누명이었으며, 확인사살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의 언급이 아니라 크게 지휘관 변동 사항과 국방장관 신성모의 군사시설 방문 사항을 전하였다. 먼저 지휘관 변동과 관련해서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즉 휘하 부대원들에 의한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제25연대장 유해준(俞海濬)을 보병학교로 전속시키고, 후임 연대장에 장두권(張斗權) 중령을 임명하였다. 다음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으로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이 해임되고 후임에 각각 제6사단장 유재홍(劉載興)과 지리산전투지구사령관 김백일(金白一)을 임명하였다. 물론 송호성과 이응준의 해임은 세 가지 사유<sup>228)</sup>에 의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정보요약 제2686호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다만 정보요약 제2686호가 근거로 하고 있는 ARMA 10에는 사건 관련 부대가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제25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연합신문』 1950년 1월 26일자에는 사건과 관련한 군 보도과(報道課)의 발표가 게재되어 있는데, 당시 군 보도과에서는 본 사건을 “공비의 최후적 만행으로서 국군을 가장하고 부락에 침입하여 살인방화 등을 감행한”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1월 11일자 미군 보고에서 이미 공비가 아니라 국군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12월 24일 하오 2시경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골에 국군으로 가장한 무장폭도 약 50명이 내습하여 주민 86명을 총살하고 가옥에 방화

226) Merrill, John, *Korea :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162~163쪽. 물론 이 때의 사건 관련 군 지휘관들의 처벌 및 관련 부대의 지휘체계 재편성은 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227) 실제로 본 보고 내 각주에서는 “USMILAT, Seoul, 42169, 11, Jan 50”으로 되어 있다.

228) 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불만족, ② 지휘관의 연령을 낮추려는 의도, ③ 2명 모두 1949년 12월 24일 군인에 의해 98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석달 대학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



하여 24호를 소진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동 피해지의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동 지구 공비토별 강화차 안동회의를 소집한 후 일일이 친절하게 위문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금’까지 주어 동 지구 사건의 길을 열어 준 바 있다.”고 보도하였다.<sup>229)</sup>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중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미국 고문관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군은 제25연대 제3대대 제7 중대 제3소대 유진규 소위 및 김점동 하사, 제2소대 안택효 중사”이었다. 이들의 직접적인 상급 지휘관인 “제7중대장 유용철 대위와 문경경찰서장 이의승 경감은 이 사건 종료시까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제7중대장은 문경경찰서장에게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도록 종용했고, 자신도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특별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된 중요 보도 중에서 ‘허위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면,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석간에 최초로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동 신문에 따르면 보도 당시 문경경찰서 호계지서주임이었던 송경현(당시 경위)이 사건 발생 당시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曹在千)<sup>230)</sup>에게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할 때 ‘86 명 학살’을 ‘16명 사망’으로 “허위보고”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에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송경현(보도 당시 현 문경경찰서 호계지서 주임, 경위)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을 ‘공비가 마을 주민 16명을 학살하였다’고 “꾸며” 또는 ‘뒤집어’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상의 두 보도를 검토하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허위보고하거나 뒤집은 사람은 송경현이었고, 최초의 언론보도에서는 이를 지시한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인 이의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석간 및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에 의하면, 경찰의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장<sup>231)</sup> 이박(李博)<sup>232)</sup>이 사건

229) 최후발악의 공비 / 가장코 살인방화 / 신(申) 장관 피해자를 일일이 위문 / 군 보도과 발표.(연합신문 1950년 1월 26일자 2면 1~3단)

230) 제6대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은 1949년 1월 31일부터 1950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였고, 재직 당시 계급은 경무관이었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923쪽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448쪽)] 제6대 경상북도 경찰국장 조재천의 후임에는 조준영(趙浚永) 경무관이 취임하였는데, 1950년 1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재직하였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923쪽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448쪽]

231) 이를 보도한 당시 언론에서는 ‘보안과장’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27일자 군정청령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경찰부가 조직되었고, 산하에 총무·공안·수사·사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고, 현지조사 당시 동행하였던 사진사 황○○<sup>233)</sup>이 찍은 현장사진과 필름을 압수했으며, 이후 이창훈(李昌勳)으로 개명한 뒤 강원도 경찰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234)</sup>

사건에 대한 제2사단의 자체 감찰 실시 여부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사건 관련 참전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당시 제2사단 제25연대 작전주임이었던 혀○○는 당시 제2대대장 권정식이 사단 감찰부에 몇 번 불려 다녔던 것을 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sup>235)</sup>

『경상북도 관내 소란지구 피해실정 조사보고서』(이하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북 관내 피해 상황, 지방의 실정, 지방 관민의 요망사항, 보고서 작성자의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크게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군 작전상 소개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대별되어 서술되었다.<sup>236)</sup>

찰과 등 4과(課)가 설치되었다. 1960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83호 「내무부직제」에 의거하여 사찰과는 정보과로 개칭되었고, 1976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8078호 「내무부직제」에 의거하여 정보2과로 분과되었으며, 1981년 11월 30일 대공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8월 1일 보안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사찰과였다.

- 232) 『경북경찰발전사』에 의하면, 이박(李博)은 1949년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16일) 사찰과장을 지냈으며, [사찰과장 재직시 계급은 김찰관(監察官)] 사건이 발생하였던 때에는 문인수(文仁洙) 경감이 사찰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579쪽) 즉, 문인수는 이박의 후임으로 1949년 2월 26일부터 1950년 5월 6일까지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지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박은 1946년 9월 5일부터 1947년 2월 20일까지 제4대 영덕경찰서장(경감), 1947년 2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제6대 김천경찰서장(경감), 1947년 6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5대 경주경찰서장(경감), 1947년 11월 17일부터 1948년 11월 17일까지 제7대 상주경찰서장(감찰관)을 역임하였다.(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 1156, 1172, 1181, 1196쪽)
- 233) 사건 발생 당시 접속읍에서 ‘국민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 문경경찰서의 의뢰로 사건현장을 촬영하였다. 황○○의 자 황○○은 5·16 전까지 집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현장사진들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특별기획 : 숨겨진 진실—문경양민학살사건 : “석봉리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영강문화』 제29호(1993년 여름호), 영강문화회원회, 1993. 8. 10, 38쪽]
- 234) 이창훈은 실제로 1960년 4월 4일부터 1960년 5월 3일까지 제20대 강원도 경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내 강원경찰 소개 내 역대 강원경찰청장 명단)
- 2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지역전사 연구(Ⅲ)』, 2002. 12, 325~395쪽.
- 한편 육군본부 감찰실과 제2보병사단사령부 감찰부에 사건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제2보병사단사령부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육본의 감찰실이나 사단의 감찰부는 참모총장 및 사단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사단-연대 식의 조직적 계선을 갖지 않아 사단 감찰부의 문서가 통상적으로는 육본의 감찰실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했고[문경 석달 사건 관련 보병 제2사단 감찰조사보고, (조사3팀-1062, '06.10.09.) 2~3쪽.] 제2보병사단사령부 감찰부는 동 부서는 “1950년 11월 15일 창설되었고, 감찰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대개 보존연한이 5년이며, 현재 감찰부에서 보유중인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90년 정도 밖에 없다고”하였다.[문경 석달 사건 관련 보병 제2사단 감찰조사보고, (조사3팀-1062, '06.10.09.) 3쪽.]
- 236) 1950년 2월 11일 사회부 차관 최창순(崔昌順)은 경북 일대의 반란지구 피해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와 이 일대의 이재민 구호대책을 천명하였으며, 이 때 발표된 1949년 11월부터 1950년 2월 초순까지 경북지방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동 보고서의 “경상북도 관내 폭도로 인한 상황표”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물자로 모포 800점과 군화 등을



한편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에는 “폭도의 피습 및 군 작전상 소개로 인한 피해 상황”이 별지의 형식으로 시·군별로 표로 작성되었는데, 1950년 2월 5일 현재 “경상북도 관내 폭도로 인한 피해상황표”의 문경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경북 관내 피해보고서에 나타난 문경군 피해 상황

군별 (郡別)	연도별 (年)	인명피해(人)		가옥피해(戶)		의류피해(夷)	식량피해(石)	이재자수	
		사망	중상	전소	반소			세대(帶)	인원(人)
문경	4282	86	12	38	0	1,361	382	31	183
	4283	0	0	0	0	0	0	0	0
	소계	86	12	38	0	1,361	382	31	183

출처 : 「경상북도관내소란자구피해실정조사보고서」, 1950. 2. 13.

〈표 6〉에서 1949년 문경군의 “폭도의 피습”에 의한 인명피해 내용, 사망 86명과 중상 12명은 본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가옥피해에 있어서 전소 24호가 아닌 38호로 되어 있는 점과 의류 및 식량 피해, 이재자수가 모두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시 정부에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단편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1949년 문경군의 피해상황이 본 사건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표가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를 군별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건을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일보』 2000년 7월 24일자 및 25일자에 의하면, 한국전쟁50주년기념사업회가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sup>237)</sup>에 전담토록 한 해원사업 대상의 주요 사건에는 문경 석달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사건에 대한 연구계획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 조성태(趙成台)의 구두지시에 따라 최초에 계획되었던 연구 방향 및 목적에서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즉, 주요 사건들은 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군은 국회 등의 협조요청시 협조하면 되며, 어떤 경우에든 군 작전의 정당성

보냈고, 복표 매상금에서 5,000만 원(圓)을 할당하였다.(『조선일보』 1950년 2월 16일자)

237) 1964년 발족한 전사편찬위원회의 후신으로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군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되, 이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인정하라고 하였다.

문경 석달 사건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조에서 연구·조사되었으며, ‘주민 희생사건 연구계획’에는 사건 개요, 군의 조치, 관련단체(문경양민학살 대책위원회) 동정, 소결론 등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드러나 있었다. 즉, 이 ‘계획’에서 “문경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에서 당시 수색정찰중이던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병력(2, 3소대)이 마을 주민 86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사살하고 마을에 방화한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당시 제7중대장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일선 소대장”이 “부역 죄”에 대한 “화풀이” 또는 “공비협조짓”으로 “오판”하여 “학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군은 제2사단장 송호성 준장과 제3사단장 이응준 소장을 전격 해임시켰고, 1950년 1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게 하여 유족을 위로하였으며, 1950년 1월 21일 제25연대장 유해준 중령을 보직 해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에서 “문경사건”은 “단순사건으로 진상조사 가능”하나 입수한 미군자료 4건에 의하면 “군의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성격과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진행된 연구 결과는 보고 과정에서 축소되었다. 다시 말해 1999년 12월 29일자 ‘지역전사 연구결과 보고’(한국전쟁발발전후 민·군관련 사건)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미군자료를 언급하면서 “미군자료에서 주민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12월 30일 ‘민·군관련(지역전사)사건 연구결과 보고’로 보고의 제목이 변경되면서 12월 29일자 연구결과 보고 내용은 삭제되었다.

## 2) 관련자 조사 내용

사건의 은폐·조작 여부에 관한 신청인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호적처리 문제,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관 등의 현장 출동 여부, 문경경찰서장의 허위 보고 여부,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지 방문, 사건과 관련된 제반 지원 여부 등이었다.

먼저 희생자에 대한 호적처리는 신청인 대다수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망자의 호적처리는 당시 마을 이장인 이인호가 산북면사무소 호적담당 황○○에게 문의하여 문경경찰서장 김이화의 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상주지원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



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등, 개별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하였다.<sup>238)</sup>

다음으로 관할 경찰서 및 지서의 현장 수습 및 조치와 관련하여 몇몇 신청인들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10시경 문경경찰서 정보과장 및 경찰관, 산북지서장 및 경찰관, 산북면장 및 직원, 그리고 사진사 등이 현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39)</sup>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의 현지 방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구체적인 날짜만을 기억하지 못할 뿐 국방장관 신성모 일행이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과 관련된 ‘위로금 100만 원(圓)’을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다.<sup>240)</sup>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와 관련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원 사실 확인에서부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까지 그 진술의 범위가 다양하였으며, 크게는 사건으로 인해 전소된 집을 새로 짓는데 지원금이 나왔다는 것과 구체적인 지원 품목(담요 등)을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한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이다.<sup>241)</sup>

사건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 천○○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첫째,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 명목으로 1인당 옥양마 3마가 지급되었다는 것,<sup>242)</sup> 둘째 산북면사무소 회계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것, 셋째 사건 현장에서 생존했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해서 10여 채를 지었다는 것 등이었다.<sup>243)</sup>

한편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서 김○○에 의하면 문경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아침 조회시간에 경찰서 직원들에게 공비 5명 내지 6명이 석달마을 주민 4명을 사살하고 도주를 한 것으로 반복 교육시켰다고 하였다.<sup>244)</sup> 동 참고인 2차 진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 확인했고, 당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

238) 채의진 진술조사, 16쪽; 채홍근 진술조사, 7쪽; 채홍빈 진술조사, 6쪽; 채홍달 진술조사, 12쪽.

239) 채우진 진술조사, 4쪽; 채의진 진술조사, 12쪽; 채가진 진술조사, 4~6쪽; 채홍달 진술조사, 9~10쪽.

240) 채홍락 진술조사, 5~6쪽; 이시환 진술조사, 9쪽; 채우진 진술조사, 5쪽; 채의진 진술조사, 17~18쪽; 채가진 진술조사, 7쪽; 횡의남 진술조사, 6쪽; 채홍빈 진술조사, 6쪽; 채홍달 진술조사, 14쪽.

241) 김경희 진술조사, 6쪽; 채홍락 진술조사, 5~6쪽; 이시환 진술조사, 9쪽; 채홍문 진술조사, 9~10쪽; 채우진 진술조사, 5쪽; 채의진 진술조사, 18~20쪽; 채가진 진술조사, 7~8쪽; 이운자 진술조사, 10쪽; 남한수 진술조사, 12쪽; 횡의남 진술조사, 6쪽; 채홍연 진술조사, 5~6쪽; 채홍빈 진술조사, 6쪽; 채홍달 진술조사, 14쪽.

242) 사건 발생 후 사건 관련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당시 ‘마을 이장’(또는 ‘마을 대표’) 김목성과 함께 하였는데, 3명분이 남아서 김목성에게 물어보니 형무소에 복역중인 3명 뒷이라고 하였다고 한다.(천○○ 진술조사, 11쪽)

243) 천○○ 진술조사, 11쪽.

244) 김○○ 진술조사, 3쪽.



면 경찰서장에게 불리하므로 혀위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sup>245)</sup>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 외근 근무중이었던 참고인 김○○는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지 방문 일주일 후에 문경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건에 대한 혀위보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문경경찰서장이 사건에 대해 혀위보고를 한 것은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sup>246)</sup>

또한 1950년 1월 24일자 미국동군총사령부 군사정보처 정보요약 제2694호는 국방장관 신성모의 군사시설 방문과 관련하여 195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안동에 주둔한 제25연대 지역 내 군사시설을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申泰英) 소장과 함께 시찰했고,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군은 일반 국민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사건의 전말을 숨기고 있는데, 보고 당시까지 신문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sup>247)</sup>

1960년 신문 기사 분석 결과,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확인되는 또 하나의 사항은 사건 발생 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현지를 답사 또는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지답사 또는 방문 일정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sup>248)</sup> 10일 후<sup>249)</sup> 등으로 알려져 있다가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부터는 사건 발생 당시 면장이었던 황중교(黃仲教)의 증언을 토대로 1950년 1월 8일로 ‘특정’되었다.<sup>250)</sup> 반면 현지를 답사 또는 방문한 국방장관 신성모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거나<sup>251)</sup> 당시 문경군수 이정희(李正熙)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圓)을 주었다<sup>252)</sup>고 전했으나,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석간에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칼과 배짱으로 학살자를 잡지 못했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에는 신성모가 ‘위자료’ 100만 원(圓)을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전달하면서 이 돈으로 집을 새로 짓고 살면서 “쇠죽창을 만들어 공비를 막아라”는 말을 하

245) 김○○ 진술조사(2차), 4쪽.

246) 김○○ 진술조사, 8쪽; 김○○ 진술조사(2차), 4~5쪽.

247) 언론의 군 관련 보도에 있어서 1950년 1월 10일 「군보도취급규정」이 공포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 1945~1990』, 1994, 65쪽).

248)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249)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250)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251) 『대구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19일자 조간.

252)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4일자, 『대구일보』 1960년 6월 4일자 조간, 『영남일보』 1960년 6월 5일자.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서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문경군수 이정희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행방이 보도 당시에는 묘연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대구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조간,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



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석간에는 제3대 민의원 윤만석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장관과 법무장관, 그리고 민의원 의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게재되었는데, 윤만석 의원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신성모(申性模)] 씨가 조사를 하고서도 양민을 빨갱이라고 호도하여 중대한 사건을 유야무야시켰으므로 마땅히 재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가 사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한 이후 사건의 내용을 호도하거나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즉,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 상급부대 지휘관 전보 정도로 그것을 적당히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조사단 경북반은 사건 발생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현지 방문과 관련하여 신성모가 사건의 현장이 아닌 김릉국민학교를 방문한 것은 1950년 1월 8일이었으며, 이들 일행의 방문 소식은 미리 전달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4~50명의 주민들에게 “죽창을 만들고 식칼을 가지고 공비를 잡어야 한다”며 “돈 백만 원을 군수를 줄 테니 그 터에 집을 짓고 잘 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증언을 청취하였다.<sup>253)</sup>

문경경찰서장의 직위해제에 대해서 당시 문경경찰서 특공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참고인 김○○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현지를 다녀간 후 사나흘 뒤에 직위해제되었으며, 이는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sup>254)</sup>

참고인 김○○는 사건에 대한 수습은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의 후임인 김이화가 다 하였는데, 후임 문경경찰서장은 사건의 주체가 국군인지 공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습을 했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sup>255)</sup>

당시 산북면사무소 호적사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86명에 대한 호적을 모두 처리하였다며, 호적정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사망자의 경우 병사 등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인 상주지원에 문의를 했고, 상주지원은 문경경찰서에 사망경위를 받아 처리하라고 하였다. 이에 문경경찰서에 사망경위를 문의하니 문경경찰서 측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후 상주지원 호적담당 김○○의 메모를 보고 희생자들의 호적을 정리하였는데, 받은 메모에 적

253)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경북반)」, 『제4대 국회(제35회) 건의안에 관한 서류 (2)』, 대한민국 국회, 43쪽.

254) 김○○ 진술조서, 9~10쪽.

255) 김○○ 진술조서, 10쪽.



한 내용이 제적부에 사망사유로 들어가 있는 “공비출몰총살로인하야사망(共匪出沒銃殺로  
因하야死亡)”이라는 문구였다고 진술하였다.<sup>256)</sup>

사건 발생 당시 군인들을 석달마을로 안내한 참고인 노성근은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선암리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지내주라고 했고, 선암리 구장이 마을 사  
람들을 불러 모아 구장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고인 노성근은 사건  
발생 이후 산북지서와 문경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장성환과 함께 출두를 하였는데, 산북지  
서에서 2일, 문경경찰서에서 3~4일 정도를 보냈다고 하였다.<sup>257)</sup>

#### 다. 소결

미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 문경  
경찰서장 이의성 경감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

현재 입수된 이의승의 이력서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에서 주장되어온 바와 같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또는 은폐·조작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직  
위해제되었다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의승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한 점은 사실로  
확인된다. 즉,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에 의해 사건 내용이 은폐된 채 상부에 허위보고 되었  
다.

아울러 제7중대장 유응철 대위와 제3소대장 유진규 소위가 사건의 은폐·조작에 개입  
한 내용도 미군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에 대한 최초의 보고 내용, 즉 계릴라  
70명이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후의 보고서에서 허위보고임이 드러난 사실에서 확인된  
다.

국방장관 신성모의 김룡국민학교 방문과 유족 강연, 그리고 구호물자 지원을 통해 그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승만에게까지 정  
확한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방장관 신성모가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살아남은 주민을 적당히 위로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호도하고 몇  
몇 지휘관 문책 등의 방법으로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1월 15일 제2사단장 및 제3사단장의 교체는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 추궁 때문

256) 황○○ 진술조서, 2~4쪽. 또한 황○○은 당시의 호적처리 절차에 대해 사고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연사는 신청인과 마을 이장  
의 확인도장을 받고 산북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처리가 되었으나, 본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었기에 이에 대한 처리 및 절차를 호  
적사무의 관할 법원인 상주지원에 문의해서 상주지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망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실대로 다시 정정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황○○ 진술조서, 4~5쪽)  
257) 노성근 진술조서, 12~13쪽.



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교체 사유가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국방부가 군보도취급규정 등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군 관련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신성모가 직접 사건 현장 인근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의도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던 1950년 2월 13일자 사회부 차관 최창순의 「경상북도 관내 소란지구 피해실정 조사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사건을 “폭도의 피습으로 인한 피해”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6. 법적 측면

### 가. 사건 당시 법적 상황

사건 당시는 정부 수립 후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sup>258)</sup>이 헌법원칙이었으며,<sup>259)</sup> 특히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는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으로써 「제헌헌법」, 「구형법」, 「구형사소송법」,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발효되고 있었다.<sup>260)</sup>

### 나. 가해행위의 불법성

단지 공비 또는 뱉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국가기관인 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258) 국가비상상태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계엄주의 특별조치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953.10.8. 헌위결정4286 헌위2)
- 비상계엄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1985.5.28. 대판81 도 1045)

259)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60)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정부 수립 이전의 법령이 당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1950년대 판례들을 보아도 의용일제법령이나 미군정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4288형상87(1955. 7. 8) ; 대법원 4288행상22(1955. 5. 31) ; 대법원 4287 형상5(1955. 2. 25) ; 대법원 4287민상118(1954. 5. 26) ; 대법원 4286형상162(1953. 11. 23) ; 대법원 4285민상 118(1952. 2. 12) 등.

않고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sup>261)</sup>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sup>262)</sup>과 적법절차 원칙<sup>263)</sup>,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구)형법」<sup>264)</sup>, 「국방경비법」<sup>265)</sup>, 「국가보안법」<sup>266)</sup> 등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

- 261)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쪽에서, 군 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 262) 생명권이 – 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있으나 –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설
    -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 ③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 ④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 헌법재판소의 입장(현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비통을 둔 선협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가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 263) 이 원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들 수 있으며, 제4조에서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정 포고(USAMGIK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원칙처럼 명시적으로 당시 헌법에 언급(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264) 구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1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명치 45)년이래로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장(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에 간첩죄와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65) 「국방경비법」은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와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전시범죄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였다.
- 266)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



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형법」, 「국가보안법」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제2, 제3소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의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방조·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책임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sup>267)</sup>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sup>268)</sup>

제헌헌법<sup>269)</sup>과 국가배상법<sup>270)</sup>상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은 공무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 질 때에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게 귀속시키고자 하고 있다.<sup>271)</sup>

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267) 국제형사재판소(I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Prosecutor v. KA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

•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8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lo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Oo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268) 전범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 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 : 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막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69) 제헌헌법(1948)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70) 제헌헌법 제27조의 이해법률인 「국가배상법」이 1951년 9월 8일 법률 제231호로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진정 입법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국가배상법」이 사건 이후에 제정되었지만, 국가책임이 발생한다는 원칙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서는 해당 협약 조문과의 비교와 성립요건을 위해 인용하였다.

국가배상법(1951) 제2조.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다. 소결

결론적으로, 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행위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명백한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빨치산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여성, 아동,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적 필요에 비례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살해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피해 원칙에도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sup>272)</sup>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특히 미군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군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처형한 것은 불법적인 지시·명령을 내린 군 지휘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 7. 사건 현장

### 가. 조사 방향

1949년 12월 24일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고, 그 사건의 현장을 현재는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건 현장에 대한 이와 같은 특정은 당시 현장 생존자들의 진술 청취, 사건 현장과 관련된 미군 자료 및 미군 지도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71) 해석근거가 되는 판례로는 「대판 1996.2.15. 95다38677」이 있다.

272)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의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나. 조사 내용

1차 현장조사는 유족회 회장 채의진(현장 생존자 겸), 현장 생존자 채홍빈·채옥진 등 3명과 동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장소를 이동했으며, 확인한 장소는 제1현장(마을 앞 논, 현재 포도밭) → 제2현장[마을 뒤 산모퉁이, 현재 ‘이름 없는 아기 시비(詩碑)’ 옆] → 중석굴(현장 생존자 은신처) → 위로금으로 새로 지은 집들 → 김룡국민학교 터(현재 폐교) 등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현장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73)</sup>

제1현장과 관련하여 당시 상선암에서 석달마을까지 군부대에게 길을 안내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최초에 군인들은 석봉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고, 석달마을은 석봉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군인들이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군인들은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 것을 보니 빨갱이 마을이 틀림없다’며 마을에 있던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에 놀라 또는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으로 모이게 한 후 사격을 하였다. 이 때 마을 입구 언덕에서 논바닥을 향해 바주카포 등으로 사격을 했고, 1차 사격 후 살아난 사람들에게 재차 총격을 가할 때는 M-1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문경경찰서장 이하 경찰관들과 함께 당시 점촌읍에서 「국민 사진관」을 운영하던 황○○이 동행하여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1958년경 직접 목격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4·19 직후 다시 찾아가 현장사진들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미 불태워버렸다고 하였다.<sup>274)</sup>

한편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의 시신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군인들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태웠다고 알려졌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하나는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군인들이 석봉리 원동마을을 거쳐 가면서 저 건너 마을(석달마을) 사람들이 죽었으니 가서 수습해라는 말을 듣고 봄늦게 친척을 찾아 횃불을 들고 현장에 왔는데, 당시 횃불에서 떨어진 불똥이 시신의 솜옷 등에 옮겨 붙어 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마을에 있던 가옥 24호가 전소되는 바람에 초가지붕의 불똥이 역시 시신의 솜옷 등에 옮겨 붙어 탔다는 것이다.

273) 증언은 대부분 채의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장조사 당시 증언 내용과 이후 조사과정에서 유사하게 진술했던 내용은 진술조사서에서 인용하였다.

274) 채의진 진술조서, 13쪽.



제2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3명 모두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생존한 사람들이어서 제1현장에 대한 상황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김룡국민학교 학생 14명이 제2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문경중학교 설립 공출 벼 7가마를 가지고 석달마을로 돌아오던<sup>275)</sup> 마을 청년 7명(반장 1명, 반원 6명)이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 2명에 의해 붙잡혀 있었다. 이들은 제2현장에 있던 바위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고, 제1현장에서 1차 및 재사격을 마치고 제2현장으로 이동하던 군인들과 마주쳤으며, 이 때 당시 석달마을 반장이 군인들에게 ‘항의’하자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항의’를 받은 군인은 아님) 총격이 시작됐다. 제2현장의 바위틈에 빗겨나 있던 학생들의 피해는 다소 적었으나,(14명 중 6명 사망, 8명 생존) 반대편에 있던 마을 청년들은 7명 중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그러나 현장 생존자들에 의하면, 당시 총을 쏜 군인들은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을 군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M-1과 철모, 그리고 국방색의 군복을 휴대 및 착용한 완전무장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76)</sup>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들이 추위를 피했던 중석굴과 관련해서는 당시 석달마을 인근 지역에는 일제시대부터 중석굴이 많았고, 이 중석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하였다. 마을에 있던 중석굴도 그 중에 하나였으며, 군인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생존자가 모여들었는데, 중·경상자들을 점촌읍 내 재생병원 및 김천도립병원으로 후송됐고, 인근 친척집으로 바로 가지 못한 10여 명이 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각자의 친척집으로 갔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 중에는 경상부터 중상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입은 부상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생존해 있으나 당시의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안 전체가 절멸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살아났다고 하여도 생계를 이어나갈 경제적인 능력이 미쳐 구비되지 못하여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곤궁하게 삶을 이어오고 있는 유족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가 1950년 1월 17일(김룡국민학교 학사보고서철) 김룡국민학교를 방문

275) 문경중학교는 1949년 설립되었는데, 당시 설립 자금이 모자라자 문경군 내 각 마을에서 설립에 필요한 만큼의 벼 공출을 했고, 이에 석달마을도 석봉리 이장에게 일곱 가마를 내놓았다. 그 후에 다시 현물을 가져가고 대신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사건 발생 당일 마을 청년 7명이 석봉리 원동마을에 가서 이를 다시 가져오던 길이었다고 한다.

276) 채의진 진술조서, 4~5, 6, 9쪽.



하여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나누어 각 호당 1만 6,000원(圓)의 새 집(10평 남짓의 일자형 흙집) 14호 정도를 지었다고 하였다.<sup>277)</sup> 국방장관 신성모의 ‘위로금’으로 새로 지어진 집들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물론 이후 약간의 보수를 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집들을 확인하였다.

국방장관 신성모가 다녀갔다는 김룡국민학교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신성모의 김룡국민학교 방문 전 문경경찰서장 이의승이 채의진이 기거하던 외갓집으로 찾아와 국방장관이 와서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 하라고 말했고, 국방장관 신성모 방문 당일에는 교장실에서 김룡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채의진에 대한 칭찬을 들은 신성모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sup>278)</sup>는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석달마을 일대 및 김룡국민학교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사진 1〉 배너미산을 등지고 내려다 본 석달마을 전경

277) 채의진 진술조서, 17~19쪽.

278) 채의진 진술조사에서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김룡국민학교를 방문했던 당일 교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난 뒤라고 되어 있다. (채의진 진술조사, 17쪽)



〈사진 2〉 제1현장(당시 석달마을 앞 논, 현재 포도밭)



〈사진 3〉 제2현장 위치 특정 및 당시 상황 재연

2차 현장조사 당시에는 본 사건의 현장 두 곳(마을 앞 논,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미군 자료에 나타나는 국군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현장을 일부 찾아 확인하였다.<sup>279)</sup>

279) 문경 석달 사건 및 국민보도연맹사건 출장조사 보고(조사3팀-50, '06.12.26.), 5쪽.



〈사진 4〉 제1현장에서 바라본 석달마을 뒤 배너미산



〈사진 5〉 제2현장에서 바라본 제1현장

미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은 Sok Pal Ri,<sup>280)</sup> Sok Tal Ni,<sup>281)</sup> Sok Tal village<sup>282)</sup>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지명과 함께 병기된 석달마을의 좌표는 1118-1542였는데, 이 좌표를 MUN'GYÖNG(SHEET 6824 III, AMS Series L751)<sup>283)</sup>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의

280) 1949년 12월 30일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부 일일정보보고 제238호.

281) 1950년 1월 11일자 주한 미 육군 무관이 워싱턴 육군부 정보국과 주일 극동군최고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전문, ARMA 10.

282)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개인 서한철.



좌표로 표현하면 DS292638(52SDS292638)이었고, 지도상에 이 지점은 배너미산의 북북동 지점으로 해발 약 330미터였다. 동 도엽에 나타나 있는 석달마을(Soktal-li)의 좌표는 1119.3-1541이었고, 다른 좌표로 표현하면 DS304629(52SDS304629)였다.

다음으로 상선암은 미군 자료에는 Sangson-an Dong으로 표기되었고, 좌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MUN'GYÖNG(SHEET 6824 III, AMS Series L751, 이하 ‘문경 도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Sangson-ni로 표기되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는 1119-1539이었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83497(52SDS283497)이었다. 또한 갈평리는 미군 자료에서는 Kal Pyong Ni로 표기되었고, 좌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문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Kalp'yong-ni로 표기되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는 1114.2-1550.2였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57713 (52SDS257713)이었다.

예천과 점촌은 상기 도엽 인근에 있는 YECHÖN(SHEET 6823 I, AMS Series L751, 이하 ‘예천 도엽’),<sup>284)</sup> HAMCH'ANG(SHEET 6824 IV, AMS Series L751, 이하 ‘함창 도엽’)<sup>285)</sup> 도엽에서 확인하였다. 예천은 미군 자료에서는 Yechon으로 표기되어 있고, 좌표는 1142-1534였는데, 이 좌표를 예천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의 좌표로 표현하면 DS507541(52SDS507541)이었고, 지도상에 이 지점은 Yech'on의 Singi-dong으로 되어 있었다. 다음 점촌은 미군 자료에서는 Jomchon으로 표기되어 있고 좌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함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동 도엽에서는 Chömc'h'on-ni로 표기되어 있고, 이 지점의 좌표는 1117.7-1526.7이었으며, 다른 좌표로 표기하면 DS283497 (52SDS283497)이었다.

미군 자료에서 수색정찰의 대상이 되었던 석봉산(Sokpong San, SUK BONG SAN), 달비산(Talbi San, DUK BI SAN), 단산(Tansan, TAN SAN) 등은 좌표 값이 기재될 만큼의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데, 이들의 좌표를 문경 도엽에서 확인한 결과, 석봉산은 1117.6-1545.3(DS288688, 52SDS288688), 단산은 1115.7-1541.3 (DS271630, 52SDS271630)이었으나, 달비산은 문경 도엽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283) 이 지도는 1942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284) 이 지도는 1937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285) 이 지도는 1935년에 제작된 일본 육지측량부(Japanese Imperial Land Survey)의 1:50,000 조선지도를, 1949년 미육군지도창이 육군 공병단의 지휘하에 수정 발행한 것이다.



## 다. 소결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발생하였으며, 석달마을 내 현장은 마을 앞 논(제1현장)과 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 등 두 곳으로 특정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석달마을은 미군 자료에서도 좌표로 나타나는데, 이를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입수한 당시 미군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 V. 결론 및 권고

### 1. 결론

- 가. 김원지(金遠池) 외 85명은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
- 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23일 16:00시경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 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천을 각각 출발하였다. 점촌을 출발한 제2소대는 호계면 하선암을 거쳐 상선암으로, 예천을 출발한 제3소 대는 동로면 수평리 → 산북면 소야리 → 산북면 거산리 → 산북면 우곡리(도치골, 황새골, 읍실)를 거쳐 상선암으로 이동하여 12월 24일 10:00시경 합류하였다. 상선암에서 합류한 제2소대 및 제3소대 약 70여 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인근 지역 주민 장성환과 노성근의 길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 · 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제1현장)에서 총살하였으며, 이 때 주민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재차 총살하였다. 한편 마을을 포위 · 경계하던 군인들은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석봉리 원동마을에서 돌아오던 마을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을 총살하였다.
- 다. 조사 결과, 사건의 희생자는 김영춘(金永春, 다-451호, 다-893호), 채남진(蔡南鎮, 다-451호, 다-893호), 장수금(張水金, 다-581호), 김분이(金分利, 다-581호), 이미분(李美粉, 다-581호), 이점술(李點述, 다-581호), 김용환(金容煥, 다-684호, 다-893호), 김원지(金遠池, 다-705호, 다-893호), 김악이(金岳伊, 다-705호, 다-



893호), 채명진(蔡銘鎮, 다-705호, 다-893호), 정정희(鄭貞姬, 다-705호, 다-893호), 홍남양(洪南陽, 다-729호, 다-893호), 채주액(蔡周硯, 다-730호), 이계용(李桂用, 다-730호), 채아기(다-730호), 채주민(蔡周民, 다-731호), 장영희(張永姬, 다-731호), 채갑진(蔡甲鎮, 다-731호), 채훈진(蔡熏鎮, 다-731호), 채갑순(蔡甲順, 다-731호), 채대진(蔡大鎮, 다-731호), 채외순(蔡外順, 다-731호), 채점식(蔡點植, 다-731호), 채홍복(蔡鴻福, 다-731호), 김임섭(金任燮, 다-893호), 채성순(蔡成順, 다-893호), 채두용(蔡斗龍, 다-893호), 채영해(蔡永海, 다-893호), 김병철(金丙喆, 다-893호), 권화일(權花一, 다-893호), 이□□(李□□: 권화일의 처, 다-893호), 권기매(權基梅, 다-893호), 채주태(蔡周泰, 다-893호), 채창진(蔡昌鎮, 다-893호), 정치수(鄭致秀, 다-893호, 다-2758호), 박원연(朴元連, 다-893호, 다-2758호), 장차양(張且陽, 다-893호, 다-2758호), 정아기(다-893호, 다-2758호), 황기수(黃基秀, 다-893호), 엄계홍(嚴桂紅, 다-893호), 황출주(黃出周, 다-893호), 황의인(黃義仁, 다-893호), 황갑순(黃甲順, 다-893호), 황점용(黃點龍, 다-893호), 황아기(다-893호), 황기해(黃基海, 다-893호), 황석주(黃石周, 다-893호), 황봉구(黃鳳九, 다-893호), 채순례(蔡順禮, 다-893호), 남수영(南秀永, 다-893호), 이경대(李京大, 다-893호), 남수창(南秀昌, 다-893호), 남희목(南喜木, 다-893호), 남아기(다-893호), 박재춘(朴在春, 다-893호), 김봉자(金鳳子, 다-893호), 박아기(다-893호), 채주락(蔡周洛, 다-893호), 전본동(全本東, 다-893호), 채주순(蔡周順, 다-893호), 정순연(鄭順連, 다-893호), 채철진(蔡徹鎮, 다-893호), 채만출(蔡萬出, 다-893호), 김수용(金壽用, 다-893호), 우일분(禹一粉, 다-893호), 김병영(金炳英, 다-893호), 김상연(金尙連, 다-893호), 김병준(金炳俊, 다-893호), 채명분(蔡明分, 다-893호), 채주철(蔡周轍,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권가국(權佳局, 다-983호,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세진(蔡洗鎮, 다-983호), 민접연(閔接連, 다-983호), 채홍목(蔡鴻牧, 다-983호), 채순희(蔡順喜, 다-983호), 정유생(鄭有生, 다-989호), 채미준(蔡美俊, 다-989호), 채홍수(蔡鴻洙, 다-989호), 김명월(金明月, 다-990호), 전병하(全炳河, 다-990호), 전춘달(全春達, 다-990호), 전병기(全炳琦, 다-990호), 전가자(全嘉子, 다-990호), 채홍명(蔡鴻明, 다-1003호), 황양동(黃陽洞,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채형진(蔡瑩鎮, 다-2438호, 다-3469호, 다-7462호) 등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다.



- 라. 사건의 희생자는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던 동네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 대부분이[69.8%(60명)] 20세 이하 51세 이상의 노약자와 청소년이었으며, 국민학생 6명을 포함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5.6%(22명)나 되었다.
- 마. 또한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석달마을에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이 출몰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들에게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고서 이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 협력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가해 부대는 석달마을 인근의 석봉산과 단산 등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는 갈평리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공비토벌작전중의 지역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건은 이러한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국군은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가옥에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에서 곧바로 집단총살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의 총격 역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 사건의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해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제2사단장 송호성(宋虎聲) 준장, 제25연대장 유해준(俞海濬) 중령, 제2대대장 권정식(權禎植) 대위, 제7중대장 유응철(劉應澈) 대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 중사, 제3소대장 유진규(俞鎮奎) 소위였다.
- 아. ‘제2소대장 대리’ 안택효와 제3소대장 유진규는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달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하였던 초급 지휘관이었다. 제7중대장 유응철은 현장에서 주민 총살을 명령하였던 지휘관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 한편 제25연대장 유해준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고, 제2사단장 송호성과 제3사단장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방장관 신성모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



부[사령관 이성가(李成佳) 대령]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

- 자. 이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sup>286)</sup> 하는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급한 전투 상황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것도 상당수가 노약자나 부녀자인 동네 주민 전원을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 2. 권고

### 가.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문경 석달 사건은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 등이었던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 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것은 상황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죄과이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빨갱이’로 낙인찍혔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이나 죄인처럼 살아온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국가는 과거 국군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국가는 현재 생존한 부상자들에 대해 그 부상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임을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비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건 관련 유족들의 생계 상황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나. 화해 조치

국가는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위령제를 봉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분담하여야 한다.

286) 「대한민국헌법」(제정 1948. 7. 17 헌법 제1호) 제6조.



## 다. 재발 방지

국가는 전시하에서 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살상을 막을 수 있는 제반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비교전상태에서 재판에 의하지 않는 민간인 집단총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군 장병들, 특히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내용은 물론 전쟁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라. 기록 정정

호적은 기재 사항에 대한 공시·공증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 사항이 “일응(一應)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현재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제적부상에는 이들이 사건 현장인 석달마을에 출몰한 공비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

국가는 새롭게 규명된 진실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sup>287)</sup>를 통해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호적을 사실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 마. 평화인권교육

국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써어진 공식 역사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규명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문경 석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287) 법적 절차를 통한 호적정정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등재 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등에는 특별법에 이와 관련된 조문이 있다. 즉, 특별법상에 각종 재난 등의 사유로 호적부가 소실되어 누락되어 있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0.4.29 대법원규칙 제1648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4. 6. 1 대법원규칙 제1890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제정 2004. 6. 29 대법원규칙 제1895호)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등재 등’에 관한 업무는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도 기본법에 호적등재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호적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 함평 11사단 사건

### 【결정사안】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 11. 20. 경부터 1951. 1. 14.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면 덕림리 및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인근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 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 대위) 군인들에게 집단총살 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부상을 당했다.
2.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군 주민이었으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고,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6.5%,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3.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 가. 함평군 월야면 장교·동촌·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팽파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 나.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은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 다. 함평군 월야면 남산뫼 사건은 전날 밤 봉화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 라.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 마.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 바.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총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마을의 경제력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하였고, 실제로는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거주민은 이들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4.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성대·모평마을 및 우치리에서는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명단을 보고 지목하여 총살하였고, 그리고 외치리에서는 주민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덕림리에서는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5중대 초소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5. 사건의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6.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 현장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한 지휘관이었고, 20연대장과 2대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清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연대에 지시하였다. 이후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전보조치가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사단의 지휘·명령계통 상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7.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주민을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이었다. 빨치산 토벌이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그것도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포함된 지역 주민을 재판 등의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8.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또 유족들은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운 것에 주목하여,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가는 전쟁발생 시기나 위기 사태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 【전 문】

【사 건】 다-1254 외 183건 함평11사단사건

【신청인】 노병량 외 183명

【결정일】 2007. 7. 3.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 개요

#### 1. 사건 접수 및 처리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시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그리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이 신청한 사건 건수는 192건, 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총수는 283명(부상 9명 포함)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서 검토 후 조사개시 결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개시 결정 설명회, 본 조사의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네별 신청서 접수내역과 추정 피해자 및 피해인원은 <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수)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8건·6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23	20060209	오준열	1949	오봉근	37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2	1224	20060209	정양수	1937	정진국	42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3	1225	20060209	유우현	1962	유재섭	23	1950	1127	신청인의 백부	1
4	1226	20060209	정옥순	1934	유태열	30	1950	1127	신청인의 시숙부	1
5	7238		정옥순						중복신청	
6	1227	20060209	정종화	1944	정성규	36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7	1228	20060209	오칠근	1930	오펠근	15	1950	1127	신청인의 동생	1
8	7239		오칠근						중복신청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3건·9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2	20060209	박양순	1948	박두남	51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모 김순란, 삼촌 종한 고모 순심, 아기(호적 미등재)	5
2	1203	20060209	한정옥	1944	이복녀	34	1950	1206	신청인의 모, 아기(호적 미등재)	2
3	1204	20060209	강풍전	1940	이순득	29	1950	1206	신청인의 모, 아기 1명(호적 미등재)	2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8건·11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96	20060209	서백수	1929	서만동	49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2	1197	20060209	서창복	1951	서석암	5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3	1198	20060209	곽진관	1963	곽판용	51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1
4	1199	20060209	곽상태	1933	곽석연	43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5	1200	20060209	서창호	1944	서용기	49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6	1201	20060209	곽상덕	1941	곽지연	42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7	1205	20060209	박종인	1940	박소남	44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8	2869	20060407	김희태	1969	김삼금	45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고모 조순, 당숙 성애, 상율	4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2건·2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318	20060216	이덕부	1941	이연범	3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2	3487	20060515	이재하	1940	이판금	42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10건·10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88	20060215	임일수	1949	임봉수	27	1950	1206	신청인의 사촌형	1
2	1189	20060215	임일수	1949	임양수	24	1950	1206	신청인의 사촌형	1
3	1190	20060215	임일수	1949	임선진	40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4	1191	20060215	김매화	1941	김병수	35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5	1192	20060215	김주섭	1947	김수성	26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6	1193	20060215	노도출	1947	노병훈	27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7	1194	20060215	이종철	1942	이수범	31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8	1195	20060215	유귀복	1928	노병조	23	1950	1208	신청인의 남편	1
9	1206	20060209	노선균	1950	노병식	25	1950	1206	신청인의 부	1
10	1207	20060209	노필귀	1955	노준기	53	1950	1206	신청인의 조부	1

## 〈함평군 월야면 남산뫼〉

76건·80명, 부상 8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27	20060209	정민봉	1950	김갑순	34	1950	1207	신청인의 양모	1
2	1128	20060209	정진억	1940	정진덕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	1129	20060209	정상수	1940	최용례	38	1950	1207	신청인의 모, 형 천수	2
4	1130	20060209	정기문	1955	정종문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5	1131	20060209	심춘택	1961	심용기	12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6	1132	20060209	정근우	1942	정길문	31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	1133	20060209	정근한	1938	정동수	20	1950	1207	신청인의 삼촌	1
8	1134	20060209	정태환	1942	정계환	1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9	1135	20060209	정충섭	1922	정방섭	21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10	1136	20060209	정득모	1937	정병모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1	1137	20060209	정홍순	1941	정진철	19	1950	1207	신청인의 오빠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2	1138	20060209	정부덕	1950	정동모	20	1950	1207	신청인의 사숙	1
13	1139	20060809	오공숙	1939	정민모	19	1950	1207	신청인의 사숙	1
14	1140	20060209	이순례	1925	정진발	20	1950	1207	신청인의 사동생	1
15	1141	20060209	정진천	1950	정창진	1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6	1142	20060209	정재문	1933	정재호	22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7	1143	20060209	김선행	1953	김순애	17	1950	1207	신청인의 고모	1
18	1144	20060209	김재익	1938	김재만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19	1145	20060209	정진임	1950	정옥모	30	1950	1207	신청인의 부, 삼촌 기모	2
20	1146	20060209	정병호	1947	정재환	21	1950	1207	신청인의 삼촌	1
21	1147	20060209	정계수	1950	정중진	23	1950	1207	신청인의 부친	1
22	1148	20060209	정진정	1951	정문모	33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3	1149	20060209	정공진	1949	정양모	3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4	1150	20060209	정칠진	1951	정진봉	43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25	1151	20060209	정응모	1936	정병모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26	1152	20060209	안춘자	1939	정근모	16	1950	1207	신청인의 사삼촌	1
27	1154	20060209	정길호	1965	김유순	54	1950	1207	신청인의 모	0
28	1155	20060209	정석봉	1936	정동석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동석, 동섭	2
29	1156	20060209	이경범	1946	이사석	3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0	1157	20060209	정윤철	1948	정홍섭	30	1950	1207	신청인의 양부	1
31	1158	20060209	정진섭	1944	정봉수	47	1950	1207	신청인의 양부	1
32	1159	20060209	오영남	1934	정달모	20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33	1160	20060209	정방수	1950	정진철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4	1161	20060209	이재환	1945	이점동	40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5	1162	20060209	정기훈	1948	정남섭	3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36	1163	20060209	정운섭	1939	정봉섭	23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7	1164	20060209	정송모	1939	정근모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38	1165	20060209	윤만중	1938	윤필중	18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39	1166	20060209	윤납순	1946	정상휴	36	1950	1207	신청인의 사부	1
40	1167	20060209	정진자	1957	정익모	44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41	1168	20060209	조병술	1936	조병혁	31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2	1169	20060209	정을호	1953	정병선	18	1950	1207	신청인의 사삼촌	1
43	1170	20060209	정진재	1928	정진차	15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44	1171	20060209	정공열	1944	정현수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5	1172	20060209	정복기	1972	정현기	13	1950	1207	신청인의 백부	1
46	1173	20060209	이옥희	1937	이계순	17	1950	1207	신청인 언니 계순	1
47	1174	20060209	정옥기	1947	정해로	16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48	1175	20060209	정창호	1947	정영관	36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49	1176	20060209	김선영	1939	김영섭	32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0	1178	20060209	정유순	1946	정봉휴	37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1	1179	20060209	정재모	1960	정재복	27	1950	1207	신청인 백부 재복, 흥섭	2
52	1180	20060209	정은균	1954	정재섭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3	1181	20060809	정경숙	1941	정병섭	30	1950	1207	신청인의 사부, 시모 김명자	2
54	1182	20060209	백삼남	1924	정광열	26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시동생 말동	2
55	1183	20060209	정남숙	1928	정남숙	22	1950	1207	본인	0
56	1184	20060209	정영수	1946	정진을	30	1950	1207	신청인의 숙부	1
57	1185	20060209	정영위	1949	정동휴	25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58	1186	20060209	정근욱	1949	정동기	19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59	1187	20060209	노홍용	1929	정귀님	15	1950	1207	신청인의 처	1
60	1314	20060216	김흠선	1937	정기찬	24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61	1315	20060216	정귀례	1938	정맹모	41	1950	1207	신청인 부, 언니 차임	2
62	1316	20060216	정용운	1931	정열	15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63	1317	20060216	정길수	1940	정진기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0
64	2243	20060308	정종욱	1927	정삼근	14	1950	1207	신청인의 동생	1
65	2244	20060308	김윤선	1949	김도담	16	1950	1207	신청인의 누나, 윤월, 쌍순	3
66	2245	20060308	정순남	1935	이상숙	30	1950	1207	신청인의 남편	0
67	2872	20060407	정연순	1930	정병우	23	1950	1207	신청인 남편, 동생 민선	2
68	2974	20060412	정재형	1943	정태섭	28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69	3752	20060529	배정자	1938	정계형	34	1950	1207	신청인의 사부	1
70	3898	20060612	정기옥	1955	정희섭	18	1950	1207	신청인의 부	0
71	3900	20060612	정필립	1933	정필봉	24	1950	1207	신청인의 오빠	1
72	4267	20060710	정남진	1943	정석두	41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3	4435	20060724	정진섭	1944	정병찬	17	1950	1207	신청인의 형	1
74	4696	20060809	정진두	1937	정남선	29	1950	1207	신청인의 고종 사촌 형 정재덕, 남선	2(1)
75	6741	20061113	윤을석	1944	윤성중	29	1950	1207	신청인의 부	1
76	1153	20060809	정이재	1969	정봉원	33	1950	1207	신청인의 백부, 정원	2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4건·15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9	20060209	이순열	1942	이남열	18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2	1210	20060209	이상구	1950	이상근	16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3	1211	20060209	정호현	1948	정기봉	20	1950	1209	신청인의 부	1
4	1212	20060209	정판수	1954	정기업	19	1950	1209	신청인의 숙부, 기순	2
5	1213	20060209	정기정	1940	정기선	14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6	1214	20060209	이용현	1936	이계주	23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7	1215	20060209	정용현	1950	정기동	31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8	1216	20060209	정귀현	1952	정갑현	14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9	1217	20060209	정석현	1946	정석봉	15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0	1218	20060209	정재선	1937	정달선	15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1	1219	20060209	정병원	1953	정기복	17	1950	1209	신청인의 숙부	1
12	1220	20060209	정동현	1951	정상현	17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13	1221	20060209	정종성	1973	정만선	25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14	1222	20060209	정재준	1956	정기우	21	1950	1209	신청인의 형	1

##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사정마을)〉

7건 · 10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121	20060209	김승원	1947	김기복	64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2	1122	20060209	김수창	1942	김담봉	51	1950	1209	신청인의 부, 모 박삼봉	2
3	1123	20060209	김완기	1929	김용길	57	1950	1209	신청인의 부, 모 이계례	2
4	1124	20060209	김완기	1929	김양임	14	1950	1209	신청인의 여동생	1
5	1125	20060209	김호옥	1934	정감산	58	1950	1209	신청인의 조부	1
6	1126	20060209	김현석	1953	안명임	20	1950	1209	신청인의 모, 형 맹수(호적 미등재)	2
7	2870	20060209	오정수	1948	오경선	15	1950	1209	신청인의 삼촌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

10건 · 28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30	20060209	김형술	1928	김영만	59	1950	1231	신청인의 부	1
2	1231	20060209	장재수	1938	장진섭	48	1950	1231	신청인 부, 모 조운여, 숙부 순섭, 숙모 정암댁, 여동생 이님 재님(호적미등재)	6
3	1232	20060209	김종회	1934	노월산	35	1950	1231	신청인의 모, 여동생 순덕, 아기(호적미등재)	3
4	1233	20060209	이금남	1936	이석여	72	1951	0112	신청인의 조부, 모 최봉예, 남동생 이정행	3
5	1236	20060209	박용원	1941	박영수	41	1950	1231	신청인의 부, 모 구순녀, 숙부 민수, 숙모 김연녀, 여동생 금희(호적미등재)	5
6	1240	20060209	김재귀	1944	김만엽	52	1950	1231	신청인의 부, 신청인의 백부 경엽	2
7	1253	20060209	이정이	1961	이봉범	42	1950	1231	신청인 조부	1
8	3923	20060613	이병한	1958	이종락	29	1950	1231	신청인의 숙부	1
9	4689	20060809	장재수	1938	장아기	0	1950	1231	신청인의 여동생(호적 미등재)	1
10	1239	20060209	박희님	1941	박종순	41	1950	1231	신청인의 부, 모 정필례, 오빠 박희수, 제희옥 희관(호적 미등재)	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24건 · 61명, 부상 1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	1208	20060209	윤병용	1938	윤상수	53	1950	0112	신청인의 부, 모 김정임, 형 병길, 병식, 누님 복덕	5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2	1234	20060209	윤경중	1938	김유촌	83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1
3	1235	20060209	윤현중	1937	주순님	42	1951	0112	신청인의 모, 형 창중	2
4	1237	20060209	임기운	1952	임막동	50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윤선순, 누이 남도 명순(호적 미등재)	4
5	1238	20060209	이이범	1928	이귀범	16	1950	1231	신청인의 둘째 숙부 갑열, 숙모 한대례, 사촌 안범, 귀범, 영범, 현득, 윤범, 문범, 질녀 오목, 우범 아기(호적 미등재)	11
6	1241	20060209	윤길수	1942	윤옥중	49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7	1242	20060209	장종석	1947	장규옥	39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윤효임, 여동생 아기(호적 미등재)	3
8	1243	20060209	윤일성	1941	임상봉	55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신청인의 부 윤편술	2
9	1246	20060209	윤종길	1952	정순임	16	1951	0112	신청인의 큰어머니(혼인신고 미필)	1
10	1247	20060209	김윤임	1926	윤석열	27	1951	0112	신청인의 남편	1
11	1248	20060209	윤한봉	1970	김처녀	43	1951	0112	신청인의 조모, 백모 김용순, 누님 윤명란(호적 미등재)	3
12	1249	20060209	윤철곤	1966	윤양중	22	1951	0112	신청인의 백부	1
13	1250	20060209	김복수	1941	김기중	49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14	1251	20060209	김광현	1957	정지족	76	1951	0112	신청인의 증조모	1
15	1252	20060209	윤오중	1939	윤규삼	70	1951	0112	신청인의 부, 모 정고녀	2
16	1254	20060209	노병량	1941	노방주	35	1951	0112	신청인의 부, 여동생 병희, 아기(호적미등재)	3
17	2871	20060407	이귀성	1943	이유용	40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년도	이름	사망나이				
18	3922	20060613	최남용	1941	최희락	12	1951	0112	신청인의 오빠	1
19	4944	20060825	장종석	1947	장종석		1951	0112	본인	0
20	10830	20061130	윤길수	1942	정동용	25	1951	0112	신청인 목격 정동영	1
21	10831	20061139	윤길수 (목격자)	1942	윤덕림	22	1951	0112	윤석규, 윤석문, 윤유성, 장양림, 이평림, 모순녀	7
22	1244	20060209	윤양성	1961	정영환	28	1951	0112	신청인 큰어머니, 삼촌, 동생 금중(호적미기재)	3
23	1245	20060209	윤금복	1948	윤양삼	74	1951	0112	신청인의 조부, 모 장 분순, 고모 분덕, 동생 호순, 호남(호적미기재)	5
24	3631	20060523	채상현	1951	채병길	33	1951	0112	신청인의 부	1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8건 · 9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희생자		피해 연도	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	1054	20060209	이계준	1933	김증산	59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2	1114	20060209	이계백	1947	안귀식	29	1951	0114	신청인의 외삼촌	1
3	1115	20060209	이계백	1947	안귀순	34	1951	0114	신청인의 모, 동생 아기 (호적미등재)	2
4	1118	20060209	김재경	1946	김신광	62	1951	0114	신청인의 조모	1
5	1119	20060209	정병호	1934	정병옥	10	1951	0114	신청인의 동생	1
6	1120	20060209	고영석	1941	문앵례	68	1951	0114	신청인의 백모	1
7	1116	20060209	정병주	1937	윤칠순	42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8	1117	20060209	정태중	1968	김옥례	41	1951	0114	신청인의 모	1

## 〈소규모 희생사건〉

23건 · 33명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피해장소 및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	1229	20060209	정병화	1946	정성면	31	1950	1127	신청인의 부	1
2	555	20060103	이만희	1951	이동선 외 3	28	1950	1128	해보면 금덕리 고두저수지변 신청인의 숙부(이동선, 동기, 정열, 정기)	4
3	556	20060109	안길원	1946	안해동	43	1950	1128	해보면 문장시장 장터 신청인의 부 안해동	2
4	1049	20060209	김홍빈	1934	김기만	45	1950	1203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뒤 신청인의 부 김기만, 모 정 약순, 형수 강정순, 여동생 김인순	4
5	1173 (분리)	20060209	이옥희	1937	이병옥	27	1950	1205	삼도면 도덕리 삼도지서, 신 청인의 오빠, 실종.	1
6	1177	20060209	정윤현	1948	정창기	27	1950	1207	월야면 월야리 전하마을 신청인의 부	1
7	1319	20060216	이기신	1934	이성신	19	1950	1105	해보면 금덕리 사자등 신청인의 형	1
8	2744	20060330	이재문	1930	이용범	45	1950	1125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이용범, 모 윤효순	2
9	2862	20060407	김영휴	1932	김영만	20	1950	1213	월야면 월악리 평촌 신청인 형 김영휴(호적오기)	1
10	2868	20060407	노병철	1969	노봉래	55	1950	1129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조부 노봉래, 고모 노연자(호적 미 등재)	2
11	3223	20060426	최병수	1957	최남휴	34	1950	1207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숙부	1
12	3626	20060523	이덕행	1938	이윤선	64	1950	1222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이손동	2
13	3899	20060612	이국범	1950	이달성	27	1950	1126	월야면 양정리 신청인의 숙부	1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피해자		피해 년도	월일	피해장소 및 신청인과의 관계	인원
			이름	출생 년도	이름	사망 나이				
14	3919	20060613	윤석주	1944	윤일두	45	1950	1225	해보면 금덕리 새다리목 신청인의 부 윤일두	1
15	4104	20060704	장동규	1933	박명수	25	1950	1210	월야면 계림리 금치 신청인의 외숙	1
16	4557	20060731	배상호	1946	배판수	28	1951	0106	해보면 귀밀 신청인의 부	1
17	4558	20060731	이재삼	1948	이기범	35	1950	1205	월야면 정산리 신청인의 부	1
18	5612	20061011	양윤식	1934	양대자	40	1950	1204	월야면 용암리 은암마을 신청인의 4종간	1
19	5617	20061011	김성수	1938	김소림	16	1950	1210	월야면 용정리 신청인의 누님	1
20	6302	20061026	윤무병	1929	윤봉연	49	1950	1221	해보면 쌍구룡 신청인의 부	1
21	6306	20061026	서동기	1951	서이섭	26	1950	1130	해보면 해보리 신청인의 숙부	1
22	8485	20061130	김현필	1946	김병갑	40	1950	1227	해보면 금덕리 신청인의 부	1
23	10810	20061130	봉석	1964	봉진성	28	1950	1204	해보면 문장리 신청인의 양부	1

## 2. 신청인의 주장

함평11사단사건은 진실규명신청인들이 1950년 11월 20일 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당시 광산군 본량면 일대에서 국군 11사단(사단장 최덕신) 20연대(연대장 박기병) 2대대(대대장 유갑열) 5중대(중대장 권준옥)에 의해서 민간인 283명(부상 9명 포함)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 II. 조사의 근거와 진실규명 과제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이 사건이 기본법 제2조 1항 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하여 ① 사건의 규모 ② 지역별 형평성 ③ 국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별 대표성 ④ 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4월 25일 152건을 조사개시 한 이래 5월 30일 15건, 7월 25일 46건, 2007년 2월 6일 20건을 병합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28일 제21차 집단희생규명위는 '함평11사단사건'의 범위를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의 기간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2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 III. 조사의 방법 및 경과

### 1.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 가. 신청인 조사

사건 신청인 192명 중 2007년 6월 20일 현재 185명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7명의 신청인 중 박희님(사건번호 다-1239)은 사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채상현(다-3631), 윤금복(다-1245), 정태중(다-1117)은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다-1244)은 장애를 이유로, 정병주(다-1116)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정이재(다-1153)는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어 조사할 수 없었다.

또 신청인 이옥희(다-1173)의 경우 언니 이계순은 남산뫼에서, 오빠 이병옥은 광산군 삼도지서에서 군인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하였다.



## 나.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관련 희생자 측 참고인 18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산뫼 사건의 현장 생존자 및 월야 학도연맹원(학련), 6중대 학도의용군, 청년방위대원(청방), 구국연맹원(구련), 한새들 전투 목격자, 수해리 주민, 그 밖에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표 2〉 희생자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정일웅	현장 생존자	20060526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큰집에서 청년 1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월야지서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자는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녹범	월야 학도연맹 선전부장	20061213	월야노인회관	진술조사	해보지역에는 G-2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2는 주로 5중대 소속으로 사건이 있고 난 뒤 주민여론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6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자택	녹취	연대개시판에서 5중대 전과표를 보니 내가 사는 해보면 상곡리 작전이었어요. 적 사살 400명, 노획물 호미 괭이 곡괭이 창 죽창이라고 써있었어요. 날짜는 음력 동짓달 그믐 무렵입니다.
최인규	5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사	청방은 대기상태에 있었고 밥은 주변 마을에서 조달해 주었으며 경찰의 명령에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과 경찰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청방이 있는 마을은 순번을 정해서 밥을 나르니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성구	5중대 청년방위대원	20061213	월야면사무소	진술조사	저는 16살이었는데 살기 위해 12월초 청방에 들어갔습니다. 1중대 소속이었는데 해보중학교 옆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청방이 4군데에 있었으니 4개 중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쌍구룡사건은 본부소대 병력을 제외한 중대병력이 주도했습니다. 나는 쌍구룡에 가서 주민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중대장이 관상 보듯이 골라내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갈겼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에게도 총격을 했습니다.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정현모	해보 학도연맹원	20070118	월야면 다방	진술서	G-2는 후방에서 활동하던 정보원으로 인공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5중대 소속이었습니다. 학평사람이지만 이쪽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중대 진주 때 G-2가 중대에 정보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련도 정보수집을 하였는데, 개인감정으로 빨갱이로 왜곡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윤채병	해보 학도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빨치산과 교전을 벌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비들에게 쫓기면 회풀이로 주민을 죽이고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0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해보 학련대장이 서○○이었습니다. 학련 감찰반에 문○○, 신○○, 이○○ 등이 있었는데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폭행했습니다. 특히, 문○○은 대창으로 찔러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이 학련을 길잡이로 앞세워 마을에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윤홍병	구국연맹원	2006062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화기 소대는 해보면 중대본부와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화기소대가 주둔한 곳이 저가 뒤여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김석주	해보 대한청년단원	20060629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전쟁 전에 청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예비 군인의 개념이었습니다. 5중대 진주 후에는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청년단은 50~60명이었고 처음에는 지서 보초 임무를 수행하다 5중대장이 30명 정도를 뽑아 군 임무를 수행하는 청방이라는 조직으로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행하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해보 진주 후에도 빨치산들은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야 상면 습격이 있고 난 후에는 빨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나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불타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진채언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장교 · 동촌마을쪽에서 아침에 총소리를 듣고 전투가 벌어진 줄 알았으며, 당일 군인들이 복귀 후 장교마을 누나 집에 피해가 있는지 보려고 가다보니 동촌마을 주민 수십 명이 논과 도로변에 죽어 있었습니다.



##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장두병	주민(목격자)	20060628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신기마을 앞에 한새들이 있고 중간에 지하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투 중 공비들이 저수지 물을 터버리자 위치가 노출된 군인이 모두 논 위로 나왔고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보에 물을 넣은 것으로 봐서 공비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빨치산의 소행이었을 것입니다.
임화수	주민(목격자)	20060607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군인 한 명이 소를 끌고 가는 저에게 ‘진작부터 끌고 왔느냐’는 말을 경상도 말로 물어 못 알아듣고 그냥 “예”했습니다. 그 군인은 “너는 빨리 가”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려는 것을 피하고 도량을 건널 때 총소리가 나 뒤를 보니 군인들이 일행 중에 임광진, 김병수, 심달섭, 김종섭, 임봉수씨 등 12명을 3열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재윤	주민(목격자)	20060824	유족회 사무실	진술조사	동생 재선이 “전하마을 뒷산에서 한 사람은 죽어 있고, 세 사람은 군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으로 죽이는 것을 봤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너의 형들이 죽었다”고 해 그때 형님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신	주민(목격자)	20060720	월야복지회관	진술조사	정성면의 시신을 외치재에서 저와 둘째형이 가져왔습니다. 정성면이 끌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외치재 쪽에서 총소리가 난 후에 정성면의 부인이 우리 형제에게 시신을 찾아달라고 하여 군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 주었습니다.
윤주원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서 주민들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분첩은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군인들이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홍춘성	주민(목격자)	20060719	함평군 해보면	진술서	1950년 11월경 5중대가 해보에 진주하여 중대본부가 설치되고, 5중대장이 학도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본인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도대를 결성하였고, 이를 학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형렬	주민(목격자)	20070517	광주시 송정동 다방	진술서	사람들이 모여 있던 주막은 본량면 덕림리 412번지 인가 그래요. 12살 먹은 주막집 아들까지 데려가고 여자는 안 데려갔어요. 그 때는 법에서도 3인 이상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 3인 이상 모일 때는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고,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군인이 뒤따라 들어가 연행해 갔어요.



## 2. 가해 혐의자 및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5중대원과 월야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1소대 분대장,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 사건 당시 월야지서 토별대장 오정인, 그리고 당시 소속 중대원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또 당시 5중대 2소대원 박병인으로부터 장교, 동촌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표 3〉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황학준	5중대1소대원	20060706	서울시 은평구	진술조사	입초 서던 병사가 침낭에서 자다가 난도질을 당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월야지서 토별중대장	20061213	함평읍 월광한의원	진술조사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었으며,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월야와 삼서면 경계지역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된 사람과 부역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일호	5중대장 연락병	20070215	제주시 자택	녹화	마을 앞 들판에서 징, 팽과리를 쳐 신경이 날카로웠다. 내가 월악리(남산뫼)에서 정일웅을 살려주었다. 권준옥 중대장은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했기 때문에 최덕신에게 책임이 있다.
박병인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제주시 자택	녹화	광주에 가 얼마 안 있어 장성 쪽 연초제조창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때로는 인공기가 휘날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중대가 기습당하여 아군 피해가 크니까 중대장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을 지르고 마을부근을 없앤 것은 확실해요.
김공원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5	제주시 자택	녹화	마을에 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돌아오면 살려주고, 도망하는 사람은 총으로 쏘았어요. 여러 명이 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창봉	5중대 중대본부원	20070215	제주시 이도1동	녹화.녹음	해보에 갔던 시기가 추운 때였어요. 함평에 가서 불갑산 지구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기억은 납니다.
김준오	5중대1소대원	20070213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진술조사	해보에 있을 때 토벌작전을 한두 번 갔던 기억은 납니다. 작전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 경 가족과 나머지 주민은 분리하여 데려갔습니다.
이평문 강제승 홍순홍	5중대 화기소대원	20070214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진술조사	공비출몰이 있어 현장에 가면 마을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취침 중 공비에게 습격당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죽장에 찔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용	20연대 1중대원 (학도의용군)	20070119	함평읍 자택	진술조사	미처 올라가지 못한 진짜 빨치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산으로 도망간 민간인들이 많았습니다. 토벌작전 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간 민간인이었습니다.
나진수	함평경찰서 경찰	20070118	함평읍	진술조사	국군이 함평에 먼저 선발대로 들어왔으며, 학다리, 엄다, 수호리, 함평읍, 대동면으로 갔습니다. 5중대는 장성이나 광주 쪽에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중대본부에서 이오섭 나산면장이 항의하면서, 권준옥 중대장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 3. 자료조사

-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50, 336쪽.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1988.
- 「보11사20연특별명령(갑)제22호」와 권준옥 「자력표」
-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 보병 제20연대, 「부대약력표」,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1997.



- 월간조선사,『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 김영택,『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실태보고서』, 한울, 2005.
- 「마구 터지는 대학살 秘史」,『한국일보』, 1960. 5. 20.

#### 4. 현장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5월 9일과 2007년 3월 14일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이용현 회장 등 유족회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집결장소, 희생 장소에 대하여 사건발생 순서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IV. 조사결과

#### 1. 사건의 전개과정

##### 가. 조사내용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장성군 삼서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총살, 타살 등의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지도에서 지역·날짜별로 5중대의 민간인 집단살해 과정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는 들판을 사이에 두고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에 따르면 1950년 11월 27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일어날 무렵 5중대 일부가 외치재에 초소를 운용하면서<sup>1)</sup> 야간에는 뺨치산과 교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 유형렬은 덕림리 주민 오봉근 외 6명이 사전신고<sup>2)</sup>를 하지 않고 모여서 새끼를

1) 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4~5쪽, 2006.7.12.

2) 참고인 유형렬은 당시 계엄 하에서 3명 이상이 모이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군·경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참고인 유형렬, 진술서 2쪽, 2007. 5. 17.

〈지도〉 함평11사단 사건 발생지역



꼬며, 화장실에 빠져 죽은 노루고기를 삶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으로 들이닥친 5중대원들이 이들을 월야면 외치리의 5중대 초소로 연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형렬이 목격한 희생자는 정진국(신청인 정양수) 오팔근(오칠근) 정성규(정종화) 오봉근(오춘열) 유태열(정옥순) 유재섭(유우현)과 주막 노파의 아들 정봉근(신청 외) 등 7명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가족들은 며칠 후 5중대 초소에서 시신을 수습해왔다.<sup>3)</sup>

3) 외치재 분소에 있던 5중대 군인들이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5중대 본부로 떠나면서 마을에 들어와 외치재에 있는 시신을



신청인 정양수는 부친 정진국의 유골을 10년 후 이장을 하였는데, 두개골이 대여섯 개로 조각나 있어 총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sup>4)</sup>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덕립리 복만동 주막(덕립동 412번지) 터를 현장 조사하고 참고인 및 신청인의 증언을 청취하였는데, 사건을 목격한 유형렬은 당시 5중대에 연행된 주민은 모두 빨치산 협력과는 무관한 시골 농민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 2)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신청인과 참고인에 따르면 1950년 12월 6일 동이 틀 무렵의 새벽 7가구가 거주하던 장교마을에 15~20명의 5중대 군인들이 들이닥쳐 집마다 불을 지르며 “살고 싶으면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쫓기다시피 몰려나온 주민들을 선별과정도 없이 총살하였다고 한다. 군인들은 사건 후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으로 가라고 소개명령을 내렸다.

이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동촌마을 뒤에는 이 사건 직전인 12월 2일 국군과 빨치산의 전투에서 2명의 군인이 전사했던 한새들이 있고, 전투<sup>5)</sup> 중에 일부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서 징과 팽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던 사건이 있는데, 신청인·참고인들은 이 사건이 희생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증언하였다.

장교마을이 동촌마을 둘머리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군인들이 동촌마을에 들어가면서 장교마을까지 토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양영언에 의하면 당시 5중대장은 월야면에서 해보면 가는 방향의 들판인 한새들<sup>6)</sup>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을 화장하고 사병들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4일 후 장교마을 주민 집단총살을 발생시킨 것<sup>7)</sup>으로 보인다.

신청인 서백수는 장교마을에서 안○○등이 빨치산 활동을 한 이유로 주민이 희생되었 있다고 진술하였다.<sup>8)</sup> 그러나 사건당일 안○○를 비롯한 마을의 좌익은 마을 내에 있지 않

수습하라고 해서 희생자들의 친척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시신은 각자 자기 집안의 선산에 매장하였습니다.(신청인 정종화 진술조서, 2006. 5. 17.)

4) 외치리와 우리 마을에 걸쳐 있는 칠봉산의 봉우리 중 외치리 뒤 봉우리에서 군인들이 내려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우리 집과 할머니(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은 군인들이 문만 열어 보고 그냥 갔으나, 할머니 집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새끼를 꼬고 있었는데, 일곱 명을 새끼줄로 묶어 잡아갔습니다.(신청인 정양수 진술조서, 2006. 8. 1.)

5) 전투가 마을 앞 들판인 한새들에서 일어나 사건관련 유족들은 1950년 12월 2일의 국군과 빨치산의 전투를 한새들 전투라고 부르고 있다.

6)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6쪽. 2006. 6. 29.

7) 양영언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272쪽에서 재인용.

8) 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5쪽. 2006. 5. 25.



있으며 집단총살 된 피해자들은 죄의과는 관련이 없는 동네 주민이었다.

신청인 강풍전은 당시 마을의 가구 수가 7가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sup>9)</sup> 피해자 수는 22명<sup>10)</sup>, 15명<sup>11)</sup>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3명은 9명이 총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안종필(신청 외)은 어머니 강영주의 등에 업혀 어머니와 함께 총에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형 안종탁은 사망하였다.<sup>12)</sup>

### 3)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장교마을과 인접한 동촌마을은 80여 가구가 살고 있던 큰 마을이었다.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동촌마을에서도 장교마을 사건 발생일과 같은 12월 6일 동이 틀 무렵, 5중대 군인이 진입하였다. 5중대 군인 중 일부는 장교마을 쪽에서, 나머지는 서촌과 고실마을 방향에 서 논을 가로질러 동촌마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신청인 곽상덕은 5중대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며 큰소리로 주민들을 동네 앞으로 모이라고 하여,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동네 앞 논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논으로 들어간 남자들을 총살하였다고 한다.<sup>13)</sup> 그리고 남은 주민들에게 성냥을 나누어 주며, 마을에 내려가 미처 타지 않은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하였다. 5중대는 이렇게 작전을 끝낸 뒤 살아남은 주민들에게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다.<sup>14)</sup>

신청인 곽상태는 장교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려오자 몇몇 청년들은 마을 뒤로 도망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15)</sup>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사건 며칠 전 마을 뒤에 있는 한새들 앞에서 있었던 5중대와

9) 감산댁과 딸 2명, 우리집은 이모 이복례와 아들, 어머니와 동생 등 4명, 나산댁에서 5명, 홍정댁에서 2명, 강영주의 아들 안종탁과 그리고 김연석이 사망하였습니다.(신청인 강풍전 진술조사서 3쪽, 2006. 5. 16.)

10) 강영주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 학살』, 사회문화원, 2001, 203쪽에서 재인용.

11) 신청인 강풍전, 진술조사서 3쪽, 2006. 5. 16.

12) 형님은 고환에 총알이 관통하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있어서 어머니 팔과 옆구리를 뚫고 제 엉덩이까지 총알이 뚫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인 안종필, 진술조사서 3쪽, 2007. 3. 16.)

13) 새벽에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모두 동네 앞(현재 마을회관 건너 논)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을 앞으로 나가보니 군인들 일부는 길가에 모여 있고 일부는 서촌에서 논을 건너 동촌마을로 건너왔습니다. 군인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논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논으로 들어간 남자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신청인 곽상덕 진술조사서, 2006. 7. 26.)

14)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 학살』, 2001, 사회문화원, 95쪽.

15) 당시 저는 만 17세였는데, 아침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마루에 나가보니 건너편에서 군인들이 우리 마을로 오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옷을 갖춰 입고 뒷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신청인 곽상태 진술조사서, 2006. 5. 25.)



빨치산의 ‘한새들 전투’를 사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sup>16)</sup>

더욱이 사건 전날인 12월 5일 밤 좌익들이 마을 뒷산 고개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꽁과리를 치며, 3일 전에 한새들 전투에서 5중대 군인 2명을 전사케 한 후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만세를 부르는 소동을 피웠던 것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sup>17)</sup>

신청인 서백수는 이 마을 거주자 중에 빨치산 활동을 한 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김○○은 마을에 있지 않았다.<sup>18)</sup>

5중대에는 G-2라 불리는 민간정보원들이 있어 주민의 동향을 파악해서 중대에 보고하였는데,<sup>19)</sup> 이들은 마을의 좌익활동 내용도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 4)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서촌마을은 해보면과 장성군 삼서면 간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1950년 12월 6일 5중대 군인 일부는 서촌마을을 거쳐 동촌마을로 갔다. 신청인 이덕부는 부친인 이연범이 그 날 아침밥을 먹을 무렵 5중대 군인 2, 3명에 연행되어 끌려가다 총살되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이재하는 자신의 아버지 이판금이 서촌마을 인근인 월야면 용암리 연화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중대본부가 있었던 해보면 문장으로 가다 서촌마을 부근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붙잡혀 총살되었다고 하였다.<sup>20)</sup>

#### 5)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

장교, 동총, 서촌마을 등에서 각각 ‘작전’을 끝낸 5중대는 해보 장성 간 24번 도로를 따라 월야면 계림리 죽림마을과 장성군 삼서면 방향으로 계속 진진해 갔다. 그날의 상황에

16) 빨치산이 월야지서에 총을 쏘고 한새들을 거쳐 시목마을 쪽으로 도주했고, 월야지서에 주둔하고 있던 5중대는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목마을 쪽에서 빨치산이 사격을 했고 군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민들이 시체를 보니 이미 옷을 벗겨 갖고 시신에다 죽창을 밀뚝처럼 2, 3개씩 박아 놓았습니다. 아마 보도연맹 등 군·경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원한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새들 옆 냉가는 모래사장이었는데, 그 곳에 한 명이 죽어 있었고, 한 명은 시목마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는데 모래사장에 있던 군인은 목 뒤에 총을 맞았습니다. 교전 당시 빨치산은 세 군데에 배분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시목, 내정, 그리고 신기마을 뒷산 등 세 곳에서 한새들을 내려다보며 총을 쏘았습니다.(참고인 이재하, 진술조사, 2006. 6. 28.)

신기마을 앞에 한새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보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 군인들이 몸을 숨기고 전투를 하는데, 빨치산이 저수지 물을 터서 지하보에 물을 넣어버리니까 논 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보에 물을 넣은 것으로 봐서 동촌마을 사정을 잘 아는 빨치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새들 전투가 있고 2~3일 후에 군인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참고인 장두병, 진술조사, 2006. 6. 28.)

17) 과상순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96쪽.

18) 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사 7쪽, 2006. 7. 25.

19) 참고인 이녹범, 진술조사 4쪽, 2006. 12. 13.

20) 신청인 이재하, 진술조사 3쪽, 2006. 8. 22.



대해 참고인 임화수는 이른 아침부터 월야면 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 주민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군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낫겠으니 환영가자”고 제안하여 국군을 환영할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1)</sup>

그러나 5중대는 마을에 들어와 곧바로 집과 벗단에 불을 질렀으며 주민들을 마을 앞에 모아놓고 여자와 노인들에게는 집으로 들어가 해보면 문장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5중대 군인들은 이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자들을 선별한 다음 신죽마을 앞에서 3열로 정렬시킨 후 모두 총살하였다. 군인들이 임광진과 김병수, 심달섭, 김종섭, 임봉수 등 12명을 3열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것을 목격<sup>22)</sup> 하였다고 임화수는 증언하였다.

사건이 일어났던 수해리 2구 신죽마을과 월곡, 양현 마을까지 합하면 70여 가구의 마을 중 절반 가까운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특히 신죽마을의 경우 거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습니다.<sup>23)</sup>

또 임양수와 김수성 등 두 명의 주민은 월야면과 삼서면 경계에 있는 대도천에 다다른 군인들로부터 넘치는 냅물을 업어서 건너게 해달라는 명령을 받고, 이들을 건네주자 바로 그 군인들에 의하여 총살되었다.

이어 5중대 군인들은 신죽 월곡 양현 등 수해리 일대에서 소개작전을 마치고 오후에 중대본부로 복귀하기 위하여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에 이르러 가옥에 불을 질렀지만 태극기를 꽂고 환영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 환대하자 인명살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로 돌아왔다.<sup>24)</sup>

이들 마을의 사건 원인에 대해 참고인 임화수는 “5중대가 진주할 무렵 이 동네 주민들이 이 목포 무안 나주방향에서 올라온 패잔 인민군에게 밤을 지어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sup>25)</sup> 즉 태청산에서 10여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군은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조하였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태청산의 빨치산은 1950년 12월 초 근거지를 불갑산으로 이동하였다.

21) 참고인 임화수, 진술조사서 2쪽, 2006. 6. 7.

22) 참고인 임화수, 진술조사서 4쪽, 2006. 6. 7.

23) 신청인 노도출, 진술조사서 4쪽, 2006. 5. 25.

24) 아버지가 대문에 태극기를 달아 놓았는데 군인들이 마당에 들어왔고, 그 중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이놈들 봐라, 태극기를 달아놓았네”하며 태극기를 자기 총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람은 죽이지 말고 불이나 질려버려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과 벗단은 모두 타버렸습니다.(참고인 이행하 진술조사서, 2006. 6. 28.)

25) 참고인 임화수, 진술서 2쪽, 2007. 5. 18.



## 6) 함평군 월야면 남산뫼 사건

사건현장에서 살아남은 정송모는 1950년 12월 7일 이른 아침 월악리 순촌, 송계, 괴정, 동산마을과 월악리 지변, 내동, 성주마을에는 이장을 앞세운 5중대가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불러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26)</sup> 군인들의 인솔로 월악리 지변, 내동, 성주마을 주민들은 팔열부정각 부근에 모여서, 월악리 주민들은 각각의 마을에서 남산뫼로 모여들었다. 군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끌려나온 300~400명<sup>27)</sup>의 주민을 17세 미만과 17~45세, 그리고 45세 이상<sup>28)</sup>과 군·경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또 현장에서 실제 나이와는 관계없이 외모에 의해서 연령을 지레짐작하고 선별한 경우도 있었다고 정진천은 진술하였다.<sup>29)</sup> 이 과정에서 정병우는 자신을 호국군<sup>30)</sup> 장교라고 밝혔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5중대장에 의해 권총으로 사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무공작대장 윤인식과 5중대장 권준옥의 연설<sup>31)</sup> 후, 군인들은 17세 미만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는 마을에 가서 불을 끄라며 내려 보냈다. 이어 45세 이상의 주민에게는 내려가서 즉시 해보 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명령한 후 남아있는 17~45세 사람들을 따로 앉혀놓고 기관총과 소총을 일시에 발사했다.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악악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잠시 후 중대장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 일어나라”고 한 다음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사격명령을 내렸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여 주민 몇 명이 일어나자 중대장은 이들을 마을에 내려가 불을 끄라고 한 뒤, 뒤에서 또다시 사격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시체사이를 돌아다니며

- 26) 군인들은 역할에 따라 조 편성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군인들, 남산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군인들, 마을에 불을 지르는 군인들, 남산뫼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은 철모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군인은 작업모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신청인 정송모 진술조사서, 2006. 5. 26.)
- 27) 신청인 정남진, 진술조사서 2쪽. 당일 남산뫼에 모인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250명에서 500명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집에 있는데 아마 9시 정도나 되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전부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1차적으로 지변마을의 세티(새터) 논 앞에 사람들을 집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산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남산뫼 주변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 5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신청인 정태환 진술조사서, 2006. 6. 29.)
- 28) 선별의 기준이 되었던 연령대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총살 대상의 기준이 15~40세, 17~45세, 15~45세로 엇갈리고 있다.
- 29)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턱수염을 기르고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뺏을 때 나이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여 노약자로 구분해서 살아났답니다. 형님은 빨리 성장을 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형님이 함께 끌려갔는데 아버지는 노인처럼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어 남산뫼에서 살아 내려왔고, 형님은 남아 있으라고 했답니다.(신청인 정진천 진술조사서, 2006. 6. 28.)
- 30) 호국군은 전투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어 1949년 8월 31일 해체되고, 역할은 청년방위대에 넘겨주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1.
- 31) 권준옥은 “너희들 같으면 도저히 시국을 안정해 나갈 수 없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정봉규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전남반), 14쪽, 1960. 6. 8.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확인해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장 생존자 정남숙은 증언했다.<sup>32)</sup>

신청인 정귀례는 중대장이 한 젊은 여성을 중대본부로 끌고 가려하자, 그 여성의 아버지가 강력히 항의하자 부녀를 향하여 총을 쏘아 이들 모두를 살해하였다고 증언했다.<sup>33)</sup>

남산뫼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주민들의 증언은 다소 엇갈린다. 다수의 주민들은 군인들이 이유 없이 들이닥쳐 집단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5중대의 정산리 주민들에 대한 집단총살사건 소식을 듣고 월야리, 월악리 주민들은 언제 군인이 마을에 들어올지 불안해 했다. 이에 정일웅 등 주민 일부가 중심이 되어 5중대를 환영하기로 하고 태극기를 만들다가, 군인들의 총소리를 듣고는 정준채 등 몇몇은 월악리 쪽으로 도망쳤다고 한다.<sup>34)</sup> 즉 이들은 5중대에 의한 주민학살 소식을 이미 들었기에 5중대를 자극할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진술도 있다. 남산뫼 사건 바로 전날인 12월 6일 마을의 좌익과 소년단 일부 등 수십 명이 내동마을 뒤쪽에 있는 손동재에 올라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을 부르면서 군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언도 있다.<sup>35)</sup>

사건 당일 총살 현장에서 유족 중 일부는 시신을 수습하고, 일부는 생명이 남아있는 부

- 32) 지변, 내동, 동산, 순촌, 괴정, 송계, 성주 마을 주민을 남산뫼에 모이게 한 후 어린 학생들은 불을 지르라고 마을에 내려가게 한 후, 남아있는 주민들을 총으로 학살했습니다. 1차 총격 이후 살아남은 사람은 살려준다고 일어서게 한 후, 일어선 사람을 향해 2차 총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1차 총격에는 총을 맞지 않아서 살아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할 때도 일어나지 않아서 총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일어서게 한 후, 3차 총격을 가해서 모두 학살했습니다.(신청인 정남숙 진술조서, 2006. 5. 17.)
- 33) 군인들이 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 가려 하니까 아버지가 군인을 가로막으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아버님과 언니를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큰 아기 두 명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육을 보였다고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신청인 정귀례 진술조서, 2006. 6. 28.)  
주민 중 ‘남자들은 15세 이상 45세까지’ 모두 나오라고 해서 한 쪽으로 모았고 여자들은 남편 없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 7, 8명을 골라냈습니다. 처녀들을 골라내는 도중 5중대가 동산마을 정맹모의 딸을 데려 가자 정맹모가 군인들을 가로막으며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항의하자 정맹모와 그의 딸을 동시에 총격하여 사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없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입신자 가족으로 취급당하자 ‘남편은 결핵으로 몇 달 전에 죽었다’고 군인들에게 말했으나 오히려 ‘거짓말 하지 마라’며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당한 후 실신한 채로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쪽으로 끌려 갔습니다.(신청인 정상수 진술조서, 2006. 7. 31.)
- 34) 며칠 전 군인과 공비들이 교전을 했기 때문에 찾아 가지 않으면 공비 내지는 협조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태극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참고인 정일웅 진술조서, 2006. 5. 26.)
- 35) 내동마을 뒷산인 손동재에서 그 안날(12월 6일) 저녁에 봉화를 피우며 빨치산과 내동, 지변마을 주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좌익이나 빨치산이 소집시켜 나간 주민이 100여명 되었습니다. 빨치산도 10여명 있었습니다. 빨치산이 나오라고 해서 동네사람 모두 봉화를 피우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주민들은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빨치산은 아침에 모두 산으로 도망가고 주민들은 마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도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화를 피우고 노래를 부른 곳은 외치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신청인 정남진 진술조서, 2007. 1. 19.)



상자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이를 대다수도 곧 사망하였다.<sup>36)</sup>

### 7)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사건

신청인 정재선은 1950년 12월 초순 월야면 외치리 칠봉산 외치재에 5중대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sup>37)</sup> 영광과 광주 간 도로인 이 곳은 5중대 군인들이 낮에는 보초를 서다 밤이면 중대본부로 철수하곤 하였다. 1950년 12월 9일 오후 군인들은 동네 이장을 앞세우고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한다.

외치재 주민은 사건 전에도 두어 번 정도 빨치산이 도로를 파손하고 공격하면, 그때마다 군인들에 의하여 마을 앞으로 불려나가 울력으로 도로보수를 해왔기에,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나갔다.<sup>38)</sup>

사건현장을 목격한 정재선에 의하면 마을 앞 도로에 불려나온 주민들은 가족단위로 모여 있었고, 군인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보이는 주민 20명을 불러내자 청년 정기복은 군인들이 나오라고 지목하여도 머뭇거리면서 “부역한 사실도 없는데 왜 불러내느냐”고 항의하자 군인은 곧바로 정기복을 사살하였다고 한다.<sup>39)</sup> 이에 항의하는 당시 월야면 부면장인 정기복의 형 정복만에게도 총부리를 겨누었으나 무사하였다.

정기복을 현장에서 총살한 군인들은 나머지 주민 19명을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의 중대 본부 쪽으로 끌고 갔으나, 종무소식이었다. 나머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보름 후 5중대가 해보에서 잠시 철수하였을 때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부근에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17구<sup>40)</sup>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이 시신을 수습해 대부분 현장에 매장하였다.<sup>41)</sup> 목격자들은 시신 상태로 보아 총이 아닌 죽창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36) 남녀를 구분해서 앉았는데, 여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산뫼에서 즉사하지 않은 상태라서 당일 집안 어르신들이 이불에 싸서 마을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양쪽 팔과 허벅지, 국부 등에 총을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신청인 백삼남 진술조서, 2006. 7. 21.)

37)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사 5쪽, 2006. 5. 17.

38) 집에 있는데, 이장이 군인들과 함께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저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의 지시에 의해 도로 모퉁이에서 가족별로 나이 많은 사람이 앞쪽에 앉았습니다. 군인들은 총과 봉등이 등을 든 군인 7, 8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모이고 나니, 군인 중 한 명이 주민들에게 “모퉁이 도로를 잘라 버렸으니 범인을 찾겠다. 마을 사람을 살리려면 자진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불려나간 사람은 죽은 정기복을 포함해 20명이었습니다.(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사, 2006. 7. 12.)

39)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사 3쪽, 2006. 5. 17.

40) 외치리 희생자 수에 대해 유족회는 18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희생자 수는 5중대 군인이 20명을 골라내 현장에서 정기복은 총살되었고, 나머지 19명 중 교사인 정기홍과 학련의 도움으로 풀려나 희생을 면한 정태진 등 2명을 제외한 두루샘 희생자는 17명이 맞다고 하였다.(2007. 6. 5. 유족회 정근육 총무)

41) 마을에 50호 정도의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하면 3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눈대중으로 짐작하여 젊은 남자들만 골라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 20명을 모아서 중대본부인 해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끌려간 사람들은 당일 저녁에 중대본부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사, 2006. 5. 17.)



마을이 함평군과 광산군의 경계지역이고, 마을 앞 도로는 영광과 광주간의 주요 도로인데, 빨치산이 군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자주 파손하자, 군인들은 주민 중에서 혐의자를 색출하겠다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불갑산에 있는 빨치산이 가끔 마을에 내려와 쌀, 소 등의 보급물자를 빼앗아갔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불갑산으로 데려가기도 하였다. 5중대는 사건 후에도 상당기간 외치재에 주둔하였다.<sup>42)</sup>

#### 8)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사건

이문리사건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12월 9일 오전 9시경 나산면 이문리 사정마을에 5중대 군인들이 몰려와 주민들을 이문초등학교에 모이게 하였다. 당시 이문리 김○○등 몇몇 주민은 인민군 통치 시기 강요에 의하여 부역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낮에는 대한민국에 협력하고, 밤에는 좌익들에게 협력해야 했다.<sup>43)</sup> 그러나 김○○는 사건 당시 마을에 있지 않았고, 그 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붙잡혀 징역 6년을 복역하였다.<sup>44)</sup>

신청인 김수창의 진술에 의하면 군인들은 주민들을 이문리 이문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족별로 앉힌 다음 “군·경 가족은 나오라”고 하여 나머지 주민들과 분리하였다. 일반 주민 중 택호와 이름을 부르며 지목하면 가족들이 따라 나가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선별한 주민을 이문초등학교 옆 나산천변으로 데려가 총살한 다음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은 주민들은 소개하였다고 한다.<sup>45)</sup>

#### 9) 함평군 해보면 쌍구룡 사건

쌍구룡 사건의 신청인과 참고인에 의하면,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에 들이닥쳐 마을을 에워싼 채 불을 지르며 “죽지 않으려면 모두 나오라”고

42)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5쪽, 2006. 5. 17.

43) 그 때는 아주선한 상황이어서 낮에는 이군에 협력하고, 밤에는 밤사람들에게 협력해야 했던 시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재 작고)라고 좌익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오정수 진술조서, 2006. 8. 24.)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김○○)가 나산면사무소 면서기였습니다. 그래서 좌익사람들이 총을 들이대면서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갑산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전라북도 김제 금구에서 경찰에 잡혀서 6년간 징역을 살고 나오셨습니다.(신청인 김승원 진술조서, 2006. 7. 12.)

44) 신청인 김승원, 진술조서 6쪽, 2006. 7. 12.

45) 저는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마을 앞 학교운동장으로 집합이라고 한다며 어른들이 와서 이야기하여 따라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군인들이 가족별로 앉으라 하였습니다. 경찰가족과 군인가족은 주민들과 구분하여 앉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는 기관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부랑사람 여럿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 중 “누구를 데리고 와라, 누구를 가리켜라” 하였습니다.(신청인 김수창 진술조서, 2006. 8. 3.)



하여 주민을 해보중앙초등학교 부근 쌍구룡으로 집결시켰다고 한다.

군인들은 끌려나온 주민들 중 남자들을 골라 해보중앙초등학교 옆 길가에 앉혀놓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주민 중 장진섭이 일어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느냐고 항의하자 군인은 대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총살하였다. 남자들이 모두 죽자, 배수로 쪽에 앉아 있는 여자들을 도로건너 밭으로 한 명씩 가도록 한 후 하나하나 총으로 쏘았다. 한 주민이 군경가족도 죽이느냐고 묻자 그때부터 군경가족을 한쪽으로 골라낸 다음 총살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6)</sup>

마을 사람들을 사살한 다음 따라온 청년방위대원(청방)을 시켜서 시체를 방죽에 던져 넣었다. 본래 방죽은 깊이가 한 길은 되었지만 겨울이라 물의 깊이가 무릎 정도 되었다. 이 과정에서 넘어져 있던 이금남은 살아있는 채로 방죽에 던져 넣은 청년방위대원의 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47)</sup>

사건 당시 성대마을 원주민들은 대부분 광주 등 외지로 피난을 한 상태였으며 거주자의 대부분은 불갑산 용천사 아래 마을인 광암리에서 군·경의 명령으로 소개되어 온 사람들이었다.<sup>48)</sup>

신청인 장재수는 사건 현장인 성대마을과 광암리의 거리가 5킬로미터에 불과했기 때문에 식량 등을 가져오기 위해 이들은 광암리에 왕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sup>49)</sup>

또 청방으로 근무했던 참고인 김석주는, 사건 하루 전날 5중대는 성대마을 너머에 있는 천주봉으로 토벌 작전을 나갔다가, 어수산과 월양산 방향에서 빨치산들이 총을 쏘아 군인

46) 신청인 박용원, 진술조서 5쪽, 2006. 7. 12.

47) 시신 1구당 청방요원 4명이 달라붙어 시신을 방죽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방이 옆으로 오자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하여 청방이 죽은 사람처럼 들어서 방죽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방죽 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같은 동네 청방이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총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오라고 하여 군인들이 철수한 후에 살아남은 마을사람을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신청인 이금남 진술조서, 2006. 7. 14.)

48) 성대마을에는 원래부터 살던 사람 중 부유층은 광주로 미리 피난을 가 빈집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빈집에 불갑산 밑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찰이 낮에 와서 빨치산에게 부역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신청인 김형술 진술조서, 2006. 7. 11.)

49) 저는 해보면 광암리 운암에서 대대로 살았으나 한 달 전 경찰이 소개령을 내려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로 왔습니다. 운암마을하고 거리가 가까워 식량이라도 가져다 먹기 위해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은 성대마을로 소개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모평마을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리면서 군인, 청방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공포탄을 10여발, 쏘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면서 살려면 빨리 마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습니다.(신청인 장재수 진술조서, 2006. 7. 13.)

우리 마을에는 불갑산 근처 해보면 산내리, 광암리 사람들이 소개되어 와서 살았습니다. 원래 성대에 살던 사람은 밤이면 빨치산이 내려와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피난을 갔습니다. 또 군인, 경찰가족은 피난을 갔습니다.(신청인 김종희 진술조서, 2006. 7. 13.)

저는 사건 40일 전에 광암리에서 성대마을로 나왔는데 식량 등을 가져다 먹기 위하여 8, 9번쯤 광암리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신청인 박용원, 2007. 6. 8. 전화답문)



들이 더 진격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고 증언했다.<sup>50)</sup> 군인들은 성대 마을에 빨치산이 있거나 협조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들을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 10)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 사건

신청인과 참고인에 의하면 1951년 1월 12일 5중대는 대창리 성대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주민을 집단총살 하였는데,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가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살려면 쌍구룡쪽으로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는 나오는 대로 총을 쏘았다고 한다.

윤경중 등 신청인들은 모평마을이 100여 가구로 다른 마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사회에 진출한 사람도 많았지만, 지리적으로 불갑산과 가까워 빨치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고 한다.<sup>51)</sup>

더구나 사건 전날 밤에는 빨치산들이 모평마을 뒤쪽 비녀봉에서 5중대 본부를 향하여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sup>52)</sup> 신청인들은 빨치산의 중대본부 공격이 이 날 집단총살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11)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사건

이계백 등 신청인에 의하면 모평마을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951년 1월 14일 5중대는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에 와 집안에 있던 주민들을 마을 앞으로 집결시키고 무차별적으로 총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치리 청년들은 이미 월야면 일대와 해보 쌍구룡, 그리고 상곡리 모평마을에서 발생한 주민집단총살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마을에서 피해버렸다고 증언했다.<sup>53)</sup> 따라서 남아 있던 노약자와 여자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끌려나와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집단으로 총살당하였다.<sup>54)</sup>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집에 들

5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10쪽, 2006. 6. 29.

51) 1950년 11월 말부터 모평마을을 5중대가 소개시켜 이웃마을인 해보면 용산리 소성마을 누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장성에 주둔하던 8중대로부터 모평마을에 들어가도 된다는 연락이 와 1월 11일에 들어갔습니다. … 한 10일 정도 되는데, 5중대가 당시 해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었고, 이 때 8중대가 해보로 들어와서 들어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중대는 바로 떠났고, 얼마 후 5중대가 들어왔습니다.(신청인 윤경중 진술조서, 2006. 5. 18.)

그 때는 굶어 죽을 편이어서 없는 사람들이 그 곳에 남아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원래 모평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다 나가 버렸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노인들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신청인 노병량 진술조서, 2006. 7. 12.)

52)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127~128쪽.

53) 국군들이 들어다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큰집 식구들과 큰누나, 작은누나, 본인은 미리 피신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피신한 장소를 확인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갓 태어난 동생을 데리고 있던 어머니와 다리가 불편한 외삼촌은 집에 있다가 군인들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신청인 이계백 진술조서, 2006. 5. 18.)

54) 5중대 군인들이 오전 10시 30분경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기관총을 쏘아 주민 중 어린이 8명, 노약자 6명, 불구자



려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 빨리 피하라”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도망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되었다고 한다.<sup>55)</sup>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용천사 아래 대각리 주민이 피난을 나올 수 있는 거리여서, 이들이 대각리에 왕래하며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우치리 사건이 발생하자 이오섭 나산면장은 5중대장 권준옥 대위를 찾아가 주민총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 항의 이후 5중대에 의한 이 지역 집단총살은 중단되었다.<sup>56)</sup> 이 사건에서 마을별 집단총살사건이 우치리에서 끝난 것은 시기적으로 토벌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나산면장의 항의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12)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인근지역 소규모 희생 사건

5중대가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하는 동안 소규모 민간인총살사건이 인근 여러 동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빨치산이 야간에 이들 동네에 내려와 식량 등을 가져갔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군으로부터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희생을 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안길원의 부 안해동, 이기신의 형 이성신, 최병수의 숙부 최남휴 등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sup>57)</sup> 이재문의 부 이정섭의 경우 아들이 인민군 통치시기에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되었다고 한다.<sup>58)</sup> 윤석주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와 삼촌은 인민군 점령시기 좌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경찰이었던 아버지 윤일두는 마을 주민의 해코지로 5중대 군인에 의하여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sup>59)</sup>

1명, 부녀자 5명 등 20명을 현장에서 총살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2명 중 1명은 며칠 후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도 59세였는데,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정유예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8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녀자 5명 중 3명은 젖먹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신청인 이계준 진술조사, 2006. 5. 17.)

55) 신청인 김재경, 진술조사 5쪽, 2006. 8. 9.

56)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2001, 사회문화원, 138쪽.

57) 아버지 안해동이 1950년 11월 29일(음)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구장터에서 5중대 소속 군인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셨습니다. 부모님과 고모 저 어린 여동생 그렇게 5식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신청인 안길원 진술조사, 2007. 1. 18.) 저의 형 이성신이 1950년 12월 13일(경)(음 11월 5일) 해보면 금덕리 사자동마을에서 5중대원에게 희생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형을 잡아다 해보면 금덕리 밀재 밭에서 죽여서 묻었다 합니다.(신청인 이기신 진술조사, 2006. 5. 25.)

돌아가신 최남휴는 저의 숙부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동생이 사는 해보면 고모리로 가다 마을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군인들에게 붙잡혀 모진 구타를 당한 후 마을 뒤 저수지 옆으로 끌려가 총살당하는 것을 저의 고모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신청인 최병수 진술조사, 2007. 1. 18.)

아버지 김병갑은 1950년 12월 27일(음 11월 19일) 5중대 군인들에게 끌려가 해보면 문장리 고모리 뒷산에서 희생당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사람들이 고모리 뒷산에, 면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서 한 군데에 암매장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현장에 가 옷가지를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신청인 김현필 진술조사, 2007. 1. 19.)

58) 문장 이정섭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외치리에서 중대본부로 끌려온 18명의 주민과 함께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중사가 월야 외치에서 데려온 주민과 저의 부모님을 죽이는 것을, 당시 경찰부장 이종범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신청인 이재문 진술조사, 2006. 6. 14.)

해보면 금덕리, 문장리 등 중대본부 인근뿐만 아니라 5중대 군인들의 이동로에서는 5중대원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도 빈발하였다.<sup>60)</sup> 또 신청인 이만희는 이동선 등 숙부 4명<sup>61)</sup>이 5중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덕행의 부 이손동도 금덕리 두루샘 부근에서 5중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한다.<sup>62)</sup>

1960년 4대 국회의 함평군 현지조사에서 금덕리 이장 강철현은 이 지역에서 5중대에 의하여 주민 43명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sup>63)</sup>

이외에도 5중대가 함평군 해보면에 주둔하는 기간 중 군인들의 이동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뱀치산으로 의심받거나, 뱀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sup>64)</sup>

- 59) 아버지 윤일두가 음력 1950년 11월 17일(양력 12월 25일) 오전 10시경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새다리목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도끼로 두상을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중대 취사반장이 도끼로 난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신청인 윤석주 진술조서, 2007. 1. 18.)
- 60) 아버지 김기만, 어머니 정약순, 형수 강정순(20세의 미망인), 여동생 김인순이 1951년 1월 10일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뒷산에서 5중대 화기소대원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1951년 1월 9일 낮 가택수색 하다 형수에게 따라 오라 하였으나 아버지가 야단을 쳐 되돌이갔다가 다음날 오전 7시30분경 군인 5명이 집에 와 일가족 5명을 5중대 화기소대 야전본부가 있는 고두마을 앞 하천골로 끌고 갔는데, 저는 도망쳤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형수, 여동생은 군인들에게 의해 금덕리 고두마을 뒷산 모퉁이로 끌려가 오전 10시경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김홍빈 진술조서, 2007. 1. 18.)
- 61) 인우보증인 윤주원, 이재기와 전화 탐문한 결과 이동선, 이동기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정열, 이정기의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우보증인 윤주원, 이재기 전화탐문, 2007. 4. 20.
- 62) 아버지 이손동은 1950년 12월 2일(음 10월23일) 5중대 군인들이 전투 후 해보 문장으로 복귀하던 중 아버지를 끌고 나가 두루샘 부근에서 죽였고,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나갔다 해보 문장리 구장터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이덕행 진술조서, 2007. 1. 17.)
- 63)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전남반), 10쪽, 1960. 6. 8.
- 64) 오빠 이병옥은 공무원으로 전하에 살았는데, 1950년 12월 6일 광주로 피난가다 광산군 삼도면 도덕리 삼도지서 앞에서 5중대 군인에게 불집혀 12월 7일경 사살되었습니다. 같이 피난가던 정수모가 함께 잡혔다가 살아 돌아와 알려주어 알았습니다.(신청인 이우희 진술조서, 2007. 6. 8.)  
외삼촌 박명수가 음력 1950년 12월 10일 월야면 계림리 금치에서 장성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벌이고 해질 무렵 귀대하던 5중대 군인에게 중대본부로 연행되어 사망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식량을 가지러 와서 외할머니에게 들어 알았습니다.(신청인 장동규 진술조서, 2007. 1. 18.)  
셋째 고모는 신혼 초였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 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군인들이 집을 포위하여 할아버지와 셋째고모를 중대본부로 연행하려 하자 할아버지는 항의하였고, 5중대원은 할아버지를 사살하였습니다. 고모는 그 곳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신청인 노병철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이규우이 1950년 12월 5일 월야 서촌에서 5중대 군인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친척 여동생이 밖을 내다보는데, 군인들이 재수 없이 계집애가 밖을 내다 봤다면, 아버지를 고실 앞산에서 총살하였습니다.(신청인 이재삼 진술조서, 2007. 1. 18.)  
아버지 정성면은 1950년 11월 27일 5중대 군인들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끌고 외치재 5중대 초소로 데려가 그곳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셨습니다. 며칠후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오는 것이 기억납니다.(신청인 정병화 진술조서, 2007. 7. 13.)  
1950년 11월 28일에 아버지 정창기를 비롯한 4명이 전하 뒷산에서 5중대 군인에게 총살당하였습니다. 학살소문이 나 아버지는 광주로 피신하기 위하여 친척 2명, 마을사람 1명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갔는데, 마침 5중대 군인에게 발견되어 아버지 등 4명이 도망을 가자 쫓아와 총살하였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정윤현 진술조서, 2006. 8. 18.)  
숙부 서이섭(양부)이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인공 때 마을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불침번과 보초를 섰는데, 수



## 나. 소결

함평11사단사건은 국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으로 활동하였거나,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의심하여 집단 또는 소규모로 총살·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11월 27일 덕림리 사건은 주민들이 신고 없이 주막에 모여 새끼 꼬는 것을 5중대 군인들이 수상히 여겨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12월 6일 월야면 정산리 장교, 동촌마을 사건과 12월 7일의 남산뫼 사건은 한새들 전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3일 후 동촌마을 뒤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징과 꽁과리를 치며 ‘승리’를 자축한데 대한 보복행위였다.<sup>65)</sup> 또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에 있던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조달해가자 주민들이 이들에게 협조하였다고 의심하여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6일 저녁 월야리와 월악리 주민들과 소년단원들이 좌익들의 강요로 손동재에서

복 후 군인들의 추궁에 숙부도 잡혀갔습니다. 해보면사무소 창고에 갇혔다가 1, 2일 있다 해보리 산비탈로 끌고 가 죽였는데, 당시 20~30명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서동기 진술조서, 2007. 1. 19.)

양부 봉진성이 1950년 12월 5일 해보면 문장에서 5중대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양부는 피신을 갔다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와 있었는데, 군인과 경찰이 생포한 빨치산 연락병을 데려와 “동조자를 암려 주면 살려 주겠다”고 하자 양부님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여 해보지서에 구금하였습니다. 며칠 후 군인 2명이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해보지서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총살하였습니다.(신청인 봉석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윤봉연이 1950년 12월 21일 해보 쌍구룡 중앙초등학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한청이었는데, 제가 군대 갈 예정이어서 저를 만나려 쌍구룡에 나오셨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윤무병 진술조서, 2007. 1. 17.)

숙부 이달성은 1950년 11월 26일(음 10월 17일) 월야 용월리 내새(재일등)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숙부는 아둔하여 왕골 둋자리를 만드느라 그늘진 방에서 작업을 하여 얼굴이 창백하고 수염이 길었다고 합니다. 숙부 등 3명을 빨치산이라 생각하여 총살하였다고 합니다.(신청인 이국범 진술조서, 2007. 1. 19.)

아버지 배판수는 1950년 12월 1일(음력) 5중대원에게 총살되었습니다. 월야 전하에서 마차에 짐을 싣고 송정리로 가다 고실에서 차를 타고 가던 임현태이라는 5중대 군인에게 잡혀 해보면 귀발에서 총살되었습니다.(신청인 배상호 진술조서, 2007. 1. 19.)

친형 김영후가 1950년 12월 7일 월야면 월야리 남산뫼 사건 후 돌아가던 5중대원에게 평촌에서 문장리 중대본부로 연행되어 죽었습니다. 장형 김영추와 집에 있었는데, 5중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 뚩독이 올라 1년 반 후 돌아가셨고, 작은형 김영휴는 5중대원에게 잡혀가 죽었습니다.(신청인 김영만 진술조서, 2007. 1. 17.)

4중간 양대자는 1950년 12월 5일(음력) 월야면 용암리 은암 뒷산에서 5중대 군인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마금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적상 이름은 대자여서 제적부에는 대자로 적혀 있습니다. 4촌 형의 탈상을 치르고 주민 20여 명이 피난하다 6, 7명이 용정리 용수마을 이장범의 사랑에 있었고 나머지 15, 16명은 미리 피난하였는데, 돌아가신 아저씨(양대자)와 저는 방에 있었는데, 동네 어린애가 “5중대가 몰려온다”고 하여 나갔다가 들어와 뒤로 빠지다 잡혀 죽었습니다.(신청인 양윤식 진술조서, 2007. 3. 15.)

65) 그 전날 군인 2명이 신기마을에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봉화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들키로 장교마을에 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신청인 서백수 진술조서, 2006. 7. 25.)

어머니와 이모가 밥을 하는데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큰소리로 “대한민국 군인이 들어왔다. 모두 밖으로 나와라”해서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연설하는 줄 알고 작은 이모는 야기를 업고 맨 앞에, 어머니는 야기를 업고 이모 뒤에 앉았습니다.(신청인 한정옥 진술조서, 2006. 5. 25.)



봉홧불을 피우며 만세를 부른 것이 다음날 5중대가 남산뫼에서 벌인 집단총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950년 12월 31일의 쌍구룡 사건과 1951년 1월 12일 모평 사건 그리고 1951년 1월 14일 우치리 사건은 소개나온 주민들이 식량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마을을 왕래하자 5중대가 이들을 빨치산 내통자로 의심한 나머지 군·경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선별 없이 총살한 사건이다.

그리고 모평마을 사건은 전날 밤 비녀봉에서 빨치산이 중대본부를 공격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또 1950년 12월 9일 외치리 사건은 빨치산의 5중대에 대한 도로 교란작전이 주민총살의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나산면 이문리 사건은 좌익·부역혐의자 색출 과정에서 집단 총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은 공비소탕작전 과정에서 벌어졌고, 5중대 진격소식이 전해오자 젊은이들이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어 희생자가 대부분 노약자들이었다.

## 2.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 가. 사건별 희생자의 희생규모<sup>66)</sup>

#### 1)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표 4〉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오봉근	남	37	농업	오춘열	1969.3.2. 사망일 기재
2	정진국	남	42	농업	정양수	1971.4.25. 사망일 기재
3	유재섭	남	23	농업	유우현	1950.10.18. 사망일 기재
4	유태열	남	30	농업	정옥순	1957.8.20. 사망일 기재
5	정성규	남	36	농업	정종화	1953.10.17. 사망일 기재
6	오펠근	남	15		오칠근	1955.2.4. 사망일 기재

66) 희생자 확정과정에서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가 안 된 경우, 신청인 주변을 탐문하였으며 제적부 미제출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적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또 결혼 후 자녀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된 경우는 인우보증, 족보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희생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유를 명기하였다.



1950년 11월 27일 발생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사건의 경우 목격자 유형렬, 신청인 오춘열 등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는 오봉근 등 6명으로 확인되었다.<sup>67)</sup>

확인된 희생자는 오봉근(다-1223) 정진국(다-1224) 유재섭(다-1225) 유태열(다-1226, 7238) 정성규(다-1227) 오펠근(다-1228, 7239)이다.

## 2)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을 신청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양순의 가족 5명을 포함한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양순의 동생 박아기와 한정옥의 남동생 한아기, 그리고 강풍전의 남동생 강아기 등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5〉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박두남	남	51	농업	박양순	1955.11.23. 사망일 기재
2	김순란	여	21	농업	박양순	사망사실 미기재
3	박종한	남	15		박양순	1955.8.10. 사망일 기재
4	박순심	여	12		박양순	1961.9.10. 사망일 기재
5	박아기 <sup>68)</sup>	여	1		박양순	호적 미등재
6	이복녀	여	34	농업	한정옥	1949.10.5. 사망일 기재
7	한아기	남	1		한정옥	호적 미등재
8	이순득	여	29	농업	강풍전	1948.4.11. 사망일 기재
9	강아기	남	1		강풍전	호적 미등재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박두남, 김순란, 박종한, 박순심, 박아기(다-1202), 이복녀 한아기(다-1203), 이순득 강아기(다-1204)이다.

## 3)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서백수의 부 서

67) 희생자 중 주막 노파의 아들 정봉근의 유족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68) 이 보고서의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희생자 신원이 제작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만동 등 11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촌마을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서만동(다-1196), 서석암(다-1197), 곽판용(다-1198), 곽석연(다-1199), 서용기(다-1200), 곽지연(다-1201), 박소남(다-1205), 김삼금 김초순 김성애 김상율(다-2869)이다.

〈표 6〉 월야면 정산리 동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서만동	남	49	농업	서백수	1960.5.10. 사망일 기재
2	서석암	남	51	농업	서창복	1968.1.10. 사망일 기재
3	곽판용	남	51	농업	곽진관	1968.10.27. 사망일 기재
4	곽석연	남	43	농업	곽상태	1950.11.25. 사망일 기재
5	서용기	남	49	농업	서창호	1951. 7. 사망일 기재
6	곽지연	남	42	농업	곽상덕	사망사실 미기재
7	박소남	남	44	농업	박종인	1950.10.27. 사망일 기재
8	김삼금	남	45	농업	김희태	1957.5.8. 사망일 기재
9	김성애	남	37	농업	김희태	1957.5.5. 사망일 기재
10	김초순	여	13		김희태	1957.5.10. 사망일 기재
11	김상율	남	12		김희태	1951.11.10. 사망일 기재

#### 4)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덕부의 부 이연범 등 2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촌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이연범(다-1318), 이판금(다-3487)이다.

〈표 7〉 월야면 정산리 서촌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연범	남	31	농업	이덕부	1950.1.5. 사망일 기재
2	이판금	남	42	농업	이재하	일본인 여자 희생 목격. 1952.5.6. 사망기재



### 5) 월야면 계림리 ·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사건

1950년 12월 6일 발생한 월야면 계림리와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임일수의 사촌형 임양수를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8〉 월야면 계림리 ·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임봉수	남	27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양 12.6) 등재
2	임양수	남	24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 등재
3	임선진	남	40	농업	임일수	사망일 1950.10.27. 등재
4	김병수	남	35	농업	김매화	사망일 1950.12.8. 등재
5	김수성	남	26	농업	김주섭	실제이름 김용선, 1953.8.9.사망일 기재
6	노병훈	남	27	농업	노도출	사망일 1951.2.5. 등재
7	이수범	남	33	농업	이종철	사망일 1960.5.25. 등재
8	노병조	남	23	농업	유귀복	사망일 1950.12.27. 등재
9	노병식	남	25	농업	노선균	사망일 1968.10.8. 등재
10	노준기	남	53	농업	노필귀	사망일 1950.11.10.로 등재

참고인 임화수는 목격한 희생자가 12명이라고 하였지만, 본인도 희생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하여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희생자 김수성은 실제 이름과 호적상 이름 사이에 착오가 있어 수정진술을 들었다.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 시목마을 사건의 희생자는 임봉수(다-1188), 임양수(다-1189), 임선진(다-1190), 김병수(다-1191), 김수성(다-1192), 노병훈(다-1193), 이수범(다-1194), 노병조(다-1195), 노병식(다-1196), 노준기(다-1207)이다.

### 6) 월야면 남산뫼 사건

1950년 12월 7일 발생한 남산뫼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민봉의 양모 김갑순을 포함하여 76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정길호의 모 김유순 등 8인은 사건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정남숙은 현재 생존해 있다.

이중 정진덕 외 21명의 사망사실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행한 『6·25사변 피살



자 명부<sup>69)</sup>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이 명부에는 정진덕 등 22명이 좌의 및 빨치산에 의한 피살자로 기재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 5중대에 의한 희생자임이 확인되었다.

또 신청인 정진두의 고종사촌 정재덕은 제적부 확인결과 군인신분으로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5중대에 의한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조사 과정에서 남산뫼 사건의 희생자가 131명이라는 진술도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월야면 남산뫼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갑순	여	34	농업	정민봉	1966.2.5. 사망일 기재
2	정진덕	남	19	농업	정진억	피살자명부 <sup>70)</sup> 기재, 1950.11.20. 사망일 기재
3	최용례	여	38	농업	정상수	1950.11.28. 사망일 기재
4	정천수	남	14		정상수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8. 사망일 기재
5	정종문	남	17	농업	정기문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3. 사망일 기재
6	심용기	남	12		심춘택	1957.4.20. 사망일 기재
7	정길문	남	31	농업	정근우	사망사실미기재
8	정동수	남	20	농업	정근한	피살자명부 기재, 1969.11.2. 사망일 기재
9	정계환	남	13		정태환	1962.8.5. 사망일 기재
10	정방섭	남	21	교사	정충섭	1950.10.27. 사망일 기재
11	정병모	남	18	농업	정득모	1957.10.27. 사망일 기재
12	정진철	남	19	농업	정홍순	제적부 사망 미 등재, 피살자명부 기재
13	정동모	남	20	농업	정부덕	피살자명부 기재, 1951.10.28. 사망일 기재
14	정민모	남	19	농업	오공숙	1949.11.28. 사망일 기재
15	정진발	남	20	농업	이순례	1951.11.5. 사망일 기재
16	정창진	남	13	농업	정진천	1952.9.9. 사망일 기재

69) 1952년 3월 3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6·25 기간에 좌의, 빨치산 및 인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민간인의 실태를 조사한 정부문서이다. 명부는 피해자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59,964명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인원이 43,511명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명부에 따르면 합평군 피해 인원은 1,954명이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7	정재호	남	22	농업	정재문	피살자명부기재, 1950.12.10. 사망일 기재
18	김순애	여	17	농업	김선행	1950.10.19. 사망일 기재
19	김재만	남	18	농업	김재익	1957.1.20. 사망일 기재
20	정옥모	남	30	농업	정진임	1961.8.3. 사망일 기재
21	정기모	남	20	농업	정진임	피살자명부 기재, 1961.7.25. 사망일 기재
22	정재환	남	21	농업	정병호	1950.10.29. 사망일 기재
23	정중진	남	23	농업	정계수	피살자명부 기재, 1962.7.8. 사망일 기재
24	정문모	남	33	농업	정진정	1962.6.27. 사망일 기재
25	정양모	남	39	농업	정공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9.3.14. 사망일 기재
26	정진봉	남	43	농업	정칠진	피살자명부 기재, 1966.12.20. 사망일 기재
27	정병모	남	18	농업	정응모	1950.10.18. 사망일 기재
28	정근모	남	16	농업	안춘자	1955.2.5. 사망일 기재
29	김유순	여	1928년생	농업	정길호	부상 (1998년 사망)
30	정동석	남	19	농업	정석봉	1955.3.22. 사망일 기재
31	정동섭	남	18	농업	정석봉	피살자명부 기재, 1956.11.11. 사망일 기재
32	이사석	남	38	농업	이경범	제적부 사망 미등재
33	정홍섭	남	30	농업	정윤철	피살자명부 기재, 1949.11.18. 사망일 기재
34	정봉수	남	47	농업	정진섭	1963.12.27. 사망일 기재
35	정달모	남	1930년생	농업	오영남	부상 (1997년 사망)
36	정진철	남	28	농업	정방수	1962.3.12. 사망일 기재
37	이점동	남	40	농업	이재환	1956.7.5. 사망일 기재
38	정남섭	남	39	농업	정기훈	1951.10.18. 사망일 기재
39	정봉섭	남	23	농업	정운섭	1950.11.5. 사망일 기재
40	정근모	남	17	농업	정송모	1965.10.25. 사망일 기재
41	윤필중	남	18	농업	윤만중	1952.2.9. 사망일 기재
42	정상휴	남	36	농업	윤납순	1950.10.10. 사망일 기재
43	정익모	남	44	농업	정진자	피살자명부 기재, 1960.3.10. 사망일 기재



## 제2부 진실규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44	조병혁	남	31	농업	조병술	1952.8.16. 사망일 기재
45	정병선	남	31	농업	정을호	1961.3.5. 사망일 기재
46	정진차	남	15		정진재	1950.10.30. 사망일 기재
47	정현수	남	17	농업	정공열	1956.10.20. 사망일 기재
48	정현기	남	13		정복기	1964.12.5. 사망일 기재
49	이계순	여	17	농업	이옥희	제적부 사망 미등재(훈인신고)
50	정해로	남	16	농업	정옥기	1962.1.6. 사망일 기재
51	정영관	남	36	농업	정창호	1953.6.14. 사망일 기재
52	김영섭	남	32	농업	김선영	1961.11.10. 사망일 기재
53	정봉휴	남	37	농업	정유순	1950.10.18. 사망일 기재
54	정재복	남	27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5.3.1. 사망일 기재
55	정홍섭	남	18	농업	정재모	피살자명부 기재, 1957.10.5. 사망일 기재
56	정재섭	남	28	농업	정은균	피살자명부 기재, 1970.5.20. 사망일 기재
57	정병섭	남	30	농업	정경숙	1953.10.8. 사망일 기재
58	김명자	여	18	농업	정경숙	1952.10.10. 사망일 기재
59	정광열	남	26	농업	백삼남	사망사실 미기재
60	정말동	남	21	농업	백삼남	1957.7.5. 사망일 기재
61	정남숙	남	1928년생	농업		부상
62	정진을	남	30	농업	정영수	1951.11.8. 사망일 기재
63	정동휴	남	25	농업	정영위	1956.5.9. 사망일 기재
64	정동기	남	19	농업	정근욱	1950.11.8. 사망일 기재
65	정귀님	여	15		노홍용	1950.12.7. 사망일 기재
66	정기찬	남	1926년생	농업	김흠선	부상 (1990년 사망)
67	정맹모	남	41	농업	정귀례	피살자명부 기재, 1961.7.3. 사망일 기재
68	정차임	여	17	농업	정귀례	사망사실 미기재
69	정열	남	15	농업	정용운	피살자명부 기재, 1952.6.7. 사망일 기재
70	정진기	남	1922년생	농업	정길수	부상 (1987년 사망)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71	정삼근	남	14		정종욱	피살자명부 기재, 1956.5.9. 사망일 기재
72	김도담	여	16	농업	김윤선	1954.9.5. 사망일 기재
73	김윤월	남	12		김윤선	1957.3.2. 사망일 기재
74	김쌍순	여	5		김윤선	1960.1.10. 사망일 기재
75	이상숙	남	1935년생	농업	정순남	부상 (1985년 사망)
76	정병우	남	23	농업	정연순	피살자명부 기재, 1949.10.27. 사망일 기재
77	정민선	남	17	농업	정연순	1949.12.7. 사망일 기재
78	정태섭	남	28	농업	정재형	1972.4.1. 사망일 기재
79	정회섭	남	1932년생	부상	정기옥	부상 (사망)
80	정팔봉	남	24	농업	정팔림	1950.10.12. 사망일 기재
81	정석두	남	41	농업	정남진	피살자명부 기재, 1953.10.20. 사망일 기재
82	정병찬	남	17	농업	정진섭	1948.6.25. 사망일 기재
83	정남선	남	1921년생	농업	정진두	부상(사망), 사망사실 미기재
84	윤성중	남	29	농업	윤을석	1957.3.26. 사망일 기재
85	정계형	남	34	농업	배정자	2차 총격에 사망, 1950.10.5. 사망일 기재

남산뫼 사건의 희생자는 김갑순(다-1127), 정진덕(다-1128), 최용례·정천수(다-1129), 정종문(다-1130), 심용기(다-1131), 정길문(다-1132), 정동수(다-1133), 정계환(다-1134), 정방섭(다-1135), 정병모(다-1136), 정진철(다-1137), 정동모(다-1138), 정민모(다-1139), 정진발(다-1140), 정창진(다-1141), 정재호(다-1142), 김순애(다-1143), 김재만(다-1144), 정옥모·정기모(다-1145), 정재환(다-1146), 정중진(다-1147), 정문모(다-1148), 정양모(다-1149), 정진봉(다-1150), 정병모(다-1151), 정근모(다-1152·신청인 안춘자), 정동석·정동섭(다-1155), 이사석(다-1156), 정홍섭(다-1157·신청인 정윤철), 정봉수(다-1158), 정진철(다-1160), 이점동(다-1161), 정남섭(다-1162), 정봉섭(다-1163), 정근모(다-1164·신청인 정송모), 윤필중(다-1165), 정상휴(다-1166), 정익모(다-1167), 조병혁(다-1168), 정병선(다-1169), 정진차(다-1170), 정현수

70)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다-1171), 정현기(다-1172), 이계순(다-1173), 정해로(다-1174), 정영관(다-1175), 김영섭(다-1176), 정봉휴(다-1178), 정재복·정홍섭(다-1179·신청인 정재모), 정재섭(다-1180), 정병섭·김명자(다-1181), 정광열·정말동(다-1182), 정진을(다-1184), 정동휴(다-1185), 정동기(다-1186), 정귀님(다-1187), 정맹모·정차임(다-1315), 정열(다-1316), 정삼근(다-2243), 김도담·김윤월·김쌍순(다-2244), 정병우·정민선(다-2872), 정태섭(다-2974), 정팔봉(다-3900), 정석두(다-4267), 정병찬(다-4435), 윤성중(다-6741), 정계형(다-3752)이다.

또 김유순(다-1154), 정달모(다-1159), 정기찬(다-1314), 정진기(다-1317), 이상숙(다-2245), 정회섭(다-3898), 정남선(다-4696), 정남숙(다-1183)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으며 정남숙은 생존해 있다.

#### 7) 월야면 외치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월야면 외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순열의 형 이남열을 포함하여 15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sup>71)</sup>

〈표 10〉 월야면 외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이남열	남	18	농업	이순열	1950.12.2. 사망일 기재
2	이상근	남	16	농업	이상구	1950.10.27. 사망일 기재
3	정기봉	남	20	농업	정호현	피살자명부 기재, 사망사실 미기재
4	정기업	남	19	농업	정판수	1949.5.11. 사망일 기재
5	정기순	남	16	농업	정판수	1952.10.28. 사망일 기재
6	정기선	남	14		정기정	1950.12.1. 사망일 기재
7	이계주	남	23	농업	이용현	1950.12.28. 사망일 기재
8	정기동	남	31	농업	정용현	피살자명부 기재, 1957.5.5. 사망일 기재
9	정갑현	남	14		정귀현	1969.9.25. 사망일 기재
10	정석봉	남	15	농업	정석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1	정달선	남	15	농업	정재선	1950.11.15. 사망일 기재

71) 함평군의회 보고서에 희생자로 밝혀진 조금석, 조정석과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백기남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2	정기복	남	17	농업	정병원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0. 사망일 기재
13	정상현	남	17	농업	정동현	1950.11.29. 사망일 기재
14	정만선	남	25	농업	정종성	피살자명부 기재, 1950.11.2. 사망일 기재
15	정기우	남	21	농업	정재준	1950.12.20.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이남열(다-1209), 이상근(다-1210), 정기봉(다-1211), 정기업 · 정기순(다-1212), 정기선(다-1213), 이계주(다-1214), 정기동(다-1215), 정갑현(다-1216), 정석봉(다-1217), 정달선(다-1218), 정기복(다-1219), 정상현(다-1220), 정만선(다-1221), 정기우(다-1222)이다.

#### 8) 나산면 이문리 사건

1950년 12월 9일 발생한 나산면 이문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승원의 조부 김기복을 포함하여 9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안명임이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안명임과 아들 김맹수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11〉 나산면 이문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기복	남	64	농업	김승원	1960.12.10. 사망일 기재
2	김담봉	남	51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3	박삼봉	여	55	농업	김수창	1954.8.5. 사망일 기재
4	김용길	남	57	농업	김완기	1971.3.25. 사망일 기재
5	이계례	여	50	농업	김완기	1971.3.28. 사망일 기재
6	김양임	여	14		김완기	1973.9.10. 사망일 기재
7	정감산	여	58	농업	김호옥	1952.9.5. 사망일 기재
8	안명임	여	20	농업	김현석	혼인신고 미필
9	김맹수	남	7		김현석	호적 미등재
10	오경선	남	15	농업	오정수	1950.11.15. 사망일 기재



확인된 희생자는 김기복(다-1121), 김담봉 · 박삼봉(다-1122), 김용길 · 이계례(다-1123), 김양임(다-1124), 정감산(다-1125), 안명임 · 김맹수(다-1126), 오경선(다-2870)이다.

### 9) 해보면 쌍구룡 사건

1950년 12월 31일 해보면 쌍구룡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형술의 부 김영만을 포함하여 23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sup>72)</sup>

장재수의 숙모(청암댁), 여동생 장이님 장재님 장아기 등 4명, 김종희의 여동생 1명, 박용원의 여동생 박금희는 호적 등재가 안 되어 제적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김종희의 여동생 김순덕은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여 제적부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표 12〉 해보면 쌍구룡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영만	남	59	농업	김형술	1969.4.19. 사망일 기재
2	장진섭	남	48	농업	장재수	1951.12.21. 사망일 기재
3	조운여	여	42	농업	장재수	1952.1.15. 사망일 기재
4	장순섭	남	46	농업	장재수	1951.12.26. 사망일 기재
5	청암댁	여	39	농업	장재수	장순섭의 처로 혼인신고 안 되었음
6	장이님	여	11		장재수	호적 미등재
7	장재님	여	8		장재수	호적 미등재
8	노월산	여	34	농업	김종희	1962.7.5. 사망일 기재
9	김순덕	여	10		김종희	사망신고 안 됨(혼인)
10	김아기	여	3		김종희	호적 미등재
11	이석여	남	72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2	최봉예	여	37	농업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3	이정행	남	10		이금남	제적부 사망미기재
14	박영수	남	41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15	구순녀	여	27	농업	박용원	1961.9.20. 사망일 기재

72)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대창리 이장 김성묵은 대창리 원주민 11명과 광암리에서 소개된 피난민 40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전남반), 9쪽, 1960. 6. 8.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6	박금희	여	1		박용원	호적 미등재
17	박민수	남	28	농업	박용원	1960.4.3. 사망일 기재
18	김연녀	여	24	농업	박용원	1967.8.5. 사망일 기재
19	김만엽	남	52	농업	김재귀	1967.10.5. 사망일 기재
20	김경엽	남	56	농업	김재귀	1950.10.31. 사망일 기재
21	이봉범	남	41	농업	이정이	1955.10.19. 사망일 기재
22	이종락	남	28	농업	이병한	사망사실 미기재
23	장야기	여	1		장재수	호적 미등재

희생자는 김영만(다-1230), 장진섭·조운여·장이님·장재님·청암댁(정순섭의 처)·장순섭(다-1231), 노월산·김순덕·김아기(다-1232), 이석여·최봉예·이정행(다-1233), 박영수·구순녀·박민수·김연녀·박금희(다-1236), 김만엽·김경엽(다-1240), 이봉범(다-1253), 이종락(다-3923), 장야기(다-4689)이다.

#### 10)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1951년 1월 12일 발생한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병용의 가족 5명을 포함하여 50명의 희생과 장종석의 부상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우범·이아기(신청인 이이범)의 희생사실은 이이범 본인에 대한 전화 탐문<sup>73)</sup>과 주변 인물<sup>74)</sup>을 통하여 탐문하였으나, 희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희생자 임남도·임명순(신청인 임기운), 장야기(신청인 장종석), 김용순(신청인 윤한봉의 前母)·윤명란(신청인 윤한봉), 노아기(신청인 노병량) 등 6명은 호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동용은 호적이 멀실되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장종석은 당시 4살에 총을 맞아 부상하였으나, 현재 생존해 있다. 신청인 모평마을 사건 윤양성은 장애로 인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3) 신청인 이이범, 전화탐문 2007. 4. 11.

74) 신청인 박용원(해보면 유족회장), 2007. 6. 22.



〈표 13〉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윤상수	남	54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2	김정임	여	42	농업	윤병용	1968.11.5. 사망일 기재
3	윤병길	남	24	농업	윤병용	1968.11.6. 사망일 기재
4	윤병식	남	21	농업	윤병용	1968.11.1. 사망일 기재
5	윤복덕	남	16	농업	윤병용	1950.10.15. 해보면 상곡리 쌍구릉 사망
6	김유촌	여	83	농업	윤경중	1950.10.29. 사망일 기재
7	주순님	여	42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8	윤창중	남	17	농업	윤현중	1950.12.5. 사망일 기재
9	임막동	남	50	농업	임기운	1951.9.18. 사망일 기재
10	윤선순	여	38	농업	임기운	1958.12.12. 사망일 기재
11	임남도	여	6		임기운	호적 미등재
12	임명순	여	3		임기운	호적 미등재
13	이귀범	남	15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4	이오목	여	12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5	이영범	남	9		이이범	1971.11.3. 사망일 기재
16	이갑열	남	49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7	한대례	여	40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8	이인범	남	18	농업	이이범	1950.12.5. 사망일 기재
19	이현득	남	16	농업	이이범	1975.2.7. 사망일 기재
20	이윤범	남	9		이이범	1955.3.2. 사망일 기재
21	이문범	남	8		이이범	1971.11.20. 사망일 기재
22	윤옥중	남	49	농업	윤길수	1953.3.22. 사망일 기재
23	장규옥	남	39	농업	장종석	1966.6.8. 사망일 기재
24	윤효임	여	28	농업	장종석	1972.1.4. 사망일 기재
25	장아기	여	2		장종석	호적 미등재
26	임삼봉	여	55	농업	윤일성	1953.9.20. 사망일 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27	윤판술	남	35	농업	윤일성	1954.7.10. 사망일 기재
28	정순임	여	16	농업	윤종길	혼인신고 미필
29	윤석열	남	27	농업	김윤임	1951.11.15. 사망일 기재
30	김처녀	여	43	농업	윤한봉	1968.3.1. 사망일 기재
31	김용순	여	22	농업	윤한봉	혼인신고 미필
32	윤명란	여	3		윤한봉	호적 미등재
33	윤양중	남	22	농업	윤철곤	1954.7.2. 사망일 기재
34	김기중	남	49	농업	김복수	1974.12.28. 사망일 기재
35	정지족	여	73	농업	김광현	1967.8.25. 사망일 기재
36	윤규삼	남	70	농업	윤오중	1973.6.10. 사망일 기재
37	정고녀	여	54	농업	윤오중	1973.5.6. 사망일 기재
38	노방주	남	35	농업	노병량	1950.11.15. 사망일 기재
39	노병희	여	8		노병량	1961.10.5. 사망일 기재
40	노아기	여	3		노병량	호적 미등재
41	이유용	남	31	농업	이귀성	1969.4.11. 사망일 기재
42	최희락	남	22	농업	최남용	1950.12.20. 사망일 기재
43	장종석	남	1947년생		본인	부상
44	정동용	남	25	농업	윤길수	제적부 확인 안 됨
45	윤덕림	여	12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6	윤석규	남	9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7	윤석문	남	8		윤길수	1950.1.6. 사망일 기재
48	윤유성	남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49	장양림	여	63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0	이평림	여	61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51	모순녀	여	27	농업	윤길수	1950.12.4. 사망일 기재



희생자는 윤상수·김정임·윤병길·윤병식·윤복덕(다-1208), 김유촌(다-1234), 주순님·윤창중(다-1235), 임막동·윤선순·임남도·임명순(다-1237), 이귀범·이오목·이영범·이갑열·한대례·이인범·이현득·이윤범·이문범(다-1238), 윤옥중(다-1241), 장규옥·윤효임·장아기(다-1242), 임삼봉·윤판술(다-1243), 정순임(다-1246), 윤석열(다-1247), 김처녀·김용순·윤명란(다-1248), 윤양중(다-1249), 김기중(다-1250), 정지족(다-1251), 윤규삼·정고녀(다-1252), 노방주·노병희·노아기(다-1254), 이유용(다-2871), 최희락(다-3922), 정동용(다-10830), 윤덕립·윤석규·윤석문·윤유성·장양립·이평립·모순녀(다-10831)이다. 또 장종석(다-4944)은 당시 3살이었는데 발목에 총을 맞았다.

### 11) 나산면 우치리 사건

1951년 1월 14일 발생한 나산면 우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희생자 수는 이계준의 모 김증산을 포함하여 6명으로 확인되었다.<sup>75)</sup> 이계백의 외숙 안귀식은 멸손되어 제적부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동생 이야기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표 14〉 나산면 우치리 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비고
1	김증산	여	58	농업	이계준	피살자명부기재, 1970.10.5. 사망일 기재
2	안귀식	남	28	농업	이계백	사망사실 미 등재
3	안귀순	여	33	농업	이계백	1992.5.13. 사망일 기재
4	이야기	남	1		이계백	호적 미등재
5	김신광	여	61	농업	김재경	1924.10.18. 사망일 기재
6	정병옥	남	11		정병호	1962.11.20. 사망일 기재
7	문앵례	여	68		고영석	사망사실 미기재

희생자는 김증산(다-1054), 안귀식(다-1114), 안귀순 이야기(다-1115), 김신광(다-1118), 정병옥(다-1119), 문앵례(다-1120)이다.

75) 희생자 김증산은 『6·25시변 피살자 명부』에 죄의 및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 12)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그밖에 1950년 11월 27일부터 1951년 1월 14일경까지 5중대의 작전지역이었던 함평 일원과 장성군 삼서면, 광산군 인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규모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병화의 부 정성면을 포함하여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의 신원과 당시 사건발생지역은 아래와 같다.

〈표 15〉 기타 소규모 희생사건 희생자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1	정성면	남	31	농업	정병화	월야 영월, 1950.1.9. 사망일 기재
2	이동선	남	29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3	이동기	남	25	농업	이만희	해보 금덕, 1965.3.10. 사망일 기재
4	안해동	남	44	농업	안길원	해보 금덕, 1951.7.28. 사망일 기재
5	김기만	남	46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10.29. 사망일 기재
6	정약순	여	49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2.3.12. 사망일 기재
7	강정순	여	20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53.9.15. 사망일 기재
8	김인순	여	13	농업	김홍빈	해보 금덕, 1947.7.20. 사망일 기재
9	정창기	남	27	농업	정윤현	월야 전하, 1950.11.15. 사망일 기재
10	이성신	여	19	농업	이기신	해보 금덕, 1961.3.15. 사망일 기재
11	이용범	남	45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3.7. 사망일 기재
12	윤효순	여	43	농업	이재문	해보 금덕, 1961.6.20. 사망일 기재
13	김영만	남	17	농업	김영휴	1961.6.7. 사망일 기재
14	노봉래	남	55	농업	노병철	1951.11.30. 사망일 기재
15	노연자	여	18	농업	노병철	호적 미등재
16	최남휴	남	34	농업	최병수	해보 고모, 1950.10.28. 사망일 기재
17	이윤선	남	64	농업	이덕행	해보 금덕, 1957.5.26. 사망일 기재
18	이손동	남	39	농업	이덕행	1958.1.29. 사망일 기재
19	이달성	남	27	농업	이국범	사망 미기재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20	윤일두	남	45	경찰	윤석주	해보 금덕, 1950.11.16. 사망일 기재
21	박명수	남	25	농업	장동규	월야 계림, 1958.12.16. 사망일 기재
22	배판수	남	29	농업	배상호	해보 귀밀, 1951.11.30. 사망일 기재
23	이기범	남	35	농업	이재삼	월야 서촌, 1966.10.26. 사망일 기재
24	양대자	남	43	농업	양윤식	월야 용정, 1964.12.14. 사망일 기재
25	윤봉연	남	49	농업	윤무병	해보 쌍구룡, 1975.11.15. 사망일 기재
26	서이섭	남	27	농업	서동기	해보 탑재, 1951.10.15. 사망일 기재
27	김병갑	남	40	농업	김현필	해보 금덕, 1953.2.16. 사망일 기재
28	봉진성	남	28	농업	봉석	해보 문장, 1950.11.20. 사망일 기재
29	이병옥	남	27	농업	이옥희	광산 삼도, 사망일자 미기재

신청인 이만희의 숙부 이정열, 이정기의 사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만은 신청인 김영휴의 형으로서 행정 착오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김영휴이다.

희생자 중 노연자는 호적 등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달성은 제적부 상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희생자<sup>76)</sup>는 정성면(다-1229), 이동선·이동기(다-555), 안해동(다-556), 김기만·정약순·강정순·김인순(다-1049), 정창기(다-1177), 이성신(다-1319), 이용범 윤효순(다-2744), 김영만(다-2862), 노봉래·노연자(다-2868), 최남휴(다-3223), 이윤선·이손동(다-3626), 이달성(다-3899), 윤일두(다-3919), 박명수(다-4104), 배판수(다-4557), 이기범(다-4558), 양대자(다-5612), 윤봉연(다-6302), 서이섭(다-6306), 김병갑(다-8485), 봉진성(다-10810), 이병옥(다-1173)이다.

신청인 김성수(다-5617)는 진실규명신청서에 누이 김소림이 1950년 가을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목격자 양윤식의 증언에 따라 5중대의 해보 주둔

76) 소규모사건 희생자의 사망일자는 다음과 같다.

정성면(1950. 11. 27.), 이동선 이동기(1950. 12. 말), 안해동(1951. 1. 6.), 김기만 정양순 강정순 김인순(1951. 1. 9.) 정창기(1950. 11. 28.), 이성신(1950. 12. 13.), 이용범 윤효순(1950. 12. 8.) 김영만(1950. 12. 7.), 노봉래 노연자(1951. 1. 6.), 최남휴(1950. 12. 8.), 이윤선(1950. 12. 4.), 이손동(1950. 12. 2.), 이달성(1950. 11. 26.), 윤일두(1950. 12. 25.), 박명수(1950. 12. 10.), 배판수(1950. 12. 1.), 이기범(1950. 12. 5.), 양대자(1950. 12. 5.), 윤봉연(1950. 12. 21.), 서이섭(음·1950. 11. 13.), 김병갑(1950. 12. 27.), 봉진성(1950. 12. 5.), 이병옥(1950. 12. 7.)



전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여 함평11사단 사건의 희생자에서 제외하였고, 광주·전남지역 군·경토별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이관하였다.

신청인 정진두(다-4696)의 고종사촌 형 정재덕은 제적부 상에 「단기 4283년 9월 2일 ○○지구에서 전사 육군본부 부관감 … 단기 4294년 11월 20일 보고」로 되어 있어 함평 11사단 사건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192명의 진실규명신청인 중 185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 사망자 249명과 부상 후 사망 또는 생존자 9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미신청인 1명을 사건현장 부상 생존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신청인 윤석주(다-3919호) 진실규명 신청에서 피해자 진막동, 윤일태는 인민군 통치 시기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 사건 진실규명대상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하여 해당 조사국에 이관하였다.

#### 나. 사건지역 전체 희생자 수

함평 11사단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별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9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258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피해자 확정은 주로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신청인 박희님과 같이 사망하여 조사,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희생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77)</sup> 그래서 함평 11사단 작전지역이었던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사건관련 사망자는 최소 249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건지역별 희생자 수와 함평군의회가 조사한 희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6〉 진실화해위원회와 함평군의회 조사의 마을별 사건희생자 규모

(단위 : 명)

구분	덕림리	장교	동촌	수해리	남산뫼	외치리	이문리	쌍구룡	모평	우치리	기타	합계
진실화해위	6	9	13	10	77	15	10	23	50	7	29	249(9)
함평군의회	7	11	18	5	90	18	8	34	48	10	13	262

\* 주 : ( ) 안의 숫자는 부상자 임.

77) 신청인 박희님은 사망하였고, 신청인 채상현, 윤금복, 정태중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은 장애로, 정병주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정이재는 연결이 안 되었다.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97년 합평군의회 「합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그리고 유족회가 작성한 「유족회원 명부」 등을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피해규모와 비교해보면 1960년 제4대 국회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남반(유옥우, 임차주 조사위원과 오표 전문위원)은 합평 현지에 내려와 사건 당시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결과 월야면 피해자 수를 남산뫼 현장 사망 108명을 포함하여 350명(부상 25명 포함)이라고 집계하였고,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을 포함하여 합평11사단 집단희생 피해자 수는 도합 524명으로 집계하였다.<sup>78)</sup> 이러한 피해자 수는 당시의 국회 속 기록과도 차이가 난다.

합평 현지 증언청취 속기록을 보면 당시 월야면 부면장은 월야지역 희생자를 350명(부상자 25명 포함)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해보면은 금덕리 고두마을 43명(이장 강철현 증언), 모평마을 83명(이장 윤형중 증언), 성대마을 40명(이장 김성묵 증언), 그리고 해보지역 주민 45명(김성묵 증언)이라고 증언하여 이를 합치면, 해보면 피해자는 211명이었다. 나산면은 우치리 36~37명(이오섭 면장 증언), 이문리 10명(이오섭 면장 증언)이라고 증언하였다. 속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수를 합치면 607명이 된다. 이는 해보면 피해자 수에서 83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제4대 국회의 현지 증언청취를 통한 조사가 1960년 6월 8일 단 하루 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장들의 증언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524명의 신원 등이 포함된 명단은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합평군의회는 1996년 12월 28일 제46회 정기회에서 합평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효, 간사 이재화 의원)를 구성하여, 1997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활동하였다.<sup>79)</sup> 군 의회 조사 역시 피해 유족들을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 기존 유족회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많았다.

합평군의회 조사는 당시 마을별 증언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조사이어서, 그 보고서의 희생규모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조사에서 5중대에 의하여 발

78) 제4대 국회 조사보고서는 당시 조사가 단 하루에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희생자의 규모를 사건 당시와 가장 근접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조사의 원자료 등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또 조사보고서에서는 합평지역 희생자를 면별 희생자 수만을 발표하다 보니, 마을별 희생자 수 등 희생자의 구체적인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79) 현지 기초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지만 당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군의 지휘계통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한 사건 중 동네의 다른 소규모 사건과 관련 희생자 규모는 누락되었다.

이에 비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는 진실규명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 산정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좀 더 엄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이 상당수 있고 가족이 전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58명이 최종 확인된 피해자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함평11사단사건 관련 희생자는 최소 249명에서 최대 607명이라고 일단 결론내릴 수 있다.

또 『6·25피살자 명부』에 기록된 30여 명이 오히려 국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 다. 연령별·성별 희생자 구성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17〉 희생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sup>80)</sup>

(단위 : 명)

구분	~10	~20	~30	~40	~50	~60	61세~	기타	총계
전체(여자)	22(12)	71(18)	55(7)	40(9)	34(7)	16(5)	11(5)	9(1)	258
비율(%)	8.8	28.5	22.1	16.1	13.7	6.4	4.4	(부상)	100

\* 주 : 기타는 9명의 부상자 포함.

희생자의 연령·성별 분포를 보면 41.7%에 이르는 104명이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희생자 중 여성은 6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50세 이상 희생자는 특히 쌍구룡과 모평, 우치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20대 희생자는 총살직전 청장년을 선별하였던 남산뫼와 외치리 사건에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체 희생자의 41.7%에 이르는 104명 이상이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가 아닌 노인과 청소년이고, 특히 여성도 전체의 25.7%(64명)나 차지하여 희생자의 대다수가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빨치산 협력활동과는 무관한 민간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일부 사건지역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형식적인 선별절차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을 앞이나 일정 지역에 주민을 불러낸 후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 사건의 경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80)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신청인의 조사와 제적부 확인 및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조사 거부 등으로 사건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분포도에서 제외하였다.



희생자들은 5중대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내통자 또는 협력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되었지만 신청인과 참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249명의 사망자 가운데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빨치산과 국군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이었다.

### 3. 가해주체와 가해 이유

#### 가. 조사내용

##### 1) 국군 11사단의 창설과 토벌작전

###### 가) 부대 창설과 견벽청야 작전

한국전쟁 발발 초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인민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인민군과 지방좌익 등은 북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자 후방 산악지대에 들어가 빨치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1950년 8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4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11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육군 준장 최덕신이 9월 25일자로 초대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1사단은 지리산 동서 양안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다 1951년 4월, 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11사단장 최덕신은 중국의 고전적 작전개념인 견벽청야(堅壁清野) 작전을 빨치산 토벌 작전에 활용하였다. 이 작전은 ‘지켜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하게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게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시키고, 건물을 깨끗이 없애 적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목표를 구분하였다.<sup>81)</sup>

- 제1기(1950.10.7.~10.25.) 작전은 병력의 호남지역에 집결 후 훈련과 각 지역 행정기관 복구 및 적정을 수집하였다.
- 제2기(1950.10.26.~12.31.) 작전은 월동기를 맞아, 빨치산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

8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8, 172~176쪽.



여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방법을 통해 적의 저항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견벽청야 작전’을 전개하였다.

- 제3기(1951.1.1.~1.31.)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빨치산이 고봉을 근거지로 아지트를 구축하고 약탈, 납치, 방화, 기습 등을 감행함에 경찰, 청년방위대에 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사단은 근거지 붕괴에 주력하였다.
- 제4기(1951.2.1.~3.31.) 작전은 최종 토벌기로서 공비의 섬멸을 위하여 지리산 불갑산 등 빨치산 근거지 인근 산악지역의 주민 소개 작전도 병행하였다.

이 작전은 빨치산토벌이라는 본래의 작전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발생시켰다.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전에 대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최덕신은 “견벽청야작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집을 불사르고 철수시킨 다음, 다시 주민들이 들어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 원성이 클 수 밖에요”라고 하면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폐해를 인정한 바 있다.<sup>82)</sup>

#### 나) 11사단 예하 연대의 창설과 20연대의 광주 주둔

11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배속시켰는데, 함평11사단사건과 관련된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경상남도 삼랑진에서 육군 제6훈련소를 개편하여 창설하였으며, 10월 1일 제주의 육군 제5훈련소로부터 장교 87명, 사병 1,500명을 충원 받아 편성을 완료하였다.<sup>83)</sup> 20연대는 11사단 작전명령 제3호에 의거, 1950년 10월 4일 삼랑진을 출발하여 10일 광주시에 도착하여 광주여자중학교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다.<sup>84)</sup>

20연대 1대대는 1950년 10월 18일 담양읍 지역과 전라북도 순창 방면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3대대는 광주, 목포에 이어 육로를 이용, 함평지역을 수복하고 화순지역에 주둔하게 된다.

한편 9연대는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는데 1951년 2월 초 경상남도 거창, 산청, 함양의 산악지역의 주민을 집단 총살한 사건 즉 ‘거

82)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3, 을유문화사, 1975, 410쪽.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2쪽.

84) 1950. 10. 22. 연대 작명 제12호에 의거 광주여자중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본부와 예하 각 대대본부를 광주 서석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육군 군사연구실, 「부대액력표」.



창사건'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3연대는 진해시 진해여자중학교에서 11사단에 예속되었고, 10월 9일 전주로 이동하여 10월 23일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전주에 두고, 전라북도 내 공비 토벌작전을 벌였다.<sup>85)</sup>

1950년 10월 7일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의 11사단 20연대의 전과 및 피해통계를 보면 사살이 6,800명, 포로는 527명으로 전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사단의 공식 공비토벌작전과의 상당 부분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많이 한 함평, 화순, 담양, 고창, 순창 등지가 전쟁 당시 20연대 2대대 및 3대대의 작전지역이었다는 점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다) 2대대의 편성과 초기작전

20연대는 1950년 9월 25일 육군본부 일반명령에 의거 제6훈련소로부터 20연대로 개편된 아래 같은 해 9월 28일 연대 작명 제1호에 의거하여 제2대대(대대장 유갑열 소령)를 경상남도 진영에서 편성<sup>86)</sup>하였다.

그후 제2대대 작전보고에 의하면 최초 작전은 10월 18일 연대 작명 제10호<sup>87)</sup>에 의거, 전라남도 장성지구 소탕전을 전개하였다.<sup>88)</sup>

이후 제2대대의 작전 관련기록은 육군본부 작전명령<sup>89)</sup>에 의하여 미 9군단에 이양되었고, 실행내용은 육군본부에서 번역한 미군 문서인 「정기작전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85) 보병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보병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참조.

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6쪽.

87) 광주 주둔 중인 제2대대장 육군소령 유갑열 이하 완전 1개 대대는 장성방면으로 출동하라.

88) 「장성읍 동남방 261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37쪽.

89) 보병11사단, 「화랑약사」, 1976, 78쪽.



## - 부록 제1호 -

## 육군본부

육본작명 제 207 호

## 1. 가. 생략

- 나. 미 제8군 및 아군은 38선을 돌파하여 괴뢰군을 완전 격멸키 위하여 집결 중에 있음.
- 2.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 3. 가. 제11사단장은 1950. 10. 5.까지 사단사령부 및 제13연대를 남원, 제20연대를 광주, 제9연대를 전주에 각각 집결시켜 미 제9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 나. 집결 후 즉시 사단 전투지경선 남방의 전남지역을 인수 담당하라.

## 4.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

일

권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작전명령 제207호를 통하여 11사단에 대한 지휘권을 미9군단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미군 지시에 의하여 20연대 2대대가 장성군 사창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문서에 나타나 있다.

11ROK Div: 13R 一部兵力은 270400時 CQ8731附近에서 約200의 敵과 接戰하였음. 敌KIA 30, 殘敵은 分散. 20R2Bn은 오지리 B8893으로 移動 中. 20R3Bn은 동림리 BP8086으로 進出하였으며 期間 中 接戰報告 無. 全 部隊는 擔當地區에서 積極的으로 任務遂行 中.<sup>90)</sup>

위 보고에서 좌표 CQ8731은 해남군 옥천면 지역이고 좌표 B8893(BP8893의 오기)은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인근이다. 지명 오지리와 동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BP8086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부근이다.

이 지역에서 군의 이동사실은 신청인 양윤식의 진술<sup>91)</sup>에서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

90)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1950. 10. 336쪽.

91) 신청인 양윤식, 전화탐문, 2007. 5. 15.



회의 조사결과 11월 중순 함평군과 광산군의 경계지점인 월야면 외치리 인근에서 군의 이동과 초소가 운용되었음이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었다.<sup>92)</sup> 기록상 사건지역에서 20연대 2대대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12월 18일 함평군 해보면 구계리로 알려져 있었지만,<sup>93)</sup> 위 「정기작전보고」에서는 10월 27일에 함평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대대는 이후 11월 30일에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을 전개하였다.<sup>94)</sup> 진실화해위원회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2대대의 대대본부와 8중대는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6중대는 전라북도 고창에, 7중대는 장성군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sup>95)</sup>

#### 라) 국군의 함평읍 수복과 5중대의 해보면 주둔

참고인 이현석(현 함평문화원장)의 진술<sup>96)</sup>에 따르면 함평군 함평읍에 20연대가 최초로 나타난 시점은 1950년 10월 23일이다.<sup>97)</sup> 3대대 9중대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던 중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인근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한 후 함평중학교에 주둔하였고, 일부는 나산면 나산초등학교에 주둔하였다. 나산면 구산리 주민 이재열(당시 청년방위대원)은 함평 쪽에서 들어온 군인이 나산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인근 원선리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벌였다<sup>98)</sup>고 증언하였다.

12월 18일 「구계리 공비소탕전」은 현지 주민을 통해 탐문해 본 결과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99)</sup>

또 5중대의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 주둔에 대해서는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으며,<sup>100)</sup> 윤인식(4선 국회의원), 이계필(사건 당시 월야지서장), 오정인(월야지서 경찰)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 2) 가해주체

함평11사단사건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인근 지역에서 사건에 대해 들어서

92) 신청인 정재선, 진술조서 4쪽, 2006. 5. 17.

9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28쪽.

94) 「화순군 동면 287고지 소탕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41쪽.

95) 2대대의 작전 관련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고창지역 조사, 그리고 본 사건과의 함평지역 조사 등에서 주둔사실은 확인되었다.

96) 참고인 이현석, 진술조서 4쪽, 2006. 8. 23.

97) 함평의 수복은 1950년 10월 23일이다.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②, 1999년, 67쪽.

98)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이재열(5중대 청년방위대원)과 2007. 6. 6, 전화탐문.

99) 해보면 금덕리 거주 윤주일(061-323-0414)과 2007. 5. 9. 전화탐문.

100)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 2000. 6. 25, 『MBC』; 참고인 김일호, 2007. 2. 15.



알고 있는 모든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가해주체로 당시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지목하고 있다. 당시 중대장 권준옥의 연락병 김일호는 2000년 6월 25일 『MBC』가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에서 5중대(중대장 권준옥)를 가해주체로 지목하였다.<sup>101)</sup>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김일호는 당시 가해주체가 5중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sup>102)</sup>

5중대 및 중대장 권준옥이 사건의 명령 지휘책임자라는 것은 당시 월야지서 경찰관이었던 오정인의 진술,<sup>103)</sup> 월야지서장 이계필의 증언서, 동3(월야, 해보, 나산)면 선무공작대장 윤인식의 증언서에서도 확인되었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가해부대를 ‘5사단 20연대 5중대’(중대장 권준혁)라고 지목하였다.<sup>104)</sup> 또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한국일보』 1960년 5월 20일자 기사에서도 5중대장을 권준옥 대위로 보도하였다.<sup>105)</sup>

그러나 권준옥의 인사기록카드나 자력표 등에는 5중대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 사건 발생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1951년 1월 22일 ‘2대대 장교 권준옥’을 ‘연대 근무중대 병기장교 권준옥’으로 전보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기록은 1951년 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 사건과 1월 20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희생사건 발생 후 권준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sup>106)</sup>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 되는 바 같은 2대대 소속이면서도 전·남북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했던 6중대나 8중대에 의한 피해보다 5중대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사건의 지휘책임이 일단 5중대장에게 있음을 입증해 준다.

당시 목격자나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중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일은

101) 김일호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탁에서 도망해 나올 때 노약자, 걸린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102)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7·12·34·36쪽, 2007. 2. 15.

103) 오정인은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번은 회의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한번은 책임제를 맡겨주었는데, 만약 공비로 지목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3쪽, 2006. 12. 13.)

104)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15쪽. 당시 희생자 측 증인은 ‘권준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듣는 과정에서 권준옥을 권준혁으로 들어서 초래된 착오로 보인다.

105) 「마구 터지는 大虐殺 秘史」, 『한국일보』, 1960. 5. 20.

106) 김영택, 『한국전쟁과 합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139쪽.



비일비재했는데, “군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니까 군인들이 없는 곳으로 피신가야 했다”<sup>107)</sup>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국군들이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으며, 따라서 불갑산으로 올라간 주민들 상당수도 빨치산을 따라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5중대 군인을 피해 피난 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인 윤홍병은 “전반적으로 질이 나빴다. 무시무시한 놈들이다”라고 5중대 군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학련활동을 했던 정현모는 “이동 시에 낙오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죽여 버리기까지 하였다”<sup>108)</sup>며 5중대 군인들의 잔인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5중대 사병의 대부분은 전투력이 별로 없는 신참 군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대 후 일주일의 훈련으로 낯선 함평에 온 17~18세의 병사들에게 문장장티에 주둔한 후 맞닥뜨린 빨치산의 기습은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5중대는 소대별로 야전에 참호를 파고 천막을 치고 생활하다 보니, 틈만 나면 민가에 나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있다.

5중대의 규율은 6중대와 대비된다. 6중대는 같은 대대의 중대였지만 학교 안(고창중학교)에 주둔하다 보니 병력이 통제되고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지만,<sup>109)</sup> 5중대는 소대별 천막생활을 하여 통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중대가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집단총살사건을 빈번하게 야기한데는 5중대장 권준옥의 개인적인 성격과 품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대장 권준옥과 일부 병사의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은 주민의 원성을 샀다. 남산뫼 사건에서 젊은 여자를 연행하려 하자 연행을 막으려는 그 아버지까지 총살하였고, 당일 남산뫼 현장에 가면서 월야면 용두리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를 성폭행 후 총살하기도 하였다.<sup>110)</sup>

참고인 이녹범에 의하면 권준옥 중대장의 만행에 대해 해보지서장이 연대장 박기병 대령에게 진정하여 연대장이 해보 중대본부를 불시에 방문하였는데, 그는 중대막사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 발각되어 입창조치를 받기도 하였다.<sup>111)</sup> 5중대 화기소대원에 의한 여성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였다.<sup>112)</sup> 또 해보면 문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어느 주민은 5중대의 요구에 의하여 특

107) 참고인 장두병, 진술조서 4쪽, 2006. 6. 28.

108) 참고인 정현모, 진술조서 9쪽, 2006. 7. 20.

109) 참고인 윤석근, 녹취록 6쪽, 2006. 12. 13.

11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8쪽, 2006. 6. 29.

111) 참고인 이녹범,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112) 신청인 김홍빈·노병철의 진술조서, 2007. 1. 18.



정 주민이 매일 여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sup>113)</sup>

권준옥 5중대장과 중대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역주민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sup>114)</sup> 한편으로는 집단희생 사건 발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된다.<sup>115)</sup>

한편 사건지역의 경찰, 청년방위대원, 학도연맹원, 구국연맹원 등도 군의 작전에 동원되었다. 청년방위대원의 경우 남산뫼 사건, 쌍구룡 사건 발생 시에는 마을에 들어가 5중대의 명령으로 주민을 끌어냈으며 군인들이 주민을 총살할 때는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입구에서 망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sup>116)</sup>

또 학도연맹원의 일부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비색출을 명분으로 마을에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sup>117)</sup> 구국연맹원 또한 군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해 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5중대원 중 명령을 피해 주민을 살려준 경우도 있는데, 남산뫼 사건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가 정일웅을 살려주기도 하였고, 어느 군인은 주민들을 나오라고 독려하는 이장에게 만류하였는가 하면, 쌍구룡에서는 앞장서 나오는 주민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주기도 하였다. 또 나산면 우치리에서는 군인이 제사를 지내는 집에 와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단총살을 피할 수 있었다.<sup>118)</sup> 이는 중대장의 총살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병들이 중대장의 명령에 대한 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 3) 가해 이유

사건이 일어난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은 빨치산 근거지였던 불갑산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9·28 수복이후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일부 지방좌익이 불갑산과 태청산으로 입산하여 인근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하며 5중대 및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당시 5중대는 불갑산과 태청산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하던 초기부터 월야면 외치재의 교통요지에서 경계초소를 운용하고 있었다.

113) 정찬동 『함평양민학살』, 시와 사람, 1999, 75~84쪽.

114) 신청인 양윤식, 진술조서 4쪽, 2007. 3. 15.

115) 참고인 박병인, 진술조서 38·42쪽, 2007. 2. 14.

116)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4쪽, 2006. 6. 29.

117) 참고인 윤홍병, 진술조서 7쪽, 2006. 6. 8.

118) 신청인 김재경, 진술조서 5쪽, 2006. 8. 9.



광산군 본량면 덕립리는 당시 형식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전시 계엄이 유지되고 있었다. 3명이상 회합을 할 경우 반드시 군·경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당시 계엄 지침을 알지 못했던 덕립리 주민들은 노루고기를 먹기 위해 주막을 드나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연행된 후 총살당하였다.

장교와 동촌마을의 집단 총살사건은 한새들 전투 전후로 빨치산 협력자들이 뒷산에 올라가 징과 꽹과리를 치고 만세를 부르면서, 5중대원을 크게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9일의 외치리 사건은 5중대가 마을 앞의 광주-영광 간 도로가 파헤쳐진 것을 주민이 빨치산과 내통하여 저지른 짓이라고 의심하여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sup>119)</sup>

나산면 이문리의 경우 마을 거주자 가운데 좌익활동을 한 주민이 있다며, 명부를 보고 선별하여 살상하였다. 중언에 의하면 쌍구룡에 끌려나왔던 성대마을 주민들은 식량 등을 가지러 원래 거주지였던 광암리를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을 시켜 틈틈이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사건 전날인 12월 30일 5중대는 어수산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나갔다가 잠복하고 있던 빨치산의 습격으로 퇴각하기도 하였다.<sup>120)</sup> 5중대는 이날의 습격에 자극받아 성대마을의 소개민을 빨치산으로 의심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

상곡리 모평마을 집단희생사건의 원인은 사건 전날(1월 11일) 밤 모평마을 뒷산과 연계되어 있는 비녀봉에서 빨치산들이 중대본부에 총격을 가한데 대한 보복행위였다.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의 경우 일부 소개 피난민들이 이 곳에 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는데, 5중대는 이를 빨치산 활동으로 의심하여 마을에 들어가 남아있는 주민을 총살하였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1950년 12월 2일의 한새들 전투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함평 11사단 사건은 월야, 해보 등지의 불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한다고 간주한 5중대 군인들이 무리하게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인들은 빨치산에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한새들 전투 이후 장교·동촌마을 사건이나 남산뫼 사건, 쌍구룡, 모평마을 사건처럼 화풀이 식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중대장의 평소 부하나 주민들에 대한 난폭한 행동도 주요

119) 신청인 이용현, 진술조서 8쪽, 2006.6.28; 정호현(3쪽), 정재선(6쪽), 정병원(4쪽), 정동현(3쪽).

120)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11쪽, 2006. 6. 29.



한 이유가 되지만, 빨치산과 비교해서 전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이 어린 군인들의 빨치산에 대한 공포감과 보복심도 화풀이식 무차별적인 주민희생을 야기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 나. 소결

1950년 10월 말 이후 함평군 해보면, 월야면에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집단 총살한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5중대의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문장 장터 주둔 사실은 당시 5중대장 연락병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윤인식, 이계필, 그리고 생존해 있는 오정인 등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또 가해부대의 직접 책임자인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로 확인되었다.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지역의 집단희생사건은 국군11사단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5중대는 한새들 전투에서와 같이 사건 발생지역인 불갑산 인근지대 주민들이 빨치산에 내통 또는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아래 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총살하였음이 분명하다.

### 4. 가해 측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 가. 조사내용

##### 1) 가해측의 지휘·명령체계

1960년 국회 조사당시 현장 생존자 정일웅은 “그 사람(5중대장)이 와 가지고 말한 것은 하루에 공비 몇 명과 무기 얼마를 사살하고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 한 바 있다.<sup>121)</sup> 이는 5중대의 민간인 사살이 상부의 ‘공비사살’ 지시에 의한 것임을 말해 준다. 즉 본 사건의 가해부대인 5중대 중대장 권준옥이 함평지역 민간인 집단총살 사건을 직접 명령한 장본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루에 일정한 수의 공비를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은 상급부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월야지서 토벌대장으로서 사건 직전 군경작전 회의 현장에 참석했던 오정인, 5중대장 연락병으로서 명령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김일호, 당시 군의 작전과 상부 보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방 경력의 김석주의 다음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1) 정일웅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 16쪽, 1960. 6. 9.



사건 전에 작전회의에는 3번 정도 참석하였으며, 한번은 월아와 삼서면 경계지역에 작전회의에 참석했는데,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sup>122)</sup>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탁에서 도망해 나올 때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sup>123)</sup>

5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 와서 자신들이 주민들의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으며, 이중 분첩은 이발소에 주고 가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5중대 군인들 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sup>124)</sup>

위의 진술 및 증언에서는 5중대장 권준옥이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 ‘대대장의 명령’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 하루 50명 혹은 일정규모의 공산주의자 혹은 공비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물론 5중대 분대장 황학준을 비롯한 다른 사병들은 그러한 명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sup>125)</sup>하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면, 군경 합동의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오정인, 대대, 연대로부터 명령을 수발하고 작전보고를 했던 연락병 김일호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0연대 작전명령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 혹은 연대의 실제 명령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부로부터의 명령 전달과정을 목격한 위의 오정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의 내용이 실제 명령서에 적혀 있었다면 연대장, 대대장은 이들을 곧 공비와 동일 시 했다는 말이 된다.

5중대장은 작전 회의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면, 그런 놈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작전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그 말을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는데,<sup>126)</sup> 5중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지휘관들도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5중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혹은 적어도 묵인 하에 불갑산 인근 동네의 청장

122)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12.13.

123) 김일호 증언,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 2000.6.25.『MBC』

124) 참고인 윤주원, 진술서, 2007.5.17.

125) 참고인 황학준, 진술조서 9쪽, 2006.7.6.

126)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12.13.



년기의 주민들을 모두 빨치산 협력자, 부역자로 간주하고 총살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하였던 동네 중 권준옥이 현장에서 지휘했던 몇 곳에서 총살직전 주민을 선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 지휘부에서 불갑산 인근 지역의 민간인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명령,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11사단 9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 산청,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이 사건의 지휘·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예하부대 부대장에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하여 비전투원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도 “이 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라고 시인하였으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직접, 간접으로 행동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복구지대에도 양민이 있었지만,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27)</sup>

결국 거창 신원면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연대장이 공비소탕을 위해 미수복 지역의 공비협력 가능자들을 사실상의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곧 ‘이적행위자를 교전 중인 적과 동일시하여 총살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군·경 가족과 노인, 아동을 선별한 후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것은 거창군 신원면 사건 발생이전이었던 함평 11사단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2대대장이 작전초기에 월야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2대대장은 5중대가 공비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미수복 지역의 민간인들을 사살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5중대는 자신들이 수행한 작전상황에 대해 장성의 2대대 본부에 3일에 한번 씩 작전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보고자는 사병 1개 분대 규모 병력과 엇비슷한 숫자의 청방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갔다고 한다.<sup>128)</sup> 당시 5중대는 마을에 들어가 주민 소개작전을 할 때도 팽이, 삽, 쇠스랑, 도끼 등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여 노획무기의 전과로 보고하였는데,<sup>129)</sup> 이 같은 내용은 공비사살과 무기노획이 중요 작전 목표였으며,

127)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3권, 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28~71쪽.

128) 김일호가 광주 연대본부에 보고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사 4쪽, 신청인 이용현, 진술 조서 6쪽.

129) 유창기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75쪽.



그것이 대대, 연대에 그대로 보고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년 말께 6중대 청년방위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연대본부에서 사살한 인명 수 등의 내용을 적은 5중대 전과표를 보았다는 윤석근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sup>130)</sup> 다만 5중대가 연대본부에 본 사건을 단순히 공비토벌 전과로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대대장과 연대장이 5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살상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권준옥을 1951년 1월 22일 연대 병기장교로 인사이동 조치한 것으로 보아 집단희생·성폭력 사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연대의 작전명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연대장이 직접 “이적행위자”를 총살하라”라고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1사단의 작전 지휘 하에서 발생하였던 거창사건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연대차원에서 예하의 2대대장과 5중대장이 불갑산 인근의 주민 중 청·장년들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하여 총살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정도의 명령이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2대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5중대 작전지역에서 유독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5중대 작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공비와의 실제 교전 경험,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군인들의 공포감과 보복심, 감정적 대응, 그리고 5중대장 자신이 매우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인명을 경시하는 품성을 갖고 있었던 점, 5중대 군인들의 훈련 부족과 규율이 없었던 점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일호는 이 사건의 책임이 중대장 권준옥에게 있다기 보다는 사단장 최덕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31)</sup> 그는 권준옥 중대장이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살상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장 권준옥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넓게 보아 사단차원의 견벽청야 작전개념, 특히 ‘청야’작전이 사실상 민간인 집단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실제 1951년 초 거창사건이 폭로되어 11사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최덕신 사단장은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거창군 신원면 거주 주민을 총살한 원인을 “남여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구실 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sup>132)</sup> 이는 민간인 총살의 일차 원인을 국군의 과오보다

130) 참고인 윤석근, 진술조사 6쪽, 2006. 12. 13.

131)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21쪽, 2007. 2. 15.

132) 사단장 보고서, 『거창사건(양민학살)』, 『동아일보』, 1960.5.14.



는 적에게 협력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그의 사고방식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무차별적 사살’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사단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 살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함평11사단 사건 중 남산뫼 등지에서의 주민 선별과정을 보면 이듬해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선별 후 총살’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명부록, 혹은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개념은 연대, 대대 혹은 말단 지휘관에게는 적의 근거지 즉 함평지역의 경우에는 미수복 지역이었던 불갑산이나 태청산 인근을 초토화시키면서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sup>133)</sup>

결국 상급부대인 연대나 사단에서 직접 주민 살상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을 공비 내통자로 간주하고 벌인 무리한 토벌작전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견벽청야’ 작전개념 하의 토벌작전은 산간지대 인접 지역 대대와 중대에서는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거창 신원사건이 폭로된 1951년 3월 이후 이전의 모든 작명이나 작전내용이 변조,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5중대장은 권준옥 대위, 2대대장은 유갑열 소령, 20연대장은 박기병 대령, 11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기 때문에 함평11사단 사건의 책임은 이들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귀속된다. 그리고 공비토벌을 위해서는 전투의 필요(necessity)를 넘어서는 민간인 무차별 총살까지도 묵인 방관했던 국가에 책임이 귀속된다.

한편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작전보고 문서를 번역한 「정기작전보고」(1950. 10.)에는 11사단이 미9군단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9군단도 함평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 할 수 없었다.

133) 전라남도 25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한 도처에서 ‘인민공화국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퇴로를 차단당한 괴뢰군 진도를 호남일대에서 섬멸하고자 소탕전을 실시하였다. 제1기에는 적정 수집과 미수복지 회복에 두었으며, 제2기는 적 주력 섬멸하고 호남선 개통을 하였으며, 제3기에는 빨치산 토벌에 있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제4기는 각 전투부대가 확보한 거점을 이용하여 견벽청야 전법을 사용, 각지에 출몰하는 적을 체포, 섬멸하여 전남의 치안도 확보되었다.



## 2) 가해의 적법성 여부

### 가) 사건 당시 법적 상황

사건 당시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sup>134)</sup>이 헌법원칙이었으며,<sup>135)</sup> 특히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제헌헌법』, 『(구)형법』, 『(구)형사소송법』,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sup>136)</sup> 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발효되고 있었다.<sup>137)</sup>

134) 국가비상사태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제엄하의 특별조치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953. 10. 8. 현위결정 4286 현위2)
- 비상제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1985. 5. 28. 대판 81도 1045)

135)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6) 해당하는 국제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 원칙(강행규범적 성격)

- 인도주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ity) : 전쟁 시 취해지는 모든 행위는 인도주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  
공격은 군사적 목표에만 가해져서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의 경우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군사적 필요의 원칙(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군사력은 합법적인 군사적 필요를 얻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원칙.

- 나) 조약

-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해이그협약」 제46조. (생명존중의무)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와 제16조 조약의 경우, 전자는 국제관습법적 성격에 의해, 후자는 한국전쟁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준수선언에 적용가능하며, 이해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근거자료로는 이 협약의 2장이 피해자가 자국 민간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십자사(ICRC) 주석서뿐만 아니라 국내학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 최득진, “자국민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에 관한 일 고찰”, 제성호, “국제인도법의 자국민 적용문제”, 이상희,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조시현, “노근리학살사건의 국제법적 성격” 등이 있다.

137)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정부 수립 이전의 법령이 당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었다.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1950년대 판례들을 보아도 의용일제법령이나 미군정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4288형상87(1955. 7. 8); 대법원 4288행상22(1955. 5. 31); 대법원 4287 형상5(1955. 2. 25); 대법원 4287민상118(1954. 5. 26); 대법원 4286형상162(1953. 11. 23); 대법원 4285민상 118(1952. 2. 12) 등.



### 나) 가해행위의 적법성 여부

단지 공비 또는 빨치산을 도왔다는데 혐의만으로 국가기관인 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sup>138)</sup>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sup>139)</sup>과 적법절차 원칙<sup>140)</sup>,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으로는 『(구) 형법』<sup>141)</sup>, 『국방경비법』<sup>142)</sup>, 『국가보안법』<sup>143)</sup>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

138)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미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에서, 군 지휘관 I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em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 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139) 생명권이—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있으나—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설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③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는 견해.(허영)

④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 헌법재판소의 입장(현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협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가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140) 이 원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들 수 있으며, 제4조에서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정 포고(USAMGIK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 원칙처럼 명시적으로 당시 헌법에 언급(19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41) 구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1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명치 45)년 아래로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장(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에 간첩죄와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42) 『국방경비법』은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와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전시범죄 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



별조치령<sup>144)</sup>이 있었고, 후자 2개의 법의 경우 법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 형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5중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방조·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sup>145)</sup>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sup>146)</sup> 결국 전시라는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나, 국군의 민간인 불법 살해에 대해서는 군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32조 (이적) 및 제33조(간첩)였다.

- 143)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 144) 이 법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의 위세에 밀려 대전으로 천도한 정부에 의해 1950년 6월 25일자 대통령 긴급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의 반민족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신속 엄중 처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괴군 침공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용되도록 한시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공비내통 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4조 제3호~제5호, 제5조였다.
- 145) 국제형사재판소(I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리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Prosecutor v. KA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
  -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8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lo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oo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 146) 전범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휘관을 항상 직접책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부하에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舊) 유고 형사재판소(ICTY)의 Prosecutor v. Strugar 사건(사건번호 : IT-01-42)인데, 이 사건에서 지휘관인 Strugar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직접책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knowledge)를 입증하여 지휘책임으로 처벌을 하여, 막후 지휘관들의 무처벌(imunity)의 관행을 막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다) 소결

결론적으로, 군이 비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한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sup>147)</sup>이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

빨치산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여성, 아동, 아이까지 살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적 필요에 비례될 수 없는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살해행위는 정당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최소한의 피해 원칙에도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sup>148)</sup>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실제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147)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인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의 요건에 대해 제네바협약 2조는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네바협약상의 보호대상, 무력충돌의 존재, 무력충돌의 국제성, 무력충돌과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다. 우선, 제네바협약은 보호대상을 자국이나 침령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 제2편의 제13조에는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평11사단사건의 희생자(아동, 여성, 노인 포함)도 이 협약의 제2편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또한 한국전쟁은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수나 구유고형시재판소의 전쟁성격에 대한 판결, 한국전쟁 당시 한국육군에서는 빨치산을 「헤이그 육전법규」에 의거하여 포로로 대우하도록 조치, 북한을 형법상의 간첩죄 적용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 국내 대법원의 입장에서 뒷받침되며, 무력충돌관련성 요건을 보면, 함평11사단사건에서 빨치산과 내통한 혐의자를 색출하고 처형한 행위는 전시 하에서 적과 관련된 행위이며, 가해자들이 교전당사자로서 충으로 무장한 작전 상태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등 무력충돌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가해행위는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다룬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Imanishimwe 사건에서 적과 내통혐의자를 임의 처형한 행위를 전쟁범죄로 판결한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입장에서도 뒷받침 된다.

148)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 5. 사건 이후 유족의 피해

쌍구룡 사건의 생존자 이금남의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3명의 가족이 5중대에 의하여 총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금남 본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죽으로 던져진 경험을 한 후 지금도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남산뫼 사건의 정남숙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서 총격으로 주민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7회나 총격을 받고 살아나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 모평사건의 장종석의 경우 어릴 때 발목에 입은 총상 때문에 최근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안종필의 경우 평생 대중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총격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발생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진)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 터(왼쪽)와 장교마을 앞에 세워진 전사비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연좌제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 이계준은 어머니 김증산이 1951년 나산면 우치리 사건에서 59세에 5중대 군인에 의하여 사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서에 '1951년 1월 14일 여자유격대원으로 아군과 전투 중 사살된 자'로 잘못 기록되어 자신과 아들의 취업에 필요한 신원조회가 문제되었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망사실이 잘못 기록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음이 분명하다.

## V. 결론 및 권고 사항

### 1. 결론

가. 노방주 외 248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당시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인근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게 집단 총살되었으며, 정남숙 외 8명은 현장에서 살아남았으나 심한 부상을 당했다.

나. 조사 결과 밝혀진 본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5중대는 1950년 11월 27일 정오 무렵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막에 모여 있던 주민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외치재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950년 12월 6일 새벽에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과 동촌마을에서,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으며, 서촌마을에서는 6일 오전 군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다가 주민을 총살하였다. 다음날인 12월 7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월야면 월야·월악리에서 5중대장 권준옥의 직접 지휘 하에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또 12월 9일 오전 나산면 이문리 주민을 인근 나산천변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월야면 외치리 주민을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12월 31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 원주민과 불갑산 용천사 아래 광암리에서 소개되어 왔던 주민을 상곡리 쌍구룡에 불러내어 집단으로 총살하여 방죽에 던져 넣었다. 다음 해인 1951년 1월 12일 오전에는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 원주민과 용천사 옆 산내리에서 소개 나왔던 주민을 쌍구룡 앞으로 나오라 하여, 나오는 대로 총살하였다. 1월 14일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과 나산면 계동 마을을 지나온 군인들은 우치리에서 주민을 집단학살하였다. 이외에도 5중대가 해보면 금덕리 문장장터에 주둔 시기에 인근 지역 주민을 다수 총살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조사결과 함평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는 오봉근(다-1223), 정진국(다-1224), 유재섭(다-1225), 유태열(다-1226, 7238), 정성규(다-1227), 오펠근(다-1228, 7239), 박두남·김순란·박종한·박순심·박아기(다-1202), 이복녀·한아기(다-1203), 이순득·강



아기(다-1204), 서만동(다-1196), 서석암(다-1197), 곽판용(다-1198), 곽석연(다-1199), 서용기(다-1200), 곽지연(다-1201), 박소남(다-1205), 김삼금·김성애·김초순·김상율(다-2869), 이연범(다-1318), 이판금(다-3487), 임봉수(다-1188), 임양수(다-1189), 임선진(다-1190), 김병수(다-1191), 김수성(다-1192), 노병훈(다-1193), 이수범(다-1194), 노병조(다-1195), 노병식(다-1196), 노준기(다-1207), 김갑순(다-1127), 정진덕(다-1128), 최용례·정천수(다-1129), 정종문(다-1130), 심용기(다-1131), 정길문(다-1132), 정동수(다-1133), 정계환(다-1134), 정방섭(다-1135), 정병모(다-1136), 정진철(다-1137), 정동모(다-1138), 정민모(다-1139), 정진발(다-1140), 정창진(다-1141), 정재호(다-1142), 김순애(다-1143), 김재만(다-1144), 정옥모·정기모(다-1145), 정재환(다-1146), 정중진(다-1147), 정문모(다-1148), 정양모(다-1149), 정진봉(다-1150), 정병모(다-1151), 정근모(다-1152·신청인 안춘자), 정동석·정동섭(다-1155), 이사석(다-1156), 정홍섭(다-1157·신청인 정윤철), 정봉수(다-1158), 정진철(다-1160), 이점동(다-1161), 정남섭(다-1162), 정봉섭(다-1163), 정근모(다-1164·신청인 정송모), 윤필중(다-1165), 정상휴(다-1166), 정익모(다-1167), 조병혁(다-1168), 정병선(다-1169), 정진차(다-1170), 정현수(다-1171), 정현기(다-1172), 이계순(다-1173), 정해로(다-1174), 정영관(다-1175), 김영섭(다-1176), 정봉휴(다-1178), 정재복·정홍섭(다-1179·신청인 정재모), 정재섭(다-1180), 정병섭·김명자(다-1181), 정광열·정말동(다-1182), 정진을(다-1184), 정동휴(다-1185), 정동기(다-1186), 정귀님(다-1187), 정맹모·정차임(다-1315), 정열(다-1316), 정삼근(다-2243), 김도담·김윤월·김쌍순(다-2244), 정병우·정민선(다-2872), 정태섭(다-2974), 정팔봉(다-3900), 정석두(다-4267), 정병찬(다-4435), 윤성중(다-6741), 정계형(다-3752), 이남열(다-1209), 이상근(다-1210), 정기봉(다-1211), 정기업·정기순(다-1212), 정기선(다-1213), 이계주(다-1214), 정기동(다-1215), 정갑현(다-1216), 정석봉(다-1217), 정달선(다-1218), 정기복(다-1219), 정상현(다-1220), 정만선(다-1221), 정기우(다-1222), 김기복(다-1121), 김담봉·박삼봉(다-1122), 김용길·이계례(다-1123), 김양임(다-1124), 정감산(다-1125), 안명임·김맹수(다-1126), 오경선(다-2870), 김영만(다-1230), 장진섭·조운여·장이님·장재님·청암댁(정순섭의 처)·장순섭(다-1231), 노월산·김순덕·김아기(다-1232), 이석여·최봉예·이정행(다-1233), 박영수·구순녀·박금희·박민수·김연녀(다-1236), 김만엽·김경엽(다-1240), 이봉범(다-1253), 이종락(다-3923), 장아기(다-4689), 윤상수·김정임·윤병길·윤병식·윤복덕(다-1208), 김유



촌(다-1234), 주순님·윤창중(다-1235), 임막동·윤선순·임남도·임명순(다-1237), 이귀범·이오목·이영범·이갑열·한대례·이인범·이현득·이윤범·이문범(다-1238), 윤옥중(다-1241), 장규옥·윤효임·장아기(다-1242), 임삼봉·윤판술(다-1243), 정순임(다-1246), 윤석열(다-1247), 김치녀·김용순·윤명란(다-1248), 윤양중(다-1249), 김기중(다-1250), 정지족(다-1251), 윤규삼·정고녀(다-1252), 노방주·노병희·노아기(다-1254), 이유용(다-2871), 최희락(다-3922), 정동용(다-10830), 윤덕립·윤석규·윤석문·윤유성·장양립·이평림·모순녀(다-10831), 김증산(다-1054), 안귀식(다-1114), 안귀순·이아기(다-1115), 김신광(다-1118), 정병옥(다-1119), 문앵례(다-1120), 정성면(다-1229), 이동선·이동기(다-555), 안해동(다-556), 김기만·정약순·강정순·김인순(다-1049), 정창기(다-1177), 이성신(다-1319), 이용범·윤효순(다-2744), 김영만(다-2862), 노봉래·노연자(다-2868), 최남휴(다-3223), 이윤선·이손동(다-3626), 이달성(다-3899), 윤일두(다-3919), 박명수(다-4104), 배판수(다-4557), 이기범(다-4558), 양대자(다-5612), 윤봉연(다-6302), 서이섭(다-6306), 김병갑(다-8485), 봉진성(다-10810), 이병옥(다-1173)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 김유순(다-1154), 정달모(다-1159), 정기찬(다-1314), 정진기(다-1317), 이상숙(다-2245), 정회섭(다-3898), 정남선(다-4696), 정남숙(다-1183), 장종석(다-4944)은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였으며, 정남숙과 장종석은 현재 생존해 있다.

라.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 장성군 거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7.3%,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또 2세의 유아를 비롯한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었다.

마.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불갑산 인근에 자리 잡은 이들 지역에서, 장교 동촌 서촌마을 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꽁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의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남산뫼 사건은 사건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외치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이문리 사건은 빨치산 협력자가 마을에 거주한다고 하여, 과도한 의심이나 감정적 반응에 좌우되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총살하였다. 당시 이들 마을의 경제력이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전에 피난 갔고, 실제로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



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산하거나 군인들이 무서워 산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단지 사건 지역 일부 주민이 살아남기 위해 빨치산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한 일은 있으나, 일부 주민에 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5중대의 행동은 감정적 대응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된다.

바. 5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쌍구룡 모평 우치리에서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뫼에서는 17~45(40)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주민을 지목·선별한 다음 총살하였고, 외치리에서는 청·장년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민은 주막에 모여 있다가 5중대 초소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사. 함평 11사단 사건의 가해부대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국군 11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아.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현장에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20연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주민 살상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11사단장은 견벽청야(堅壁清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함평11사단의 지휘명령 계통 상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5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인사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작전 초기 11사단은 미군 9군단의 지휘를 받았으며, 1950년 11월 이후에는 8사단과 교체될 때까지 3군단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책임은 한국군 3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연이어 귀속된다.

자.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sup>149)</sup>’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빨치산토벌을 내세워 다수 주민을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 살해사건이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까지 포함된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149)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6조.



##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 가. 명예회복 조치

#### 1)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은 매년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 기념비를 세우며 화해조치를 이미 시도한 것에 주목하여,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 2)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원호

유족들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사건현장을 순회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추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령사업이 유족들의 각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규모 있는 위령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 치료 및 사건관련 유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sup>150)</sup>

### 나. 법적 제도적 정비

#### 1)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보면 본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30여 명의 희생자가 거꾸로 좌익에 의한 피살자로 기록<sup>151)</sup>되어 있는데, 이들 희생자들은 비무장·무저항 민간인으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현재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법) 등재 또는 정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이번 진실규명이 결정된 후 잘못 등재된 호적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150) 이런 점에서 최근 합평군 해보면에 개원한 국군합평병원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등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상 또는 소액의 유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51) 월간조선사, 『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370쪽.



####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1) 공식기록에 등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시·군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게 등재하여 피해자와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史實)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군인대상 교육

전쟁발생 시나 국가위기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 3) 평화인권교육 강화

전쟁의 반인륜성과 잔학성 그리고 함평11사단과 같은 전쟁 시기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을 향후 미래세대인 초·중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4)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 하에서 민간인 즉결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시급히 정비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3 장

## 인권침해규명위원회

- ❖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 ❖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 ❖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 ❖ 오송회 사건
-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 ❖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
- ❖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 ❖ 아랍회 사건





##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 【결정사안】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재일(在日)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신귀영, 서성칠은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부산시경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재일 신수영과 신○○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사(內查)를 벌였으며,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工作計劃)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에 착수(着手)하여 피해자들을 1980. 2.~3.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하여 5. 2.~5.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39일 내지 67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을 차단한 채 고립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하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부산지검은 부산시경에서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산시경에서의 자백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절차만을 거친 채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4.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어 허위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법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각 기각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 문】

【사 건】 바-500·502·504·506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신청인】 신귀영 외 3인

【결정일】 2007. 1. 23.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 개요

#### 1. 사건 요지

피해자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재일(在日)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피해자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부산지검에 송치, 1980. 5.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1980. 10. 15. 신귀영, 서성칠은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복역한 후, 신귀영은 1995. 6. 27. 만기출소, 서성칠은 1989. 5. 8. 형집행정지로 출소, 신춘석은 1990. 6. 10. 만기출소하였는 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2. 판결요지

### 가. 신귀영

1965.부터 일본 조총련 간부인 친형 신수영 부부를 만나 북괴의 선전 및 교양을 받고 입북권유를 받는 등 교류를 하다가,

- ① 1970. 12. 부산항에서 화영호 선원으로 도일하여, 신수영으로부터 부대촬영 필름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일화 20만 엔을 받고 1971. 1. 27. 화영호 편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잡입하고,
- ② 1971. 3. 미(美)하야리아 부대 후문 전경 및 군수기지 사령부 전경을 촬영한 필름을 1971. 5.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③ 1974. 7. 신수영을 만나 경부고속도로, 부산항, 해병대 병력 등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 ④ 1974. 10. 신수영을 만나 노동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5만 엔을 수수하고, 부산시가 지도 입수와 고리발전소 탐지 등 지령을 받아 잡입하고,
- ⑤ 1976. 10. 부산시가 지도, 부산시 전화번호부 등을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⑥ 위 일시에 신수영으로부터 포항시가 지도 구입, 호영이를 데리고 오라 등 지령을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잡입하고,
- ⑦ 1979. 5. 한정도를 만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정보를 들어 탐지하고,
- ⑧ 1979. 9. 신수영으로부터 친목계 조직 등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하고, 잡입하였으며,

### 나. 서성칠

- ① 1968. 7. 장인 신정린가(家)에서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수영에게 해군복무시 승선했던 함정 등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 ② 1970. 8. 신수영에게 부산시내 군사시설의 위치, 종류 등을 제보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 ③ 위 일시에 신수영으로부터 군수기지 사령부 등 사진촬영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하고, 1970. 12. 부산항에 입항하여 잡입하고,
- ④ 군수기지 사령부 전경 등을 촬영하여 1971. 5.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⑤ 1971. 5. 신수영으로부터 해운대 탄약부대 등 수집 지령을 받고, 1971. 9. 부산항에



입항하여 잠입하고,

- ⑥ 부산부두의 경비상황 등을 수집한 후, 1971. 9. 신수영에게 제보하고,
- ⑦ 1971. 9. 신수영으로부터 항만시설 지도 등 수집 지시를 받고, 1972. 4. 부산항에 입항하여 잠입하고,
- ⑧ 1972. 4. 광복동 1가 15번지 근학서점에서 부산시가 지도, 항만시설 지도가 첨부된 책 등을 구입한 후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⑨ 1973. 8.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부산시 전화번호부 등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5만 엔 수수 후, 동년 10. 대구 군용기지에 도착하여 잠입하고,
- ⑩ 1976. 9. 신수영에게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제공하고,
- ⑪ 1977. 6.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신톡영과 신혁영의 주소를 알아오라 등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 회합하고,
- ⑫ 1977. 11. 신수영과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 ⑬ 1978. 2. 신수영으로부터 실업자 포섭 등 지시를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 ⑭ 1978. 5. 신수영으로부터 혼란시 봉기 등 지시를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 5. 22.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잠입하였고,

#### 다. 신춘석

1963. 3. 사촌형 신정린가를 방문하여 오촌 조카 신수영으로부터 부산시가 지도 수집 등 지령을 받은 후, 부산시가 지도를 신수영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해오다가,

- ① 1965. 5. 신수영으로부터 부산 주둔부대 사진촬영 등 지시를 받고, 1966. 6. 박○○를 대동, 육군 탄약창고, 부산 소재 군부대 등을 촬영하여, 동년 7.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② 1966. 7.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선동 등 지시를 받고 부산항으로 귀향하고, 1967. 9. 포섭 및 봉기 등 지시를 받고, 5만 엔 수수 후, 부산항으로 귀국하여 잠입하고,
- ③ 신용석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1976. 6. 신용석이 보낸 10만 원, 금반지 3개 등을 받는 등 4회 금품을 수수하였고,



## 라. 신복영

- ① 친형 신수영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신수영이 보내는 한화 58만 원을 수수해 오다가, 1976. 2., 1977. 1., 1978. 1., 3회 금품을 수수하고,
- ② 1979. 10. 5. 신귀영이 신수영을 계속 접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하고 있다 는 점을 듣고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신귀영, 신춘석, 피해자 서성칠(사망)의 딸 서영실, 신복 영(사망)의 아들 신성호는 2006. 1. 10.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래 의혹사항에 대한 진 실규명을 신청하였다.

## II. 의혹 사항

### 1. 불법감금 여부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피해자 신귀영은 1980. 2. 25.에, 신복영은 2. 27.에, 서성칠은 3. 7.에, 신춘석은 3. 24.에 각각 강제연행된 후, 1980. 5. 2. 및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40여 일 내지 70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위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 3.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영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지령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 III.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등을 의미하며, 또한 확정판결 사건인 경우에는 기본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확인된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와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 5. 26.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건 신청서 등 검토를 거쳐 부산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MBC『시사매거진 2580』방송 보도 VTR 녹화테이프를 재생·분석한 후,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 1. 자료조사

- 부산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재심기록 10권 5851쪽

부산시경의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피해자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부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1차 및 2차 재심 증거 및 결정이유를 파악하였다.

- MBC『시사매거진 2580』방송 보도 VTR 녹화테이프 2건

당시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변복 이유 등을 파악하였다.



## 2. 진술청취

피해자 및 신청인 4명, 당시 참고인 및 증인 7명, 수사관 6명에 대해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이유 및 임의성과 신빙성 유무, 증언번복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 V. 조사 결과

### 1. 시대적 배경

이 사건이 발생한 1980년 전후 시기는 5·16 쿠데타로 출범하여 18년간 지속되었던 1인 장기집권이 불의의 사건으로 갑작스레 종식되면서, 새로운 체제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표출되었던 격동의 시기였다. 10·26 직후부터 유신체제의 조속한 청산과 민주사회 수립을 원하는 사회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유신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반대, 거국민주내각 구성, 학원민주화, 노동악법 개정 및 민주노조 결성 등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이 때부터 사실상 정권을 통제,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회 격변기의 와중에 발생하였다. 1980년대는 간첩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남파 간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월북친척, 납북귀환어부, 외국방문자, 재일 동포와 관련한 간첩 사건이 양산되는 특징을 띠게 된다. 이 시기에 발생한 간첩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부류로서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존재들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첩행위 관련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자백이나 진술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 또한 사회적 약자인 외항선원들이 1960, 70년 시기에 승선 선박이 일본 항구에 정박중일 때 조총련계 친지를 만났다는 것을 빌미로 1980년 초 자백에 의존하여 간첩죄로 처벌한 사례로서 1980년대 간첩 사건이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신수영, 신복영, 신귀영은 신정용의 아들로 신춘석의 오촌 조카들이다. 서성칠은 신수영의 사촌 처남이면서 신정린의 사위이다. 신혁영과 신호영은 신정용과 친형제인 신정구의 아들, 신주석과 신용석은 신춘석의 친형제이다.

신수영 등의 부 신정용은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국하였고, 신수영은 1946. 1.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찌(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거주하다가 1968. 8. 경부터 현재까지 지바(千葉)현 지바(千葉)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당시 신복영은 농업,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은 외항선원을 하고 있었다. 신수영과 그의 삼촌 신정린은 조총련계이고, 신정린의 사촌 형제인 신주석, 신용석은 민단계이다.

## 3. 수사 및 재판과정

### 가. 수사착수의 경위

이 사건은 1975. 6. 중앙정보부 발행의 조총련 인물록 중 신수영 및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즉, 부산시경 대공분실은 1978년 초부터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위 인물록을 근거로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본에 입항할 때 그의 형인 신수영을 만난 일이 있는 신귀영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즉, 부산시경 수사관은 1978. 2. 24. 신귀영이 1974. 5.~1975. 3. 승선한 태영상선 소속 남방호의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를 입수하였고,<sup>1)</sup> 1978. 12. 15. 부산시경 국장에게 신귀영이 1974. 8. 및 1975. 6. 2차에 걸쳐 일본 거주 조총련계 인사를 자신의 처남으로 가장하여 접선한 사실이 있다는 첨보보고를 하였으며, 1978. 12. 18. 신귀영의 조부 신윤규, 부 신정용 등의 제적부 및 호적부를 입수하였다.

1979. 2. 22. 부산시경 국장에게 “내사한 결과 대상자가 재일 조총련 신수영을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간첩 등 추가 범증 확보를 위해 공작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작평가보고를 한 결과를 보면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신귀영을 연행하여 자술서 및 제1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추궁하였으나, “신수영, 신정린을 만났다”는 점만 확인하고 간첩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1) 부산시경 1978. 2. 24.자 수사보고.



경은 1979. 4. 27. 내무부장관에게 “신수영, 신정린의 조총련 가입 여부, 현재 활동상황”에 대한 대일 사실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79. 7. 21.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신정린은 동춘지부 소속 분회원으로 과거 조직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노환으로 표면 활동이 없고, 동인의 집에 한국 선원이 출입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족이 조총련계이며, 동인의 과거 조총련 활동으로 보아 외항선원을 접촉, 포섭하여 밀항권유 및 적성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조사를 의뢰한 신수영은 소재 불명으로 조사불능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신정린,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경은 1979. 5. 1. 선원 이현수로부터 신귀영이 신수영, 신정린 등과 접촉한 내용 및 신귀영이 간첩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진술서를 받고, 1979. 7. 6. 내무부장관에게 “신귀영, 신혁영, 신복영, 신덕영 등에 대한 ‘가’급 공작 상신”이라는 공작평가보고를 하였다.

보고 결과, 1979. 7. 27.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상신한 공작을 승인하며 종합공작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명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시금 부산시경은 1979. 9. 19. 내무부장관에게 “대상자 신귀영, 신혁영, 신복영, 신덕영 등 특이동향 전무하나 11월중 승선증인 망원이 귀국 보고시 이들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다음,

간첩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0. 1. 4. 또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본건 공작추진 결과 대상자들의 회합통신 및 금품수수 등 정황은 인정되나 간첩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치 않으면 조사불능 상태이고, 남과 간첩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수망을 투입, 감시타가 각 대상자들의 특이동향이 없으면 직접 조사토록 하겠다며 조정을 요청한다”는 수사공작 종합보고를 하였다.

보고 결과, 1. 30. 치안본부장으로부터 “공작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승인하니 수사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경 수사관들은 중정 조총련 인물록에 기재된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신수영과 신정린의 친척인 신귀영, 서성칠, 신복영 등에 대해 내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승인된 공작계획에 의거 조직적으로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 신복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들을 강제연행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 나. 부산시경의 수사과정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 대공분실에서 구금상태로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는 바,

신귀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4. 11. 제2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4. 13. 제3회 진술서, 4. 16. 제4회 진술서, 제2회 진술조서, 4. 19. 제5회 진술서, 제3회 진술조서, 4. 20. 제6회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4. 25.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8회 진술서, 제9회 진술서, 4. 26. 제7회 진술서, 4. 2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0회 진술서, 4. 30. 제9회 진술서 등 15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sup>2)</sup>

서성칠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1.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4. 12. 제2회 진술서, 4. 14. 제3회 진술서, 4. 2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4. 25.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6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춘석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2.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4. 13. 제2회 진술서, 4. 14. 제3회 진술서, 4. 26.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7. 제6회 진술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4. 28.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8회에 걸쳐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신복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1.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고, 4. 12. 제2회 진술서, 4. 2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4회에 걸쳐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시경은 1980. 5. 2. 부산지검에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부산지법으로부터 5. 2. 신복영, 5. 3.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부산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하였다.

부산시경은 자백을 기초로 1980. 5. 7. 신귀영에게 군수기지 사령부, 미 하야리아 부대 등 현장을 돌며 범행을 재연, 5. 9. 서성칠에게 군수기지 사령부, 육군병원, 탄약창고, 장산레이디통신망기지, 근학서점을 돌며 범행을 재연, 5. 10. 신춘석에게 탄약창고, 수영국제공항, 육군기계창, 미 하야리아부대, 육군 제3항만사, 미군수송중대, 육군폐품수집소, 서점에서 범행을 재연시키는 등, 각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1980. 5. 14. 부산시경은 서성칠에 대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5. 14. 신춘석에 대하여 진술서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5. 10. 신복영에 대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

2) 수사기록상 작성날짜에 따른 진술서 순서가 맞지 않음.



한 다음, 5. 15.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송○○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sup>3)</sup>

#### **다.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1980. 5. 15. 이 사건이 송치되어 온 당일 부산지검은 피해자 신귀영 등에 대하여 부산시경 의견서를 토대로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자리에서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신정린과 신수영이 조총련계라는 점과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신복영은 신귀영이 조총련계 신수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자백을 하였다.

부산지검은 5. 16. 서성칠, 5. 17. 신복영, 5. 19. 신춘석, 5. 29. 신복영, 5. 23. 신귀영, 5. 29. 신복영에 대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5. 29. 부산지방법원에 기소(검사 김택수)하였는 바, 공소장 요지는 위 판결요지와 같다.

#### **라. 재판과정**

##### **1) 부산지방법원**

위 기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1980. 7. 23.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8. 13. 제2차, 8. 27. 제3차, 9. 19. 제4차, 9. 24. 제5차, 9. 29. 제6차 공판을 거쳐 10. 15. 판결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최종백, 판사 정창환 황영목)하였는 바, 선고 결과는 신귀영, 서성칠을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고, 신복영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하되 신복영에 대하여는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 **2) 대구고등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 신복영 및 검사가 대구고법에 항소하였고, 대구고법은 3차례 공판을 거쳐 1981. 2. 19. 각 항소를 기각(재판장 부장판사 윤영오, 판사 이동락 이영규)하였다.

##### **3)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해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1981. 6. 23. 상고를 기각(재판장 대법원 판사 김덕주, 대법원 판사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송○○은 이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서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의해 반공법 제5조제1항(회합 통신 등), 동법 제8조(불고지죄), 국가 보안법 제5조제1항(자진지원 · 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 하였음.



### 마. 1차 재심(1994. 11. 청구)

피해자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1994. 11. 및 1997. 7. 2차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고, 1차는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에서, 2차는 부산지법에서 재심개시 결정되었으나, 각각 대법원과 부산고법에서 뒤집혀 재심은 무산되었다. 각 재판부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부산지법(1995. 7. 24. 결정, 재판장 판사 김태우, 판사 이영갑 박준용)

신수영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공판정에서 신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고, 신수영이 조총련의 간부가 아니어서 간첩행위 등을 지령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진술서 기재를 더하면,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수영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2) 부산고법(1995. 8. 31. 결정, 재판장 판사 이공현 판사 서복현 안철상)

신수영의 진술서를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증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그것은 확정판결이 범죄사실을 정당하게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재심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3) 대법원(1995. 11. 8. 결정,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승 지창권 신성택)

신수영의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4) 부산고법(1997. 9. 3. 결정, 재판장 판사 김문수, 판사 김종기 최호근)

신수영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진술내용의 진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법원(1998. 2. 25. 결정,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서성)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바. 2차 재심(1999. 7. 청구)

1) 부산지법(2001. 8. 31. 결정, 재판장 판사 서복현, 판사 이민수 변민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하여 재심개시 결정한다.

2) 부산고법(2002. 7. 19. 결정, 재판장 판사 최진갑, 판사 박종훈 천대엽)

진술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인들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나 민사소송에서 증언만으로 확정판결에서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2004. 6. 10. 결정,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이규홍)

증인들의 각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신문조사 등본은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것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명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4. 수사과정의 위법성

#### 가. 불법감금 여부

1) 피해자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귀영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65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춘석은 수사기관에서 40일간 고문을 받다가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수사관이 따라와 협박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고, 신복영은 항소이유서에서 2. 27.에 연행되어 5.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5일간 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신귀영은 “1980. 2. 25. 새벽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이규홍 경사에게 연행되어 부산진역 앞 구 KBS 방송국 뒤에 위치한 2층 건물에 감금되어,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65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들의 면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 황옥희는 내가 며칠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용호동파출소에 실종되었다고 신고<sup>4)</sup>까지 하였다. 처 황옥희도 4. 14.경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끌려와 조사를 받았다”<sup>5)</sup>고 진술하였다.

신춘석은 “1980. 3. 24. 부산시 부전역 앞에서 경찰 1명에게 내외문화사 간판이 걸려 있던 2층 건물인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sup>6)</sup>고 진술하였으며,

서성칠의 딸 서영실은 “1980년 중학교 3학년생 때 부모인 서성칠과 신말영이 이혼한 후 여동생 서지심과 함께 숙부 서성팔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숙부가 ‘배가 들어오자마자 경찰들이 서성칠을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sup>7)</sup>고 진술했고,

위 신말영은 “1980. 3. 7. 서성칠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성칠과 이혼하고 대구백화점 뒷골목 칼국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 1980. 3. 경 경찰 2명이 식당으로 찾아와 ‘서성칠이 밀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밀수자금을 대준 것으로 되어 있어 조사를 해야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sup>8)</sup>고 진술하였다.

## 2)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경 수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수사팀장 이○○ 경위, 김○○ · 이○○ 경사, 송○○ · 윤○○ 경장, 박○○ 순경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sup>9)</sup>

4) 파출소 실종신고 관련 문건은 보존연한이 3년으로 이미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

5) 2006. 8. 9. 및 8. 10. 진술청취.

6) 2006. 8. 24. 진술청취.

7) 2006. 9. 14. 진술청취.

8) 2006. 9. 14. 진술청취.

9) 대공분실 수사팀은 피의자별로 수사조를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신귀영은 김○○, 김○○이 서성칠은 이○○, 박○○, 신춘석은 송○○, 윤○○, 신복영은 김○○, 윤○○이 1개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경위는 “1980. 4. 초순 신귀영을 제일 먼저 체포하고 조사하여 서성칠, 신춘석, 신복영의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신귀영을 연행한 지 3, 4일 후에 서성칠 등을 연행해 왔으며, 영장청구 전 피의자들을 한 달 가량 대공3계(대공분실) 사무실에 구금했다”<sup>10)</sup>

이○○ 경사는 “서성칠을 조사할 때 영장발부 이전에는 수도사업소 2층 대공분실 사무실에 구금했다. 서성칠을 최초 연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귀가조치 없이 계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sup>11)</sup>

박○○ 순경은 “서성칠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이후에는 귀가조치가 불가했을 것이다. 서성칠의 경우 최소한 1980. 4. 22.부터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0여 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sup>12)</sup>

송○○ 경장은 “본인과 윤인석 경장이 신춘석을 사무실과 여관에서 조사를 하였고, 밤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2명의 감시하에 여관에서 재웠다. 범죄사실을 밝혀냈으면 간첩인데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13)</sup>고 진술하여, 대체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구금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였다.

그리고 김○○ 경사는 “당시 대공 사건은 연행되는 순간부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신귀영 사건도 2달 이상 구속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대공분실에서는 중앙정보부의 무슨 내규 비슷한 것에 장기 구속수사를 허용하는 구절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14)</sup>고 장기 불법감금 사실을 시인하였다.

### 3) 수사기록상의 정황

수사기록을 보면 1980. 4. 11. 신귀영은 제2회 진술서에 39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1965. 5.부터 1979. 9.까지 신수영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다. 위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중 서두부분, 범죄사실 1항 중 신수영을 만난 점, 범죄사실 2항 중 신수영을 만난 점, 범죄사실 3항 서두부분, 범죄사실 4항 일부, 범죄사실 6항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10) 2006. 11. 15. 진술청취.

11) 2006. 11. 17. 진술청취.

12) 2006. 10. 19. 진술청취.

13) 2006. 11. 16. 진술청취.

14) 2006. 10. 12. 진술청취.



4. 11. 서성칠은 13쪽 분량의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여 1967. 7. 하순부터 1968. 11. 초순 까지 신정린과 신수영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 조종련계로 활동하는 장인 신정린과 사촌처남 신수영은 북한공산당을 위하여 한국의 군사기밀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부산에 와서 군부대 사진도 찍었다는 점 등을 자백하였으며,

4. 12. 신춘석은 제1회 진술서 45쪽을 작성하면서 1963. 3. 신주석을 만나 신정린과 신수영을 만났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4. 11. 신복영은 14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어려서부터의 행적, 한국거주 친인척과 재북가족, 재일 친인척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 다음, 각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서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였는 바, 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출석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복영은 4. 11.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2.까지 20일간, 신귀영 서성칠은 4. 11.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3.까지 21일간, 신춘석은 4. 12.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3. 까지 20일간 각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기록상 명백하며,

신귀영 등이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을 최초 진술서에서 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한 다음, 정리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 4) 소결

1심 법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수사관들의 대체적인 불법구금을 시인하는 진술과 2달 이상 구속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한 수사관의 진술, 수사기록상 장기 불법구금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귀영은 1980. 2. 25.에, 서성칠은 3. 7.에, 신춘석은 3. 24.에, 신복영은 2. 27.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67일, 57일, 40일, 64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이 차단된 채 고립된 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된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sup>15)</sup>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5)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 1) 피해자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귀영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65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성칠은 자신 명의의 각 진술서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춘석은 수사기관에서 40일간 고문을 받다가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수사관이 따라와 협박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구고법에 제출한 각자 항소이유서에서 신귀영은 “연행된 후부터 6일 동안 고문실에 넣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모진 고문과 폭행을 하면서 벗겨서 눕혀 묶고 코를 막고 물을 먹이는 고문을 수차 당했다. 전기를 이용하여 고문을 가하면서 형사들이 각본을 매일 짜고 매일 회의를 저녁마다 하였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가하여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 허위 자백을 하였다. 검찰에 송치되어 왔을 때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내쫓았다. 고문한 형사 5명이 검찰청 직원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검사실에 넣어두고 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서성칠은 “신수영의 이름도 처음 들으며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이 잔인한 고문을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였다. 의자에 온 몸을 밧줄로 묶어서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날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을 먹이고 봉동이로 닥치는 대로 마구 때리는 등의 고문으로 극심한 통증과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가 되어 우선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신수영을 만났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춘석은 “수사관이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에서 오직 협조를 바란다. 최종 학교와 해군복무 시절의 승선 함정에 대한 이모저모,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군부대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 즉 위치라든가 건물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하기에 이를 적자, ‘이 사실 전부가 네가 조총련 신수영에게 전해준 제보’라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그 뒤부터 악랄한 고문을 당했다. 그 무서운 전기고문만 여러 차례 당했다. 20여 일간은 견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신복영은 “1980. 2. 27. 부산시경 외사과에 연행되어 5. 2. 까지 65일간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너의 동생이 다 죽어가니, 바른 말을 하고 동생 신병을 인수하여 돌아가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신귀영은 “1980. 2. 25. 부산시경 대공분실 요원들이 연행하여 팬



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긴 후 두꺼운 목재판에 눕히고 천으로 된 끈으로 결박하고,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으로 코를 잡아 숨을 못 쉬게 한 후 입을 벌리고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하였다. 질식할 때면 수사관들이 코를 놓아 숨을 쉬게 하였다가 재차 물을 부었다”, “그 중간에 까무러치면 수사관들이 돌아가며 수십 대씩 경찰 곤봉으로 발바닥을 때려 깨웠다. 곤봉으로 맞은 발바닥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지경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펜하고 종이를 던져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라고 시켰다”, “신수영으로부터 돈만 받아 썼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니, 욕설을 하면서 구타하고 다시 자술서를 고쳐 쓸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16)</sup>

신춘석은 “전기고문용 의자에 앉아 4~5차례 전기고문을 당했는데, 두 번 의자에 묶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몽둥이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어깨, 몸통, 손가락, 허벅지, 발바닥까지 구타하지 않는 부위도 없고, 사정도 두지 않았다. 특히, 곤봉을 정강이 앞쪽 부분에 힘주어 대고는 위아래로 왕복하며 뭉개댈 때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양쪽 정강이에는 그 때 고문받은 상처가 남아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수사관 3~4명이 와서 우리한테 조사받은 그대로 검찰에서 진술해라, 만일 다르게 얘기하면 경찰에 다시 와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sup>17)</sup>

## 2) 참고인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복영의 처 문복남은 “신호영이 대공분실에서 신귀영과 대면하였을 때 신귀영이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으니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을 전했다. 신호영은 대공분실에 4번 불려갔다 온 후 고문후유증으로 지금도 누워 있다”<sup>18)</sup>고 증언했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신말영(서성칠의 처)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 3~4명이 교대로 들어와서 서성칠이 근학서점에서 부산시가 지도를 구입하여 도일시 가져갔다는 것을 진술토록 강요받았다”, “어떤 수사관은 발로 걷어차며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줄 텐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며 답변을 강요했는데, 끝까지 부인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수사관들이 ‘여기 들어와서 조사받았다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진술했고,<sup>19)</sup>

16) 2006. 8. 9.~8. 10. 진술청취.

17) 신춘석 진술조서.(2006. 8. 24. 참조)

18) 5차 공판조서(1980. 9. 24.) 문○○에 대한 증인신문.

19) 2006. 9. 14. 서영실, 신말영 각 진술청취.(사건 당시인 1980년 서성칠의 딸 서영실은 중학생이었기에, 서성칠이 대공분실 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신혁영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네가 가족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니 바른 대로 불라’고 하며 두 발을 묶고 두 손을 묶은 상태에서 막대기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받친 뒤 몸을 돌리기도 하고, 길이 1m 가량의 봉동으로 때리기도 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끼얹기도 하였다”<sup>20)</sup>고 진술했다.

당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송청길은 “수사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봉동으로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놓고 물고문을 하였다. 당시 수사관들이 봉동으로 정강이를 눌러 대패 갈 듯이 해서 남은 흉터와 왼쪽 검지에 전기고문을 당한 2cm 가량의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신귀영을 만나 편지 2통을 전해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 불라고 강요를 받아 고문에 못 이겨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1)</sup>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정도는 1995. 1. 8. 위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경찰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방망이로 구타하려고 하여 겁이 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박용규는 1999. 1. 28. 부산지법 변론기일에 “살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2~3일간 대공분실에 갇혀 있으면서 전기고문을 당했고, 대공분실에서 나올 때 법정에서 똑같이 증언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왔다”<sup>22)</sup>고 증언했고, 위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그 당시 신춘석과 함께 탄약부대 및 수영비행장 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경찰 조사시 고초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박용규는 “수사관들이 ‘신춘석이가 송정에 있는 탄약고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네가 옆에서 지켜보았지’라면서 대답을 강요했으나 부인했다”, “양쪽 엄지 손가락에 무언가를 끼우더니 전기충격을 가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하자 수사관들이 재차 추궁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대공분실로 연행 후 4~5일째 되던 날에 풀려났다. 그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고 추후에 진술한 내용대로 말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수사관들은 차후 각서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불려올 줄 알라고 했다”고 진술했다.<sup>23)</sup>

2차 재심기록상 인증서에 의하면 위 신호영은 1998. 2. 3.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5~6

사중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신말영으로부터 진술청취)

20) 2006. 9. 21. 진술청취.

21) 2006. 8. 23. 진술청취.

22) 2차 재심기록상 부산지법 98가단47203 손해배상(기) 증인신문조서등본 참조.

23) 2006. 8. 25. 진술청취. 박용규는 1966. 6월 초순경 신춘석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〇〇〇탄약창, 수영국제공항 등 사진 촬영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대공분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음.



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등판 없는 의자에 손과 발이 묶여 봉동으로 구타를 당하고, 코에 수건을 덮고 물을 들이붓는 등 고문을 당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간첩죄로 몰아 넣겠다고 협박을 당해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검찰 및 공판정에 출석할 때는 하루 전날 대공분실 수사관 2명에게 데려가 대공분실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3)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관 이○○ 경위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에 대해 가혹행위를 행사하거나 목격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대공분실 사무실 건물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여건에서 가혹행위를 할 수 없었다”.<sup>24)</sup>

송○○ 경장은 “당시 대공분실 조사실 공간이 협소해 피의자 신춘석의 신문 대부분은 여관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만 대공분실 사무실로 데려가 조서를 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강압수사는 절대 하지 않았다”.<sup>25)</sup>

이○○ 경사는 “당시 조사할 때 고문 등 강압수사는 없었으며, 서성칠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다. 다른 수사관들이 강압수사를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sup>26)</sup>

박○○ 순경은 “대공분실 사무실이 민가 주변에 있었는데 고문을 했다 하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아무리 시대상황이 그랬다 하더라도 대공분실 사무실 주변 정황으로 볼 때 고문을 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sup>27)</sup>고 하여 각자 고문, 가혹행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김○○ 경사는 “1980년 그 시절은 간첩사건하면 대단히 중한 사건으로 취급되던 때였다. 당시 수사관행상 강압수사를 하는 것은 관례화되어 있었다. 간첩사건 피의자들이 조사실에 들어오면 최소한 봉동이 짐질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물고문, 통닭 구이 등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할 때도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수사관들이 봉동이 구타 등 강압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피의자신문시에 비교적 피의자의 감정을 움직

24) 2006. 11. 15. 진술청취.

25) 2006. 11. 16. 진술청취.

26) 2006. 11. 17. 진술청취.

27) 2006. 10. 19. 진술청취.



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주로 구사했기에 폭력을 쓴다든가 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도, 봉등이로 신귀영 등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로 물을 뿌리는 물고문도 했던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전기고문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봉등이 구타, 물고문을 시인했고, 전기고문 개연성을 시사했다.<sup>28)</sup>

#### 4) 수사기록상의 정황

이 사건 수사는 1980년 초에 진행되었으나, 간첩행위 시점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걸쳐 있다. 피해자들은 1980. 2. 25.경부터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록을 보면 1980. 4. 10.까지 피해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4. 11. 또는 4. 12.에 이르러 일제히 자세하게 자백하는 내용의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신귀영은 4. 25.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백, 4. 26. 제7회 진술서에서 다시 범죄사실 내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자백, 4. 2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보충을 하였고,

서성칠은 4. 12. 제2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2, 3, 4, 5, 6, 7, 8항에 대해 차례대로 상세히 자백, 4. 14. 제3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9, 10, 11, 12, 13, 14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자백,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시 차례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신춘석은 4. 14. 제3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1, 2항에 대해서, 4. 15. 제4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3항에 대해서 자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은 일을 기억하여 그 일시, 장소, 지령, 제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다는 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상 4. 11.경부터 이례적으로 위 내용들이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고,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진술되어 있는 점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 5) 소 결

피해자들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허

28) 2006. 10. 12. 진술청취. 김○○ 경사는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 중 자신의 수사능력이 가장 출중했으며, 동 사건 수사시에도 자신이 피의자신문 및 수사방향 설정 등 모든 부분을 조정했다고 진술.



위자백 하였다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서부터 진실화해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까지도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고문 상황이 비교적 유사하고 상세하며,

김○○ 경사는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록상으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10년이 넘은 일을 기억하여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상세하게 순서대로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들이 반복되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부산시경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수사관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부산지검에서도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된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5.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조총련 간부인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신귀영은 1970년부터 1979년에 걸쳐, 서성칠은 1968년부터 1978년에 걸쳐, 신춘석은 1965년부터 1980년에 걸쳐 간첩행위 등을 하였고, 신복영은 1976년부터 1979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건인 바, 확정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신귀영 등의 일부 각 진술
- 증인 박용규, 이○○, 한정도, 신호영, 정종한의 각 진술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의 장○○, 박○○ 한○○, 이○○에 대한 각 진술서
- 경찰의 이○○, 김○○, 한두금에 대한 각 진술조사
- 신귀영 등에 대한 각 검증조서
- 압수된 선원수첩, 여행안내도, 카메라, 가방 1개
- 사진 1장,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



## 나. 피해자들의 진술

### 1) 부산시경 및 부산지검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은 부산시경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어 그 자백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부산지검에 송치되어 온 피해자들은 송치 당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는 바, 이는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강압상태가 부산지검 조사에까지 이어졌다 고 인정되므로 그 자백 또한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어 그 자백 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각자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이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사건이 병합되어 있으나, 각자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 신복영의 금품수수 및 불고지 또한 별개의 범죄사실이다. 설령 검찰에서의 각자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백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설령 공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자백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려면 임의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sup>29)</sup>

### 2)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 가) 신귀영

- 범죄사실 1, 2, 3항의 나, 6항의 가, 8항에 대하여 부인
- 범죄사실 3항의 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
- 범죄사실 4, 5, 6항의 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범죄사실 7항에 대해서는 한정도를 만난 사실만 인정

#### 나) 서성칠

-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신정린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수영을 만난 사실은 부인
- 신정린이 조총련계인지 의심만 들었다고 진술
- 범죄사실 2, 3, 4, 5, 7, 11, 12, 13항에 대하여 모두 부인

29) 대법원 2004도805(2004. 4. 23) 판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범죄사실 6, 8항에 대하여 일본에 간 사실만 인정, 나머지 부인
- 범죄사실 9항에 대하여 귀국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 범죄사실 10항에 대하여 고베(神戸)항에 간 사실만 인정

#### 다) 신춘석

-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 신정린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수영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
-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친형 신용석이 보낸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위 신용석이 조총련계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 라) 신복영

-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신귀영이 신수영을 만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이상과 같이 신귀영 등은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점과 간첩행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서성칠 및 신춘석은 공판 당시까지 신수영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판결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 김○○, 한○○에 대한 진술서 및 증인 박용규, 이○○, 한정도, 신호영, 정○○의 증언을 증거로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진술

부산시경에서 이소연(신춘석의 처)은 1980. 4. 20. “신춘석이 방일시 친형 신주석, 사촌 형 신정린 등을 만난 점”, 4. 28. 제2회 진술조서에서 “신주석이 약 18년 전 한국에 나오면서 카메라를 선물, 65년경 신춘석이 카메라를 구입한 점”, 4. 30. 제3회 진술조서에서 “약 15년 전 신춘석이 마산호를 타고 일본 갔을 때 사진기를 하나 구입해 와 가족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후 신춘석이 친구들과 사진기를 들고 야외로 나간 것이 한 두 번 있었던 점”, 5. 8. 제4회 진술조서에서 “재일 신용석이 조총련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나, 신춘석의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김장화(신춘석의 초등학교 2년 후배)는 1980. 4. 26. “동명사진관을 운영하는 고종 6촌 형 박용규로부터 신춘석이 카메라를 팔려고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춘석의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한두금(신춘석의 母)은 1980. 5. 6. “1976. 6. 경 재일 신용석이 일하는 회사의 일본인 사장 방한시 한두금이 반지, 전자계산기, 라이터, 일본술, 돈 1만 원 등을 전달받고 식사한 후 사진촬영하여 재일 신용석에게 발송한 점. 그 후 신용석이 송금한 돈을 우체국에서 찾아 쓴 점“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부산지검에서 장○○(서성칠이 승선한 ○○○○호 선장)는 1980. 5. 24. “서성칠이 일본 입항시 신정린 및 신수영 등을 접촉한 점, 자신도 동행했으나 이들이 민단인 줄로만 알았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약 17년간 외항선 기관장 등으로 선원생활을 한 신춘석의 외조카)은 1980. 5. 28. “1976. 7. 중순 신춘석으로부터 방일시 신용석을 만나보도록 권유받고 1976. 12. 신용석가를 방문하였으며, 신용석은 북한을 선전하고, 일본에 거주하며 파친코 일을 거들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3만 엔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산지법 1980. 8. 13. 공판기일에 이○○은 “1976. 7. 경 신춘석이 일본에 가면 외삼촌인 신용석을 한번 만나 보라고 하였다. 증인이 일본에 갔을 때 증인의 배의 통신국장, 선장과 함께 신용석을 만났다. 신용석은 이북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등 이북을 찬양하는 말을 늘어놓기에 증인은 외삼촌을 나무랐다”고 증언하였으나, 모두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 2) 근학서점의 소재지 관련 진술

공소장 및 판결은 “서성칠이 1972. 4. 광복동 1가 15번지 근학서점에서 부산항만시설 지도가 첨부된 책 등을 구입한 후 신수영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종한은 부산지법 1980. 9. 29. 공판기일에 근학서점 개업일자가 1975. 1. 1.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이전에는 노점 비슷하여 세무서 장부에 오르지 못했다. 처음에는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1번지에서 개업했다가 1974. 5.부터 12.까지 광복동 1가 15번지에서 서점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정종한은 “1971. 6. 14.에 동광동 2가 11번지로 전입하면서 서점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노점 비슷하게 영업을 시작했다. 1~2년 후에 길 건너 동광동 1가 5번지로 자리를 옮겨 영업했으며, 1975. 1. 1.에 5m 정도 떨어져 있던 중구 광복동 1가 15번지로 이전해서 개업했다. 부산항만시설 지도 판매에 대하여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sup>30)</sup> 1972. 4. 초순경에는 근학서점 소재지가 동광동 2가 11번지였는



데, 판결이 광복동 1가 15번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 3) 기장-송정간 버스운행 관련 진술번복

판결은 “신춘석이 1966. 6. 동명사진관 주인 박용규를 대동, 육군 탄약창고 건물, 부산 소재 군부대 등을 촬영하여 동년 7. 신수영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박용규는 1980. 5. 26. 부산시경에서 ”1966. 6. 초순경 동창 신춘석의 부탁으로 버스편으로 이동하며 탄약창, 수영비행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촬영을 도와주고 이후 필름을 현상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8. 13.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춘석이가 용호동 탄약창이 있는 산을 촬영하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수영삼거리 지점에서 뒷산을 배경으로 넣어서 자기의 기념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하기에 찍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공분실에 갇혀 있으면서 전기고문을 당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위 진술 및 증언을 번복하였다.

재심기록상 부산직할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경상남도지사의 회신에 의하면 위 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 시기는 1970년도 무렵이어서 1966. 6.경 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부산시경에서 김정하는 1966. 6.경 좌천-기장-송정간을 1일 10회 16인승 마이크로합승 버스 2대와 기장-송정간 1일 6회 16인승 마이크로버스 1대가 매시간 운행하였고, 1966년을 전후하여 1인승, 15인승, 16인승 마이크로버스업자들이 무허가로 기장-송정간을 운행하던 버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sup>31)</sup>

경남 양산군 기장면장 최원구도 1980. 9. 3. 부산시경에서 “1964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기장에서 송정까지 마이크로버스가 운행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김정하는 “1980년 경찰들이 찾아와 1966년경에 신흥교통을 운영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1966년 당시 신흥교통이 부산 기장-송정, 기장-대변, 기장-죽성 각 구간에서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요구했다. 기장-대변, 기장-죽성, 기장-좌천, 기장-월래 구간에서 버스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기장-송정간에는 버스운행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첩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었다. 기장-송정간은 5~6인승 택시들만이 운송사업인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로버스가 운행된 사실은 전혀 없다.

30) 참고인(정종한) 진술조사(2006. 9. 20.자) 참조.

31) 1980. 9. 20.자 김정하 진술조사.



경찰들이 먼저 확인서 초안을 가져와 그대로 베껴 확인서를 써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32)</sup>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sup>33)</sup>라고 진술했고,

위 최원구는 “1980. 9. 3. 대공분실에서 작성, 제공했던 확인서는 내 필체가 아니고 기장 면장 직인 또한 대외공문 발송시 사용하는 직인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직인으로 보인다. 1966. 6.경 기장에서 출발하여 송정 방향으로 운행하는 승차인원 7~8명의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버스가 송정까지 도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1960년대에 기장에서 출발하여 송정 방향으로 향하는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다’고 막연히 답변했던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당시 기장-송정간 버스운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참고인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는 바, 검찰과 법원은 조작된 부산시경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4) 고리원자력발전소 관련 진술번복

한정도는 1980. 5. 27. 부산시경에서 “1979. 5.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 부산 지점 뒷길에서 신귀영을 우연히 만나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8. 13.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1979년 봄 우연히 신귀영을 만나 잠시 대화한 일이 있다. 증인의 직업을 묻기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한다고 하였더니 그 발전소의 출력, 규모 등을 묻기에 지나가는 말로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방망이로 구타하려고 하여 겁이 나서 시인하였다”고 위 진술 및 증언을 번복하였는바, 부산시경은 참고인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5) 밀항권유 관련 진술번복

공소장 및 판결은 신수영이 1976. 10. 신귀영에게 호영이를 데리고 오라고 지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호영은 1980. 5. 8. 부산시경에서 “재일 사촌형 신수영, 백부 신정린 등은 조총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촌형 신귀영은 외항선원으로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이들과 교류하고 있고, 신귀영이 1977. 9. 하순경 추석날 점심 때쯤 본가에서 명절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32) 확인서 내용은 1961. 5. 16. 군사쿠데타 이후부터 1968. 9.까지 기장에서 송정간, 기장에서 대변, 죽성간에 소형 15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2006. 9. 21. 진술청취.



‘재일 신수영이 돈을 대줄 테니 밀항하여 일본으로 오라고 했던 말을 전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부산지법 1980. 8. 13. 공판기일에 신호영은 “1977년도 추석에 신귀영이가 증인을 보고 일본에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에 돈이 있어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하였더니 일본에 가면 신수영이가 돈을 대어 줄 것이라고 하기에 밀항을 해서는 일본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신호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봉동으로 구타와 물고문을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고, 검찰 및 공판정에 출석할 때는 하루 전날 대공분실 수사관 2명에게 끌려가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간접적 증거에 불과함에도 부산시경은 참고인에게까지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 라. 부산시경의 검증조서

판결은 부산시경이 행한 신귀영 등에 대한 검증조서를 증거로 들고 있는 바,<sup>34)</sup> 피해자들이 대공분실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아 간첩 행위 등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자백에 따라 현장에서 재연한 검증조서는 피해자들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마. 압수물 등

판결은 압수된 선원수첩, 여행안내도, 카메라, 가방, 사진,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 등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 것은 간첩행위에 대한 뒷받침 자료로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것을 증거로 거론하고 있다.

#### 바. 기타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 1) 신수영의 지위

###### 가) 문제의 소재

범죄사실은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하에서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4) 대법원 2003도6548(2006. 1. 13.) 판결.



#### 나) 중정의 조총련 인물록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수사착수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 1975. 6. 중정 발행 조총련 인물록 943쪽 및 953쪽에 신수영 및 동인의 속부 신정린에 관한 기록 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신수영이 1968. 7. 총련 아이찌(愛知)현 나까가와(中川)지부 위원장으로, 신정린은 1960년 총련 간부, 1968. 7. 총련 아이찌현 본부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공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가 국가정보원에 위 조총련 인물록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다) 부산시경의 사실조사

치안본부장이 1979. 7. 부산시경에 회신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정린이 조총련 동춘지부 소속 본회원으로 조직활동을 한 바 있으나 현재는 노환으로 표면 활동을 않고 있으며, 신수영은 소재 불명으로 조사불능 상태”라는 것인 바,<sup>35)</sup> 신정린은 조총련 회원이라는 것이고 신수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라) 신수영의 진술

신수영은 2003. 9. 18. 부산지법 민사소송 변론기일에<sup>36)</sup> “조총련 간부직을 맡은 적이 없다. 증인의 장인이 조총련에서 지부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의 처 역시 조총련 간부직을 맡은 적이 없다. 속부 신정린도 조총련 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증인은 1987년 입북한 적이 있으나, 신귀영에게 입북권유한 사실이 없다. 신귀영에게 간첩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 신호영이 누군지 모른다. 조선노동당 가입사실이 없다. 4촌매제인 서성칠을 만난 적도 없다. 신춘석은 이번에 국내 입국시 처음 상면하였고, 신춘석의 형 신주석, 신용석은 민단계이다”, “1980년 형사재판 중 국내입국을 고려해 보았으나, 일본의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입국하면 구속되어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을 포기했다”고 증언했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조총련에 가입하여 조선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사상이나 이념 등의 이유가 아니라 1960~70년대 일본에서는 재일교포가 조총련에 가입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귀영이 1965. 4. 경~1979. 경 일본에

35) 대일 사실조사 결과 하달,(정이 2061-006839, 1979. 7. 21. 자, 치안본부장)

36) 부산지법 98기단47203 손해배상.(기)



입항했을 때 총 7~8회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가난한 선원인 동생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sup>37)</sup>

### 마) 조총련 관련 기록

신수영은 1946. 1.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찌(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거주하다가 1968. 8. 경부터 현재까지 지바(千葉)현 지바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진실화해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조총련 아이찌현 나고야시 나까가와(中川)지부는 2006. 12. 25.자 회신에서 당시 조직에 관한 자료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1968년 당시 조직 간부들의 증언을 기초로 신수영이 지부장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sup>38)</sup>

조총련 지바현 지바지부는 2006. 12. 14.자 회신에서 신수영은 회원으로서 생활을 해왔으나 조총련 지바지부 산하 단체들에 전임, 비전임을 비롯하여 일체 간부직책에 등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차 재심기록상 1975. 11. 중정 발행 「조총련」의 조총련 간부 명단에 신수영, 신정린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재심기록상 민단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면 신주석은 1980. 10. 11. 민단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상과 같이 어느 시기에도 신정린, 신수영은 조총련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신주석과 신용석은 민단계였다.

### 2) 전화번호부 배포처

공소장 및 확정판결은 “신귀영이 부산우체국에서 1976년도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였다”라고 인정하였으나, 1차 재심기록상 부산우체국장의 회보에 의하면 당시에는 전화번호부를 우체국이 아닌 관할 전화국에서 배포하였다.

### 3) 화영호 전소

공소장 및 판결은 “신귀영이 1971. 1. 27.경 화영호 편으로 부산항에 입항 귀국하여 잠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신귀영은 부산시경 제2회 진술서 및 부산지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화재로 화영호가 전소하여 몸만 구조되어 도쿄에서 비행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재심재판 기록상 1971년도 해난심판원 재결록에 의하면

37) 2006. 8. 3. 진술청취.

38) 일본 愛知縣 名古屋市 中川支部 위원장 강일진이 2005. 12. 30. 신귀영에게 발행해 준 증명서에 의하면 ‘귀하께서 요청하신 1966~1968년 사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愛知縣 본부 中川支部 위원장의 역직을 맡아하신 분은 김창선 씨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화영호가 1971. 1. 26. 북양어장 항행중 화재로 전소하였다“는 것인 바, 화재로 전소한 화영호가 부산항으로 입항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 4) 기타 범죄사실의 모순점

공소장 및 판결에 의하면 신귀영이 친형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고, 서성칠은 장인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고, 신춘석은 친형 신주석가에서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주석은 민단계인데 그의 집에서 신수영이 신춘석에게 간첩지령을 하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점,

신수영이 1970. 12. 신귀영에게 부대촬영 필름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4년 후인 1974. 5. 이 되어서야 필름을 받으며, 신춘석으로부터 1964. 9. 부산시가 지도를 받고서도 서성칠에게 1969. 9. 부산시가 지도, 항만시설 지도, 전화번호부 등 입수 지시를 하고, 2년 후 또다시 1971. 5. 부산시가지도, 조선지도 등을 수집지령을 하였으며, 1972. 4. 이를 수령하고 또다시 1974. 10. 신귀영에게 부산시가 지도, 전화번호부 입수지령을 하고 2년 후 1976. 10. 이를 받으며,

또 다시 1973. 8. 서성칠에게 부산시 전화번호부 입수지시를 하고, 3년 후 1976. 2. 1973년도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받는 등 부산시가 지도 수집지령 및 제공이 3차례, 전화번호부 수집지령 및 제공이 2차례이고, 지령을 한 후 수년 후에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그 일련의 간첩행위가 반복적이며 조잡하다는 점,

신귀영이 신수영가에서 백지에 입당원서(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보증인 : 신수영, 신용석)를 작성하고 신수영으로부터 당증번호 102번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나, 신수영은 당원도 아니었고, 신용석은 민단계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용들을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짜맞추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 사. 소결

피해자들은 부산시경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했고, 부산지검에 송치되어 온 당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였으나, 부산지법에 이르러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는 바,

피해자들이 부산시경에서 한 자백은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의해서,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은 강압상태가 이어진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들도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며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압수물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검증조서는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진술 및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점들은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반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범죄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었는바,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유죄로 처벌한 위법이 있다.

## VI. 결론

### 1. 진실규명

부산시경은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재일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사(內查)를 벌였으며,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工作計劃)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에 착수(着手)하여 불법연행하였는바, 이는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체포죄를 구성한다.

부산시경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39일 내지 67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이 차단된 채 고립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造作)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들 인권유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부산시경에서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부산시경에서의 자백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절차만을 거친 채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저버린 처사(處事)이다.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어 허위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법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각 기각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2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부산고법과 대법원이 종전의 입장에서 하급심의 재심개시 결정을 2차례 뒤집은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9년에서 15년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한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저버린 처사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 2. 권 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 【결정사안】

1959년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41명이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에 의하여 강압적 또는 기망적 방법으로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밀파되는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들이 조난을 당하고 24명의 공작원들은 도일 후 일경에 체포되고 복역하였음에도 방치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할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 하에 치안국이 추진하여 실행에 옮겨졌으나, 그 공작원의 선발이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밀항의 방법으로 공작원들을 일본에 파견시키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당하고, 이외 공작원들도 도일 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선발과정에서 일부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는 강압적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 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면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다.

3. 우이동 훈련장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한 후, 밀항이라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통하여 도일하도록 하였는 바, 무리한 출항으로 12명의 공작원이 조난사고를 당하였으며, 도일한 공작원들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생계곤란을 겪다가 그 중 24명이 일경에 의하여 체포, 1년 여 기간



동안 복역한 후 강제송환되었고, 그 가족들은 공작원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마저 방치당하는 곤란을 겪었다.

4.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피해자인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 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현 법상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공작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

## 【전 문】

【사 건】 라-55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신청인】 김홍윤

【결정일】 2007. 4. 3.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 개요

1959. 9. 초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 및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 등 66명이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재일동포북송저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서울 우이동 신원사 근처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밀파되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을 당하였고, 25명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밀파 후 지원이 없이 방치된 사건이다.



## II. 의혹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에 관하여는 그동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간헐적으로 일부 진상이 알려졌을 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작활동의 주관기관, 공작원 선발 및 교육과정의 강제성 여부, 조난사고, 재일 공작활동 등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의 실체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III.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대의 실체, 공작원의 선발 및 교육과정, 밀파과정, 공작활동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공작원 방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8. 22.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IV. 조사방법과 경과

### 1. 자료조사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사』, 2002 : 제9장 “재일동포 북송저지대” (이 사건 공작원들의 증언 등을 담은 자료)
- 언론보도
  - 조선일보 1960.5.13.자 1면, 동아일보 1960.7.7.자 1면 : 일본에서의 체포사실
  - 조선일보 1960.12.17 자 3면 : 조난사고사실 폭로
  - 월간조선 1999.3. “비화발굴-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대 71명의 운명”



- SBS 뉴스추적 2001.8.3. 방영 “잊혀진 비밀공작원-재일동포 북송저지조 71명”
- 일본 요미우리 신문 1959.12.5. 자 7면 : 민단 이인기 일적센터 폭파시도
- 일본 요미우리 신문 1959.12.5. 자 11면 : 북송저지특무대 잠입정보 입수
- 암마구치 지방검찰청 기소장(1960.5.25.), 항소취의서(1560.9.13.)
- 암마구치 고등재판소의 판결통지서(1960.12.28.)
- 나가사끼 형무소의 가출옥증서(1961.5.30.)
- 영도경찰서장 명의의 강제송환증명서(1961.6.13.)
-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관계해결의견’이라는 제하의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1961)<sup>1)</sup>
- 1959년 제32회 국회 본회의록 : 재일동포북송반대결의문 등
- 2001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01.9.13.)
- 제1공화국 국무회의 비망록 : 1000여 쪽
- 1959년~1961년 국무회의록
- 기타 관련문헌 :  
『한국경찰사 II』(한국경찰사편집위원회, 내무부 치안국, 1973),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박진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06), 『현대한국정치사 강의-건국과 부국』(김일영, 생각의 나무, 2004), 『한권으로 보는 현대사 100장면』(김삼웅, 가람기획, 1994), 『대한민국 50년사 1』(임영태, 들녘, 1998),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오명호, 오름, 1999), 『국가보안법 연구 II』(박원순, 역사비평사, 1992)

## 2. 진술청취

- 생존 공작원 :  
김홍윤(2006. 8. 24. 2006. 11. 16.), 조승배(2006. 6. 23. 2006. 8. 17.), 최성규(2006. 11. 13.), 방한기(2006. 11. 8.), 유찬호(2006. 10. 27.), 허명묵(2006. 11. 13.), 박진우(2006. 10. 23.), 전우영(2006. 11. 30.), 신상봉(2007. 2. 21.), 배성현(2007. 2. 26.)

1)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제출자료. 이 자료는 2001. 8. 3. 방영된 SBS 뉴스추적 “잊혀진 비밀공작원-재일동포북송저지조 71명”이 방영된 후 익명의 제보자가 공작원 급여일람표와 함께 동지회 사무실로 송부해 온 것이다. 국가기록원 보유 1961년 국무회의록 중에서는 같은 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바 안건을 만들어 놓고 여타 이유로 상정되지 못한 경우일 수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 이전의 정부를 과도정부로 당해 정부를 新정부로 칭하고 있는 바, 1961년 장면정권기 즉 5·16이전에 작성된 문건으로 판단된다.



- 당시 내무부 치안국 관계자 :

김○○(당시 정보5계장, 2006. 11. 18.), 호○○(당시 정보5계 순경, 2006. 12. 19.)

- 기타 참고인 :

진성룡(당시 재일학도의용대 대장, 2006. 12. 28.), 박일순(조난 공작원 김형권의 처, 2006. 11. 19.), 김민규(김형권의 아들, 2006. 11. 19.), 권분두(前 김복섭의 처, 2007. 2. 26.), 이경옥(전 공작원 박덕철의 처, 2007. 2. 15.), 정은주(전 공작원 정인태의 딸, 2007. 2. 27.), 김인식(조난 공작원 이상진의 처, 2007. 2. 26.), 이태임(이상진의 딸, 2007. 3. 8.), 이식윤(이상진의 친구, 2007. 3. 9.), 고숙현(조난 공작원 박석정의 제수, 2007. 2. 28.), 한동일(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2006. 6. 13.), 1959년~1961년 주일대표부 관련자 3명(2007.2.)

-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관련자 및 그 사유

- 당시 치안국장 이강학과 박○○, 이○○는 사망
- 정보과장 이○○과 회계담당 최○○ 경위는 주민조회 불가능(사망추정)
- 생존 공작원 김성욱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 불가능

## V. 조사결과

### 1. 시대적 배경

1945년 8·15 해방 무렵 200여만 명에 달하던 재일동포들 중 140여만 명은 해방 직후 대부분 귀국하였으나, 나머지 60여만 명은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 잔류, 동포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공공연한 비판을 하였다.

한국은 평화선<sup>2)</sup>을 선포하고 불법 침범하는 일본 선박과 어선들을 나포·억류했고, 일본은 억류된 이들을 송환받기 위해 재일한국인 억류를 협상카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회담의 경과상 한국이 재일한국인들의 귀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송환되지

2) 이는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晚)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이다.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 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하며,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한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에 대응하고, 특히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으며, 그밖의 미국·영국·자유중국(현 타이완)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이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않은 일본 어부들이 소수라고 판단되자, 재일한국인 중 희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일본적십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재일한국인이 대부분 귀국을 희망하나 한국이 비인도적으로 이들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1957년 8월 16일 공식으로 일본정부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송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규모로 재일한국인들의 귀국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하여 오자

북한은 195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엔의 교육원조금을 재일한국인사회에 전달하여 이데올로기를 떠나 ‘고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58년 9월 16일 북한의 남일 외상이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성명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을 공식으로 요청함으로써 北·日 간에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남일 외상은 12월 30일 ‘귀국 조선인 수송을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일본적십자사는 1959년 1월 20일 재일한국인 귀국을 정치문제와 분리, 인도적 문제로 해결할 것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1959년 1월 30일 후지야마(富士山) 외무대신이 북송추진을 발표하자 한국은 주일대표부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즉각 구두의 항의를 전달하였고, 1959년 2월 13일 일본 내각이 북송을 결정하자, 유태하 공사는 야마다(山田)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북송을 승인할 수 없으며, 평화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한국에 수용 중인 일본 어부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한일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음 날인 14일 주미 공사인 한표욱은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국은 재일한국인은 한국인이며,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북송은 북한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입국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미국은 휴전회담에서 포로들의 자발송환을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의 입장 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차원에서 북송반대 시위가 일어나 1959년 2월 16일 ‘재일한인북송반대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이기봉, 조병옥, 장택상 3명이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장택상 전 국무총리, 최규남 전 문교부장관, 유진오 고려대 총장 등 3명을 3월 7일 제네바로 보내어 국제적십자사와 교섭해 북송문제에의 관여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연일 이 북송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sup>3)</sup> 국회도 2월 19일 재일한인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것을 유엔총회 의장·유엔사무총장·6·25전쟁 참전 16개국 정부대표·국제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냈다.

195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는 재일한인 북송에 대한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간 회담이 시작되고, 미국 또한 6·25전쟁 휴전협상시 포로송환문제에서 자유송환원칙을 주장한 전례를 들어 일본의 이러한 북송결정이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북송계획은 미국의 묵인하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반대와 반발을 묵살한 채 진행되어, 1959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北·日 적십자사간 교섭이 사실상 타결되고, 동월 24일 관계문서가 가조인되었다.

한국정부는 4차 한일회담 중단, 외교경로를 통한 강력한 항의 전달, 대일통상 중단조치(1959.6.15.), 미국에 중재요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일통상 중단조치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할 뿐 일본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없었는 바 결국 10월 8일 해제되었고, 미국 또한 북송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위임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일본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이 북송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효과적이지 못했고, 이에 한국은 전술을 바꾸어 4차 한일회담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청하여 대응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시점에서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59년 6월 24일 북·일 적십자사가 관계문서에 가조인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재일동포 북송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년 8월 11일 북한과 일본은 인도 캘커타에서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간의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일명 ‘캘커타 협정')<sup>4)</sup>에 정식 조인하였다.

- 
- 3) 1959년 국무회의 비망록.
- 4)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영순, “日北의 「귀국협정」 성립과 그 경위 :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 참조)
- (1) 귀국자의 범위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을 포함)과 그 배우자(내연관계자를 포함) 및 그 자녀, 그 외 그에 부양되고 있는 자로서 함께 귀국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6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의한다.
  - (2) 귀국신청은 일본적십자사가 정한 양식에 의한 귀국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일적」에 제출(16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소요의 귀국수속을 한다. 귀국의사 변경은 승선전 일정기간까지 허가된다.
  - (3) 「일적」은 귀국희망자의 등록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대하여 귀국희망자의 등록기구의 조직 및 운영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공정 공평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동위원회의 조언 및 필요조치 등을 의뢰한다.
  - (4) 귀국자의 인도 및 인수는 승선항에서 「일적」 대표와 「조적」 대표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며, 귀국자 명부와 확인서를 교환함으로써 완료한다.
  - (5) 귀국선의 배급은 조선측이 배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일본측은 新鶴港을 귀국자 승선항으로 지정하고, 조선측은 나진, 청진, 홍남의 3항을 하선항으로 지정한다. 또한 귀국희망자의 매회 집결하는 기일 간격은 7일 전후로 하며 매회의 인수는



이러한 가운데 1959년 8월 일본의 소규모 의원단과 운수대신 등이 평화선 해역을 순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일련의 행동을 ‘도발’로 받아들이는 등 한·일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1959년 10월 30일 경 유태하가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북한이 북송을 추진하는 이유가 한일회담 분쇄,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통한 북한체제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북송에 대한 한국의 문제제기에 체제경쟁이 개재되었다는 점은 분명했고, 이승만도 북송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북송선이 출발하기 전일인 1959.12.13. 이승만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군을 경계태세로 전환시켰던 바,<sup>5)</sup> 소련 측에서는 이승만이 무력적 대응을 할 경우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sup>6)</sup> 또한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출발하자 한국정부는 북송이 중단될 때까지 ‘거족적 항쟁’을 지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만, 당시 한국은 북송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1959년 12월 서울수도방위사단 사령부 고급부관(대령계급)이었던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1959년 오사카에 파견되어 경무대 기관원이었던 위혜림, 나카지마 등과 함께 북송선 폭파

약1천명으로 예정한다.

(6) 귀국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① 「일적」은 귀국자가 거주지를 떠나 집결지까지의 운송비, 식비, 60킬로그램(귀국자 1인당)까지의 화물 운송비 및 응급 의료비와 집결지에서 승선까지의 숙박, 식사, 응급 의료비 및 수송을 제공한다.

② 귀국자는 1인당 일본의 통화 4만 5천 엔까지 영국파운드 수표로 휴대할 수 있으며, 상기한도를 넘는 일본 통화를 소유한 자는 본인 명의로 일본은행에 예금하여 후일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일본법령에 따라 외화로의 인출이 인정된다. 주식공채등의 증권 및 예금통장등의 휴대는 불허한다.

③ 귀국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행휴대품, 이시화물 및 직업용구로 한다.

④ 일본측은 귀국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일본측은 귀국자가 사정에 의해 가져갈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계속 본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⑥ 조선측은 귀국자가 승선한 이후의 운송 및 식사, 숙박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상의 복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귀국자의 귀국 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직업, 취업 등 일체의 조건을 보장한다.

(7) 귀국선에는 「북적」 대표가 승선하여 귀국선의 승선항 정박중 그 항역 내에 체제하며 귀국자의 인수, 연락 및 귀국 협력을 담당한다.

(8) 「일적」은 본 협정의 내용 및 귀국 수속 등을 가능한 한 출판, 보도수단을 사용하여 재일조선인에게 철저한 주지를 도모한다.

(9) 협정의 유효기간은 조인날로부터 1년 3개월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귀국사업이 완료 불가능으로 인정될 경우는 협정기간 3개월 이전에 일조양적십자단체 협의상 협정을 그대로 혹은 수정 개신할 수 있다.

5) 연합뉴스 2005.6.16. 〈과거의 창으로 본 오늘의 북한〉 ⑥재일동포북송, 이 기사는 미 우드로 월슨센터 냉전국제사프로젝트 (CWIHP)가 옛 소련과 동구권 중국 등 과거와 현재의 공산권에서 수집, 분석연구하고 있는 각종 기록 가운데 북한관련 기록을 모은 '뉴 에비던스(New Evidence)'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6) 1959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 참조.



공작을 벌이다 그 정보가 누출, 「주간 요미우리」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7)</sup> 이는 외교적 노력 등이 효과가 없자 이승만 정부가 선택한 또 다른 대응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작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후 북송선의 출발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1960년 억류자 상호석방, 한국 쌀 3만 톤의 일본 수출 등을 협상하면서 회담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5일 회담이 재개되어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 제 현안들의 타결 기미가 보였지만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중단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첫 번째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니가타항을 출발했다. 이를 필두로 1959년 12월 2,942명이 북송선을 탔고, 1981년 9월 27일까지 모두 185회에 걸쳐 9만 3천 314명이 북한으로 갔다. 특히 1960년과 1961년 2년에 걸쳐 7만 2천여 명이 북송길에 올라 전체 북송자의 77.4%에 달했다.

## 2. 북송저지공작대의 실체

### 가. 실체 여부

공작원 선발 및 교육, 그 주관기관 및 비용의 출처 등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대(이하 북송저지공작대)의 실체(實體) 확인을 위해, 생존공작원들과 당시 치안국 정보5계 담당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당시 관련 신문기사,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지방검찰청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공소장 및 공작 관련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북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북송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북송을 저지하는 공작원들을 일본에 밀파하였다는 내용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작원들이 일본 현지에서 체포된 후의 일이었다.

즉, 동아일보는 1960. 7. 7. 자 1면 “일경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송반대투쟁 관계의 단원이라고 자백한 24명의 한국인들이 5일 밤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하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경찰보도는 ‘신단덕’<sup>8)</sup>에 의해서

7) 현대사발굴,『공작원 안두희와 그의 시대』, 정병준, 162~164쪽.

8) 24명의 공작원에 대한 야마구치현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원의 판결문과 『재일동포 6·25참전사』의 명단을 확인한 바, 이는 신은득(申殷得)의 오독으로 판단된다.



인솔된 동단원들은 1959. 11. 먼저 체포되었던 다른 1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반공청년단원들로부터 선발되었으며, 4월 혁명 후 귀국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도하여 사건의 일단이 한국에 알려졌다.

그 후 1960. 12. 17. 자 조선일보 3면에는 “수십 명 수장됐다.李정권 때 북송저지공작원 밀파타가” 제하의 기사에서 “민의원 현석호(玄錫虎) 의원은 16일 광주에서 ‘재일교포북송 저지’를 위해 일본에 공작대원으로 밀송되던 고학생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의사했다고 폭로했다. 현의원은 당시의 자유당정권에서 일본의 재일동포북송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2억 환의 자금을 대고 밀송시켰는데, 그 중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조난사망하였다고 밝히고”는 내용으로 자유당정권이 1년 전 재일동포의 북송을 저지하려고 공작원을 밀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조난당한 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져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 정권 시절 재일동포북송저지공작대 파견의 실체는 일본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 과도내각에 이어 장면 내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잊혀졌다.

#### 나. 주관기관

진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961년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 관계해결의건』(이하 국무회의 안건)은 주문에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 관계해결 비용으로 예비비 항목에서 일금 2천 8백만 환정을 지불키로 결의한다”, 제안이유에 “단기 4292년 (서기 1959년) 7월경 일본정부의 재일교포북송 강행기세가 점숙하자 당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총예산 약 2억 환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일금 7천만 환을 영달하고 그 후 중단된 관계로 공작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위 문서에 첨부된『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경위보고서』(이하 경위보고서)에서 그 동기, 목적, 응모자처리, 공작상황(주원확보, 교육, 수송, 공작대의 활동상황, 철수, 사고발생), 현황(공작원의 동태, 순직공작원의 처리, 가족생계부조비, 귀환공작원의 처리, 잔류공작원의 처리, 재일피검공작원 처리), 예산 및 집행, 해결책, 공작원 동태표 등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기재하고 있는 바, 1억 9천만 환의 예산이 책정되어 7천 8



백만 환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북송저지공작 실무는 당시 치안국 정보5계에서 진행한 것인 바, 1948. 11. 4. 대통령령 제18호로 공포된 내무부직제상 대공관련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의 직무로 규정되었는데, 1954년 정보과로 명칭이 바뀌었다.<sup>9)</sup> 당시에는 중정과 같은 별도의 정보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과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1957년 특수정보과의 직제는 중앙분실인 정보4계와 특수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보5계<sup>10)</sup>를 포함하여 총 5계로 확장 개편되었다<sup>11)</sup>.

경찰청 인사기록 조회 결과 이○○, 박○○, 호○○가 1959년 치안국 특수정보과에 근무하였고, 당시 정보5계장은 김○○이었음을 확인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강학과 위 이○○, 박○○은 사망하여,<sup>13)</sup> 김○○과 호○○의 진술만 청취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위 김○○은 “당시 반공청년단장인 국회의원 ‘신도환’<sup>14)</sup>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북송저지사업비로 1억 환을 받아 그 중 9천만 환을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주었고, 이강학 치안국장이 이를 받아 북송저지공작에 사용하였고, 비용 지출이 있을 때마다 경리업무를 맡았던 최○○ 경위<sup>15)</sup>가 지출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다”. “북송저지공작은 치안국장 이강학의 지시에 의하여 정보5계에서 진행된 것이며, 나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실무적인 지원이나 교육은 이○○가 담당하였다. 이○○가 공작관련 보고를 하면 내가 이를 정보과장인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이 다시 국장인 이강학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치안국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정보5계 소속의 순경 호○○는 “정보5계에서 이 사건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적어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분실(4계)이나 다른 계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이하 학도의용군) 대장 출신 진성룡은 “1959년 여름 치안국에서 사람이 찾아와 내무부장관 최인규, 차관, 치안국장 이강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로부터 ‘조총련

9) 「국가보안법연구 Ⅱ」, 박원순, 역사비평사, 515쪽 참조.

10) 1959년 당시 정보5계장이었던 참고인 김○○은 정보5계가 대공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한국경찰사 Ⅱ」, 1,159~1,160쪽.

12) 2006. 9. 23. 경찰청인사기록조회회신(인사과-6535)으로 당시 이○○, 박○○이 치안국 직원이었음을, 2006. 12. 12. 경찰청인사기록조회회신(인사과-8279)으로 김○○이 당시 정보5계장, 호○○가 특수정보과 순경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3) 2006. 10. 31. 행정자치부 주민조회결과 조회 불가.(주민제도팀-6495)

14) 辛道煥(1922. 5. 25. ~ 2004. 3. 24.),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하여 정치에 입문, 1959년 대한반공청년단 총본부 단장을 지냄.

15) 2006. 11. 29. 경찰청 인사기록상 당시 정보5계 경위로 확인(인사과-7920) : 2006. 12. 18. 행정자치부 주민조회결과 조회 불가(주민제도팀-6495)



등이 감언이설로 북송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손을 써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논의 끝에 내무부에서 해야 할 일로 되었다. 일본에 가서 저지도 하고 내용도 알리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나고 생활했으니 학도의용군들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 한번 더 애국을 하여 주시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북송저지공작은 1959년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국무회의의 의결로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할 예산을 책정하여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치안국장이 주관하여 추진, 실행되었다.

### 3. 공작원 선발 및 교육과정

내무부 치안국에서 주관한 공작원 선발은 두 갈래로 진행된 바, 경찰시험합격자 중에서 24명, 학도의용대 중에서 41명을 선발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 의하면 예비 역장교 1명이 더 있어 모두 66명이다.<sup>16)</sup>

#### 가. 선발과정

##### 1) 경찰관시험합격 출신

경찰관시험 합격자 출신 24명이 공작원으로 선발된 과정을 보면, 1959년 봄 경찰간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통지를 기다리던 중 개별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방문이나 우편을 통하여 1959. 9. 2. 아침까지 서울 을지로 3가 소재의 황금여관<sup>17)</sup>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황금여관에 도착하여 정보5계 호○○의 안내로 을지로 4가 부근의 '시청각교육소'<sup>18)</sup> 간판이 붙은 2층 적산가옥으로 안내되어 박○○ 등으로부터 일본어 능력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별면접을 받았다. 면접과정에서 모종의 공작임무 수행을 감지하였으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자유로이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응해야 하는 강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6) 생존공작원들은 총 공작원 수가 66명으로 3개 소대로 나뉘어 있었다고 기억하나, 재일학도의용군측과 경찰간부시험합격자 측은 각각 41명, 24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총수는 65명이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측에 보내온 급여일람표와 국무회의록 안건록에 의하면 총 공작원 수는 66명인 가운데, 공작원들이 기억하는 바와는 달리 공작대에 '유부형'이라는 자가 포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급여일람표상에도 양측에 속하지 않는 '國'이라는 표시와 함께 '유부형'의 이름이 있다. 그러나 공작원들은 유부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부형'의 파견 여부는 현재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66명의 명단 중 재일학도의용군 출신 41명의 명단은 『재일동포 6·25참전사』374쪽의 명단과 일치한다.

17) 해당 자구 지구대에 문의하여 을지로 3가 구역 내에 '황금장'이라는 여관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8)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방한기는 '시청각교육원'으로, 배성현은 '교육원 같은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김홍윤은 부산 서대신동 사찰계 형사의 방문으로, 방한기는 치안국 명의로 발신된 우편엽서를 통하여, 전우영은 거주지인 ‘유곡’주재소 순경의 방문으로 황금여관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면접과정과 관련하여 호○○는 “1959. 9. 2. 을지로 3가의 황금여관으로 소집된 경찰관시험 합격자들을 공작원으로 선발하는 면접절차의 진행을 맡았으며, 박○○이 당시 이들에 대한 면접관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면접 도중 일본으로 가는 모종의 공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면접관 박○○에게 ‘일본으로 가는 공작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없겠다’고 하였지만, 박○○은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 이미 국가 1급 비밀을 알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내 주겠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성현은 “심사자가 ‘베트남으로 가는 공작인데 공무원 신분으로는 국제관계도 있고 하여 곤란하니 반공청년단 신분으로 가야 하며, 매월 경위급의 월급과 귀환 후 경찰관임용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고”, “정보학교를 마쳐 이러한 비밀공작 관계의 경우 거절하면 형무소 같은 곳에 격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체념하고 목숨을 바치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방한기는 “훈련장인 우이동에 가서야 재일동포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특수공작임무를 위해 모인 것이며, 이 곳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경남경찰국 사찰과 형사였던 이식윤은 “당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조봉순에게 부탁하여 이상진에게 북송저지경찰관 자리를 주선하였던 바, 그를 사지(死地)로 몯 것 같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진술하였다.

## 2) 재일학도의용대 출신<sup>19)</sup>

학도의용군 출신자들은 경찰관시험 응시자들과 다른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1959년 여름 내무부장관 최인규, 차관, 치안국장 이강학 등이 재일학도의용군 대장 진성룡을 만나

19) 재일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이들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으로 귀환한 어렵게 되자 한국에 남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를 결성하고, 미군부대 등에서 경비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재일동포 6·25전쟁 참전자 및 2006.8.17.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조승배 진술 참조). 당시 자유당은 국민회, 대한별공단, 반공청년회 등 각종 우익단체들을 일괄적으로 대한반공청년단으로 통합하고 그 총재로 이승만을 앉히는 등 치안국 같은 공식 기구뿐만 아니라 유사사회단체에 대한 영향력도 공고히 다졌다(김일영, 『전국과 부국 : 현대한국정치사강의』, 2004, 227쪽 참조).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역시 자의와 관계없이 대한반공청년단으로 편성된 상태였던 바 치안국은 손쉽게 이들을 그 공작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



‘조총련이 감언이설로 북송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없으니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무부 주관으로 일본에 가서 저지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나고 생활한 학도의용군들이 적합하므로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요청을 받은 진성룡은 “치안국장, 정보과장, 외사계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 공작원들의 신분보장, 가족생계 지원, 귀환 후 경찰관 임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공작원 선발에 협조하게 되었고, 재일학도의용대 회원들에게 공작원 선발 사실을 알려 원하는 이들은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치안국 정보5계 김○○은 “일본에 연고가 있고 일본을 잘 아는 이들을 찾다보니 학도의용군에서 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원과정 및 임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박진우는 “1959년 여름 동지회 사무실을 통하여 치안국에서 공작원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였고”, 허명묵은 “공작 내용은 알았으나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최성규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나 일본으로 가게 되는 일이란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유찬호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집으로 방문한 치안국 이○○<sup>20)</sup>를 통해 공작대로 선발되어 우이동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며,

조승배는 “인천의 미8군에서 경비관계 책임자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59. 9. 초경 치안국 정보5계 요원인 이○○가 모 기관에서 나왔다며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가자고 하였고, 중요기관에서 나왔다는 말에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차로 명동 중앙국립극장 뒤 특수 분실 같은 곳으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에서 치안국 사람인 듯한 이로부터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의사가 있느냐? 나라의 특수한 일을 하게 되는데 임무가 좀 크다’는 제의를 받았다. 가족과도 상의하고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에게 상의하고 말고 없이 여기서 결단을 내려라. 만일 거절하면 당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특수한 곳에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조난당한 김형권의 처 박일순은 “1959년 여름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근무 시간 중에 집에 와서는 ‘일본에서 이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는 북송공작대원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고 나간 뒤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잠깐 들렸다 갔고, 부산인가 하는 곳에서

20) 경찰청 인사기록상 치안국 특수정보과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존공작원들은 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장애인이었던 바, 자신들을 통솔하던 이가 ‘다리를 절름거렸다’고 하여 이○○로 판단된다.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 나. 교육과정

##### 1) 교육장소

공작원들은 면접 후 군용차량을 타고 우이동 신원사 근처의 훈련장에 도착하여 훈련을 받았는 바, 방한기와 허명묵 등은 우이동 훈련 당시 촬영한 소대원들의 단체사진을 소지하고 있고, 김홍윤과 조승배는 그 사본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다.<sup>21)</sup> 야마구치 지방 검찰청 시모노세키 지부의 항소이유서에서 체포된 공작원들은 1959. 10.경부터 약 1개월간 서울시 부근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훈련장소로 이동경위에 대하여 경찰시험 출신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은 면접을 통과한 24명이 황금여관에서 바로 우이동 소재의 훈련장<sup>22)</sup>으로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방한기는 면접에서 탈락한 두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커튼이 쳐져 밖이 보이지 않는 군용 지프에 태워져 우이동으로 이동, 도착해 보니 이미 24인용 군용천막이 쳐져 있었고, 며칠 후 학도의용군 출신 40여명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학도의용군 출신 조승배는 공작 제의를 받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밖이 보이지 않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보니 우이동 골짜기였고, 이미 다른 재일학도의용군 동료들과 경찰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훈련시설에 대하여 학도의용군 출신 최성규, 유찬호, 허명묵 및 정보5계장 김○○은 우이동 신원사 근처의 훈련장에서 공작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3개 소대로 나뉘어 각 소대별로 군용천막 하나씩에 기거하며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김홍윤은 치안국의 박○○과 이○○가 신원사에 마련된 본부에 머물렀고 치안국장 이강학이 온 적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시찰 정도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 2) 교육내용

공작원들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교육을 받았는바, 먼저 책을 정해서 그 책의 페이지와 글자를 적어 보내는 안착신호 방법을 배웠는데,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일본어와 정세

21) 2006.9.5. 조승배 제출자료, 2007.1.17. 김홍윤 제출자료. 김홍윤은 자신의 소대의 단체사진에서 얼굴을 기억하는 이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주었다. 김종기, 백남단, 김인주, 장용관, 유상규, 곽종복, 이상진, 방한기, 손진석, 정임현, 이우성, 김덕장, 정인태, 배성현, 고시철, 박석정, 김홍윤, 박문기, 강병련, 전우영, 진중근 21명을 확인하였는 바, 나머지 세명이 김종식, 김진태, 장영문으로 보인다.

22) 생존공작원들과 정보5계장이었던 김○○이 훈련장 장소를 우이동으로 기억하고 신원사가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파악 교육, 일본경찰에 들키지 않도록 신분을 잘 숨기는 교육을 받았다.

방한기는 “입고 간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혔고, 암호교육으로 안착신호 보내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안착신호는 책을 정해서 그 책의 페이지와 글자를 적어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암호방법치고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다. 교육은 치안국의 박○○, 이○○와 전향공작원 김○○가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작원들은 가명을 쓰도록 하여 김홍윤은 김석천, 유찬호는 ‘요시무라’라는 가명을 받았고, 조승배는 ‘마츠시다’, ‘최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 3) 공작임무

조승배는 ‘레포(비밀세포망원)’ 임무를 부여받았고, 박진우는 “고베지구 조총련 간부 납치가 임무였고, 조총련 간부의 명단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베항 근처에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식당에서 만나는 동포들에게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조총련 의장 한덕수를 납치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관련된 사전 정보 등이 전혀 없어 한덕수의 얼굴도 모르는 채 갔으며, 유찬호는 조총련에 가입하여 일본 적십자사의 북송 추진 업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김홍윤과 최성규는 일본에 가 있으면 지시를 주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 4) 외부통제

공작원들은 우이동 훈련장에 도착하여 천막에서 생활하며 1개월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장을 떠나거나 외부와 연락이 일체 허용되지 않은 강압적 상황에서 비밀리에 교육을 받았다.

배성현, 방한기 등은 선발에서 교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족 등 외부와 접촉이 일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등 고통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소결

이승만 정권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내무부 치안국 주관으로 재일한국인 북송저지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공작활동을 할 공작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켰다.



선발과정에서 경찰관시험에 응시한 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강압적인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다.

교육과정에서 우이동 훈련장소에 군용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주로 불법적인 공작활동 실행을 위한 비밀교육을 받았는 바,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기망과 강제적인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4. 밀파 과정

##### 가. 마산 등으로 이동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배성현, 최성규, 유찬호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작원들은 교육을 마친 1959. 11. 중순경 10여 명씩 조를 나누어 치안국 이○○ 등의 인솔하에 기차로 마산 등지로 이동하여 치안국 박○○, 이○○ 등과 함께 적산가옥이나 여관 등에서 합숙하며 치안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할 선박을 마련할 때까지 대기하였다.<sup>23)</sup>

##### 나. 밀파 경위

위 국무회의 안건 별첨보고서, 일본 시모노세키 지방법원 판결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치안국은 공작원들을 조별로 나누어 7차례에 걸쳐 선박에 태워 일본 항구로 밀항시켰다.

1차로 1959. 11. 1. 경 제1조 이종범 등은 부산에서 밀선에 승선하여 11. 3. 경 히로시마

23) 도일시 승선한 배가 밀선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승배는 “일본을 왕래하는 밀수선으로 인하여 당국이 골치를 앓던 때였는데, 치안국에서 이러한 밀수선을 적발하여 선박 몰수를 면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작원들을 밀항시키도록 포섭하였다”고 하였고, 최성규, 박진우도 같은 내용을 전술하였다.



현 오미치항에 도착하였다.

2차로 1959. 11. 10.경 제2조 박연규, 안인철(가명 안순철), 김성욱, 조승배, 김종만, 김복섭, 장정부, 허명묵, 신은득, 김태윤 등은 감포항에서 무역선 제21 칠대양호에 승선하여 11. 12. 경 후쿠오카현 오쿠라항에 도착하였다.

3차로 1959. 11. 29.경 제3조 박덕철(가명 박덕길), 박진우, 김의경, 김재하, 김덕장, 진중근, 김종식, 박문기, 손진석, 정광묵, 김성모, 김영은 등은 부산항에서 무역선 제3 대영호에 승선하여 12. 4.경 고베항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박덕철, 김재하만 탈출하여 상륙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선박에 머물다가 1960. 2. 6. 귀환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건 별첨보고서에는 “제3차 수송선 제3 대영호 탑승공작원이 상륙 예정이 있으나, 일본 관헌의 경계가 삼엄하므로 상륙이 불가능하여 12명 중 2명만 탈출 상륙하고 잔여 10명은 1960. 2. 6. 마산항을 경유 귀환하였다”고 적고 있다.

4차로 1959. 11. 30.경 제4조 정영달(가명 심영천), 최성규, 이규달, 차용문, 신상봉, 이동규, 이광락, 유창화, 유찬호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1.경 히로시마현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5차로 1959. 12. 12.경 제5조 곽종복, 유상규, 방한기, 김홍윤(가명 김석천), 전우영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14.경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6차로 1959. 12. 13. 제6조 김진태, 한윤표, 김형권(가명 김형곤), 김인주, 노병렬, 전태인, 장영문, 김진수, 박석정, 천덕표, 이상진, 배수만 등은 거제 출발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하여 12. 21. 남해 해상(큐슈 근해 20천 지점)에서 조난당하였다.

7차로 1959. 12. 24.경 최재중(가명 최재판), 강병연, 송두경, 배성현(가명 배종용) 등은 마산항에서 선명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12. 26.경 쿠레항에 도착하였다.

밀항 및 도착 경위에 대해 생존 공작원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차로 승선한 조승배는 “마산에서 배를 구하지 못하여 다시 감포로 가서 배를 탔다”, “현해탄을 지나는데 배가 금방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았다. 어렵사리 일본 큐슈에 오쿠라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진술했고,

허명묵은 “정식 입국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은밀히 오쿠라항에 배를 대자마자 바로 흘어져서 각자의 임무수행지로 도망했다”고 진술하였다.

3차로 승선하였으나 안착에 실패한 박진우는 “우리 배의 사무를 보던 장모 사무장이 일



본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잘 아는 사이라 입국절차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작은 어선이라 아슬아슬했다. 고베에 도착하기 전 큐슈와 시모노세키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일본 해양경찰대에 추적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리는 치안국으로부터 ‘반공청년단’ 명칭을 쓰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반공청년단인데 해양훈련차 나왔다가 일본 쓰시마가 좋은 관광지라고 해서 보고 가려고 한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하고, 고베항에 도착했지만 안착에 실패. 장모 사무장이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이야기해서 20시간 또는 30시간 조건으로 간신히 상륙허가를 받아 잠깐씩 육지에 들어와 일을 보곤 했다. 안착실패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차로 승선한 공작원 유찬호는 “이틀간 항해하다가 쓰나미가 일어 할 수 없이 다시 마산인가 부산으로 새벽에 돌아왔는데, 해양경찰대가 수상히 여기고 총을 겨누었으나 공작대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 치안국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 쪽에서 치안국에 확인한 후 다시 항해하도록 했다. 단속을 피해 새벽 2~3시경에 히로시마 쿠레로 갔다. 간신히 배를 대고 내려보니, 그 바로 앞이 큰 조선소였다. 조선소 불이 너무 밝아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조선소 직원인 것처럼 하고 조선소를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최성규는 “우리 목적지는 ‘히로시마’였다. 그런데 출항해서 얼마 안 가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4~5시간 만에 대마도에도 못 미쳐 돌아와야 했다. 영도에서 하루인가 이를 있다가 다시 출항하여 히로시마로 갔고, 이목이 뜸한 틈을 타 배에서 내려 각각 흘어졌고 나는 오사카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5차로 승선한 전우영은 “이○○가 배를 구했는데 배 밑에 열 명 정도 탈 수 있는 밀항선이었으니, 뒤집히면 다 죽는 것이었다”고 하였고,

김홍윤은 “치안국 요원들이 마련해 준 가짜 선원증을 가지고 배에 탔다. 공작원 6명과 다른 밀항자 2명, 선원 네다섯 명 정도 탔다. 5톤 트럭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배였는데 고철을 실었다. 치안국 박○○과 이○○가 수송선까지 함께 탔는데 박○○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사지로 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나도 배에 탈 당시에는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체념적 심정이었다”, “30시간 정도 항해하여 아침에 쿠레 항에 도착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12월 10일 출항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12월 12일에 다시 출항하였다. 선원증을 만들어 주기에 가지고 다녔지만, 가짜 선원증이니 공해상이나 일본 영해에서는 통



하지 않았다”, “배 밑에 숨어서 항해하였고 일본 쿠레 항구에 도착하여 몰래 육지로 빠져 나와 쿠레 역으로 가서 각자 훔어졌다”고 진술하였다.

7차로 승선한 배성현은 “먼저 마산으로 이동한 후 밀선이 마련되길 기다렸는데, 파트너인 강병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 타려던 배를 못 타고 그 다음 배를 탔다. 작은 어선이라 겨울에 파도가 일고 위험하였으나 다행히 쿠레에 도착하여 몰래 육지로 잠입하여 여관에서 하루 자고 강병연과 도쿄로 갔다. 이후에 원래 타려 했던 배가 조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소결

치안국은 공작원들을 우이동에서 교육훈련시킨 후 기차를 이용하여 마산, 부산, 감포 등지로 이동시키고, 일본으로 밀항시킬 밀선을 마련하는 동안 외부와 통제한 채 항구 근처의 적산가옥이나 여관 등에서 1개월 가량 합숙, 대기시켰고, 가짜 선원증을 만들어 주면서 적발될 경우에는 대한반공청년단 소속으로 속이도록 지시하였고, 일본의 연고지별로 6~12명 씩 조를 나누어 밀선에 승선시켜 순차적으로 밀입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일시켰는 바,

선발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 및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sup>24)</sup>

### 5. 밀파 이후의 상황

조난사고나 일본에 도착한 후의 사태들은 한국의 주권과 정권 관계자들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 또는 부자위에 의한 피해부분에 해당하나,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밀파 등 선행된 위법·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인 만큼, 포괄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그 실상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4) 1959년 당시 헌법 전문에는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繼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라고 되어 있다.



### 가. 조난사고 발생

1959. 12. 13. 공작원 12명이 거제에서 제6차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 출항하였다가 12. 21. 남해 해상에서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제6차 수송선 명성호는 1959. 12. 13. 공작원 12명을 탑승시켜 거제 출발 후 일단 대마도에 정착하였다가 재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중 동년 12. 21. 구주 근해 20천 지점에서 돌풍으로 조난, 선박 전파로 공작원 12명은 선원 5명과 공히 전원 순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보5계장 김○○은 “조를 나누어 배를 탔는데 밀선에 태웠다. 그런데 그 중에 16명(김○○의 기억)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가라앉으면서 승선한 공작원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좀 나중에 언젠가 선거철이었는데, 내무부장관이었던 현석호<sup>25)</sup>가 선거유세를 하면서 폭로하여 신문에도 났다”고 진술하였다.

조승배는 “후에 이들의 소식을 알 수 없어 공작원들이 계속 묻자 치안국 요원인 이○○가 ‘대마도 기상청에서 폭풍이 심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공작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출발하였다가 조난당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치안국 요원 1명도 함께 승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일본신문에서 풍랑을 만나 한국인 몇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당시는 한국에서 일본을 오가는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작원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도 “우리 뒤의 출항조가 대마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후에 도쿄에 있을 당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960. 12. 17.자 조선일보 3면에서는 민의원 현석호 의원이 “재일교포북송저지’를 위해 일본에 공작대원으로 밀송되던 고학생 수십 명이 현해탄에서 익사했다고 폭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밀입국이 불법적이라는 문제와 별개로 치안국이 포섭한 밀선은 해로가 험한 현해탄을 건너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 바, 4차 수송선의 경우 출항해서 얼마 안 가 태풍을 만나 돌아왔다가 다시 출항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국 관계자들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공작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항시켜 12명의 공작원이 탄 명성호가 조난사고

25) 현석호(玄錫虎, 1907. 5. 23~1988. 12. 2) 정치가. 6·25전쟁 후 정계에 투신, 자유당 소속 민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제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탈당하고, 새로 발족된 민주당에 입당하여 활약하였다. 4·19혁명 후 제5대 민의원 당선에 이어 내무부장관(1960. 10. 13~1960. 11. 20) 제9·11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네이버 백과사전, 한국경찰사 II 참조)



를 당하였다.

#### 나. 생계곤란 상황

1959. 12. 민단의 이인기와 차진이 북송저지를 목적으로 니가타의 적십자 센터를 폭파하였다 미수에 그치고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경찰 당국이 북송저지공작대가 일본에 침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sup>26)</sup> 경계가 강화되어 공작활동이 여의치 않았으며, 밀파 교육도 초보적 수준인데다가 구체적인 임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도착하였고, 도일 후 공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시도 공작금의 송금도 없어 공작원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밀항으로 불법입국하였기에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출발 당시 지급받은 3만 엔의 공작비는 한 두 달 후 다 떨어져 일부 공작원의 경우 아는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여 지내거나 취업을 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생계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공작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북송저지공작원 침투 정보에 의한 일본관헌의 경계가 심하므로 합법활동이 여의치 않았으나 북송희망자 46세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초자기술자의 집단북송 분열, 국어강습회 개최에 의한 북송저지 설득, 조총련계 공장침투 취직, 조총련 내의 제반 선무공작 등 부진한 성과를 획득하였음”, “당초 입안계획은 1년간의 기간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일본 현지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고 유기적인 공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7천만 환만을 영달하고, 그 후 중단된 관계로 공작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보5계장이었던 김○○은 “안착신호를 통해 보고를 하여 온 이들이 두 서너 명 있었으나 활동이 여의치 않아 은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 번 정도 공작금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유찬호는 공작금으로 마산에서 3만 엔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일본에서는 공작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홍윤은 방한기, 조승배와 함께 ‘쏘니’ 부품 납품업체에 취직하였으며, 최성규는 일본에서 우편으로 공작금이 450불 정도 왔고 액수가 사람마다 달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일본에 있을 당시<sup>27)</sup> 한번 일반우편으로 공작금(300~550불, 당시 환율은 1달

26) 1959. 12. 5. 일본 요미우리 신문 7면, 11면 보도 참조.

27) 일본 안착 후 1개월 가량 지난 후였다고 하는 바, 1960년 1월 경임. 2007.1.12. 유선면담시 확인.



러=360원)이 오길 하였으나, 달러로 지급되어 외환법이 엄격하였던 터라 환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공작금은 천○○이라는 치안국 사람이 직접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각 공작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방한기는 “1960년 한일회담이 한창일 때 공작금이 떨어져 주일대표부를 찾아갔다가 유진오, 이호 씨 등을 면 발치에서 보았다. 주일대표부에서는 민단으로 가보라며 모른 척하였고 민단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자李모 민생국장이 5천 원을 주었다. 넝마 일이라도 하려고 찾아갔으나 거절당하여 생업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최성규는 “당시 오사카 경찰에 근무하던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서 수상한 놈들이 건너왔다는데 혹시 아느냐’고 물은 일이 있다. 이미 우리의 공작정보가 일본경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지시도 공작금 송금도 없으니 별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유찬호도 “공작금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1960년 봄 아사히신문에 북송저지를 위해 한국공작대가 일본에 잠입하여 각지에서 공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기사를 본 날 아침에 낯선 사람 2명이 찾아와 교육 당시에 부여받은 나의 가명 요시무라를 대면서 그의 집이냐고 물었다. 신분이 들통났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요시무라상을 아는데 데려올테니 기다리라’고 안심시키고는 고베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성현 역시 여러 차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특수공작원이 잠입하였다는 정보가 보도되면서 경계가 삼엄해져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한동일은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으로 당시 오사카에 있었는데, 공작금이 떨어진 이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좀 살펴주었다. 그러다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찾아와 이들을 오사카 밖으로만 보내면 모른 척 하여주겠다고 하여 서둘러 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박덕철의 처 이경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덕철로부터 일본에서 산에 올라가 풀을 뜯어먹고 살 정도로 고생을 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 수용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돌아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일본 경찰에 체포

공작원들이 일본에 도착할 당시 일본에서는 민단 이인기의 니가타 적십자센터 폭발시



도 사건 및 안두희의 북송선 폭파 계획이 드러나고,<sup>28)</sup> 이 사건 공작대의 밀파도 포착되는 등 일본 공안당국의 경계가 삼엄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작원들은 활동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변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치안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으며, 공작에 투입될 예산 조달도 1960. 1.까지로 그쳐,<sup>29)</sup> 도일 후 공작원들은 공작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한 차례 지급받는데 그쳐 생계까지 위협받았으며, 상황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주일대표부는 원조를 요청하는 공작원들을 외면하였다.

공작원들은 밀항자 신분이어서 정상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하여 귀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치안국은 다시 밀선으로 일본을 출항하여 귀환하도록 지시하여 그 과정에서 결국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황정재는 이들과 별도로 도쿄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았는데, 경찰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본 경찰의 경계상황에서 치안국 측이 철수를 위하여 파견한 요원인 이○○의 활동이 일본경찰에 포착되었고, 1960. 5. 3. 시모노세키에서 이○○가 마련한 무동력선에 승선한 24명 전원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60. 7. 7.자 동아일보는 “일경서 24명 체포-북송반대 위해 밀항한 한국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북송반대투쟁관계의 단원이라고 자백한 24명의 한국인들이 5일 밤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하관(下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경찰보도는 신단덕(신은득의 오기)에 의해서 인솔된 동 단원들은 작년 11월 먼저 체포되었던 다른 1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경찰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반공청년단원들로부터 선발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4월 혁명 후 귀국하도록 소환되었으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고,

위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는 “동년 3. 6. 일한회담 개최에 수반한 정국변동에 의하여 전원 철수시키라는 명령에 의하여 철수공작원 1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철수공작을 실시한 바 제1차로 동년 4. 14. 3명은 철수귀국에 성공하였으나, 동년 5. 3. 일본 하관(下關)에서 제2차 철수공작시 공작원 23명(명단에는 24명 기재)이 승선 출발 직전 일본 관헌에게

28) 주간요미우리 1959.12.

29) 앞의 ‘제일동포북송저자공작관계해결의견’이라는 제하의 1961년 국무회의 안건록 형식의 문건의 별첨보고서에는 가족의 생계지원과 관련하여 “매인당 월 3만환씩 1년간 지불하기로 입안하여 실시하다가 예산부족으로 4292년 10, 11, 12월 4293년 1월분까지 4개월분만을 지불하고, 그 후로는 미지불중임”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바 공작금의 지급도 이 시기까지만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 피검되어”라고 적혀 있다.

철수지시 및 그에 따른 이동과정과 관련하여 연락책이었던 조승배는 “4·19 이후 상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동월 말일경 국제방송을 통하여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받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공작금이 바닥난 지 오래여서 시모노세키로 가면서도 무척 고생했다”고 진술하였다.

김홍윤과 방한기는 1960. 5. 초(집결일 2일 전 무렵) 연락책인 조승배로부터 철수를 위하여 시모노세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시모노세키로 가는 기차를 탔으며, 전우영도 4·19 직후 동료 공작원으로부터 철수지시를 전달받고 유상규와 함께 시모노세키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홍윤, 방한기, 전우영, 조승배는 “승선 후 배 밑의 선실에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보니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 길로 체포되어 각 경찰소로 분산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재판 및 복역

시모노세키 지부에 송치된 공작원들은 1960. 5. 15.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961. 7. 18. ‘징역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공작원들은 수용된 오무라 수용소와 히로시마 재판정이 원거리여서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1961. 12.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재판지연 부담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공작원들은 주일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승만 정권에서 벌인 일이라며 거절당하였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

일본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작원 허명묵은 검찰공소장과 항소이유서, 출석포기서, 공소신청통지서, 판결통지문 및 강제송환증 원본 등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며,<sup>30)</sup> 김홍윤은 판결통지문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sup>31)</sup>

체포되어 처벌받은 공작원 24명(박연규, 안순철(안인철의 가명), 김성욱, 조승배, 김종만, 김복섭, 장정부, 허명묵, 신은득, 김태윤, 심영천(정영달의 가명), 최성규, 이규달, 광종

30) 이상의 자료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통해 사본을 제출받았고, 허명묵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은 2006. 11. 7. 면담시 확인하였다.

31) 2006. 12. 17. 진실화해위원회에 사본 제출.



복, 유상규, 방한기, 김석천(김홍윤의 가명), 전우영, 최재판(최재중의 아명), 강병련, 송두경, 배종용(배성현의 가명), 김종범, 박덕길(박덕철의 가명)의 혐의 사실은, 1959. 11. 12. 경부터 12. 26.경 사이에 6회에 걸쳐 한국 항구에서 선박에 승선 출항하여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하였으며,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에 출국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1960. 5. 3. 밤 시모노세키에서 승선했다는 것이다.

야마구치 지방검찰청 시모노세키 지부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본건 밀입국의 목적은 인도를 무시한 정치적 모략에 근거한 비밀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간섭하고 일본 국내를 교란하기 위해 저지를 대단히 중대, 악질의 집단적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밀입국 목적은 일본 정부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실시한 재류조선인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북조선 귀환을 희망하는 자를 송환한다고 하는 시책을 저지하려는 상당히 비인도적 모략을 수행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감행된 것이고, 수십 명에 이르는 비밀공작원 피고인들의 이러한 의도하에 밀항 잠입해 온 사실 자체에 있어서, 본 국민 및 재일남북조선인에게 끼친 사회불안은 실로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공작원들의 신변보호 내지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보5계장 김문석은 “나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퇴직하였고, 민주당 정권에게 공작관련 업무를 인계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이 별인 일이고 자신들은 모르는 것이라며 공작사업 자체와 공작원들을 방치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조승배는 민단을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주일대표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인니까 우리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절하여 일체의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방한기는 “우리를 변호해 주던 국선변호사를 통해 주일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홍윤은 “폭탄 테러 시도로 체포된 민단의 이인기는 주일공관에서 선임하여 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불구속수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조사중 북송저지공작을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북송정책이 비인도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우이동에서 지낸 일까지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전우영은 “경찰서에서 밤새 취조를 당하였고,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하였으나 누군가가 다 이야기를 하여서 나중에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낮에는 방치하였다가 밤마다 불러서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절차의 진행시에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승배는 “담당검사가 공작원들에게 엄청난 중형을 주려고 하였지만 당시 일본에는 첨보관계 처벌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과 국민보건법 위반만이 문제되었다”고 하였고, 최성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변호사에게 치안국에서 북송저지공작 관계로 왔기 때문에 형을 높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하였으며, 김홍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쥘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방한기는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그냥 복역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권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공작추진으로 인하여 공작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게 된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면을 당하고 공작원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마. 귀환 상황

현재 생존이 확인된 공작원 김홍윤, 조승배, 방한기, 전우영, 최성규, 박진우, 유찬호, 허명묵, 김성욱, 신상봉, 배성현 등 11명이 있으나, 그동안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거듭하였다.<sup>32)</sup>

공작원 66명 중 조난당한 12명, 1960년 일본입국에 실패하여 귀환한 10명과 1961년 복역 후 강제송환된 25명(도쿄에서 체포된 1명 포함) 등 47명 외 공작원 19명은 개별적으로 귀환하거나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후에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

조승배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24명의 공작원들은 1961. 가석방되어<sup>33)</sup> 오무라 수용소로 이동된 후 재일동포강제송환절차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김홍윤은 “1961. 6. 10. 경 정영달을 비롯한 8명과 제1진으로 부산을 통해 돌아왔는데, 한 갑석 총경이 우리를 맞은 후 영도경찰서 수상검문소로 데려가 공작보고서를 쓰도록 한 후 교통비조로 몇만원을 주면서 ‘집에 기다리면 경찰 임용의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방한기는 “출소하는 날 주일대표부의 엄공사가 찾아와 ‘고생이 많았다’고 하였고, 오무라 수용소에서 대기하다 송환되어 부산으로 왔다. 치안국 사람이 나와서 수속을 끝나주고

32) 신청인 제출자료 ; 1997. 12. 14. 경찰청 회신문(보일 63700-2539) ; 2000. 1. 26. 경찰청 회신문(보일 63700-111)

33) 허명묵이 보유한 나가사키 형무소 기출소 증명서로 1961. 5. 30. 가출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는 ‘수고했다’고 하면서 만원을 여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배성현은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1961년 봄 주일 대표부의 업공사라는 이가 와 자비출국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강제송환선을 타고 부산으로 왔을 때 경찰이 나와 출발시 가지고 간 공작금의 용도에 대해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귀가시켰을 뿐, 이후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전우영, 최성규 등도 같은 절차로 귀환하였으며, 귀환 당시 치안국 등의 관계자가 나와 교통비조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박진우는 고베항 상륙에 실패한 후 귀환하여 치안국 정보5계에서 본 공작관련 문건들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위 24명과 달리 유찬호는 1960. 10.경 일본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입국 위반 문제만 조사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일본에 남아 생업에 종사하다 1997년경에 귀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복섭의 처 권분두는 “1959년 치안국에서 주관하는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 일본에 다녀올 것이며, 봉급이 집으로 송금될 것이라 하고는 나간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봉급도 딱 3개월 송금된 후로는 전혀 지급된 바 없다. 아는 이들로부터 남편이 일본에서 체포되어 형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안국에 찾아가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는 것을 알고 차비 정도 주었을 뿐이었다. 1961년에 귀국한 남편은 일본 경찰에서 고문을 많이 당하여 팔목 양쪽에 깊숙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렵사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인태의 딸 정은주는 “국가의 일로 일본에 갔다가 고생 끝에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은 상태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여 평생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원래 유능한 분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고생하다 정국이 바뀌면서 버림받게 된 것이고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매우 비참하게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34)</sup>

이상과 같이 공작원들은 밀항의 방법으로 일본에 상륙한 불법입국자의 신분이어서 대부분 합법적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 당국의 강제송환절차에 따라 귀환하였다.

34)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급여열람표 사본의 귀환일자 상 정인태는 1963. 7. 26. 귀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정부의 약속이행 여부

### 1) 보상금 지급 및 사망통보

치안국이 출항시킨 밀선은 해로가 험한 현해탄을 건너기에 문제가 있었는 바, 치안국이 안전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여 명성호에 승선하였던 12명의 공작원이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에 도착한 공작원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5명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까지 하였다.

정부는 조난공작원들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각각 10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환공작원들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5)</sup>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김형곤의 쳐 박일순은 “남편이 가고 2, 3년 지나서 재일학도의 용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착금이 나온다고 하여 갔더니 사망한 사람은 돈을 더 준다고 했다. 그저 사망자 정착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면서 돈만 주었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sup>36)</sup>

조난당한 이상진의 쳐 김인식은 “1959. 8. 18. 취직을 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나간 남편의 생사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여 아직 그 호적을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세 살이었던 딸을 홀로 키우며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다”고 하며, 지금도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살고 있고 이상진의 딸 이태임은 훌어머니 밑에서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등 아버지 없는 서러운 세월을 살아왔다.<sup>37)</sup>

### 2) 가족들의 생계보장

재일학도의용군 대장이었던 진성룡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치안국으로부터 공작원들의 신분보장, 잔류가족의 생계보장(월 3만 원 급여), 임무완수 후 직장보장(경찰관 임용)의 약속을 받았으며, 특히 가족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가족에게 월 3만 원의 월급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작원들의 가족들은 생계지원을 받은 바가 전혀 없거나, 생계지원도 1960년에 들어서는 예산이 없어 조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찬호는 “가족에게 매월 월급을 부쳐준다고 걱정말라고 했는데, 받은 것이 없었다”고

35) 내무부 치안국 회신문(내치안 87,018)

36) 김형권의 제적 등본상에는 ‘1959. 12. 21. 경상남도 남해 해상에서 목선 30톤 공무수행중 익사’라고 하여 쳐 박일순이 사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일순은 사망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한다.

37) 이상 2001.8.23. SBS 뉴스추적 방영 내용 : 2007. 3. 9.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이상진의 친구 이식윤은 김인식을 설득하여 2002. 1. 25.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 이상진의 제적 등본상 1959. 12. 21. 경 일본 큐슈 근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하여 2002. 1. 25. 사망신고됨을 확인하였다.



하며, 허명목도 “공작원으로 선발될 당시에는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실제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하였으며,

최성규도 “원래 치안국에서 가족에게 월급을 부쳐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혀 받은 게 없었고 아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치가에 앉혀살았다. 정부에서는 지급했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진우도 “치안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월 얼마의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승배는 “실제 월급은 두어 달 정도만 지급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기 전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난공작원 김형곤의 처 박일순은 “처음 두 세 달 정도 사서함으로 돈이 들어왔다. 남편이 가기 전에 월급이 나올 것이니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돈이 안 왔고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 3) 경찰관 임용

공작원들에 대하여 가족의 생계지원과 경찰관 임용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성룡 및 생존공작원들의 진술과 치안국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1960. 2. 6. 경 귀환한 박진우, 김덕장, 진중근, 손진석, 김종식 등만이 경찰로 채용되었고, 그 외에는 5·16 이후 당초의 약속과 달리 경찰관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정보5계장이었던 김○○은 “치안국에서 이후 돌아오면 순경<sup>38)</sup>으로 특채하여 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성현은 경찰관시험합격자 출신으로 “매월 경위급의 월급과 귀환 후의 경찰관임용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최성규도 “경찰관으로 근무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시험을 쳐 전매청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박진우는 “치안5계에서 이동규, 김덕장, 진중근 이렇게 우리 넷을 불러 의향을 물었는데, 이동규는 사퇴하겠다고 했고, 김덕장은 전라남도 경찰국으로,<sup>39)</sup> 진중근은 경상북도 도 경으로<sup>40)</sup> 발령이 났다. 당시 박주선<sup>41)</sup>이 치안국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 대담도 했다.

38) 채용 직급과 관련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작원들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39) 2007.1.12. 경찰청 인사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1960년 나주경찰서에 순경으로 채용되었다.



원래 조장급은 경위를 준다고 했는데 순경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김홍윤의 1962. 1. 청원에 대한 치안국의 회신문 사본에는 “1. 과거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임무수행귀환 후 경찰관으로 기용한다는 명문이 없고 2. 설사 명문이 있다 하더라도 정실 인사의 구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일체 공무원 채용은 시험에 의하는 것이 혁명정부의 방침 이므로 무시험 기용의 가망은 없음”이라는 임용요구 거부의 내용이 적혀있다.<sup>42)</sup> 방한기 역시 “이후에 사람들에게 연락해 박○○도 만나고 치안국에 민원도 넣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당시 이소동 장군이 치안국장이었는데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 사. 소결

이승만 정권 관계자들의 과실로 무리하게 출항시켜 조난사고를 당하고, 밀파 후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공작원들이 생계곤란을 겪었으며, 일부 공작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복역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던 사실, 안전 귀환이 보장되지 않은 사실,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 약속 및 귀환 후 경찰임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구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VI. 결 론

###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북송저지공작을 전개키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 일본 현지에 공작원을 파견할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관할하에 치안국이 추진하여 실행에 옮겨졌으나, 일본에 밀항의 방법으로 밀파 후 방치되었다.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주관으로 재일동포북송저지를 목적으로 공작원을 선발하여 교육시켰으며,

선발과정에서 일부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

40) 현재 경찰청 인사기록상 확인 불가, 전산화되지 못하여 근무자를 상세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함.

41) 경찰청 인사기록 및 한국경찰사 II의 명단 확인 결과 ‘박주식’으로 확인

42) 내무부 치안국 청원서에 대한 회보, 내치정 제2,952호, 1962. 2. 6. 신청인 제출자료.



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강압적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하여는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고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선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으로 우이동 훈련장소로 이동시켰고,

우이동 훈련장소에서는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하였는 바,

기망과 강제적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을 선발하고, 교육장소로 이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피해자인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피해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작활동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작원들을 일본으로 밀파한 행위는 권력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무리하게 출항시켜 조난사고를 당하고, 밀파 후 공작원들이 생계곤란을 겪었으며, 일부 공작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복역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고, 일부 안전하게 귀환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2. 권고

국가는 사건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가 공작원들을 강압적으로 공작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밀파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



##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현납의혹 사건

### 【결정사안】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현납 시킨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명을 구속하였고, 그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를 후 석방된 사건이다.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현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현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현납이 권리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현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현납한 토지 및 언론 3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현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5·16 장학회 아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현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현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현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전 문】

【사 건】 라-961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현납의혹사건

【신청인】 김영우

【결정일】 2007. 5. 29.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 개요

5·16 쿠데타 직후인 1961. 5. 28. 삼화고무, 조선견직(주), 한국생사(주), 부산일보 등 10여 개의 기업을 보유한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金智泰)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기업인 15명과 함께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를 위해 재산을 기부한다는 각서를 쓰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6. 30. 석방된 후, 12. 30. 5억 4,57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1962. 3. 27. 경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이라 함)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임직원 8명을, 4월 초 김지태의 처를, 4. 23. 일본에서 귀국한 김지태를 각각 구속하였고, 군검찰은 이들을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이하 군법회의라 함)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5. 25. 김지태가 그 소유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 등 언론 3사 주식 및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부산지역 토지 10만여 평에 대한 포기각서에 날인을 하고, 다시 6. 20. 기부승낙서에 날인을 하고 이를 후, 군검찰은 공소취소하여 모두 석방하였다.<sup>1)</sup>

김지태의 위 현납재산은 1962. 7. 14. 5·16장학회가 설립될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으며, 그 후 토지 10만여 평은 국가로 이전되었다.

신청인 김영우(피해자 김지태의 차남)는 이 사건 재산현납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2006. 1. 27.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 II. 의혹사항

### 1. 수사과정의 적법성 여부

김지태 등에 대한 중정의 구속수사 및 군법회의 재판의 적법성 여부.

### 2. 재산현납의 강제성 여부

김지태가 재산을 현납한 것이 최고회의 또는 중정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진현납이었는지 여부.

### 3. 현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김지태가 현납한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 10만여 평의 귀속처 및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1) 1962. 6. 22.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재판장 준장 박기석), 김지태 등에 대해 군법회의법 제37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소기각 결정.



###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은 제1조에서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진실규명 대상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실규명의 범위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상해, 살인, 불법체포 또는 고문에 의한 혐의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또는 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살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위증, 증거인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언론 및 노동권, 재산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김지태의 사유재산인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 현납이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이 신청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라 함)는 2005. 7. 22.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현납을 추진한 것”이며, “박정희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현납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현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현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본법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김지태 소유재산 헌납과정에 국가기관의 강압이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속하는 만큼 조사개시를 하여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고,

국정원 발전위의 조사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반성적 차원의 조사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법률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이루고 국민통합을 위해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를 하게 되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 법률적,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강제헌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국정원 발전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2006. 12. 5. 기본법에 의해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 IV. 조사방법과 경과

### 1. 자료조사

- 조사 자료 1-13권 각 100여 쪽
  - 열린우리당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 조사결과보고서 91쪽 및 국정원 자료 438쪽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김지태 등 부정축재자 관련자료 133쪽(특정인부정축재최종결정서 등)
  - 국가기록원 보존 자료
- 정수장학회 강탈인가? 헌납인가? (라디오프로그램 CD)
  - 한국방송공사 보도자료
- 기부승낙서, 기부증서 등 관련자료 42쪽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진흥과) 보존자료
  -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 국유재산 등 관련자료 6쪽
  -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보존자료
- 진주지 “5·16과 1군” 13쪽



- 재경진주향우회 보관자료

## 2. 진술 청취

- 신청인 김영우(피해자 김지태의 子, 2006. 8. 19. 및 2007. 5. 3. 진술청취)
- 중정 수사관 박○○(중정 부산지부장, 2006. 11. 20. 진술청취), 김○○(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2006. 11. 22. 진술청취)
- 참고인 이성호(김지태의 변호인, 2006. 9. 14. 진술청취), 정순태(부일장학회 간사, 2006. 9. 19. 진술청취), 조용태(한국생사 무역과장, 2007. 1. 5. 진술청취), 배다지(국 제신보기자, 2006. 12. 22. 진술청취), 김상찬(국제신보기자, 2006. 12. 22. 진술청취), 정치근(중정 파견검사, 2007. 1. 4. 진술청취), 김수철(김지태 기념사업회 사무차장, 2006. 12. 22. 진술청취), 김정옥(김지태 기념사업회 간사, 2006. 12. 22. 진술청취), 김원(전 5·16장학회 실무간사 김석겸의 子, 2006. 10. 18. 진술청취), 김광석(김지태의 비서 김대윤의 子, 2006. 2. 9. 진술청취), 소종섭(시사저널기자, 2007. 3. 21. 진술청취), 김석주(재경진주향우회부회장, 2007. 3. 21. 진술청취),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2007. 5. 2. 면담조사), 기타 원영재 외 6명(2006. 2. 23. 진술청취),

이 사건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의혹사항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신청인, 수사관, 참고인 등 23명에 대해 진술청취 등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 V. 조사결과

### 1. 사건의 배경

#### 가. 시대적 상황

군부세력은 1961. 5. 16. 쿠데타를 일으켜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주도 세력은 기본정책으로 혁명공약 6장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금융동결, 공항 및 항구 봉쇄, 의회해산, 전 각료 체포령을 내렸으며,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정권을 접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61. 5. 19.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함)로 개칭, 같은 달



20. 최고회의에 각 부문별 통치조직으로 행정, 내무, 외무국방, 재무, 법무, 문교, 건설, 농림, 상공, 보사, 교통, 체신, 공보, 공안 등 14개 분과를 두었고, 각 분과위원회로는 현역 군인을 임명한 후,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동법 제24조 헌법과의 관계에서 비상조치법에 저촉될 경우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스스로 국가기능상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즉, 동법 제9조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최고회의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3조를 통해 최고회의가 내각수반 임명권과 내각임명에 대한 사전승인 및 해임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행정 각부로 하여금 중요정책 수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모든 조직을 통제하였고, 동법 제17조를 통해 최고회의가 사법에 관한 행정권을 지시, 통제하였으며, 동법 제18조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였고, 법원행정처장 및 일반법관 임명에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1962. 3. 21.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하자, 3. 24. 최고회의가 이를 즉각 수리함으로써 박정희 의장이 비상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계엄령 하에서 초헌법적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발생하였다.

#### 나. 김지태의 이력과 중정의 평가

김지태는 1943. 5.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하였고, 8·15 후 조선견적·한국생사·삼화고무 등을 설립하였으며, 1968. 5. 생사수출조합 이사장, 1970. 한국생사협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지태는 1949. 9. 16. 부산일보를 인수하여 경영하였고, 1959. 9. 23. 최초의 라디오 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하여 경영하였으며, 1961. 2. 21. 한국문화방송을 발족시켜 12. 2. 서울지역 최초의 라디오 상업방송인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여 경영하였다.

1950. 5. 제2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1954. 3.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였으나, 1956. 12. 사사오입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자유당에서 해당행위자로 제명되었다가 1957. 5. 복당한 후 1958. 5.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정계 은퇴하였다.

1958. 11.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1960. 12. 모교인 부산상고에 부상장학회를 설립,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하였다.<sup>2)</sup>



5·16 후에는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소유기업체 탈세 등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5억 4,570만 환을 주식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정원이 제출한 김지태 자료에 의하면, 작성일자 미상 ‘부산지부’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불신 사실 “없음”, “반공사상이 투철한 자이며, 혁명정부시책에 순응한 자임”, “현재 이태리, 서독, 瑞西에 요양중에 있음”.

작성일자 작성기관 미상 ‘정치인실태조사표’는 “정치적 부패가 농후한 자로 부정축재벌 과금 545,708,543환을 통고받은 사실 유함” “자유당의 권력과 금력으로 당선된 자로서 정치부패가 심하여 의당 제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1962. 3. 1.자 ‘종로분실’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사실은 없으나, 향토민족으로부터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편임”, “5·16 이후 가능한 군정에 접근하여 자신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야심이 다분한 자임”,

1962. 3. 9.자 ‘서울’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사실은 없으나, 향토민족으로부터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편임”, “혁명정부를 찬양협조하는 편이나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의 권리만을 득하려는 야심가임”,

작성일자 미상 중정 지부장 작성의 ‘정치인실태조사표’는 “1962. 3.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행방불명된 자임”, “기회주의적 편승분자”, “굴지 사업가로서 정치성분은 부패성이 있으나 제한은 하지 않으며, 정책상 문화사업면에서 이용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작성일자 미상 부산지부 작성 ‘정치인실태조사표’는 “반공사상이 확고한 자임”, “부정축재 9억 환에서 실사 결과 4억 환이 감소되고, 관세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중이며 본명은 일본 체류중임”, “부일장학금 관계로 찬양신망이 있음”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중정의 구속수사

1962. 1. 27. 김지태(당시 54세)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병원에 입원중일 때, 3. 27. 중정부산지부는 부정축재처리법, 외환관리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등의 9개 혐의를 적용, 부산일보 전무 겸 부일장학회 상임이사 윤우동, 조선견직 전무 배정기, 한국생사 총무 이상학 및 상무 김정호, 무역과장 조용태, 부일장학회 사무원 배병태, 토지중개인 방순묵 등을 구속한 다음,

2) 1976. 5. 김지태의 나의 이력서, 국정원 제출 인물존안자료, 김지태는 1982. 4. 11. 사망.



김지태의 처 송혜영(당시 27세, 김지태와 1955. 11. 결혼)이 1년 6개월 전인 1960. 10.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반지와 카메라를 휴대, 반입한 것을 이유로 1962. 4. 초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지태의 회사 임직원 10여 명이 중정에 연행, 유치된 첫날 중정 부산지부장 박○○가 군 야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들어와 ‘우리 군이 목숨걸고 혁명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라고<sup>3)</sup> 겁을 주었다.

이에 당시 법률상으로 범인격이 없는 재단법인 부일장학회 이사회는 1962. 4. 11. 기본 재산인 토지 100,147평을 정부에 기부하는 의결을 하였고,<sup>4)</sup>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는 김지태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징발 사용하고 있던 부산지역 토지 10만여 평을 나라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보고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5)</sup>

김지태가 4. 23. 귀국하자, 중정 서울지부는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하여 중정 부산지부로 압송하였다.

2003년에 발간된 김지태의 전기는 “5·16 직전 박정희 장군이 거사자금 500만 환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이를 문전박대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sup>6)</sup>

당시 김지태의 변호인이었던 이성호<sup>7)</sup>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지태가 일본에 있을 때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불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신직수가 무조건 일본에서 들어오게 하라고 하여 박정희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후에 신직수가 부산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여 갔더니 다른 경로에 의해 김지태가 석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경찰이 공병기지창 땅, 비서와의 관계, 다이아몬드 반지를 밀수해다 주었다고 보고를 하여 최고회의에 수사품의를 하자 수사지시가 내려왔다. 그런데 김지태가 일본에 가고 없어 김지태를 불러오기 위해 그의 처를 구속하였다. 김지태가 연락을 받고 처가 왜 들어갔냐고 하여 전화로 일단 나오라고 하자 일주일 어물거리다가 김포에 도착한다고 하여 서울지부에 부탁

3) 당시 한국생사 무역과장으로 구속되었던 조용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2007. 1. 5.)

4) 의결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국방부장관이 1963. 10. 21. 김지태에게 보낸 공문내용으로 국정원 발전위는 의결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5)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2006. 8. 19.)

6) 『문정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 자명 김지태 전기간행위원회, 2003.

7)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와 군법무관 동기.



해서 부산으로 압송하였다”, “박의장이 황용주에게 얘기해 김지태에게 혁명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sup>8)</sup>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김지태의 조선경직회사를 일본 기업인 몇 명에게 시찰해 주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고 김지태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는데 거절을 하여 잘못보인 것이다”, “위에서 지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지부장이 나에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하여 그럼 ‘구속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사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박정희 의장과 대구사범 동기이자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부산일보 사장 1962~1963, 문화방송 사장 1964~1965, 정수장학회 이사 1985~1987 역임)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소 김지태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재벌의 속성상 쿠데타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자신이 김지태에게 많은 신세를 진 처지를 고려하여 자금요청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고, 후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sup>9)</sup>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2000. 4. 『진주지』에 자필서명하여 발표한 「5·16과 1군」이라는 기고문에서 “박장군의 군수기지사령관 당시 김지태에 대한 인상은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을 미끼로 부정축재 및 탈세자로서의 인식, 혁명사업에 비협조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으며, 1962년 정초 독대시에 김지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정부장(김종필)의 승인을 받아 내사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썼다.<sup>10)</sup> 위 박○○는 1999년 봄여름호 『의암만수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고한 바 있으며, 그 후 2004. 8. 26.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한 바 있다.<sup>11)</sup>

그런데 위 박○○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당시 박정희 의장을 독대한 것은 사실이나 김지태에 대해 직접 수사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잘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일부 번복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당시 박정희 의장을 독대한 것은 사실이나 잘 알아보라고 한 일도 없고, 박정희 의장이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기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중정은 최고회의에 속했고, 중정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직 국회의원이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기업가인 김지태에 대한 수사를 중정 자체

8) 국정원 발전위 김인두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9) 「5·16장학회의 유물 정수장학회」,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10) 『진주지』, 2000. 4.

11)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에서 당시 『시사저널』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박○○의 진술을 녹음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녹음테이프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고회의의 승인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정 부산지부에서 수사를 주도하였는 바, 5·16 쿠데타 후 최고회의가 3권을 장악한 후 1961. 6. 10. 최고회의가 제정한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정을 두면서, 중정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명을 받으며, 중정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정이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일반 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경찰과 경찰에 있었다.

당시 중정 파견 검사였던 정치근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중정 부산지부는 합동수사본부로 경찰, 검찰, 현병 등이 파견나와 있었고, 검사는 저 외 9명이 파견되었으며, 중정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최고회의 소속인 중정의 수사, 지휘 및 감독을 받았으며, 범률자문을 했던 것 같으며, 김지태씨 사건은 잘 모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 수사과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는 계엄하였기 때문에 중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검사장과 법원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고,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었고, 민간인이라도 중정에서 수사할 수 있었고, 김지태는 저명인사라 중정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김지태 구속 당시 박정희 의장과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란 사람이 지부장실에서 중정 부산지부장 박○○를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까지 주도적으로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sup>12)</sup>

### 3. 군법회의 재판

현재 수사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군검찰의 공소장과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한 결정문만 남아있는 상태인 바, 중정 부산지부는 부정축재처리법·외국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법·형법·농지개혁법·조세범처리법 등 위반 9개

12)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칭한다)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6조(수사권) ①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협의로 김지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한 다음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중정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은 1962. 5. 10. 김지태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관세법 위반 · 공문서 허위작성(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송혜영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상학 등 3명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로, 윤우동 등 3명을 공문서 허위작성(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하였다.(구속된 10명 중 배정기, 송혜영 등 3명을 석방하여 송혜영은 불구속 기소, 7명은 구속기소) 군검찰의 기소에 대해 군법회의는 재판을 진행하여 5. 24. 김지태에게 7년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2년형 내지 5년형을 구형하였다.

당시 기소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김지태, 송혜영은 1960. 8.에서 9. 사이에 서독 함부르크시에서 100\$ 가량의 독일제 카메라 1대를, 화란 암스텔담에서 6,200\$(2,000만 환) 가량의 에메랄드형 보석 1개를 구입하여 송혜영이 이를 소지하고 1960. 10. 서울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치 않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고(관세법 제197조 위반).<sup>13)</sup>

② 1960. 7. 이상학, 김정호는 860만 환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을 알면서 보증수표로 김지태에게 전달했고, 김지태는 이를 조용태에게 교부하고, 조용태는 서독 씨밀리스 한국지사 지점장에게 미화 10,000\$로 교환, 서독 본사에 김지태가 도착하는 즉시 수취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불확인증을 받아 이를 김지태에게 전달했고, 김지태는 7. 8.경 이 지불확인증을 지참, 출국하여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이상학, 조용태는 김지태의 지시에 의해 1960. 12. 25.부터 1962. 3. 31.까지 도쿄 지사의 신문대금 40,500환과 1961. 11. 12.부터 1962. 4. 14.까지 일본에서의 신문광고료 532만 환 일화 환산액 약 149만 엔 중 자진신고한 44만 엔을 제한 약 160만 엔(105만 엔의 오기로 보임) 상당을 한국생사 연락원으로 하여금 보관, 지출하게 하는 등 불법사용하면서 이를 해외에 도피시켰으며,

김지태, 이상학, 조용태는 대한생사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일본 오사카 소재 트레딩 회사 등에 수출하고, 1959. 1. 1.부터 1962. 3. 20.까지 인조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의 2%를 수출보상금 수수료조로 미화 300\$ 및 10,000\$(일화로 360만 엔)을 위 연락원으로 하여금 보관 소비 지출케 하는 등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켰고(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13) 관세법 제197조 수출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자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제2조, 제4조 위반),<sup>14)</sup>

③ 김지태, 윤우동은 1956. 2. 15.부터 1962. 1. 19.까지 수십 회에 걸쳐서 부산시 대연동 등 소재 농지 약 12만 2천여 평을 실제 농경자가 아니면서 이를 매수한 후 방순목을 통해 1960. 12. 5. 김지태 외 각 매수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상 필요한 자작농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케 하고, 배병태로 하여금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자작농지증명서를 교부받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허위 자작농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형법 제227조, 동법 제229조 공문서 허위작성 및 동 행사,<sup>15)</sup> 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sup>16)</sup>).<sup>17)</sup>

이러한 기소 혐의에 대하여 당시 김지태의 변호인 이성호·김장호·최윤철 등은 변론을 통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sup>18)</sup>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도 아니고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변호인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석과 카메라는 휴대품으로 통관 규정에서 서면 외 구두신고도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송혜영이 입국 당시 휴대품과 함께 손에 낀 반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는 일본 내의 상거래로 개인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와 관계가 없으며, 1960년 이전에는 그 리베이트마저도 없었으며, 형법상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만 범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 한 동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14)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길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15)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 농지개혁법 제25조 본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7) 기소된 내용 외에 김지태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8) 법무부장관 1961. 5. 19.~1962. 1. 9. 후일 5·16장학회 상임이사 1962~1965, 문화방송 사장 1963~1964 역임.

19) 김지태의 전기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2003)



## 4. 재산현납의 경위

### 가. 재산현납과 석방

고등군법회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1962. 5. 24. 7년형을 구형받은 김지태는 동년 5. 25. 부산구치소를 방문한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산일보 등 언론 3사 주식을 국가에 현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을 하였고,

6. 20.경 부산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이 제시하는 위 토지 10만 여 평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기부증서’ 및 언론 3사 주식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지태가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이미 작성되어 제시된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를 후인 6. 22. 군검찰은 김지태가 죄과를 뉘우치고 국가재건에 이 바지할 뜻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지태 등 구속자 전원에 대해 공소취소하였고,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는 공소기각으로 모두 석방조치하였다.

김지태는 5. 25.에 이미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6. 20.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겸 최고의원인 김용순이 찾아와 ‘박 최고회의 의장의 뜻이라며 김지태의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고,<sup>20)</sup>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도 아니고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아무 것도 아니고 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혁명정부에 현납까지 했으니 공소취소로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박의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다”, “박의장이 김용순에게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김지태를 석방하라’고 지시하여 2~3일 후 석방됐다”고 언급하였다.<sup>21)</sup>

이상에 의하면, 김지태의 석방은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이 김지태로부터 현납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서류를 확보한 다음 최고회의 의장에게 석방을 건의하였고, 최고회의 의장이 계엄사령관에게 석방을 지시하자, 계엄사령관이 군검찰에 석방을 지시하여 군검찰이 공소취소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20)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21) 고원중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 나. 재산현납의 경위

재산현납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진술과 기록을 보면, 김지태는 1962. 9. 4. 서울시 아서원에서 군부 관계자 고모 장군,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 이모 등과 만나 토지이용과 장학회 운용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서류상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현납물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각서를 써줬다”고 기록하였고,<sup>22)</sup>

1971년 경위서에서 “1962년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 박○○에 의해 자신이 부산형무소에 투옥되어 군재의 공판이 진행중일 때 6. 20. 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고원증이 지참해 온 미리 작성한 양도서류에 날인을 강요당하고 쇠고랑 찬 손으로 본의 아닌 날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sup>23)</sup>

1976년 『나의 이력서』에서 “내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맞서는 경우 간부들이 희생당하는데다가 회사경영이 엉망이 되어 수천 종업원이 실직하게 될 것이 안타까웠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공영사업이므로 누가 경영하든 이 나라 매스컴 발전에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응할 심산이었다. 구속된 조건 아래 그런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석방된 연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버티었으나 막무가내로 어느 날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전 경향신문 이사 홍연수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김형욱 부장이 ‘김지태에게 7년형을 구형하니 재산을 다 바치더라’는 등 수시로 김지태를 거론하며 경향신문 매각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25)</sup>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최고회의에서 미리 지시받은 것은 없다. 보석밀수하고, 탈세하고, 공병기지창 땅 먹고, 안성수 사장에게 살고 싶으면 국가에 현납할 물목을 제시하라고 하여, 이 것을 지부장, 수사국장, 부장,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순으로 보고했다. 현납물목은 공병기지창 땅,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서울문화방송 이었다. 최고회의에서 수락한다는 전문이 왔다. 재산현납은 김지태를 구속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sup>26)</sup>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안성수가 부산문화방송 · 부산일보 · 부일장학회 등의 현납

22) 1962. 9. 4. 자 김지태의 자필메모(비망록), 조사기록 ; 한겨레 2004. 8. 9. 자.

23) 1971. 8. 김지태 경위서.

24) 김지태,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1976) 8쪽.

25)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26) 김○○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물목을 제출하여, 이를 중정 본부 및 최고회의에 보고하자 이를 만에 수락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sup>27)</sup>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는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조사에서 “그 때 김지태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진술하였다.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위 기고문에서<sup>28)</sup> “수사중 김용순 계엄사령관이 자주 본인 사무실로 내방, 사실 내용을 타진”하였고 “본인보고 현재 최고회의 의장의 심정은 김지태 씨 재산 중 부산일보(부일장학회 포함), 문화방송 등을 국가에 현납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절충, 합의하자는 요지”였으나 “후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가 교도소를 직접 방문 재산현납에 날인 받았다고 들었다”고 쓴 바 있고,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1962. 5. 경 정보보고를 통해 신직수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지태를 면회, 재산포기각서를 징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sup>29)</sup>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나도 모르게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가 부산에 내려와 부산형무소에서 김지태를 만나 재산현납 포기각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sup>30)</sup>

반면,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정희 의장이 ‘중정에서 몇 달 전에 김지태의 재산을 기부받아 놓은 것이 있다. 재산이 자꾸 유출된다고 하니 그것으로 5·16장학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그 말에 따라 그해 6월경 부산에 내려가 재산양도서류에 김지태의 도장을 받았다. 약 15평쯤 되는 부산 군기사 법무부장실(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김지태는 모시한복 차림이었고, 수갑이나 포승줄은 전혀 없었으며,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알았소’라고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였고,<sup>31)</sup>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지태 가족이 재산현납의 뜻을 내비치며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측과의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언론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재단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김지태의 석방조건에 재산현납물목으로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택해 박정희 의장측에 대해서는 정부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을, 김지태측에는 언론 및 장학사업의 공익재단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양측의 승낙을 받았고, 이를 계기

27) 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8) 『의암민수지』(1999) ; 『진주지』(2000. 4.)

29)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30) 『시사저널』 2004. 8. 26.

31) 2004. 8. 10.자 『한겨레신문』 인터뷰.



로 재산현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sup>32)</sup>

1962. 6. 5.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손창규는 5·16장학회가 1963. 3. 1. 실질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5·16장학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김지태 씨가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에 회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최고회의에서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sup>33)</sup>고 언급했고,

전 5·16장학회 실무간사 김석겸은 “5·16장학회는 밀수 혐의로 구속된 김지태 선생 내외분이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산시내 토지를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박정희 의장에게 기증한 것을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킨 것으로, 구속기소된 곤경을 면하려고 재산을 최고회의 실력자에게 기증하였다는 속설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sup>34)</sup>라고 언급하여 강제성을 부인하였다.

한편, 언론사 경영권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제출한 1962. 6. 27. 작성 ‘정치인 동향’은 “김지태는 자기가 경영하던 KV, KU방송국 및 부산일보사 등을 정부에 회사하여 기히 방송국에는 감독관이 파견되어 있는 바, 동 KV방송국은 5·16장학회에서 직접 ·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7월경부터 중역진을 개편 후 운영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적고 있다.

#### 다. 현납재산 내역 및 작성 서류

##### 1) 현납재산 내역

김지태가 현납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부산지역 토지 252필지 100,147평의 소유명의자는 김지태 외 8명이며, 작성된 기부증서는 9매(서울시 교육청 보존)이다. 이들 토지는 비영리 재단법인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있었다.

- 부산일보(주)(21필지 대연동 18,093평, 개금동 4필지 11,900평)
- 김지태(우동 67필지 9,603평)
- 김기환(개금동 46필지 11,439평)
- 정종철(개금동 11필지 6,469평)
- 배정기(개금동 21필지 11,681평)
- 정순태(개금동 4필지 1,181평)
- 윤우동(개금동 13필지 6,716평, 대연동 47필지 14,539평)

32) 「5·16의 유물 정수장학회」(인터뷰), 『월간조선』 1988년 6월호.

33) 『조선일보』 1962. 6. 5. 기사.

34) 정수장학회 30년지.



- 김종한(대연동 6필지 2,788평)

- 양영기(대연동 12필지 5,738평)

김지태가 현급한 언론 3사 주식의 내역을 보면, 소유명의자는 김지태 외 15명이며, 권리 이전에 필요한 기부승낙서는 25매(서울시 교육청 보존)이다.

- 김지태 : 부산일보(14,350주), 한국문화방송(7,000주), 부산문화방송(6,000주)

- 윤우동 : 부산일보(3,000주), 한국문화방송(2,0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김종한 : 부산일보(1,000주), 한국문화방송(2,000주), 부산문화방송(1,600주)

- 김진황 : 부산일보(200주), 한국문화방송(2,460주)

- 정종철 : 부산일보(1,0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윤수동 : 부산일보(450주)

- 고의동 : 한국문화방송(20주)

- 김달범 : 한국문화방송(4,000주)

- 이상학 : 한국문화방송(1,000주)

- 이승우 : 한국문화방송(20주)

- 정환옥 : 한국문화방송(500주)

- 김영출 : 한국문화방송(500주)

- 김태윤 : 한국문화방송(5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이영택 : 부산문화방송(500주)

- 김기환 : 부산문화방송(500주)

- 이택주 : 부산문화방송(500주)

## 2) 평가금액

당시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이 위 언론 3사 주식에 대해 감정평가한 총액은 3억 4,875만 960환인 바,<sup>35)</sup>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산일보 주식 : 발행주식의 100% 총 2만 주, 액면가 총 20만 환(1주당 10환), 평가금액 1억 9,285만 6,490환

- 한국문화방송 주식 : 발행주식의 100% 총 2만 주, 액면가 총 2억 환(1주당 10,000환), 평가금액 1억 446만 3,420환

- 부산문화방송 주식 : 발행주식의 65% 1만 3,100주로, 액면가 총 6,550만 환(1주당

35) 언론 3사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홍, 국민, 제일은행 3개 시중은행에서 실시.



5,000환), 평가금액 5,144만 1,050환

### 3) 문서 작성자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기부증서 9매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김지태측 인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1명이 동일한 필체로 수증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 이름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후에 다른 사람이 수증자 및 작성일을 보충기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부증서에 날인을 받을 때 수증자 및 월일란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후일 특정인 1명이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자로 六月二十일 및 財團法人五一六獎學會라고 기재하여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기부승낙서 25매를 면밀히 살펴보면, 김지태측 인사가 아니라 특정인이 주식수, 수증자, 작성일, 주소, 성명을 공란으로 남긴 채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등사기로 프린트한 양식의 문건에, 특정의 3~4명이 펜으로 주식수, 주소와 이름을 적어 공란을 채운 다음 그 이름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후에 1명이 수증자란에 財團法人五一六獎學會라고 보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지태 외 다른 임원들 명의의 문서에 누가 날인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토지명의자 중 한 사람인 김종한은 문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5·16장학회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 5·16장학회 실무자가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일장학회 간사였던 정순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부일장학회 간사로서 장학생 시험, 선발, 장학금 지급 등만 전담하였고, 이사회 회의 등에는 전혀 참석, 관여치 않았으며, 김지태 소유 땅의 일부가 저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 같은데 당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국문화방송 사장이었던 김종한은 방송 인터뷰에서 “내 명의로 부일장학회 토지에 대한 기부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sup>36)</sup>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도 “나는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적이 없고 재산현납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내 명의의 서명, 날인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7)</sup>

위 고원중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김지태 이외 기부자들의 기부승낙서는 당시 부산

36) 2005. 5. 20. 방영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정수장학회 강탈인가? 현납인가?”

37)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일보 논설위원 겸 5·16장학회 상임간사인 김석겸 등 실무자들에 의해 날인됐을 것”이라 고 진술하였다.<sup>38)</sup>

#### 4) 문서 작성일자

당시 5·16장학회 설립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된 기부승낙서 작성일자는 1962. 6. 30.자이고, 기부증서의 작성일자도 1962. 6. 30.자이다. 정수장학회에는 김지태 명의의 1962. 6. 20.자 기부승낙서 3매만 보존되어 있다.

정수장학회 보존 김지태 명의의 기부승낙서 작성일자는 한자 一九六二년 六月 二十日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 보관중인 김지태 명의 및 다른 사람들 명의의 주식 기부승낙서 25매의 작성일자는 모두 한자로 一九六二년 六月 三十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 문서를 살펴보면 검은색 ‘二’자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년 六月 三十일로 변조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sup>39)</sup>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된 김지태 날인의 주식 기부승낙서 3매 및 토지 기부증서 2매의 날짜는 원래 한자 一九六二년 六月 二十일로 기재된 ‘二’자 바로 위에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년 六月 三十일로 고쳐졌다.

김지태 외 다른 사람들 명의의 토지 기부증서도 작성 형식이 동일하므로 한자 一九六二년 六月 二十일로 기재된 ‘二’자 바로 위에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년 六月 三十일로 고쳐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재산현납의 배경

황용주가 최고회의 의장측에게 정권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낙을 받았고, 김지태측에게 언론 3사 주식(부산일보 100%, 한국문화방송 100%, 부산문화방송 65%)의 현납을 강조한 사실, 김용순 계엄사령관이 중정 부산지부장인 박○○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최고회의 의장의 심정은 김지태 재산 중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등을 국가에 현납하는 조건으로 절충,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타진하였고, 현납과정에서는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현납 배경에 대해서는 최고회의측이 단순히 재산목적으로 언론 3사 등을 현납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군부세력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이라는

38) 면담녹취록, 국정원 송부자료.

39) 국정원 제출자료.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재산적 가치보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토지는 군사기지로 사용중이었기 때문이다.

### 마. 재산현납의 상대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창규는 김지태가 5·16장학회에 회사한 것이고, 김석겸은 최고회의 의장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5·16장학회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 국정원 발전위원회에서 김지태의 현납재산은 개인한테 바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를 대신하는 혁명정부에 좋은 목적으로 써달라며 최고회의에 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sup>40)</sup>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재산을 현납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재산현납 과정에 중정 수사관이 김지태측으로부터 현납물목을 받아 최고회의에 보고하는 등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관여한 점에 비추어 특정 개인에게 현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에 재산을 현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토지에 대하여 포기각서 작성 직후인 1962. 5. 28. 중정은 김지태가 기부한 군(軍)이 사용하던 토지 10만여 평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국방부에 이송하여<sup>41)</sup> 국방부가 이 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보다 먼저 5·16장학회가 1962. 9. 4. 등기를 이전하자 내각에서 군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지이므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여 국방부와 5·16장학회측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김지태로부터 국가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문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5·16장학회에서 국가로 이전하라고 하여 1964. 10. 23. 국가로 증여 형태로 이전된 점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 바. 재산현납의 강제성 여부

5·16 직후 군부세력에 의해 설치된 최고회의는 3권을 장악하여 최고권력기관의 위치에 있었고, 중정은 최고회의의 직속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군사정권 계엄령 하에서 일반 국민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재산현납 이틀 후 김지태가 석방된 것에 비추어 최고회의 및 중정은 형벌권 행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처와 회사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업인 김지태는 군사법정에서 중형선고 및 회사경영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

40) 면담녹취록, 국정원 송부자료.

41) 1963. 3. 27.자 국방부의 '기부출원 부동산 등기이전' 제하 공문(국군시 1261.4-1356) 중 중정 작성 공문(중첩공 060, 1962. 5. 28.)내용 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가 김지태측에게 재산현납물목으로 언론 3사를 택해 언론 및 장학사업의 공익재단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가 김지태 측근인 안성수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현납하라고 요구한 점,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김지태가 7년형을 구형받은 다음날 부산구치소로 찾아와 김지태에게 이미 작성된 언론 3사 등 재산포기각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한 점, 그 후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이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김지태를 불러 이미 부동문자로 작성된 언론 3사 등 양도서류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형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 관계자들의 재산현납 요구는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에게는 형벌 관련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기업경영 관련 정치적 압력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위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이 김지태에게 재산현납을 강요한 것으로서, 김지태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재산을 현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기부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에 석방된 점, 김지태가 자신을 구속했던 박정희 정권의 집권 초기부터 재산반환을 요구한 점, 적용된 협의사실과 기부재산의 비교 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위에서 본 바,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구속상태에서 군법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권력기관 고위관계자가 구치소까지 찾아가 이미 작성된 기부서류를 제시하며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문건에 날인만 한 것을 볼 때 자진하여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 현납 후 반환 요구

김지태는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자진해서 현납 할 의사가 없었다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1962. 7. 경 “군정에서는 나의 재산을 강취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반환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으로부터 ‘재산현납은 선의의 기증행위가 아니라 강제로 약탈된 행위로 반환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강제로 현납된 재산이 자신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군인은 역사적으로 영구히 규탄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sup>42)</sup>

42) 국정원 부산지부 작성 ‘김지태신원조사서(작성일자 미상)’ 인용; 경찰 작성의 ‘김지태의 언동관련 정보보고’(내정치 1962.7.31.)



또한, 1963. 10. 대통령 선거 직후 군사정부가 현납사건이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제의한 5·16장학회 이사직을 거절하고,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을 5·16장학회에 서 분리 운영하되 자신이 주식의 51%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서울신문사를 불하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sup>43)</sup>

그런데 김지태는 1971. 3. 21. 『조선일보』 인터뷰에서<sup>44)</sup> “요즘 재벌들 중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나도 수년 전 부산일보 등 6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라에 바쳐 부의 사회환원을 시도했었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김지태는 1971. 7. 당시 공화당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5·16장학회가 경영난으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을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5·16장학회 이사장 김현철에게 2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매각시 자신이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sup>45)</sup>

1980. 4. 박정희 정권이 종료된 직후에는 “1962. 5. 강탈해 간 재산을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반환청구서’를 5·16장학회에 보내<sup>46)</sup> 문서로 반환을 요구하였다.

## 5. 인권 침해 여부

공권력이 강요하여 김지태로 하여금 언론 3사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sup>47)</sup>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 등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민주 국가에서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주로 언론기관에 의해서 수집·전달되고 있어 언론기관에 보도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

국정원 송부자료.

43) 1963. 12. 7. 김지태 운영계획서.

44) 김지태 인터뷰 기사, 「나의 기업경영」, 『조선일보』 1971. 3. 27.자.

45) 김지태, 「5·16장학회 이사장 김현철에게 보낸 편지」( 1971. 7. 26.; 8. 6.)

46)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47) 헌법재판소 1989.12.22, 88헌가13 :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 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

또한 당시 헌법 제15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편집권 또는 편성권이 보장되고 있는 바, 언론기관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경영진 교체와 인사, 경향 또는 방침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할 수 있어 언론의 공공성, 중립성 등 언론자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6. 헌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 및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책임과 의무의 귀속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귀속처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김지태로부터 곧바로 재단법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재단법인 5·16장학회는 1962. 7. 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작성 및 임원선출을 한 다음, 7. 14. 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창립총회는 이관구, 고원중 등 7명이 모여 참석자 전원을 이사로 선정하고, 이사장에 이관구, 상임이사에 고원중을 선출하였다. 또한 재단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 서류를 심의하였다.<sup>48)</sup>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박정희 의장이 기부받은 재산이 있다면서 장학회를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하여 문건을 준비해 김지태에게 가서 날인을 받았다. 박정희 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였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재단 이사회가 끝난 다음 5~10분 박정희 의장을 면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16장학회 설립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목적 : 학비보조, 학술연구비보조, 해외유학비보조, 문화보급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체육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 초대 임원 : 이사장 이관구, 상임이사 고원중, 이사 윤일선 김연수 김영기 이병철 김용우
- 기본재산 : 부산일보 주식 100%(2만 주),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2만 주),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1만 3,100주), 토지 100,147평
- 기본재산 평가액 : 주식 34,876,096원, 토지 50,394,184원, 도합 85,270,278원
- 1962년 기부수입 : 6. 30. 고공도 1,297,000원, 스코필드박사 37,250원, 7. 25. 김신일 129,700원, 12. 22. 이병철 10,000,000원

48) 정수장학회 30년지 참조.



재단법인이란 비영리 목적에 출연(出捐)된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 설립에서 재산의 출연은 가장 중요한 필요요건이다. 민법 제43조에 의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산출연자가 아닌 7명이 초대 이사진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였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재산현납에 개입한 고원중이 그 재산을 기초로 설립작업을 하고 상임이사가 되어 운영하였다. 또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에 대한 공부(公簿)상의 소유권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당시의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지태로부터 곧바로 5·16장학회로 9. 4. 및 7. 31. 각각 이전되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 및 소유명의 이전과정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가 결여된 문제점이 있다.

그 후 토지의 경우 1964. 10. 23. 5·16장학회로부터 국가에 증여형태로 등기가 이전되어 군(軍)이 사용하여 왔고, 대부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주식의 경우 부산일보 발행주식 100%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문화방송의 주식 100%의 경우 1971년 유상증자하면서 30%주식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부산문화방송 주식의 경우 문화방송에 1981년 51%를 양도한 후 1985년 나머지 주식도 문화방송에 양도하였다.<sup>49)</sup>

#### 나. 공익목적 사용 여부

5·16장학회는 위와 같이 초대 이사진이 구성된 아래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 이사진에 포함되어 운영을 주도하여 왔고, 1982. 1.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까지 변경하였다.<sup>50)</sup> 공익재단법인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다.

재단법인 설립 후, 언론 3사 경영권도 5·16장학회가 행사하게 되었다. 언론 3사 경영권이 5·16장학회로 양도되면서 5·16장학회 이사 중에서 부산일보 사장 또는 한국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하게 된다.<sup>51)</sup> 또한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의 주식배당금이 연 3천만 원에

49) 정수장학회 30년지 참조.

50) 동아일보 2004. 8. 3.자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正)자와 육영수(陸英修) 여사의 수(修)자를 딴 명칭이다. 이 이름이 상징하듯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1) 권오현, 황용주, 송정제, 윤임술, 정한상 이사는 부산일보 사장, 고원중, 황용주, 이환의, 이진의, 이용희, 황선필, 강성구 이사는 한국문화방송 사장.



불과하나 기부금으로 연 20억 원을 지급받고 있고, 적자상태인 부산일보로부터도 기부금으로 연 8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sup>52)</sup>

또한, 1962년 설립 당시 5·16장학회의 사업목적은 학비 보조, 학술연구비 보조, 해외유학비 보조, 문화보급을 위한 사업 보조였기 때문에 언론사 경영은 5·16장학회의 목적사업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언론사의 목적은 특정 장학사업보다 훨씬 공공성을 갖는다. 문화방송과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장학사업 경비조달의 수단이 되는 것은 공익목적의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 현납 당시 언론 3사는 개인이 소유했던 언론이었지만, 공익목적을 위해 현납된 것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예를 들면, 언론사 주식이 공익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려면 장학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목적으로 비영리적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7. 책임의 귀속

최고회의 구성원 및 중정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산권 박탈 및 언론자유를 침해한 경우 그 행위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당시 최고회의는 최고국가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정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국가는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한 강요행위로 인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것이 밝혀진 만큼, 국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

5·16장학회에 출연된 주식의 경우 재산현납에 개입한 전직 고위인사가 재산출연 등 재단설립 작업을 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국가에 현납된 재산이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16장학회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정수장학회는 보유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에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현납된 재산으로 설립된 만큼 법령에 의거 그 운영의 적법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52) 정수장학회.



## VI. 결론

###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김지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중정에 의해 1962. 3. 27. 회사임원 8명이 구속된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가 구속되었으며, 김지태 등 7명이 구속기소, 그의 처가 불구속 기소되어 군법회의에서 재판중이던 5. 24. 김지태가 7년을 구형받은 다음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제시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려 제시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를 후 석방된 사건이다.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최고회의 및 중정 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회사임원들과 함께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 평 및 김지태 소유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현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현납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현납이 권리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현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현납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현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그 현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5·16장학회 아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가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반하며,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다.



## 2.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헌법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본법에 의거 조사를 하여 진실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 등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헌납재산의 경우 책임의 귀속에 따라 원상회복함이 상당하다. 기본법 제4장에 의거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현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현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별첨〉 정수장학회 및 주식보유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인적 구성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30년지(1994) 83쪽 이하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정수장학회 이사장 초대 1962~1965 이관구 (재건국민운동본부장)
- 2대 1965~1968 엄민영 (최고회의 의장 고문, 내무부장관)
- 3대 1968~1979 김현철 (내각수반)
- 4대 1979~1980 최석채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 문화방송 이사 1973~1980)
- 5대 이사장 1980~1988 (상임이사 1965~1971, 이사 1975~1980) 조태호 (박정희 대통령의 동서, 문화방송 · 부산문화방송 이사 1968~1971)
- 6대 1988~1992 김창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7대 1992~1995 김귀곤 (장학금 수혜자 모임 상청회 고문)
- 8대 1995~2005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학원 이사장)
- 9대 2005~현재 최필립 (박정희 대통령 의전비서관)
- 상임이사 1962~1965 고원중 (법무부장관, 문화방송 사장 1963~1964)
- 이사 1988~1992, 상임이사 1992~1998 손미자 (영남학원 이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이사 1965~1974 서정귀 (박정희 대통령 대구사범대 동기, 영남학원 이사, 문화방송 이사)
- 이사 1966~1974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1963~1969, 중정부장 1970~1973, 영남학원 이사)
- 이사 1979~1980 이환의 (문화방송 · 경향신문사장 1971~1980)
- 이사 1980~1984 박영수 (박정희 대통령 정무비서관 1966~1969)
- 이사 1980~1988 이진의 (문화방송 · 경향신문 사장 1980~1982)
- 이사 1984~1988 이옹희 (문화방송 사장 1982~1986)
- 이사 1985~1987 권오현 (부산일보 사장 1980~1986)
- 이사 1985~1987 황용주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 부산일보 사장 1962~1963, 문화방송 사장 1964~1965)
- 이사 1987~1988 김창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이사, 감사 1987~1992 김정욱 (영남학원 이사)



- 이사 1988~1992 송정제 (부산일보 사장 1988~1994)
- 이사 1988~1997 진혜숙 (박정희 대통령 총무비서관 1965~1966)
- 이사 1988 황선필 (문화방송 사장 1986~1988)
- 이사 1987~1988 윤임술 (부산일보 사장 1986~1988)
- 이사 1992~1995 강성구 (문화방송 사장 1993~1999)
- 이사 1994~1996 정한상 (부산일보 사장 1994~1997)
- 감사 1963~1965 고주상 (문화방송 감사)
- 감사 1971~1972 문춘식 (문화방송 감사)
- 감사 1975~1987 최승효 (광주문화방송 사장)
- 감사 1979~1986 한준우 (대구문화방송 사장 1975~1986, 영남학원 감사)
- 감사 1988~1995 이운경 (부산일보 감사 1993, 영남학원 감사)
- 부산일보 사장 1963~1964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장)
- 부산일보 사장 1964~1971 최세경 (공보부 차관, 국회의원)
- 부산일보 사장 1973~1980 왕학수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
- 부산일보 사장 1997~2006 김상훈 (대구사범 출신)
- 부산일보 사장 2006~김종렬 (부산일보 상무이사)